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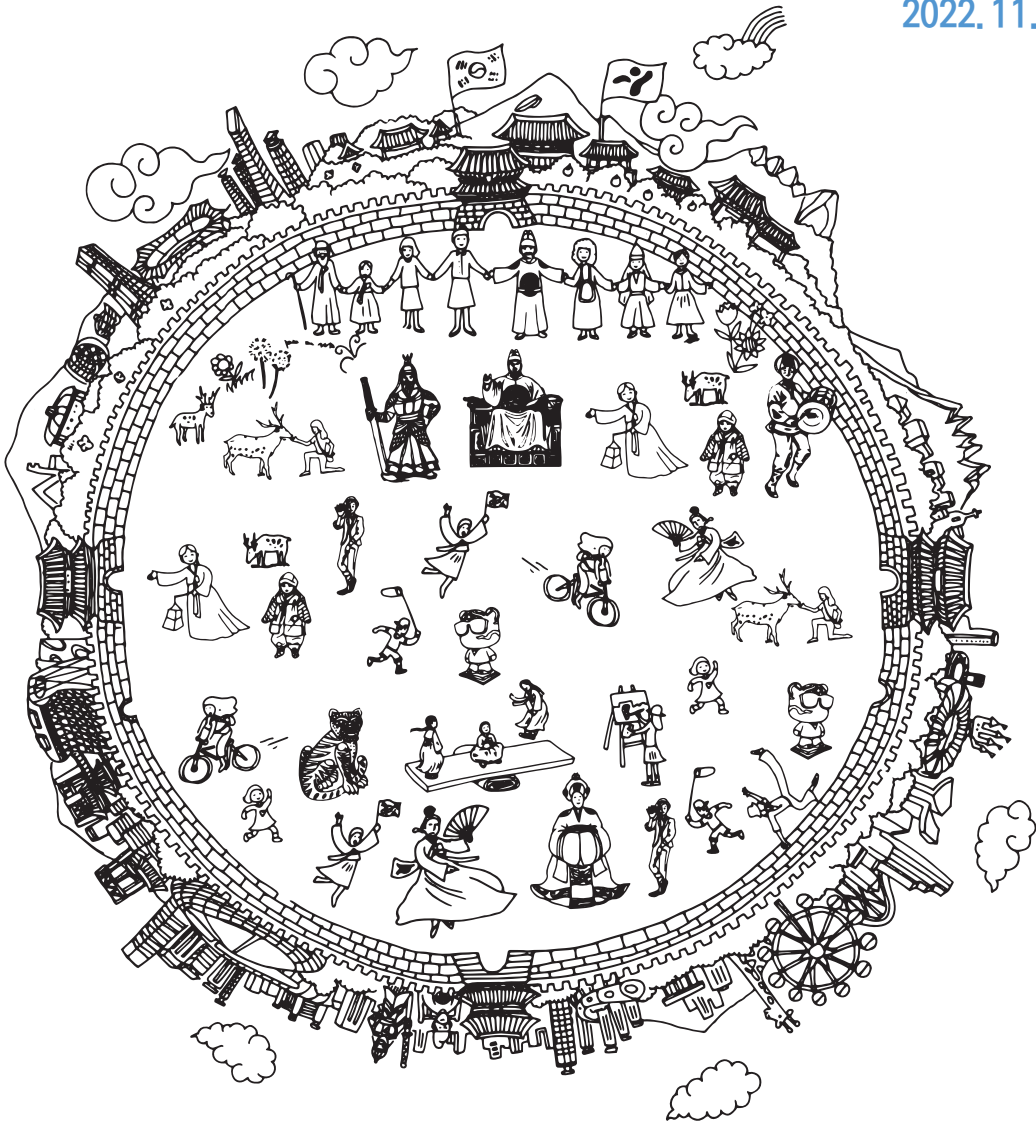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30호
2022. 11. 24.(목)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3134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고 시

제2022-450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22-451호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9
제2022-452호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48
제2022-453호	도시관리계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7
제2022-455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성내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02
제2022-456호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4
제2022-460호	제1차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2022~2026) 고시	131

◆ 공 고

제2022-3075호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32
제2022-308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37
제2022-3083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38
제2022-3084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41
제2022-309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52
제2022-3106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55
제2022-3107호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증품의 기관양여 고지 공시송달 공고	156
제2022-3116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58

제2022-3117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60
제2022-3118호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65
제2022-311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69
제2022-3121호	2022년도 제13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170
제2022-3123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175
제2022-3126호	시유재산 매각대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190
제2022-3128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91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32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입법예고	221

◆ 구 고 시

제2022-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243
제2022-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광진구)	245
제2022-14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247
제2022-1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은평구)	249
제2022-1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은평구)	251
제2022-1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254
제2022-1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257
제2022-1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259
제2022-21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초구)	261

◆ 구 공 고

제2022-1355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종로구)	265
제2022-17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성동구)	279
제2022-1294호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광진구)	285
제2022-1296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광진구)	287

제2022-1574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성북구)	288
제2022-166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도봉구)	304
제2022-18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은평구)	305
제2022-1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서대문구)	308
제2022-2125호	한다림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강서구)	312
제2022-21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강서구)	320
제2022-2046호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특별계획구역①,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정정공고(구로구)	327
제2022-18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335
제2022-1869호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금천구)	339
제2022-2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관악구)	346
제2022-27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348
제2022-1987호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송파구)	352
제2022-2243호	도시계획사업(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강동구)	361

◆ 사업소고시

제2022-4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6
제2022-4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7
제2022-4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7
제2022-4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8
제2022-4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8
제2022-4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9
제2022-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69
제2022-4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0
제2022-4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0

◆ 사업소공고

제2022-414호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 부상형 전환 신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한강사업본부)	371

◆ 기 타

제2022-343호	하천점용(일시)허가(한강유역환경청)	397
제2022-36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98
제2022-36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99
제2022-36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00

자치법규**[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34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사무분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사무 분장 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3. FAX : 02-2133-08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이메일 : iamcream@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호(2015.0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2017.06.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6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7호(2017.1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0호(2018.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6호(2018.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4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3호(2018.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5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호(2020.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1호(2020.03.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3호(2020.03.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4호(2020.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호(2020.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9호(2021.09.0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901,954.4	-	901,954.4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없음)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 5) 교통계획(변경 없음)
- 6) 경관계획(변경 없음)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 없음)
-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없음)
-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없음)
- 13)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변경 없음)
-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없음)
- 15)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16)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 없음)
- 17) 특성화계획(변경 없음)
- 18)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 19)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1) 흑석1 재정비촉진구역 ~ (2) 흑석2 재정비촉진구역(변경 없음)
 - (3) 흑석3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도서(변경 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주택개발사업	흑석동 259-89번지 일대	102,557.9	-	102,557.9	

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도서(변경 없음)

다)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흑석3재정비 촉진구역 내	2,192.4	증)825.9	3,018.3	-
	관리사무소		231.3	증)2.7	234.0	96.10㎡ 이상 (=10+(세대수-50세대)×0.05)
	주민공동시설		2,485.9	증)1,058.3	3,544.2	-
	경로당		518.8	감)18.8	500.0	500㎡ 이상 (1,500세대 이상)
	보육시설		786.9	감)0.9	786.0	725㎡ 이상 (1,500세대 이상)
	문고		546.6	증)246.4	793.0	298㎡ 이상 (1,50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		574.2	감)66.9	507.3	-
	어린이놀이터		1,764.5	증)63.5	1,828.0	1,740.40㎡ 이상 (= 500+(세대수×0.7))

※ 건축계획(상세설계 결과 반영)변경에 따른 변경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흑석3재정비촉진 구역	102,557.9	-	-	흑석동253- 89번지일대	487	1	-	486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흑석3 재정비 촉진 구역	102,557.9	택지3-1	68,514.4	흑석동79-230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4	251	15.5/20
			택지3-2	358.3	흑석동248-76번지일대	학교	-	-	-
			택지3-3	2,314.0	흑석동69-48번지일대	종교시설	60	200	-
			택지3-4	1,053.0	흑석동76-73번지일대	종교시설	60	20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772세대(부분임대 320세대) - 임대주택 건립 시 전용면적 30㎡이상 ():부분임대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40㎡미만		156	-	156	8.80%	
			40~50㎡미만		136	-	136	7.68%	
			50~60㎡미만		588	542	46	33.18%	
			60~85㎡미만		856(302)	856(302)	-	48.31%	
			85㎡이상		36(18)	36(18)	-	2.03%	
			합 계		1,772(320)	1,434(320)	338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변경	흑석3 재정비 촉진 구역	102,557.9	택지3-1	68,514.4	흑석동79-230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9	244.9	15.5/20
			택지3-2	358.3	흑석동248-76번지일대	학교	-	-	-
			택지3-3	2,314.0	흑석동69-48번지일대	종교시설	60	200	-
			택지3-4	1,053.0	흑석동76-73번지일대	종교시설	60	20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건설비용 - 세대 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 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 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건립예정세대수 : 1,772세대(부분임대 320세대) - 임대주택 건립 시 전용면적 30㎡이상 ():부분임대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율	
			40㎡미만		156	-	156	8.80%	
			40~50㎡미만		136	-	136	7.68%	
			50~60㎡미만		588	542	46	33.18%	
			60~85㎡미만		856(302)	856(302)	-	48.31%	
			85㎡이상		36(18)	36(18)	-	2.03%	
			합 계		1,772(320)	1,434(320)	338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없음)
(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아) 생태면적률(변경)

$$\{\sum(\text{공간유형별면적} \times \text{가중치}) / \text{전체면적}\} \times 100 = 30\% \text{ 이상 확보}$$



※ 건축계획(상세설계 결과 반영)변경에 따른 변경

-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카)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구역면적(㎡)		102,557.9	-	102,557.9	
대지면적(㎡)		68,514.4	-	68,514.4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67,702.7	증)95.2	167,797.9	
건축면적(㎡)		16,059.8	증)290.4	16,350.2	
용적률(%)		245%이하	-	244.9	
건폐율(%)		23.4	증)0.5	23.9	
주차대수	지상	-	-	-	
	지하	2,190대	증)100대	2,290대	
	계	2,190대	증)100대	2,290대	

※ 건축계획(상세설계 결과 반영)변경에 따른 변경

□공동이용시설 배치도



(4) 흑석4 재정비촉진구역 ~ (11)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변경 없음)

2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3)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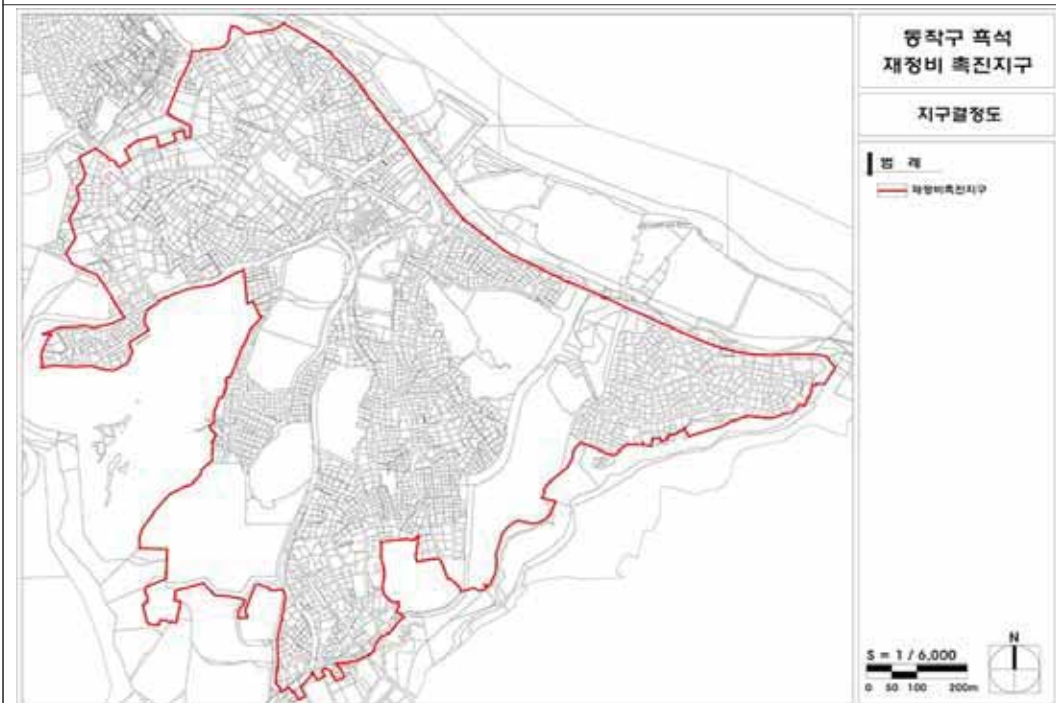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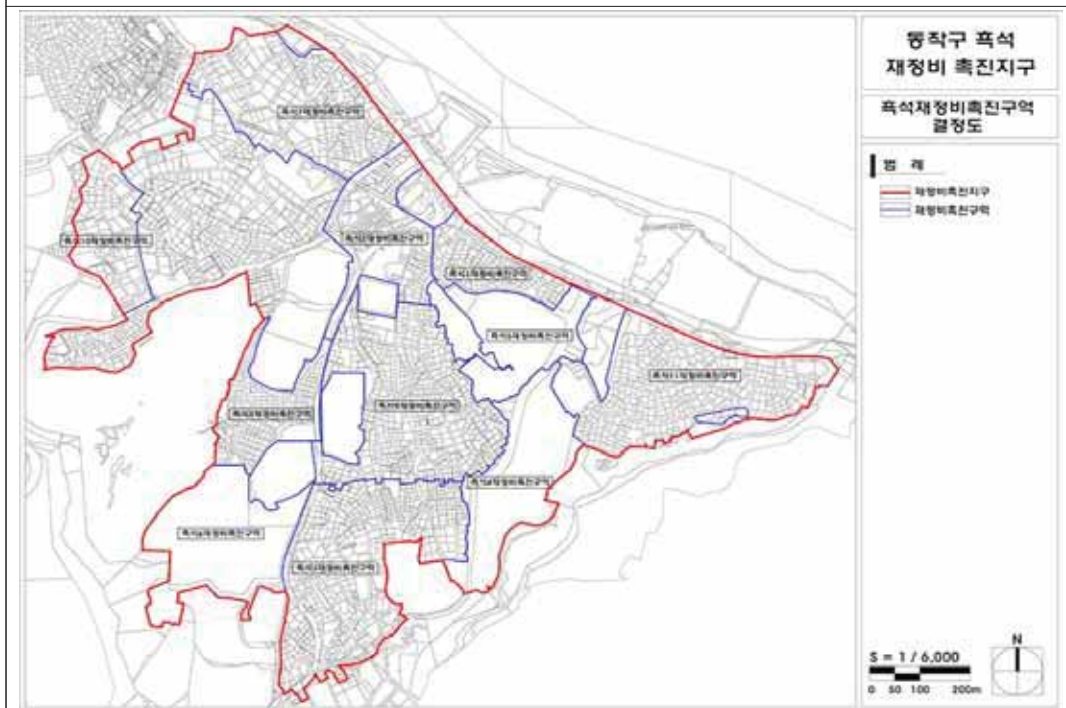
6.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3)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7)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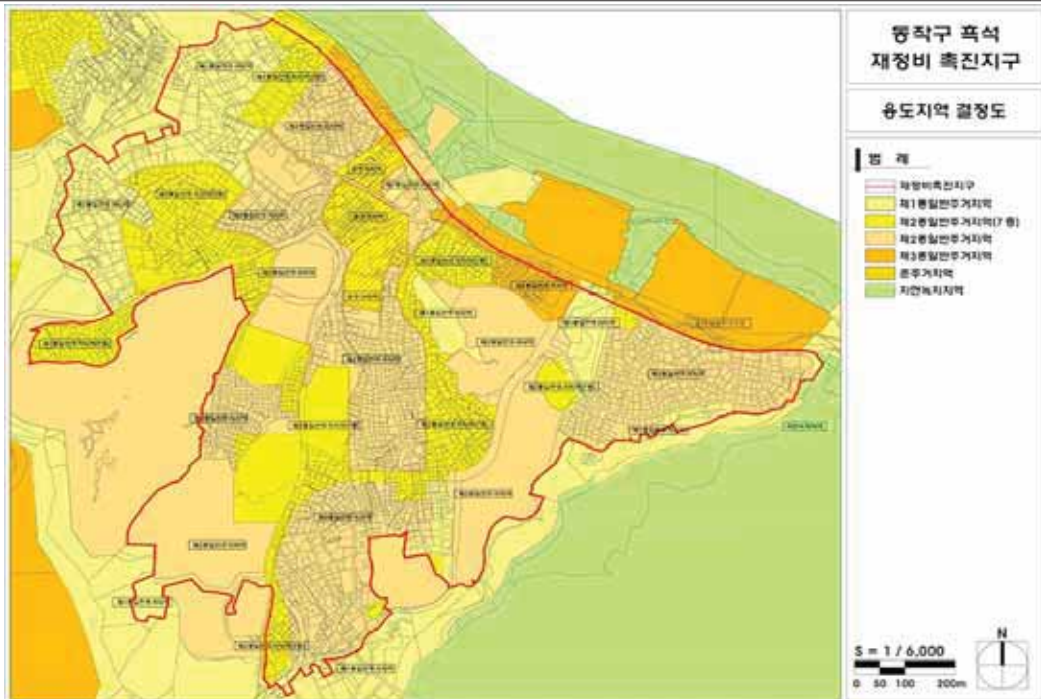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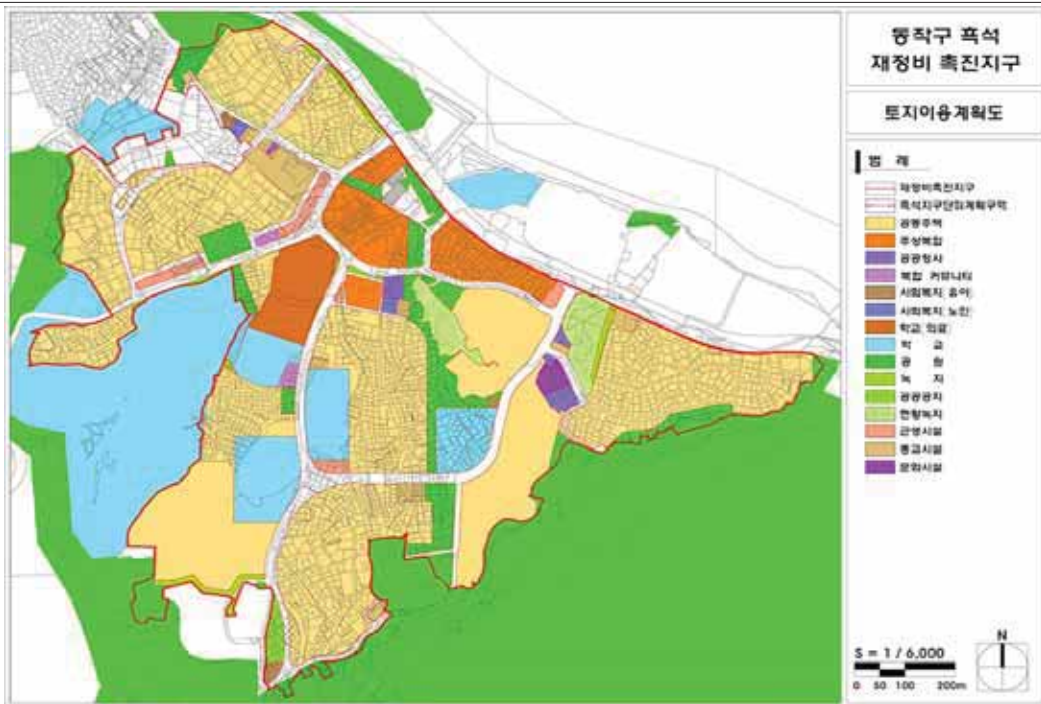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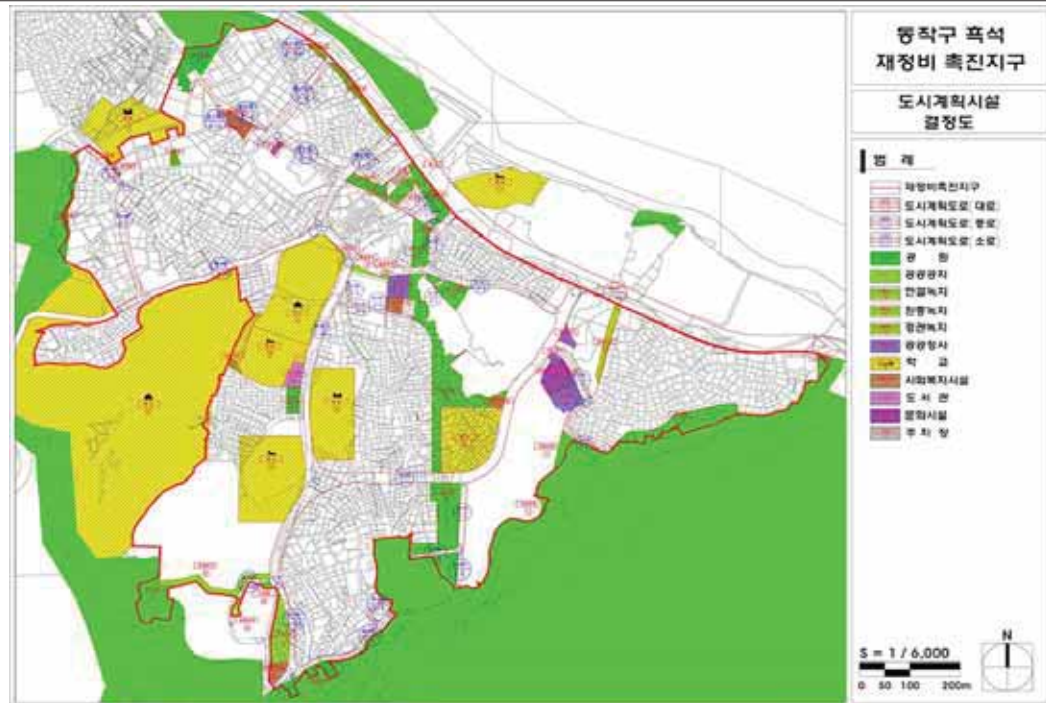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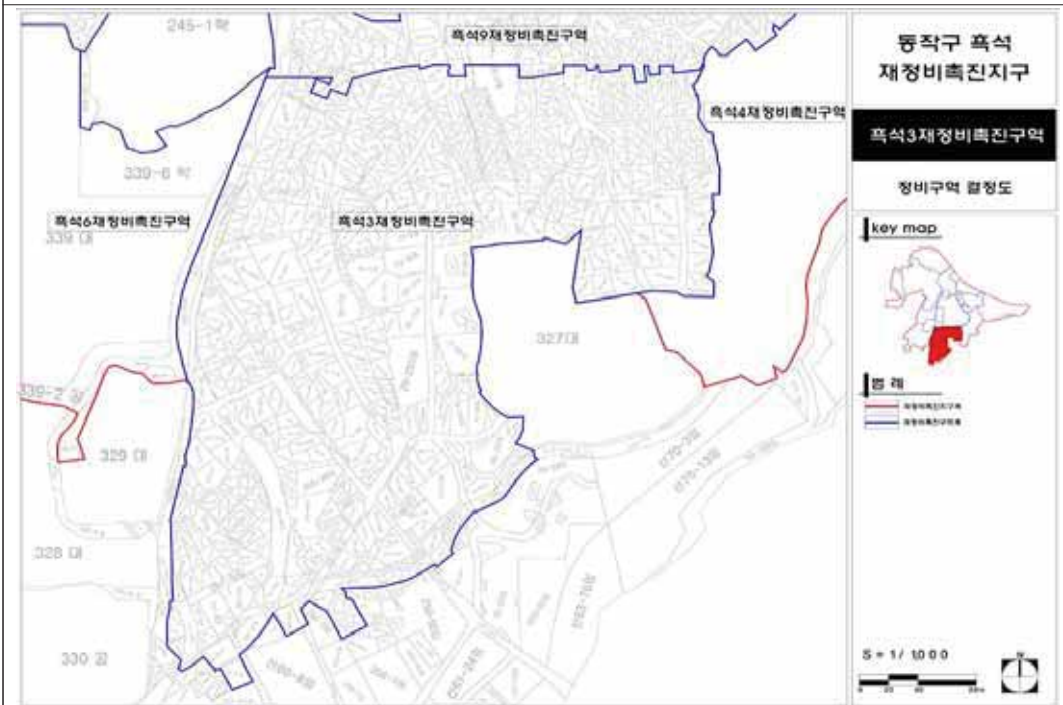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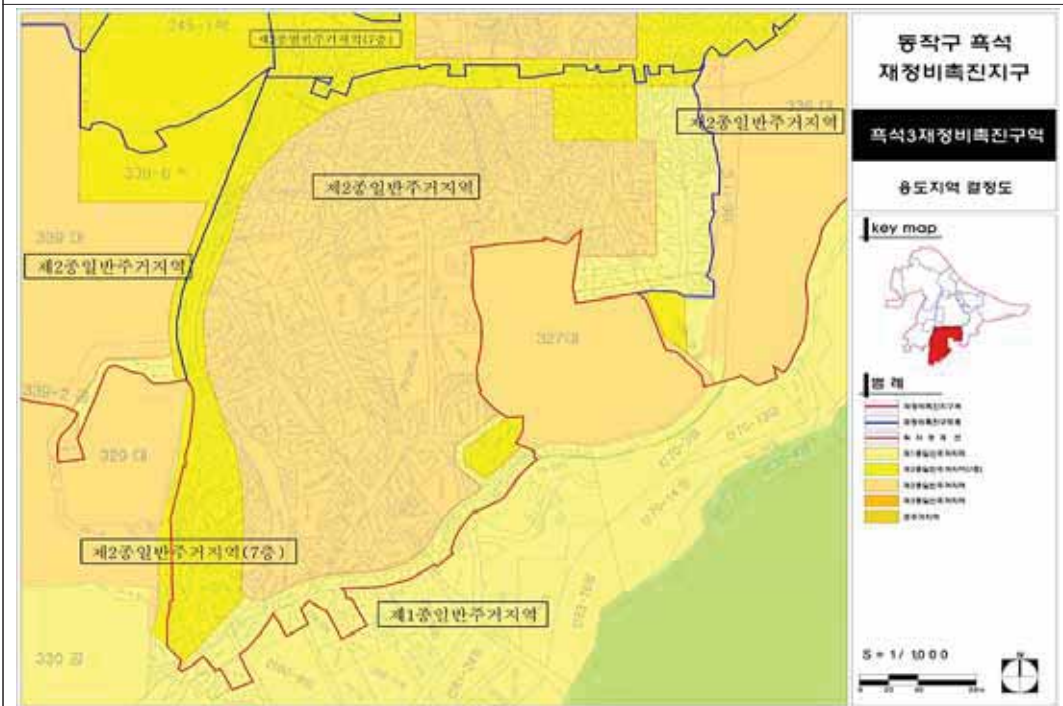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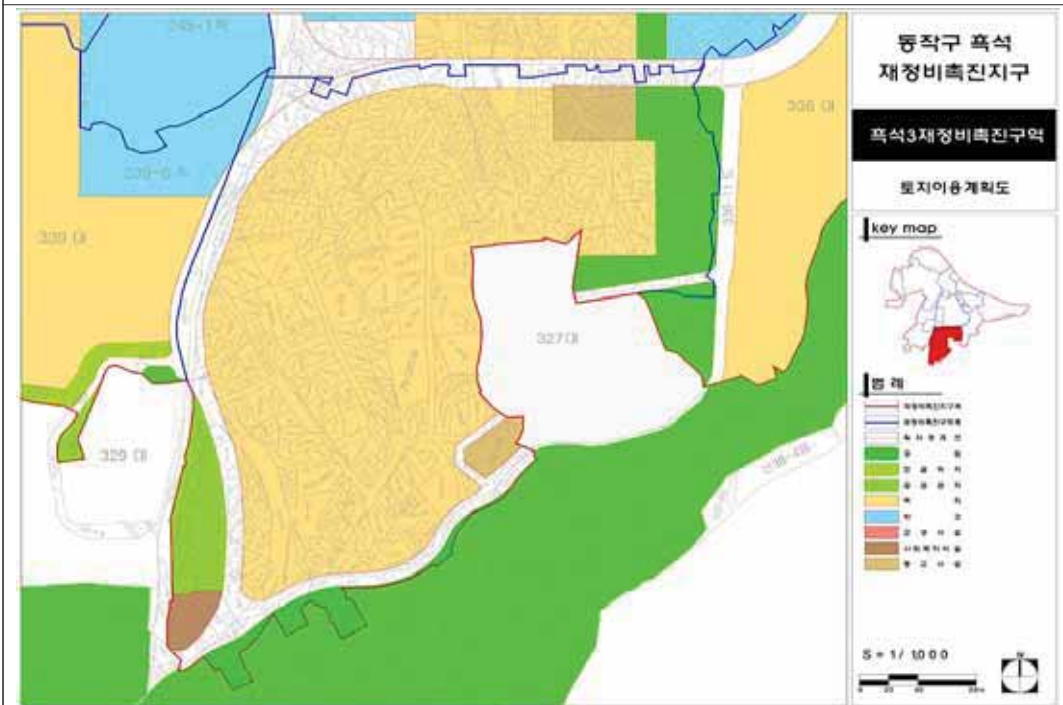
[흑석3 정비구역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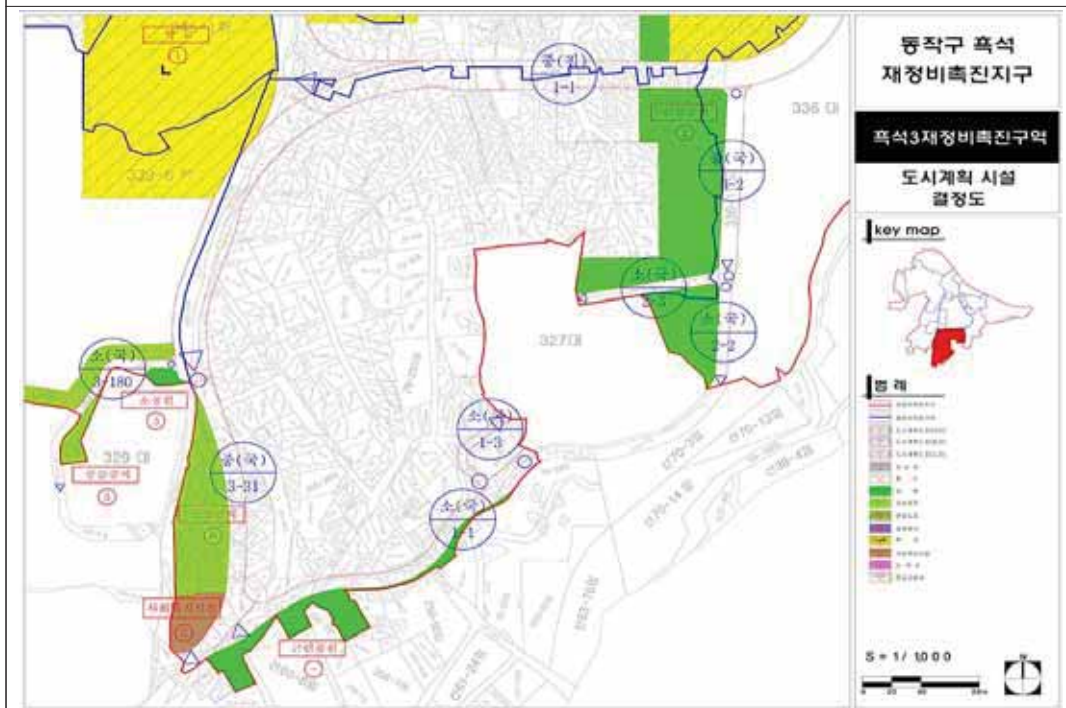
[흑석3 용도지역결정도(변경 없음)]



[흑석3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없음)]



[흑석3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1호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호(2020. 1. 30.)로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
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2. 8. 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에 따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강동구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강동구 성내동 19-1 일원	-	증) 21,461.0	21,461.0	역세권 활성화사업

■ 지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신 설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강동구 성내동 19-1 일원	구역 신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합 계		21,461.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357.2	15.6	
	도 로	3,357.2	15.6	
택지(획지)	소 계	18,103.8	84.4	
	택지(획지)	18,103.8	84.4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3. 용도지역·지구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461.0	-	21,461.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56.0	감) 12,590.8	3,065.2	14.3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5,805.0	감) 5,513.0	292.0	1.3	
	일반상업지역	-	증) 18,103.8	18,103.8	84.4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 경	성내동 19-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 정비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 유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4.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및 신설)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주 간선	7,200 (1,619)	천호 대교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	1971.04.07. (건설부고시 제198호)	천호대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447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	1969.01.18. (서울시고시 제3호)	미집행구간 실효고시 (강동구고시 제115호, 2020.07.02.)
변경	소로	1	1	9 ~ 12	집산 도로	447 (211)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	1969.01.18. (서울시고시 제3호)	-
기정	소로	2	10	8	집산 도로	100	성내동 19-9	광로 2-5 (성내동 19-1)	일반 도로	-	1992.10.24.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제2020-124호, 2020.03.26.]
변경	중로	3	3	12 ~ 15	집산 도로	100 (100)	성내동 19-9	광로 2-5 (성내동 19-1)	일반 도로	-	1992.10.24.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
신설	소로	3	29	7 ~ 8	국지 도로	85 (85)	성내동 202-18	성내동 162-4	일반 도로	-	-	-

※ 광로 2-5(천호대로)의 ()는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이며, 그 이외 ()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연장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1	소로 1-1	• 폭원변경: 10m → 9m~12m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에 따른 보행로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 등을 위하여 도로 폭원 변경(신설)
소로 2-10	중로 3-3	• 폭원변경: 8m → 12m~15m	
-	소로 3-29	• 신설: 폭원 7m~8m, 연장 85m	

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체육 시설	성내동 19-1 일원	-	증)지하2층 증)지하3층	6,255.0 1,449.3	지하2층 지하3층	6,255.0 1,449.3	관리청: 강동구 (시설면적: 12,439.3㎡)	수영장, 빙상장 등
신설	②	문화 시설		-	증)지상2층 증)지상1층 증)지하1층 증)지하3층	1,355.0 545.0 1,640.0 819.1	지상2층 지상1층 지하1층 지하3층	1,355.0 545.0 1,640.0 819.1		글로벌체험센터, 생활문화센터, 만화라키비움 등
신설	③	사회복지시 설		-	증)지하1층 증)지하3층	305.0 70.9	지하1층 지하3층	305.0 70.9		우리동네 키움센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의 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지하3층은 체육시설·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의 지하주차장 등 면적임(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체육시설	- 체육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하2층, 면적 6,255.0㎡ : 지하3층, 면적 1,449.3㎡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로 공공기여(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②	문화시설	-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상2층, 면적 1,355.0㎡ : 지상1층, 면적 545.0㎡ : 지하1층, 면적 1,640.0㎡ : 지하3층, 면적 819.1㎡	
③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지하1층, 면적 305.0㎡ : 지하3층, 면적 70.9㎡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각 층별 면적은 수평투영면적 기준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기 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주민공동시설	획지 ①	-	증) 1,400	1,400	-
	주민운동시설	획지 ①	-	증) 1,160	1,160	실외 운동시설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1,461.0	-	18,103.8	성내동 19-1 일원	81	-	-	81	-	-

7.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1,461㎡	18,103.8㎡	7,426.5㎡	1,304.9㎡	530.1㎡
기준/상한용적률	• 기준(하용)용적률 = 356.6% • 상한용적률 = 80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7,426.5㎡ - 1,304.9㎡ - 530.1㎡ = 5,591.5㎡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면적 - 체육시설: 1,292.3㎡(대지지분 577.8㎡+환산부지면적 714.5㎡) - 문화시설: 766.5㎡(대지지분 326.9㎡+환산부지면적 439.6㎡) - 사회복지시설: 62.7㎡(대지지분 28.2㎡+환산부지면적 34.5㎡)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1,947.8㎡(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공공기여율 (순부담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 공공기여율(순부담률) 산정(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 $\{[(12,590.8\text{㎡}/18,103.8\text{㎡}) \times (800\%-250\%) \times 1/2] + \{5,513.0\text{㎡}/18,103.8\text{㎡}\} \times (800\%-600\%) \times 1/2\} / 800\% = 27.7\%$ 이상 ≤ 계획 28.5%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하철5호선 강동역~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대상지를 연결할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구역 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

9. 임대주택 건설 등 계획

-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감정평가 금액(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매입(서울시)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계 획 기 준	- 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용」(국토부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4조 제6항 및 제7항 및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확보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5%로 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산 출 근 거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151세대(연면적 27,377.7㎡) -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5세대(연면적 1,405.9㎡)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36세대(연면적 25,971.8㎡) - 전체 공공기여량(5,591.5㎡)의 34.8%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947.8㎡ 공급			
건립규모(전용면적)	임대주택 건설 계획			비율
	합 계 (세대수)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세대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세대수)	
합 계	151	15	136	100.0%
40㎡ 이하	15	15	-	9.9%
74㎡ 이하	39	-	39	25.8%
85㎡ 이하	97	-	97	64.3%

※ 추후 등·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 가능)	1,118세대 (준주택 포함)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제2항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시행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 관련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예정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도록 함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건축물 81동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산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

13. 생태면적률(관련규정에 따름)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건설공사 시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폐기물의 수거는 강동구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름	-
재난방지	- 사업시행 시 건축물 내 피난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의 확보 및 화재 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물 신축 유도 - 사업시행 시 관할소방서 등과 협의를 통해 필요 시 소화전 설치 - 소방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시 플로터 유효높이 5m 이상 확보 - 우수조 등 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통한 물순환 고려	-

나.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다. 환경성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준용)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가.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생태면적률은 30.13%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과 식재를 적용	-
나.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지공간이 조 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및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다.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대체로 평탄하나, 이면부 주거지역~천호대로변으 로 일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음(남측 주거지역의 경우 지반고가 최저 22.00이며, 천호대로 변으로 일부 30.0을 보임) •부지조성 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남북측 지반고는 유지하며, 천호대로 종단경사에 따라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수립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라. 비오름	비오름 보존 등급 향상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으로 조사됨	•획지 내 조경 녹지 등 조성을 통한 새로운 녹지 공 간 확보	-
마.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남측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음	•본 대상지 남측으로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이며, 건물 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정을 통해 주변 주거지역과 의 일조영향 최소화	-
바.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바람길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건축물 간 인동간격을 확보	-
사. 대기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현재는 대기오염 물질이 없음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계획 고 려	-
	온실가스 저감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아.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현재는 수질오염 시 문제가 없으나 운영 시 오수 발생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 처리 •우수조 등 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통한 물순환 고려	-
자.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에너지절약설계기준 비주거 65점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1등 급 이상 획득 예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 주거 8% 이상, 비주거 12% 이상 설치 예정)	-
차. 경관	Skyline 보전	○	•대상지의 서측, 북측 근·중·원경에 입지하고 있 는 다수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층 건축물들이 중첩되어 배경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는 저층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음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각적 개방 확보 및 경관조화 를 통한 시가지환경의 질 향상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고층부 경관창출을 위한 스 카이라인 조성	-
	가로녹시율 30%	○	•계획구역 내 녹시율은 일부 조경 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조경녹지, 공개공지 등 조성하여 적용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카.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주변으로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일자산 등이 위치하고 있음	•대상지 내 조정공간,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공공기여시설(수영장, 빙상장)등 내부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타.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수립	○	•북측으로는 천호대로(폭원 50m, 왕복 10차로)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올림픽대로(폭원 50m, 왕복 8차로)가 10분 거리에 위치함	•부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량 및 보행동선 확보 할 계획임 •공개공지를 통한 보행통로 확보 및 내부열린공간을 통해 강동역 직접 진출입	-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보관소	○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파.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 이하	○	•공사 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 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하. 친환경자원 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건설폐제 및 폐유 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15. 세입자 주거대책

-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적격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등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원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예정
-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 예정 (151세대 임대주택 및 타 구역 재개발임대주택 활용)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6,383.6	-	656,383.6	2020.12.31. (서울시고시 제592호)

2. C3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C3 특별계획구역	강동구 성내동 19번지 일원	28,742.7	-	28,742.7	2020.06.25. (서울시고시 제254호)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통합 개발

※ C3특별계획구역 일부(획지 ①)에 대해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

-이하여백-

나. C3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 치		• 성내동 19번지 일원	
면 적		• 28,742.7㎡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 순부담률 15%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지역에 한함 • 도로 - 획지 간 12m, 이면부 10m 도로 조성 •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 협의)을 통해 결정 • 공공시설(천호대로변 및 강동역 연접지에 설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 구 및 시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부분개발 시 건축물 내 공공시설 가능 - 예시용도: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가구 및 획지		• 1개 획지(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3개 획지로 분할 가능)	
용도	권장용도	• 권장용도 (G) ※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 이상(지상층 20% 이상) 설치 시 인정	
	불허용도	• 불허용도 (1)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250% / 허용 350% / 상한 400%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4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면적 대비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높 이	•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 5m, 이면도로변 2~3m, 우측연접부 3m	
	대지 내 공지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천호대로변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공공보행통로	• 획지 내 6m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 타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비주거시설 상층부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

※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위치	• 성내동 19번지 일원		
면적	• 28,742.7㎡		
용도지역	획지①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신설
	획지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획지①	• 순부담률 27.7%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정비행 재개발 정비구역에 한함 • 도로: 소로 1-1(폭원 9m~12m), 중로 3-3(폭원 12m~15m), 소로 3-29(폭원 7m~8m, 신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3,357.2㎡ • 공공기여 계획 ▶ 공공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강동구에 기부채납) 면적 - 체육시설: 1,292.3㎡(대지지분 577.8㎡+환산부지면적 714.5㎡) - 문화시설: 766.5㎡(대지지분 326.9㎡+환산부지면적 439.6㎡) - 사회복지시설: 62.7㎡(대지지분 28.2㎡+환산부지면적 34.5㎡)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1,947.8㎡(건물: 표준건축비 매입)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신설
	획지②	• 순부담률 15% 이상 기부채납(도로, 공공시설 등) -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지역에 한함 • 도로 - 획지 간 12m, 이면부 10m 도로 조성 •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 협의를 통해 결정) • 공공시설(천호대로변 및 강동역 연접지에 설치) -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 구 및 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설 결정 -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른 부분개발 시 건축물 내 공공시설 가능 - 예시용도: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오피스,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가구 및 획지	획지①	• 21,461.0㎡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행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획지②	• 7,281.7㎡	
용 도	획지①	•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01조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제107조~109조 사회복지시설	신설
	획지②	• 권장용도 (G) ※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 이상(지상층 20% 이상) 설치 시 인정 • 불허용도 (1)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획지①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기준(허용) 356.6% / 상한 800%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신설
		획지②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250% / 허용 350% / 상한 400% •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4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면적 대비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높이	획지①	• 최고높이 150m 이하	변경
		획지②	• 최고높이 120m 이하	
기타	건축 한계선	획지①	• 지정: 천호대로 5m(변경 없음) • 신설: 천호대로 162길(중로 3-3) 4~7m, 천호대로 168가길(소로 1-1) 3m, 소로 3-29 3m	변경
			• 천호대로변 5m. 이면도로변 2~3m, 우측연접부 3m	
	대지 내 공지	획지①	• 공개공지 설치: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신설
		획지②	•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기 타	획지①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연면적은 전체 주거(공동주택 및 준주택 포함)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획지①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형(폭원 8m 이상) 및 필로티구조(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지정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최상층 개방공간(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하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하철5호선 강동역~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과 대상지를 연결할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구역 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신설
			• 비주거시설은 천호대로변 및 구역 내 도로에 면하게 설치 • 비주거시설 상층부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 권장	

- ※ 특별계획구역(획지②)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 C3특별계획구역 획지①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용적률 완화항목을 적용하며,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

※ 상기 변경내용을 제외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변경 없음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1,461.0	-	21,461.0	100.0	
주거지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56.0	감) 12,590.8	3,065.2	14.3	
상업지 역	근린상업지역	5,805.0	감) 5,513.0	292.0	1.3	
	일반상업지역	-	증) 18,103.8	18,103.8	84.4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및 신설)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주 간선	7,200 (1,619)	천호 대교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	1971.04.07. (건설부고시 제198호)	천호대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447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	1969.01.18. (서울시고시 제3호)	미집행구간 설고기시 (강동구고시 제115호, 2020.07.02.)
변경	소로	1	1	9 ~ 12	집산 도로	447 (211)	성내동 194	성내동 19-9	일반 도로	-	1969.01.18. (서울시고시 제3호)	-
기정	소로	2	10	8	집산 도로	100	성내동 19-9	광로 2-5 (성내동 19-1)	일반 도로	-	1992.10.24.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서울시고시 제2020-124호, 2020.03.26.]
변경	중로	3	3	12 ~ 15	집산 도로	100 (100)	성내동 19-9	광로 2-5 (성내동 19-1)	일반 도로	-	1992.10.24.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
신설	소로	3	29	7 ~ 8	국지 도로	85 (85)	성내동 202-18	성내동 162-4	일반 도로	-	-	-

※ 광로 2-5(천호대로)의 ()는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이며, 그 이외 ()는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연장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2) 체육 및 문화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체육 시설	성내동 19-1 일원	-	증)지하2층 증)지하3층	6,255.0 1,449.3	지하2층 지하3층	6,255.0 1,449.3	수영장, 빙상장 등
신설	②	문화 시설		-	증)지상2층 증)지상1층 증)지하1층 증)지하3층	1,355.0 545.0 1,640.0 819.1	지상2층 지상1층 지하1층 지하3층	1,355.0 545.0 1,640.0 819.1	관리청: 강동구 (시설연면적: 12,439.3㎡) 글로벌체험센터, 생활문화센터, 만화라키비움 등
신설	③	사회복지시 설		-	증)지하1층 증)지하3층	305.0 70.9	지하1층 지하3층	305.0 70.9	우리동네 키움센터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의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지하3층은 체육시설·문화시설의 지하주차장 등 면적 임(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	28,742.7	-	성내동 19 일원	28,742.7	C3특별계획구역
변경	-	21,461.0	획지①	성내동 19-1 일원	21,461.0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7,281.7	획지②	성내동 179 일원	7,281.7	-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01조 문화시설 및 체육 시설, 제107조~109조 사회복지시설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연면적은 전체 주거(주택 및 오피스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성내전통시장 내 주요 업종인 식료품소매업의 입점제한함을 판매 및 근생시설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 고
공동주택 등	60% 이하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공동주택 등	356.6% 이하	-	800% 이하	-

■ 용적률 완화사항: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완화
- 기준(허용)용적률 356.6% 이하 → 상한용적률 800.0% 이하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공동주택 등	28.5%	-	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 높이 계획

구 분	높 이	비 고
공동주택 등	150m 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도로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천호대로	5m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천호대로 162길	4m~7m	
	천호대로 168가길	3m	
	소로 3-29	3m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건축한계선은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공개공지	-	- 공개공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세부 사항 결정도 참고
전면공지	천호대로	• 5m(보도형 열린공간)	
	천호대로 162길	• 4~7m(보도)	
	천호대로 168가길	• 3m(보도)	
	소로 3-29	• 3m(보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및 소로 3-29 전면공지는 지상권 설정(지상권자: 강동구청)함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안내 필요

2) 대지 내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 개방형 구조: 폭원 8m 이상 • 필로티 구조: 폭원 8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대상지 진출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주택의 규모별 비율

-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감정평가 금액(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매입(서울시)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 채납

건립규모 (전용면적)	전체세대수 (준주택 포함)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비 고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 계	1,118	100.0	151	13.5	100.0	
40㎡ 이하	78	7.0	15	1.3	9.9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74㎡ 이하	424	37.9	39	3.5	25.8	
85㎡ 이하	616	55.1	97	8.7	64.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5)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가. 생태면적률	건축유형별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생태면적률은 30.13%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과 식재를 적용	-
나.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지공간이 조 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및 자연지반 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다.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대체로 평탄하나, 이면부 주거지역~천호대로변으 로 일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음(남측 주거지역의 경우 지반고가 최저 22.0이며, 천호대로 변으로 일부 30.0을 보임) •부지조성 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남북측 지반고는 유지하며, 천호대로 종단경사에 따라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수립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라. 비오름	비오름 보전 등급 향상	○	•서울시 도시생태환경도상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으로 조사됨	•획지 내 조경 녹지 등 조성을 통한 새로운 녹지 공 간 확보	-
마.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대상지 남측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음	•본 대상지 남측으로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예정이며, 건물 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정을 통해 주변 주거지역과 의 일조영향 최소화	-
바.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바람길을 고려하여 공공보행도로 설치 및 건축물 간 인동간격을 확보	-
사. 대기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최소화	○	•현재는 대기오염 물질이 없음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계획 고 려	-
	온실가스 저감	○	•유입인구의 증가로 온실가스 증가		
아. 수질	수질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현재는 수질오염 시 문제가 없으나 운영 시 오수 발생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 처리 •우수조 등 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통한 물순환 고려	-
자.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에너지절약설계기준 비주거 65점 이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1등 급 이상 획득 예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 주거 8% 이상, 비주거 12% 이상 설치 예정)	-
차. 경관	Skyline 보전	○	•대상지의 서측, 북측 근·중·원경에 입지하고 있 는 다수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고층 건축물들이 중첩되어 배경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는 저층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음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각적 개방 확보 및 경관조화 를 통한 시가지환경의 질 향상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고층부 경관창출을 위한 스 카이라인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가로녹지율 30%	○	•계획구역 내 녹지율은 일부 조정 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조경녹지, 공개공지 등 조성하여 적용	-
카.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주변으로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일자산 등이 위치하고 있음	•대상지 내 조정공간,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공공기여시설(수영장, 비상장)등 내부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타.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수립	○	•북측으로는 천호대로(폭원 50m, 왕복 10차로)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올림픽대로(폭원 50m, 왕복 8차로)가 10분 거리에 위치함	•부지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량 및 보행동선 확보 할 계획임 •공개공지를 통한 보행통로 확보 및 내부열린공간을 통해 강동역 직접 진출입	-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수립	×	•대지면적이 작아,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보관소	○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파.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 이하	○	•공사 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 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하. 친환경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건설폐재 및 폐유 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비 고
최상층 개방공간	성내동 19-1 건물 내	• 근린생활시설(카페 등) 설치조성(1개소 이상, 연면적 250㎡ 이상)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 ~ 성내동 19-1 지하2층	• 강동역~천호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지하1층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지하2층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보행로 신설	구역 외
지하 주차장	성내동 19-1 건물 내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	-
한전선, 통신선 등의 지중화	성내동 19-1 건물 인근 도로 (천호대로 일대, 중로 3-3, 소로 1-1 일대, 소로 3-29)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착공 전 대상지 주변 도로에 설치된 한전선, 통신선 등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지중화 시행	-

※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 관련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하공공보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함께 일괄 공사 시행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 사항

구 분	주 요 사 항	비 고
기본 건축물 적용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 기존 건축물의 증축·축적·축대수선·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면적(건축 대지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한다. - 광로 2-5(천호대로) 5m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4~7m,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3m, 소로 3-29 3m	-
 전면공지 (보도형 열린공간)  전면공지 (보도형)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의 지정에 의해 대지 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씬지형 공지 또는 공개공지,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 다른 유형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광로 2-5(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 중로 3-3(천호대로 162길) 4~7m(보도), 소로 1-1(천호대로 168가길) 3m(보도), 소로 3-29 3m(보도) ※ 전면공지의 조성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라 함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대지 안에 시민의 보행·휴식, 녹지공간의 연속적 조성 등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정하는 공지를 말한다. - 천호대로변과 소로 3-29 각각부에 설치	-
 공공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폭원 8m 이상) 또는 필로티 구조(폭원 8m 이상, 높이 6m 이상, 고층부 전이구조 기둥 설치 가능)로 설치해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은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른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III.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 8. 17.) 심의결과: 수정가결

구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수정 사항	- 사업시행예정자: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시행 전제 ※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	〈정비사업 시행계획〉<table><tr><th>시행 방법</th><th>시행 예정 시기</th><th>사업시행 예정자</th><th>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th><th>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th></tr><tr><td>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td><td>구역지정 후 4년 이내</td><td>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 가능)</td><td>1,118세대 (준주택 포함)</td><td>해당 없음</td></tr></table> -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시행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 관련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예정자(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도록 하겠음	시행 방법	시행 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 가능)	1,118세대 (준주택 포함)	해당 없음	반영
	시행 방법	시행 예정 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 가능)	1,118세대 (준주택 포함)	해당 없음								
	공공기여계획: 5,591.5㎡ (28.5%) <table><tr><td>토 지</td><td>도로 3,357.2㎡, 체육시설 577.8㎡, 문화시설 326.9㎡, 공공임대주택 1,947.8㎡, 사회 복지시설 28.2㎡</td></tr><tr><td>건축물</td><td>체육시설 714.5㎡, 문화시설 439.6㎡, 사회복지시설 34.5㎡</td></tr></table>	토 지	도로 3,357.2㎡, 체육시설 577.8㎡, 문화시설 326.9㎡, 공공임대주택 1,947.8㎡, 사회 복지시설 28.2㎡	건축물	체육시설 714.5㎡, 문화시설 439.6㎡, 사회복지시설 34.5㎡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기 반영된 사항임	반영						
	토 지	도로 3,357.2㎡, 체육시설 577.8㎡, 문화시설 326.9㎡, 공공임대주택 1,947.8㎡, 사회 복지시설 28.2㎡											
건축물	체육시설 714.5㎡, 문화시설 439.6㎡, 사회복지시설 34.5㎡												
재개발정비사업 의무 임대주택(15세대, 1,405.92㎡)은 별도 확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확보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미포함하여 공공기여 산정 시 제외)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기 반영된 사항임	반영											
공개공지계획: 실내 공개공지는 법정 의무면적 산정 시 제외하고, 해당 면적 (150㎡)은 일반 공개공지 형태로 수정	실내 공개공지는 법정 의무 면적 산정 시 제외하고, 일반 공개공지 형태로 법정 면적(1,810.38㎡)을 모두 확보하겠음	반영											
사회복지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추가 확보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기 반영된 사항임	반영											

구분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조건 사항	1.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1-1. 건축물 장변길이가 상당한 바, 보행동선계획은 남북방향 동선계획 추가, 주요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	주요 대중교통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남북방향 동선계획을 추가로 확보하겠음	반영
	1-2. ‘글로벌 체험센터(지상2층, 1,335㎡)’를 비롯한 문화·체육시설은 강동구청에서 세부적인 용도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정성을 검토할 것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 사항을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2.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대상지 서측 도로(기정 8m → 변경안 12~15m)의 확폭 필요성 및 횡단구성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서측 도로의 경우 교통량 및 동선 등을 고려 왕복 4~5차로로 계획하여 본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였음. - 도로폭 및 횡단구성 계획의 경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반영하여 계획하겠음(서측도로 전 구간 5차로(15m 확폭) 검토 등 포함)	추후 반영

IV. 기타 관련사항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도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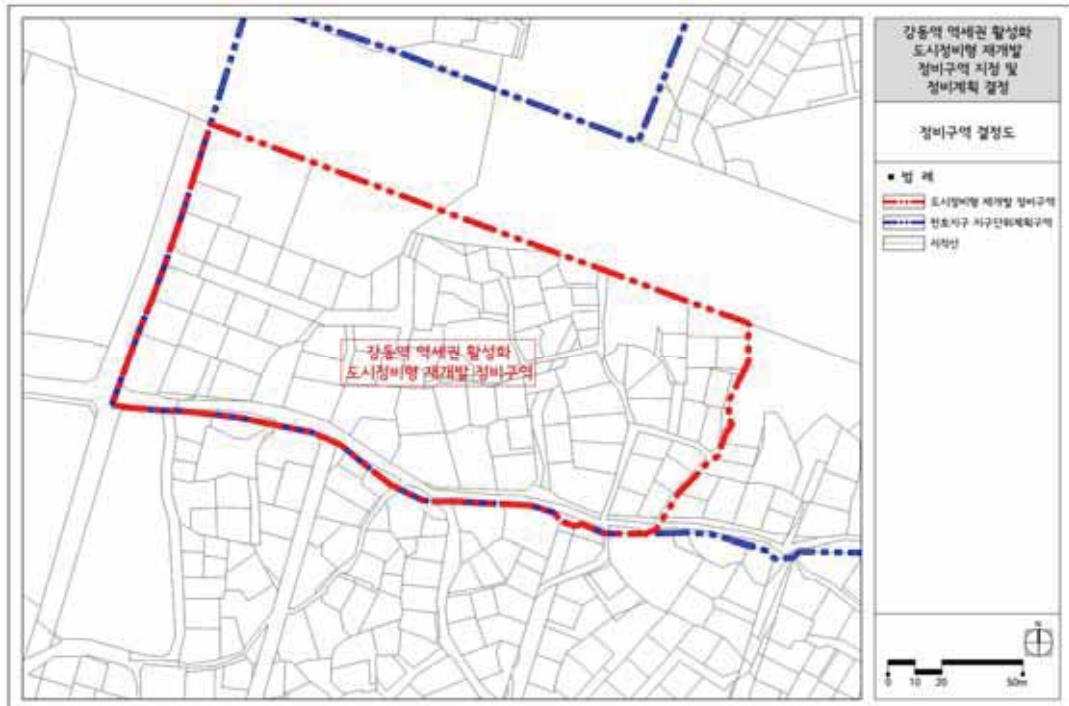
V.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도서」 참조: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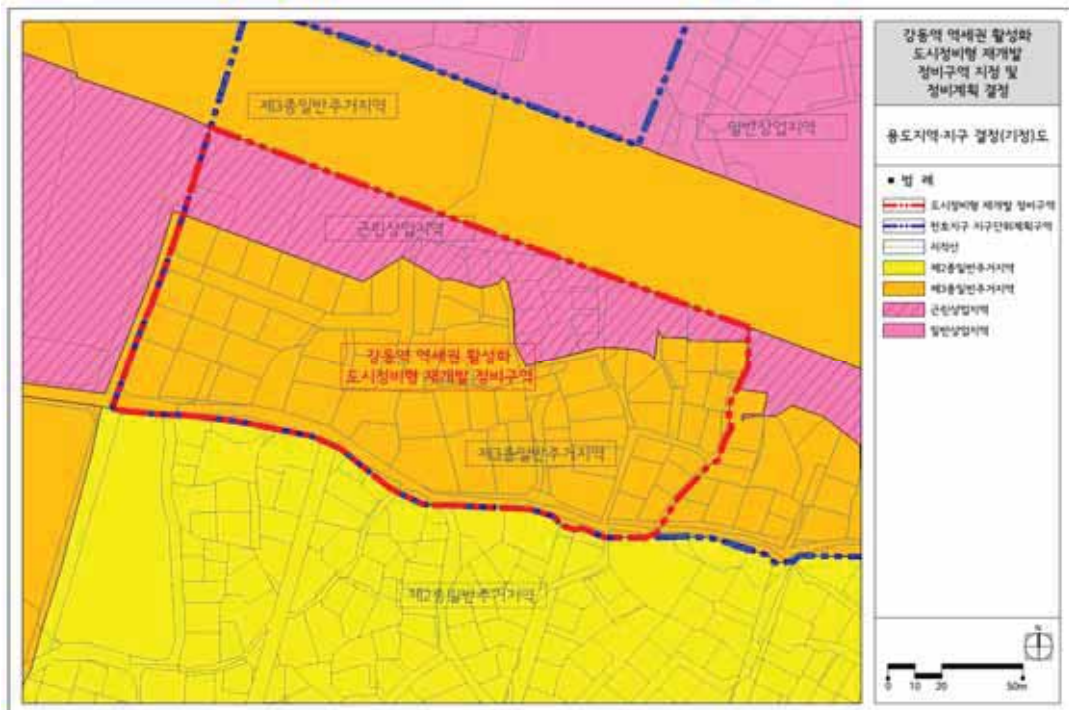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2598)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8805)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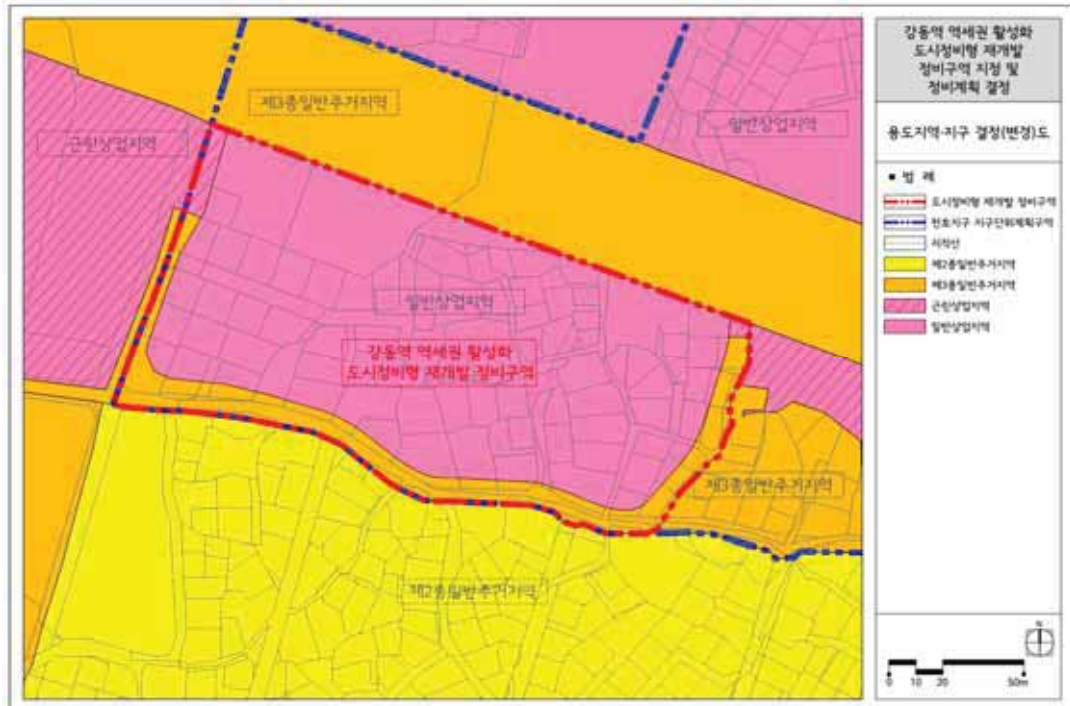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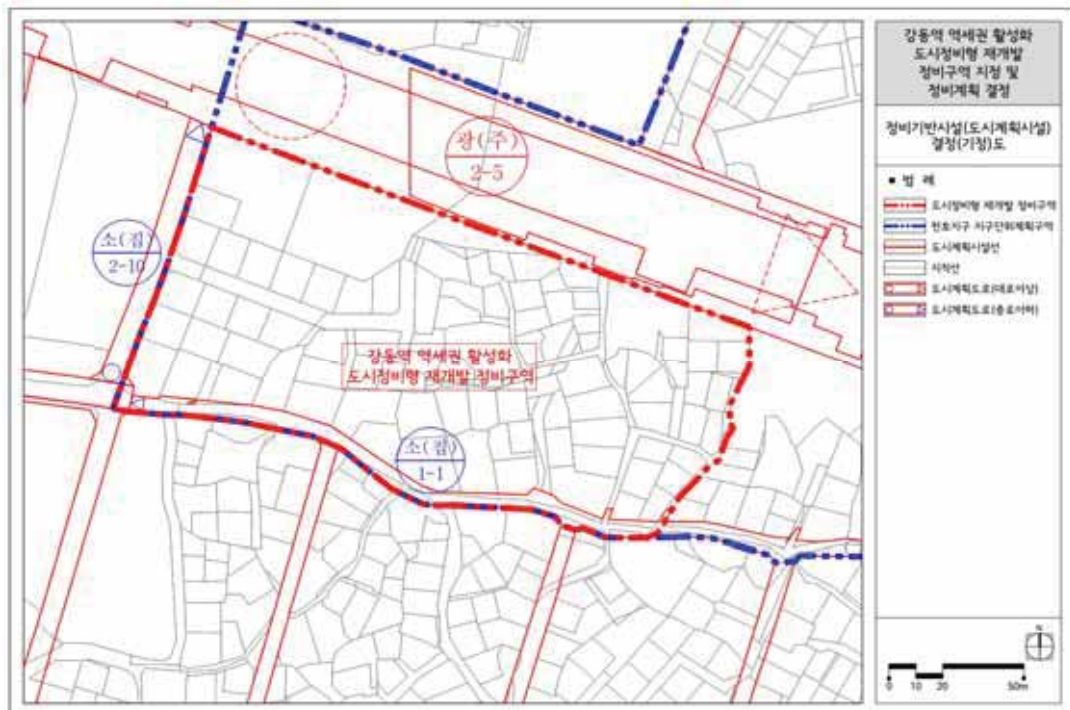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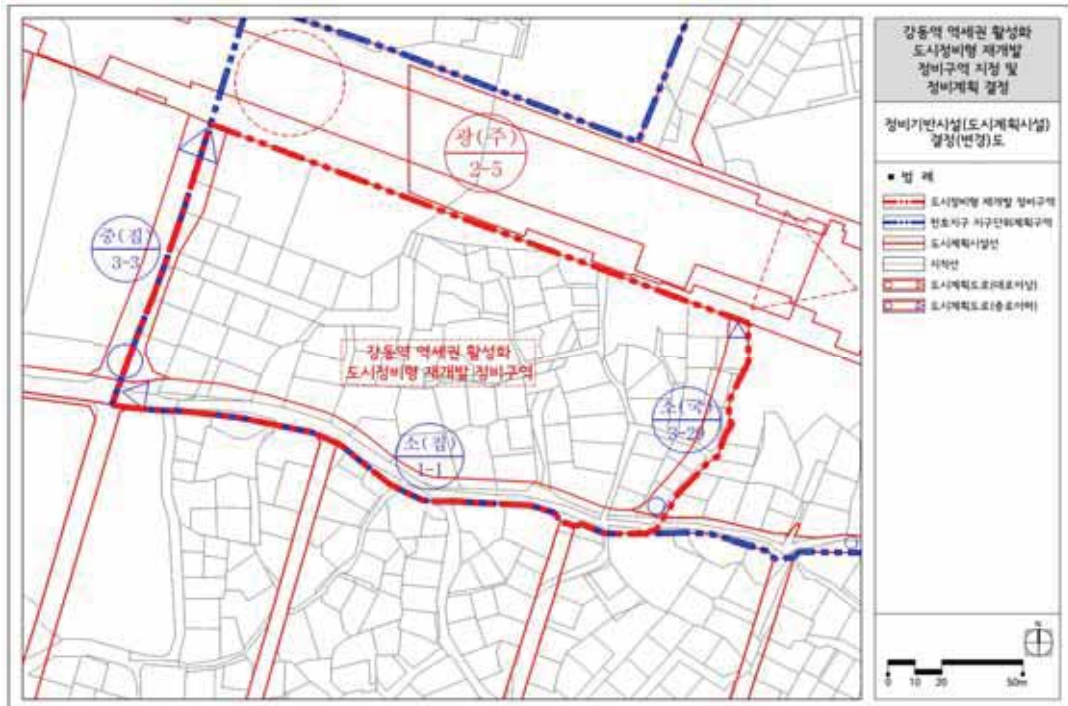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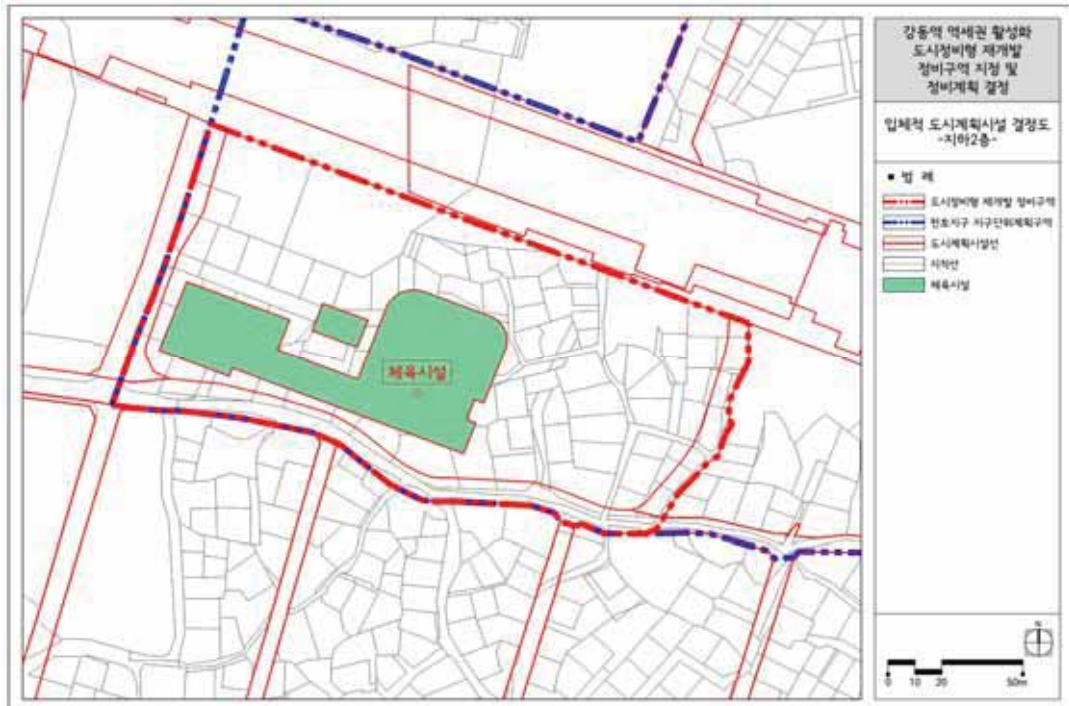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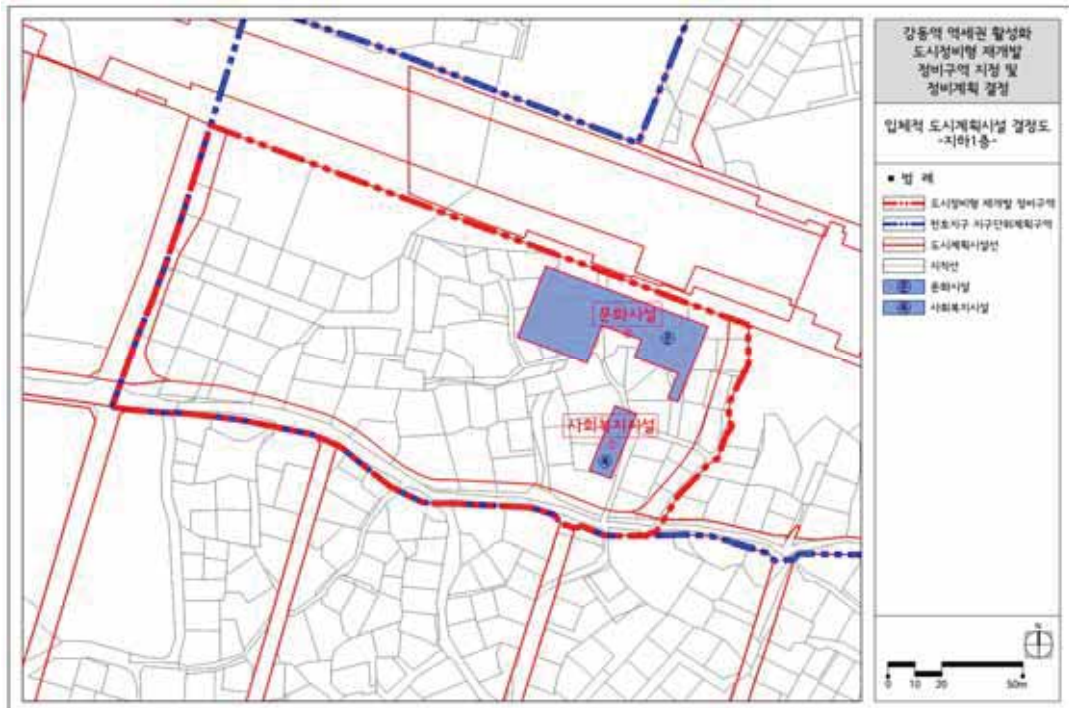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하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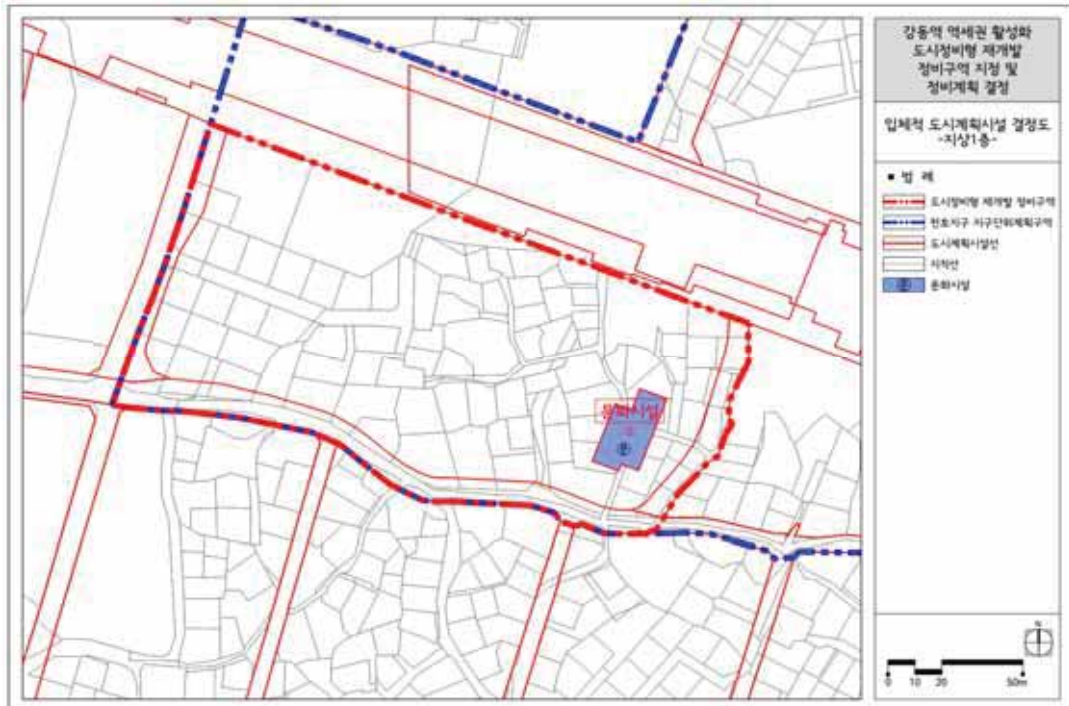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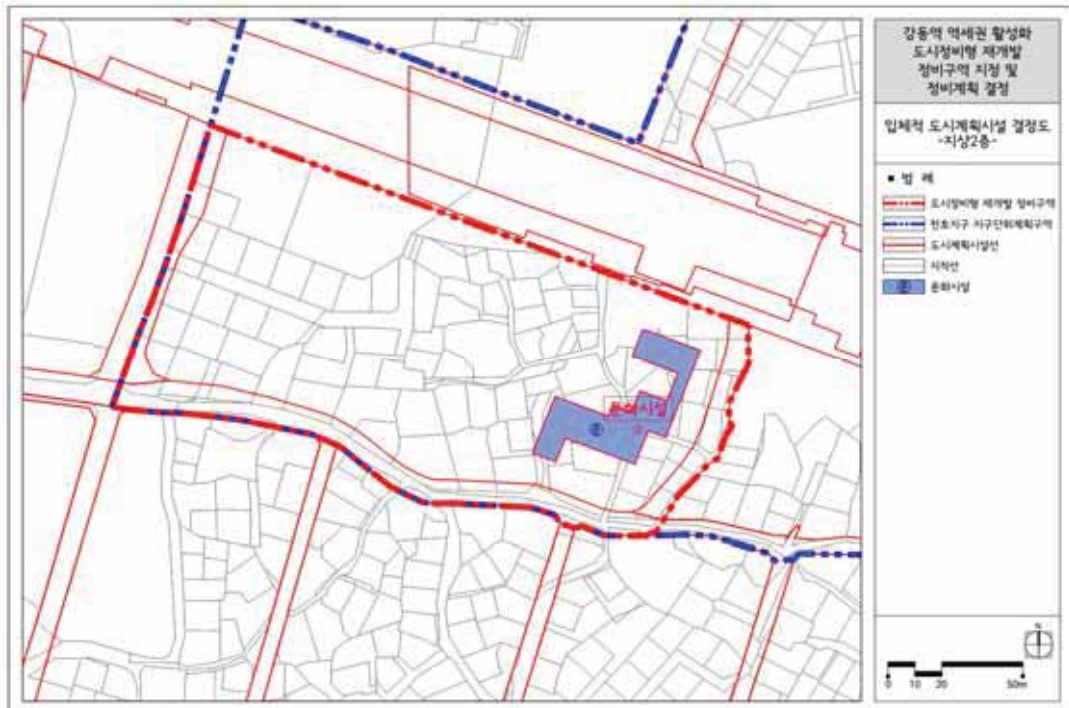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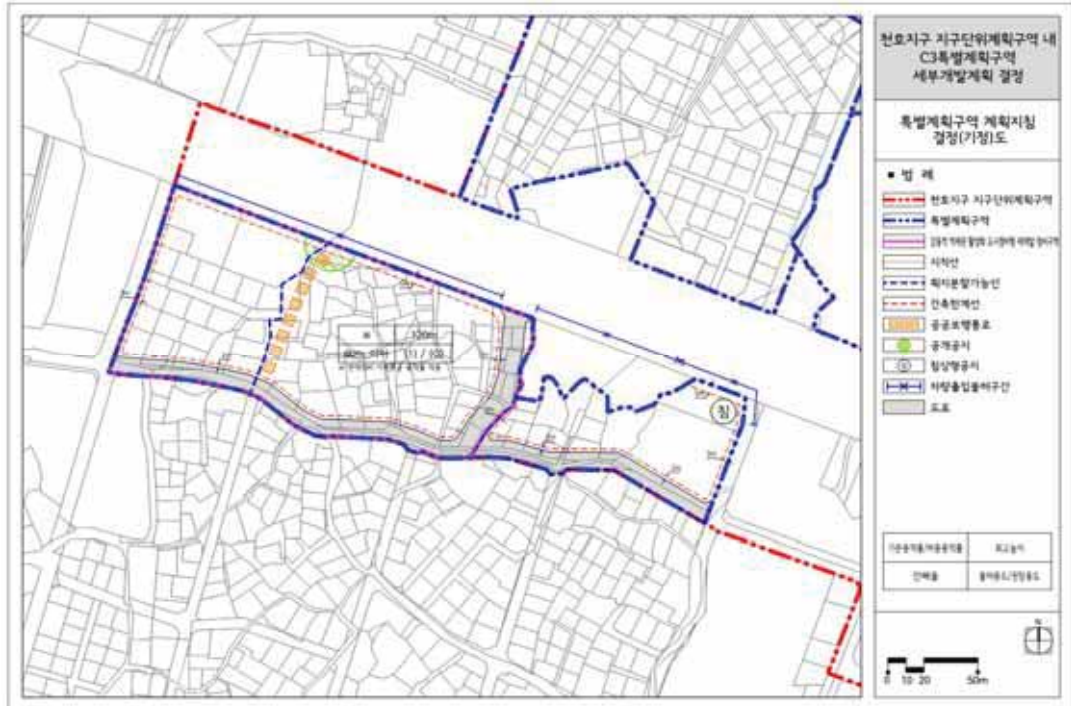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상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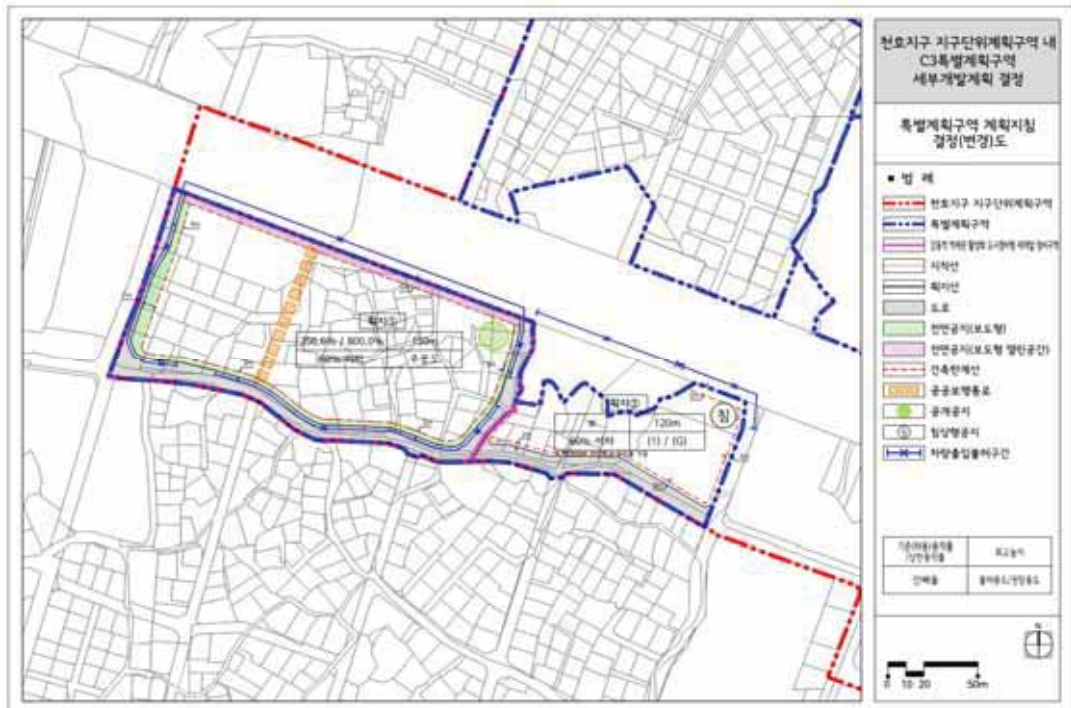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지상2층)]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2호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 (2013.9.2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대문구 창천동 502-1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 면 적 : 1,546.8㎡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11월 2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이지스네오밸류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제11호전문
- 대표자 성명 : 이지스네오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4층(신사동, 제이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8419289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가.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 종류 및 내용
1	서대문구 창천동	502-11	대	413.0	413.0	이지스네오밸 류일반부동산 사모투자회사 제11호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4층 (신사동, 제이타워)	1/1	-	-	-
2		502-14	대	158.0	158.0						
3		502-18	대	172.0	172.0						
4		502-19	대	229.8	229.8						
5		502-21	대	97.2	97.2						
6		502-22	대	95.5	95.5						
7		502-23	대	91.2	91.2						
8		502-24	대	115.4	115.4						
9		502-25	대	106.1	106.1						
10		505	도로	3,966.9	6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1	-	-	-
합계				5,445.1	1,546.8	-					

나.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7개 동) 철거 완료하여 지장물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46.8	-	1,546.8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46.8	감) 1,546.8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546.8	1,546.8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46.8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일대	546,263.3 (1,546.8)	-	546,263.3 (1,546.8)	-

※ ()는 사업대상지(창천동 502-11번지 일대) 면적임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4)와 서대문구청 본관 4층 주택과(02-330-15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서대문구 창천동 502-11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 면 적 : 1,546.8㎡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홍대입구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이지스네오밸류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제11호전문
- 대표자 성명 : 이지스네오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4층(신사동, 제이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8419289

3. 사업기간 및 채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 채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PF대출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46.8	100.0	-
주택건설용지	1,546.8	100.0	임대주택

※ 추후 측량성파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288명

나. 주택건설계획 : 288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6A-1형	9	3.13	9	3.13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6A-2형	6	2.08	6	2.08	
	26A-3형	4	1.39	4	1.39	
	36A형	3	1.04	3	1.04	
	37A-1형	27	9.38	27	9.38	
	37A-2형	3	1.04	3	1.04	
	소 계	52	18.05	52	18.05	
SH선매입	26A-1형	40	13.89	40	13.89	
	소 계	40	13.89	40	13.8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6A-1형	59	20.49	59	20.49	
	26A-2형	30	10.42	30	10.42	
	26A-3형	32	11.11	32	11.11	
	36A형	15	5.21	15	5.21	
	37A-1형	27	9.38	27	9.38	
	37A-2형	33	11.46	33	11.46	
	소 계	196	68.06	196	68.06	
합 계		288	100.00	288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1)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 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어 주변지역의 조경수목에 의한 녹지의 연결이 매우 빈약한 상태임
- 단지 내 주차 수요를 지하주차장에 수용하도록 하여 지상부에 조경녹지,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2)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고, 수집 분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활용 할 계획임

나. 탄소저감계획

1)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2)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일대	546,263.3 (1,546.8)	-	546,263.3 (1,546.8)	-

※ ()는 사업대상지(창천동 502-11번지 일대) 면적임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6,263.3	-	546,263.3	100.00	-
주거지역	소 계	327,980.8	감) 1,546.8	326,434.0	59.76	-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	6,248.0	1.1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4,736.0	14,736.0	2.70	-
		12층이하	58,724.0	58,724.0	10.75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231.2	-	135,231.2	24.76	-
	준주거지역	113,041.6 (1,546.8)	감) 1,546.8	111,494.8 (-)	20.41	-
상업지역	소 계	218,282.5	증) 1,546.8	219,829.3	40.24	-
	일반상업지역	218,282.5 (-)	증) 1,546.8	219,829.3 (1,546.8)	40.24	-

※ ()는 사업대상지(창천동 502-11번지 일대) 면적임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46.8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 변경 없음

다) 대지의 분할 : 변경 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65	286	창천동 503-15, 503-17	
		661	창천동 503-9, 503-10	
변경	65	286	창천동 503-15, 503-17	
		661	창천동 503-9, 503-10	
		1,546.8	창천동 502-11, 502-14, 502-18, 502-19, 502-21, 502-22, 502-23, 502-24, 502-25, 505(일부)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65	획지계획 신설 - 창천동 502-11 일대 획지계획 (면적 : 1,546.8㎡)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신설

○ 필지(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고
			위치	면적(㎡)		
기정	65	8,184	창천동 502-1	273	-	-
			창천동 502-2	266		
			창천동 502-3	11		
			창천동 502-4	2		
			창천동 502-5	1		
			창천동 502-6	144		
			창천동 502-7	171		
			창천동 502-8	247	공동개발권장 : 502-8○502-9○502-10	-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고
			위치	면적(㎡)		
			창천동 502-9 창천동 502-10	148 254		
			창천동 502-11	413	-	-
			창천동 502-14 창천동 502-18	158 172	공동개발권장 : 502-14⊕502-18	-
			창천동 502-15 창천동 502-16	68 64	공동개발지정 : 502-16⊕502-17 공동개발권장 : (502-16⊕502-17)⊖502-15	맞벽건축
			창천동 502-17	161		-
			창천동 502-19	230	-	-
			창천동 502-21 창천동 502-22 창천동 502-23	97 96 91	공동개발권장 : 502-21⊖502-22⊖502-23	-
			창천동 502-24 창천동 502-25	115 106	공동개발권장 : 502-24⊖502-25	-
			창천동 502-26 창천동 502-27	165 74	공동개발권장 : 502-26⊖502-27	-
			창천동 503-1	137	-	-
			창천동 503-2 창천동 503-3	94 95	공동개발권장 : 503-2⊖503-3	-
			창천동 503-4 창천동 503-5 창천동 503-6 창천동 503-8	327 364 252 401	-	-
			창천동 503-11 창천동 503-19	150 339	공동개발권장 : 503-11⊖503-19	-
			창천동 503-12 창천동 503-13 창천동 503-16 창천동 503-20 창천동 503-21 창천동 503-22 창천동 503-23 창천동 503-24	200 340 304 215 302 195 611 331	-	-

※ 면적은 공부상(토지대장)면적임

⊕는 공동개발 지정, ⊖는 공동개발 권장임

※ 맞벽건축 : 공동개발(권장) 미시행시 맞벽건축 권장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공동개발 권장 및 지정	비고
			위치	면적(㎡)		
변경	65	6,706	창천동 502-1	273	-	-
			창천동 502-2	266		
			창천동 502-3	11		
			창천동 502-4	2		
			창천동 502-5	1		
			창천동 502-6	144		
			창천동 502-7	171		
			창천동 502-8	247	공동개발권장 : 502-8⊕502-9⊕502-10	-
			창천동 502-9	148		
			창천동 502-10	254		
			창천동 502-15	68	공동개발지정 : 502-16⊕502-17 공동개발권장 : (502-16⊕502-17)⊖502-15	맞벽건축
			창천동 502-16	64		
			창천동 502-17	161		
			창천동 502-26	165	공동개발권장 : 502-26⊖502-27	-
			창천동 502-27	74		
			창천동 503-1	137	-	-
			창천동 503-2	94	공동개발권장 : 503-2⊖503-3	-
			창천동 503-3	95		
			창천동 503-4	327	-	-
			창천동 503-5	364		
			창천동 503-6	252		
			창천동 503-8	401		
			창천동 503-11	150	공동개발권장 : 503-11⊖503-19	-
			창천동 503-19	339		
			창천동 503-12	200	-	-
			창천동 503-13	340		
			창천동 503-16	304		
			창천동 503-20	215		
			창천동 503-21	302		
			창천동 503-22	195		
			창천동 503-23	611		
			창천동 503-24	331		

※ 면적은 공부상(토지대장)면적임

⊕는 공동개발 지정, ⊖는 공동개발 권장임

※ 맞벽건축 : 공동개발(권장) 미시행시 맞벽건축 권장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65	필지계획 변경 - 창천동 502-11, 502-14, 502-18, 502-19, 502-21, 502-22, 502-23, 502-24, 502-25번지 공동개발 권장 해제 및 획지계획 수립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신설에 따른 필지조서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불허용도(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전층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B	전층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C	전층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이화여대 주변
	D	전층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E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F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G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입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삼가 서측 준주거지역
변경	A	전층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로, 양화로, 연세로, 신촌역로 주변
	B	전층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C	전층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이화여대 주변
	D	전층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E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연세대 주변
	F	전층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G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입제공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조업소, 교정 및 군사시설	신촌삼가 서측 준주거지역

구분			불허용도	비고
	H	전층	단독주택(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시설, 아영장 시설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A	- A-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 A-2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 A-3 : 관광숙박시설	연세대 앞 대학문화권역
	B	- B-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의류 및 잡화), 이·미용원 - B-2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 B-3 : 웨딩관련 판매시설	이화여대 앞 관광·쇼핑권역
	C	C-1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서강대 앞 (관광)·대학지원권역
	D	D-1 : 관광숙박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간선변 상업·업무권역
변경	A	- A-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 A-2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 A-3 : 관광숙박시설	연세대 앞 대학문화권역
	B	- B-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의류 및 잡화), 이·미용원 - B-2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 B-3 : 웨딩관련 판매시설	이화여대 앞 관광·쇼핑권역
	C	C-1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서강대 앞 (관광)·대학지원권역
	D	D-1 : 관광숙박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간선변 상업·업무권역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제외)

※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권장용도 인센티브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7항에 따른 인센티브,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해당대지가 학교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 권장용도에서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함

※ 준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건축가능

○ 건축물의 지정용도(변경)

구분		지정용도	비고
기정	1층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대학문화벨트 연세로변,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
변경	1층 ¹⁾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대학문화벨트 연세로변, 경의·공항선 지상부 공원주변
	가	공동주택(주거복합) ²⁾ ※ 단, 지하1,2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에 한함

2)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지정용도 외 용도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인정한 경우에 설치 가능함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 불허용도 변경 - 권장용도 변경 - 지정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 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정용도 계획 수립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건폐율 : 변경 없음

- 건폐율의 완화 : 변경 없음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용적률 : 변경 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 변경 없음

- 공통사항 : 변경 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변경)

구분	용도 지역	입지 특성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유형 1-1	상업 지역	간선부	300%이하	-	630%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
	유형 1-2			400%이하	-	660%이하		

구분	용도 지역	입지 특성	위치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유형 1-3			600%이하	-	800%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유형 2-1	상업 지역	이면부	400%이하	-	600%이하		
	유형 3-1	준주거 지역	간선부	250%이하	-	350%이하		
	유형 3-2			300%이하	-	360%이하		
	유형 3-3			300%이하	-	400%이하		
	유형 4-1	준주거 지역	이면부	250%이하	-	350%이하		
	유형 4-2			300%이하	-	360%이하		
변경	유형 1-1	상업 지역	간선부	300%이하	-	630%이하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유형 1-2			400%이하	-	660%이하		
	유형 1-3			600%이하	-	800%이하		
	유형 2-1	상업 지역	이면부	400%이하	-	600%이하		
	유형 3-1	준주거 지역	간선부	250%이하	-	350%이하		
	유형 3-2			300%이하	-	360%이하		
	유형 3-3			300%이하	-	400%이하		
	유형 4-1	준주거 지역	이면부	250%이하	-	350%이하		
	유형 4-2			300%이하	-	360%이하		
	유형 5-1	상업 지역	간선부	-	680%이하	-	법적용적률 이하 1)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용을 따름

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 준용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용적률 체계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변경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높이(변경)

구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고
기정	신촌로터리 일대	10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신촌로 · 양화로 · 신촌역로변 일반상업지역, 서강로변 특별계획구역 5구역 내 로터리 일대를 제외한 일반상업지역	80m 이하	
	신촌로 · 양화로변 준주거지역, 연세로변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5구역 내 주거지역	60m 이하	
	명물거리 일대, 연세로 북측, 연대 앞 창천교회 서측, 신촌기차역 전면부, 창천 어린이공원 북측	40m 이하	
	이화여대 주변, 연세로 서측 이면부, 신촌로 이면 대현교회 일대, 경의 · 공방선 지상부 공원주변	30m 이하	
변경	신촌로터리 일대	100m 이하	사선제한 배제
	신촌로 · 양화로 · 신촌역로변 일반상업지역, 서강로변 특별계획구역 5구역 내 로터리 일대를 제외한 일반상업지역	80m 이하	
	신촌로 · 양화로변 준주거지역, 연세로변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5구역 내 주거지역	60m 이하	
	명물거리 일대, 연세로 북측, 연대 앞 창천교회 서측, 신촌기차역 전면부, 창천 어린이공원 북측	40m 이하	
	이화여대 주변, 연세로 서측 이면부, 신촌로 이면 대현교회 일대, 경의 · 공방선 지상부 공원주변	30m 이하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1)	75m 이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높이계획 신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한 높이계획 도입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 변경 없음

라) 공공기여 계획(신설)

○ 창천동 502-1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공공 임대 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 기준 20% 이상 (부지면적 309.36㎡ 이상)	부지면적 기준 172.73㎡(11.17%)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824.09㎡(28세대)	총 288세대 중 52세대 공공기여 (세대수 기준 18.05%) ※ SH선매입 40세대
	상한용적률 (연면적)	798.92% 이하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 (798.92% - 680%)/2 = 59.46% (연면적 919.73㎡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926.74㎡(24세대)	
공공 시설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 기준 20% 이상 (부지면적 309.36㎡ 이상)	부지면적 기준 138.05㎡(8.92%)	청소년수련시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커뮤니티 자원시설	-	- 자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최소 300㎡) 이상 - 기부채납 시 면적기준 1/2로 완화 : 공급면적 150㎡ 이상	공급면적 150.57㎡ 계획	청소년수련시설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설치 후 관리청(서대문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커뮤니티 자원시설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3.에 의거,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운영기준」 3-3. “커뮤니티 자원시설 설치” 기준에 의한 계획으로 공공기여율에서 제외함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변경)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 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도로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5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 · 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4m	
공개 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각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지침도 위치준수	
	공개공지의 조성	-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공개공지는 소공원(썬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	

도로	보차혼용도로	- 보차혼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정의), 동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성 - 통과도로형 : 4m - 막다른 도로형 : 2~6m · 길이 10m 미만 : 2m · 길이 10m 이상 ~ 35m 미만 : 3m · 길이 35m 이상 : 6m (기 조성된 폭원 5m 현황도로 : 5m)	폭원 2~6m	결정도 참조 (변경)
	공공보행도로	- 보행자의 편의성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보행도로 조성 - 폭원 : 3~6m	폭원 3~6m	
	현황도로	획지 내 유일한 현황통행로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 시 그 통로를 유지	-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창천동 502-17, 18, 19, 21, 23, 24, 25, 26, 27	보차혼용도로 해제	현황여건(지형 등의 단차로 인한 계단 조성) 및 대상지의 통합개발 등 합리적 건축 유도를 위하여 불필요해진 보차혼용도로 폐지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변경)

○ 차량출입금지구간 : 변경 없음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주차장 외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를 금지함	변경 (도면참조)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 출입이 금지되거나 자율적으로 차량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계획지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창천동 502-18, 19, 21, 22, 23, 24, 25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추가지정	신촌로에서 차량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대지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추가 지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적용기준 : 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5)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구 분		적용기준		계획사항			완화내용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0% 이상 → 309.36㎡ 이상 (기본용적률 680% 산정기준)	공공시설 (지상1층)	-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138.05㎡(8.92%) - 환산부지면적 : 87.11㎡ - 토지지분면적 : 50.94㎡	부속토지 기준 310.78㎡ (20.09%)	③ 총 288세대 중 52세대 공공기여 (세대수 기준 18.05%) ※ SH 선매입 40세대	
			공공 임대주택	① 기본공공기여 : 172.73㎡(11.17%) 공공임대주택 : 28세대			
		완화용적률(118.92%) 연면적의 50% 이상 → 59.46% (919.73㎡ 이상)	② 추가공공기여 : 59.91%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926.74㎡ - 추가공공임대주택 : 24세대				
비주거비율		10% 이상 20% 이하 1)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93.14% : 6.86%			기본용적률 680%, 상한용적률 798.92%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창천동 502-11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60㎡ 내외 1인(세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23.24㎡~29.93㎡ 1인 세대 : 실사용면적 26.10㎡, 36.71㎡, 37.06㎡ - 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23.24㎡~29.93㎡ 1인 세대 : 실사용면적 26.10㎡, 36.71㎡, 37.06㎡			
건축물 형태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기부채납)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2%이상, 최소 300㎡(기부채납 시 1/2로 완화) - 계획 : 150.57㎡ [11,472.62㎡×2%×1/2=114.73㎡, 150㎡ 이상] - 에너지효율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청년주택 운영기준」 3-3-8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150㎡ 이상		284.94㎡ 계획 (지상 20층)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허가 시 변동될 수 있음

1)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 조정 가능함에 따라, 2022년 제8차 공공자원민간임대주택 통합 심의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2.7.6.)를 통해 비율 완화 받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가.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나.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서대문구 창천동	502-11	대	413.0	413.0	이지스네오밸 류일반부동산 사모투자회사 제11호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4층 (신사동, 제이타워)	1/1	-	-	-
2		502-14	대	158.0	158.0						
3		502-18	대	172.0	172.0						
4		502-19	대	229.8	229.8						
5		502-21	대	97.2	97.2						
6		502-22	대	95.5	95.5						
7		502-23	대	91.2	91.2						
8		502-24	대	115.4	115.4						
9		502-25	대	106.1	106.1						
10		505	도로	3,966.9	6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1	-	-	-
합계				5,445.1	1,546.8	-					

나. 물건조서 : 대상지 내 건축물(7개 동) 철거 완료하여 지장물 없음

다.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라.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 철거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가.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위치	연면적	비고
공공시설	청소년수련시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상1층	421.77㎡	
커뮤니티 지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2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지상1층	160.38㎡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자치구(서대문구)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서대문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등 준용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규칙」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1,546.8	100.0%	-	-	-
주택건설용지	1,546.8	100.0%	자체사용	승인후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3호
**도시관리계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2.05.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적 지역관리를 위한 목적과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한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구역	성동구 마장동 480-5번지 외 1필지	2,939.3	감) 2,939.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0호 (2020.09.17.)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폐지)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 사유
폐지	-	성동구 마장동 480-5번지 외 1필지	2,939.3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에 따른 통합 관리를 위해 「마장축산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0호)」로 최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폐지하고, - 해당 계획 내용을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마장동 510-3 일대	-	증) 269,091.0	269,091.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269,091.0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4호)」의 보완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 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장 활성화 및 지속적 지역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 시장 활성화 및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용도계획과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269,091.0	-	269,091.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68.5	-	24,968.5	9.3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84.7	-	34,484.7	12.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7,394.3	-	137,394.3	5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44.6	-	35,544.6	13.2	-
	준주거지역	24,223.4	-	24,223.4	9.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475.5	-	12,475.5	4.6	-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2,409	42,223.1	3	780	13,699.3	2	848	16,638.3	3	781	11,885.5
광로	-	-	-	-	-	-	-	-	-	-	-	-
대로	1	663	16,205.7	-	-	-	1	663	16,205.7	-	-	-
중로	3	1,229	22,436.2	1	489	10,665.1	-	-	-	2	740	11,771.1
소로	4	517	3,581.2	2	291	3,034.2	1	185	432.6	1	41	114.4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8	30~40	주간선도로	1,850 (663)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도로	-	2020.10.22. (서울시고시 제428호)	고산자로
기정	중로	1	149	20	보조 간선도로	3,632 (489)	중로1-135 (응봉동 234-1)	마장교 (대2-38)	일반도로	-	1975.12.17. (건설부고시 제201호)	살곶이길
기정	중로	3	115	12	-	630	마장동 517	마장동 501	-	-	1978.08.23. (서울시고시 제429호)	청계천로
변경	중로	3	115	12	집산 도로	630	마장동 517	마장동 501	일반도로	-	1978.08.23. (서울시고시 제429호)	청계천로
기정	중로	3	116	12	-	630 (110)	마장동 498	마장동 439	-	-	1978.08.23. (서울시고시 제429호)	마장로35길
변경	중로	3	116	12	집산 도로	630 (110)	마장동 498	마장동 439-2	일반도로	-	1978.08.23. (서울시고시 제429호)	마장로35길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659 (280)	마장동 769-1	마장동 521-8	-	-	2006.5.25. (성동구고시 제2006-27호)	철도횡단부분(지하) B=15m / L=13m 마장로35나길 ~고산자로22길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659 (280)	마장동 769-1	마장동 521-8	일반도로	-	2006.5.25. (성동구고시 제2006-27호)	철도횡단부분(지하) B=15m / L=13m 마장로35나길 ~고산자로22길
기정	소로	3	-	6	-	41	마장동 456-1	마장동 456-2	-	-	1991.06.08. (서울시고시 제156호)	청계천로10가길, 청계천로12가길
변경	소로	3	A	6	국지 도로	41	마장동 456-1	마장동 456-2	일반도로	-	1991.06.08. (서울시고시 제156호)	청계천로10가길, 청계천로12가길
기정	소로	2	5	7.5~8.5	국지 도로	185	마장동 450-24	마장동 527	일반도로	-	1964.09.30. (서울시공고 제386호)	용두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도로 청계천로10가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22 (11)	마장동 450-24	홍익동 435	일반도로	-	1964.09.30. (서울시공고 제386호)	용두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도로 청계천로10가길

별도로 표기된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 3-115	중로 3-115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부여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누락으로 중로 3-115에 집산도로 기능 부여	-
중로 3-116	중로 3-116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부여 • 종점 정정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누락으로 중로 3-116에 집산도로 기능 부여 • 현재 지번현황을 반영하여 마장동 439에서 439-2로 종점 정정	-
소로 1-	소로 1-A	• 노선번호 부여	• 노선번호가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부여함	-
소로 3-	소로 3-A	• 노선번호 부여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부여	• 노선번호가 누락되어 해당 내용을 부여함 • 도로 기능 및 사용형태 누락으로 소로 3-A에 국지도로 기능 부여	-

2) 지하도로(변경없음)

☐ 지하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①	지하도로	지하도로	마장동 480-7	마장동 509-1	6	10	60㎡	1981.03.14. (서울시고시 제71호)	보행용

3)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주차장	마장동 463-2 외 1필지	482.0	-	482.0	2008.02.05. (성동구고시 제2008-12호)	마장 공영주차장
기정	②	주차장	마장동 522-1	882.6	-	882.6	2011.07.21. (성동구고시 제2011-48호)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공영주차장
기정	③	주차장	마장동 525	1,896.0	-	1,896.0	2019.09.26. (성동구고시 제2019-87호)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생거점 마장청계플랫폼 525 복합화)
신설	④	주차장	마장동 459-6 외 1필지	-	증) 537.4	537.4	-	입체적 결정 지상 1층(537.4㎡)

입체적 결정의 범위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④	주차장	마장동 459-6 외 1필지	지상1층	-	증) 537.4	537.4	-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

입체적 결정의 범위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주차장	신설 - 위치 : 지상1층 - 면적 : 537.4㎡	기존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마장동 459-6 외 1필지의 주차장을 서마장 상생센터(지상2층~4층) 내 지상1층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

4)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철도	고속철도	마장동 437	마장동 499	-	715.3	16,518.7 (7,322.2)	1911.09.25. (조선총독부고시 제296호)	분당선, 경의·중앙선
기정	②	철도	도시철도 (본선)	성동구 행당동 192-40 번지 일원 (2,5호선 왕십리역)	노원구 상계동 169-34 번지 일원 (4호선 상계역)	용두역 (2호선) 제기동역 (1호선) 고려대역 (6호선) 미아 사거리역 (4호선) 월계역 (1호선) 하계역 (7호선) 상계역 (4호선)	13,410	144,814.6	2020.04.16. (서울시고시 제2020-154호)	동북선 도시철도
기정	③	철도	도시철도 (102 정거장)	성동구 마장동 474-28번지 일원			-	2,179.4	2020.04.16. (서울시고시 제2020-154호)	동북선 도시철도 고산자로 [마장동474 -28번지], 청계천로10나길[마장동450-65 번지] 중복결정

별도로 표기된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 연장·면적임.

나. 공간시설**1) 광장**☐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광장	근린광장	마장동 804 일대	-	증) 1,090.79	1,090.79	-	청계천 연결광장

☐ **광장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비고
①	광장	근린광장	근린광장 신설	마장 축산물시장과 청계천 간 연결성 및 인지성 강화, 방문객 활용개선 등 입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광장 신설	-

2) 공원(변경없음)☐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마장동 450-67	350.3	-	350.3	1994.08.16. (서울시고시 제1994-267호)	서마장 어린이공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1) 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공공 청사	구청사	마장동 527-10	1,323.0	-	1,323.0	1997.04.15. (서울시고시 제1997-101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고산자로변 구역 01, 02	2,000㎡ 이하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① 공동개발 계획(공동개발 지정 또는 권장)이 수립된 대지 ②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이미 공동개발이 진행된 대지 ③ 별도의 획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대지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⑥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⑦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마장구역 01, 02 동마장구역 시장아케이드변 구역	1,000㎡ 이하	

* 고산자로변구역: 최대개발규모(2,000㎡)를 초과하는 규모로 개발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 적 정비 유도. (단,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필지는 예외)

* 서마장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기준으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획지	시장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①	면적 : 5,231.8㎡ 토지이용 및 개발단위를 고려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해 획지계획 수립 필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획지 분할하여 개발 가능	신설
획지	시장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②	면적 : 1,817.5㎡ 토지이용 및 개발단위를 고려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해 획지계획 수립	신설
획지	시장정비구역	면적 : 2,939.3㎡ (기 계획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반영)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공동개발

□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공동개발 지정	구역 내 명지	•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명지) •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필지(90㎡ 미만) 또는 현황상 기계발전 필지 중 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 복잡한 소유 관계로 인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지 정형화 및 개발단위 조정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공동개발 권장	구역 내 명지	•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명지) •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필지(90㎡ 미만) 또는 현황상 기계발전 필지 중 소유자가 상이한 필지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 복잡한 소유 관계로 인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지 정형화 및 개발단위 조정
	차량출입불가대지	• 고산자로변 역사권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면부 또는 공동주차출입구를 통한 차량 진입이 필요한 차량출입불가대지

구분	위치	계획내용
자율적 (선택적) 공동개발	구역 전체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토지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성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장변의 비율이 1:3 이상의 되는 경우 불허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1	-	공동개발 지정	52	마장동	450-74	21.1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계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43	7.9	-		
				마장동	450-73	23	-		
2	-	공동개발 지정	73.6	마장동	450-40	62.6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계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78	5.9	-		
				마장동	450-42	5.1	-		
3	-	공동개발 지정/권장	296.5	마장동	450-19	195.4	2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18	83.6	2		
				마장동	450-32	7.6	-		
				마장동	450-38	9.9	-		
4	-	공동개발 지정/권장	272.1	마장동	450-16	216.9	1	과소필지 및 소유는 상이하나 기계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48	10.6	-		
				마장동	450-17	33.7	-		
				마장동	450-34	10.9	-		
5	-	공동개발 지정	71.4	마장동	450-86	26.4	-	맹지고려(소유동일)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15	30.8	-		
				마장동	450-55	14.2	-		
6	-	공동개발 지정	31.8	마장동	450-85	14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계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84	12.8	-		
				마장동	450-56	5	-		
7	-	공동개발 지정	248.6	마장동	450-7	10.9	2	맹지고려(소유동일)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8	237.7	2		
8	-	공동개발 지정/권장	135.9	마장동	450-53	43.3	-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60	25.8	-		
				마장동	450-58	6.3	-		
				마장동	450-61	7.6	-		
				마장동	450-62	26.1	-		
				마장동	450-59	26.8	-		
9	-	공동개발 지정	65.9	마장동	450-82	15.6	1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계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83	3.7	1		
				마장동	450-36	46.6	-		
10	-	공동개발 지정/권장	198.6	마장동	464-32	146.2	-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4-49	1.3	-		
				마장동	464-5	51.1	-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11	-	공동개발 지정	96.9	마장동	464-13	8.3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개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4-14	88.6	-		
12	-	공동개발 지정	112.1	마장동	469-16	41.3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개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9-25	70.8	-		
13	-	공동개발 지정	180.2	마장동	469-20	84.2	1	맹지교려(소유동일)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9-30	96	2		
14	-	공동개발 권장	180.8	마장동	469-3	116	-	과소필지 및 소유는 상이하 나 기개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9-32	63.9	-		
15	-	공동개발 지정	167.1	마장동	469-18	165.3	-	맹지교려(소유동일)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9-35	1.8	-		
16	-	공동개발 지정/권장	276	마장동	466-17	77	-	맹지교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16	9.6	-		
				마장동	466-18	122	1		
				마장동	466-14	67.4	-		
17	-	공동개발 지정	168.2	마장동	466-45	85.2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개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46	83	-		
18	-	공동개발 지정	498.9	마장동	466-47	83.2	1	동일소유 기개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8	310.2	1		
				마장동	466-5	105.5	1		
19	-	공동개발 지정	159.8	마장동	466-42	117.8	-	동일소유 기개발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3	42	-		
20	-	공동개발 지정	297.9	마장동	466-30	288.3	-	맹지교려(소유동일)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29	5.3	-		
				마장동	466-36	4.3	-		
21	-	공동개발 지정	191.7	마장동	511-21	76.3	-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1-22	115.4	-		
22	-	공동개발 지정	335.3	마장동	439-4	287.6	-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439-5	47.7	-		
23	-	공동개발 지정	133.9	마장동	761-32	73.7	1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761-9	60.2	1		
24	-	공동개발 지정/권장	285.9	마장동	480-25	83.2	-	맹지교려(소유상이)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0-19	49.6	-		
				마장동	480-26	49.6	-		
				마장동	480-20	103.5	-		
25	-	공동개발 지정	184.9	마장동	481-8	52.3	2	동일소유 기개발	시장아케이 드 구역
				마장동	481-13	132.6	1		
26	-	공동개발 권장	152	마장동	481-19	150.7	1	맹지교려(소유상이)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1-1	1.3	-		
27	-	공동개발 지정	141.5	마장동	481-20	123.6	-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1-46	8.9	-		
28	-	공동개발 권장	83	마장동	481-61	82	-	맹지교려(소유상이)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1-63	1	-		
29	-	공동개발 권장	568.7	마장동	481-36	1	-	맹지교려(소유상이)	시장아케이 드 구역
				마장동	481-64	567.7	1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30	-	공동개발 지정	144.1	마장동	487-58	43.3	1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7-59	100.8	1		
31	-	공동개발 권장	319.6	마장동	513-11	281.3	3	맹지고려(소유상이)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3-28	38.3	-		
32	-	공동개발 권장	190.2	마장동	513-16	79.9	-	맹지고려(소유상이)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3-34	110.3	-		
33	-	공동개발 권장	190.9	마장동	513-30	82.7	-	맹지고려(소유상이)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3-33	108.2	-		
34	-	공동개발 권장	258.5	마장동	519-9	142.7	-	맹지고려(소유상이)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19-3	115.8	-		
35	-	공동개발 지정	339.5	마장동	514-8	206.3	-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4-9	133.2	-		
36	-	공동개발 지정	180	마장동	514-1	61.4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4-6	118.6	-		
37	-	공동개발 지정	218.2	마장동	514-23	74.7	-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4-2	143.5	-		
38	-	공동개발 권장	817.5	마장동	507-1	757	2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07-6	60.5	-		
39	-	공동개발 지정/권장	250.5	마장동	510-32	58.9	-	과소필지	시장 아케이드 구역
				마장동	510-31	21.4	-		
				마장동	510-30	67.1	-		
				마장동	510-29	38.1	-		
				마장동	510-28	65	-		
40	-	공동개발 지정	126.9	마장동	510-24	64.2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0-22	62.7	-		
41	-	공동개발 권장	127.3	마장동	510-35	61.7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0-34	65.6	-		
42	-	공동개발 지정	246	마장동	510-37	22.2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0-16	186.3	-		
				마장동	510-23	37.5	-		
43	-	공동개발 권장	182.8	마장동	511-28	51.8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1-27	51.5	2		
				마장동	511-26	55.4	-		
				마장동	511-29	14.1	-		
				마장동	511-30	9.8	-		
				마장동	511-40	0.3	-		
44	-	공동개발 권장	214	마장동	511-36	81.9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1-35	132.1	-		
45	-	공동개발 지정	118.6	마장동	511-11	62.8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개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1-12	55.8	-		
46	-	공동개발 권장	307.2	마장동	761-26	72.1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시장 아케이드 구역
				마장동	761-27	81	-		
				마장동	761-28	81	-		
				마장동	761-29	73.1	-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47	-	공동개발 권장	555.7	마장동	480-24	40.4	-	맹지고령(소유상이) 및 과소필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시장 이케이드 구역
				마장동	480-23	27	-		
				마장동	480-7	57.9	-		
				마장동	480-27	70.7	-		
				마장동	480-22	104.5	8		
				마장동	480-6	219.9	-		
48	-	공동개발 지정/권장	184.2	마장동	481-74	9.6	1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1-10	60.2	1		
				마장동	481-14	114.4	-		
49	-	공동개발 권장	121.5	마장동	481-11	55.4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1-7	66.1	-		
50	-	공동개발 권장	177.9	마장동	481-3	105.5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1-2	72.4	-		
51	-	공동개발 권장	155.2	마장동	487-55	110.1	-	과소필지 및 소유는 상이하나 기계발	동마장 구역
				마장동	487-56	45.1	-		
52	-	공동개발 권장	592.9	마장동	520-28	54.3	2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20-18	538.6	1		
53	-	공동개발 권장	587.6	마장동	519-8	183.6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19-26	330.7	-		
				마장동	519-22	73.3	-		
54	-	공동개발 권장	1,343.1	마장동	522-4	298.8	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22-3	504.8	-		
				마장동	522-2	539.5	3		
55	-	공동개발 권장	978.2	마장동	521-9	158.3	3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21-8	819.9	-		
56	-	공동개발 권장	1,132	마장동	521-12	185.8	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21-13	168.6	2		
				마장동	521-11	415.9	7		
				마장동	521-10	361.7	7		
57	-	공동개발 권장	982.8	마장동	518-12	122.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18-13	171.9	-		
				마장동	518-19	507.4	3		
				마장동	518-18	181.2	1		
58	-	공동개발 지정/권장	163.5	마장동	513-10	4.6	-	맹지고령(소유상이) 및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3-15	89.3	-		
				마장동	513-24	43	-		
				마장동	513-36	26.6	-		
59	-	공동개발 지정/권장	162.8	마장동	513-2	40.8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3-3	49.6	-		
				마장동	513-4	58.6	-		
				마장동	513-39	13.8	1		
60	-	공동개발 권장	180.4	마장동	514-5	142.6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4-12	37.8	-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61	-	공동개발 지정/권장	247.7	마장동	514-4	207.6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4-40	3.8	-		
				마장동	514-22	18.7	-		
				마장동	514-13	4.9	-		
				마장동	514-3	10.5	-		
				마장동	514-37	2.1	-		
62	-	공동개발 권장	166.1	마장동	516-1	106.1	1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6-2	60	1		
63	-	공동개발 권장	153.2	마장동	516-3	66.3	-	과소필지	동마장 구역
				마장동	516-4	53.7	-		
				마장동	516-5	33.2	-		
64	-	공동개발 권장	452.8	마장동	518-3	90.2	8	과소필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18-2	75.4	-		
				마장동	518-5	36	-		
				마장동	518-4	123.3	-		
				마장동	518-7	66.4	-		
				마장동	518-6	61.5	-		
65	-	공동개발 권장	399.7	마장동	519-30	65.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19-31	239.3	-		
				마장동	519-32	65.3	-		
				마장동	519-33	29.8	-		
66	-	공동개발 권장	194.2	마장동	519-1	154.3	-	과소필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519-12	39.9	-		
67	-	공동개발 지정	179.8	마장동	478-23	43.1	-	과소필지 및 소유자 동일한 필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8-27	73.6	-		
				마장동	478-28	63.1	-		
68	-	공동개발 지정	223.1	마장동	478-11	85.6	-	과소필지 및 소유자 동일한 필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8-4	137.5	1		
69	-	공동개발 지정	157.1	마장동	478-3	80.7	-	과소필지 및 동일소유 기계발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8-2	76.4	-		
70	-	공동개발 권장	360.3	마장동	478-10	119	-	맹지고려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8-17	118	-		
				마장동	478-20	123.3	-		
71	-	공동개발 권장	663.5	마장동	478-5	115.4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8-6	121.3	-		
				마장동	478-7	198	-		
				마장동	478-8	228.8	2		
72	-	공동개발 권장	1,371.9	마장동	466-37	1,286.4	23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52	85.5	1		
73	-	공동개발 권장	274	마장동	466-13	68.1	-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12	10.2	-		
				마장동	466-10	195.7	-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74	-	공동개발 권장	160.4	마장동	466-31	85	-	과소필지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6-34	75.4	-		
75	-	공동개발 권장	2,037.6	마장동	460-22	1,911.7	112	과소필지 및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23	65.1	-		
				마장동	460-21	60.8	-		
76	-	공동개발 권장	692.3	마장동	460-19	71.4	-	과소필지 및 맹지고려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20	81.7	-		
				마장동	460-24	334.2	-		
				마장동	460-25	205	-		
77	-	공동개발 지정/권장	362.7	마장동	460-9	75.7	-	과소필지 및 맹지고려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8	61.5	-		
				마장동	460-7	48.6	-		
				마장동	460-6	64.5	-		
				마장동	460-10	48.3	-		
				마장동	460-11	64.1	-		
78	-	공동개발 지정/권장	420.4	마장동	460-17	230.7	1	과소필지 및 맹지고려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15	60.5	-		
				마장동	460-27	66.4	-		
				마장동	460-16	62.8	-		
79	-	공동개발 권장	299.5	마장동	460-12	48.9	-	과소필지 및 맹지고려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5	66.8	-		
				마장동	460-29	114	-		
				마장동	460-30	69.8	-		
80	-	공동개발 권장	330.6	마장동	460-28	146.8	1	과소필지 및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1	109.8	-		
				마장동	460-2	74	-		
81	-	공동개발 권장	330.6	마장동	460-13	54.2	-	과소필지 및 맹지고려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0-3	106.1	-		
				마장동	460-31	77.4	-		
				마장동	460-32	92.9	-		
82	-	공동개발 권장	470.1	마장동	462-7	37.5	-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2-9	104.1	-		
				마장동	462-12	115.4	-		
				마장동	462-11	213.1	-		
83	-	공동개발 지정/권장	880.7	마장동	462-1	567.3	5	과소필지 및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서마장 공유지분 블록 일대
				마장동	462-2	138.5	-		
				마장동	462-4	54.9	-		
				마장동	462-3	120	-		
84	-	공동개발 권장	290.9	마장동	463-15	19.8	-	맹지고려(소유상이) 및 과소필지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3-14	82	-		
				마장동	463-16	90.3	-		
				마장동	463-17	98.8	-		

필지 번호	가구 번호	계획내용	면적 (㎡)	획지				비고	구역
				동명	지번	면적 (㎡)	공유인수		
85	-	공동개발 권장	219.8	마장동	463-19	42.3	-	맹지고려(소유상이) 및 과소필지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3-20	135.2	-		
				마장동	460-21	42.3	-		
86	-	공동개발 권장	173.5	마장동	464-15	116	-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64-29	57.5	-		
87	-	공동개발 권장	270.7	마장동	450-23	84.3	-	과소필지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29	30.1	-		
88	-	공동개발 권장	202.9	마장동	450-11	103.1	-	맹지고려(소유상이)	서마장 구역
				마장동	450-64	99.8	1		
89	-	공동개발 지정	474.7	마장동	470-9	240.7	1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동일소유 기계발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0-1	234	1		
90	-	공동개발 권장	933.6	마장동	470-2	234.4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0-3	247.3	-		
				마장동	470-7	227.1	-		
				마장동	470-8	224.8	-		
91	-	공동개발 권장	541.2	마장동	470-4	246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차량출입 불가	고산자로 구역
				마장동	470-5	295.2	-		
92	-	공동개발 지정	1,053.2	마장동	503-4	578.1	2	과소필지 및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특별계획 가능구역
				마장동	503-9	475.1	2		
93	-	공동개발 지정	656.9	마장동	503-6	552.1	-	과소필지 및 개발 유도를 위한 필지 정형화	특별계획 가능구역
				마장동	503-7	104.8	-		
-	-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침에 따름	5,231.8	마장동	503-1	1,063.8	-	획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시장전략거 점 특별계획 가능구역 -①
				마장동	503-2	145.1	1		
				마장동	503-3	558	1		
				마장동	503-4	583.5	2		
				마장동	503-5	743.8	-		
				마장동	503-6	558.7	-		
				마장동	503-7	102.5	-		
				마장동	503-8	495.9	-		
				마장동	503-9	476.7	2		
				마장동	503-10	430.7	1		
				마장동	503-11	73.1	-		
-	-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침에 따름	1,817.5	마장동	501	1,817.5	5	획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시장전략거 점 특별계획 가능구역 -②
-	-	시장정비구역 지침에 따름	2,939.3	마장동	480-5	1,861.2	-	획지 (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 구역
				마장동	480-9	1,078.1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1) 불허용도

☐ 불허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불허 1	동마장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로류 판매소	
				적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교정 및 군사시설	그 외 비슷한 것	
			발전시설	국방·군사시설	
불허 2	시장아케이드변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불허용도1의 불허용도		
		1층부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불허 3	서마장 구역0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청계천변공공시설 구역 일반상업지역	전층	불허용도1의 불허용도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불허 4	고산자로변 구역 01, 02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층	불허용도1의 불허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타 용도와 복합 설치하는 경우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관	
				침술원	
				접골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조선원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기원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불허 4-1	고산자로변 구역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층	불허용도4의 불허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도면표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불허 5	시장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창고시설	창고	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명시된 축산 관련 창고 제외
				하역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2) 권장용도

□ 권장용도 결정조서

도면표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권장 1	시장아케이드변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30% 이상 설치 ※ 주차장설치면제 조건 연계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권장 2	고산자로변 구역 01 02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30%이상 설치 ※ 높이 완화계획 연계
				교습소	
				직업훈련소	
				금융업소	
			판매시설	사무소	
				상점	
			교육 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권장용도의 도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총 연면적은 용도변경 등으로 감소될 수 없음

3) 용도완화

□ 용도완화 결정조서

도면표 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건축법상 용도 분류		비고	
완화 1	동마장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시장아케이드변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의 12m 접도규정 완화	※ 용도완화 조건 이행 시에 한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제 조업소 도입에 한함
완화 2	시장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전층	판매시설, 공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 불허 완화		※ 축산 관련 판매시설, 공장 도입에 한함 ※ 성동구고시 제2022-141호에 의거, 기결정된 사항 반영

※ 용도완화 1의 적용을 위해서는 '성동구 용도완화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완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도완화 조건

구분	계획내용	세부내용	적용대상
완화 1	① 업장 내(외)부 그리스트랩 설치	「하수도법」 제23조에 근거한 재해시설로 설치하는 그리스트랩 중 기존 설비의 효과를 개선한 유지 자동수거 시스템이 설치된 그리스트랩 설치	완화 받는 모든 대상
	② 공동 유지수거함 설치	건축선 후퇴부인 전면공지 내 설치 불가 단, 대지여건 상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완화 받는 대상 중 대지면적 300㎡ 이상인 대지에 위 치한 경우

완화1의 용도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그리스트랩 및 공동 유지수거함의 세부 설치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시장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 및 완화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2) 용적률

□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1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4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시장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6% 이하	-	-	성동구고시 제2022-141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①항(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 이하로 한다.

※ 공공정비사업(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계획)의 경우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전담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5% 이상으로 계획 가능함(*한시규정)

※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 및 완화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상한용적률 계획

구분	완화조건	완화계획	비고
상한용적률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text{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text{토지} + 0.7 \times \alpha \text{건축물})$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α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지분' 포함 α 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지하철 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 (지하철 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①항(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 환기구 · 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times$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높이 계획

도면표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구역명	기준	최고	
H1	일반상업지역	청계천변 공공시설 구역	-	80m 이하	
H2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산자로변 구역 01 고산자로변 구역 02	40m 이하	60m 이하	

도면표시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구역명	기준	최고	
H3	제3종일반주거지역	서마장 구역 02	28m 이하	36m 이하	
H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마장 구역 시장 아케이드변 구역 서마장 구역 01	16m 이하	28m 이하	
H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시장정비구역	-	48m 이하 (9층 이하)	성동구고시 제2022-141호

- ※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 및 완화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높이 완화계획 결정

도면표시	계획내용			비고
	항목	구분	세부계획 기준	
구역전체	가구 및 획지	공동개발 준수 시	$\text{기준높이} \times a$ 2필지 : $a = 0.2$ 3필지 : $a = 0.4$ 4필지 : $a = 0.6$ 5필지 이상 : $a = 0.8$	이면부 적정개발 규모 유도
	건축물 배치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text{기준높이}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0.2$	통행이 가능한 상시 개방형으로 설치 최소폭 3m 확보, 필로티형 설치 시 유효높이 6m 이상 준수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시	$\text{기준높이} \times$ (도입면적/연면적) $\times 0.5$	주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주민커뮤니티 용도, 보육지원 용도로 설치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에 한함 ※ 단, 고산자로 구역 내 대지 중,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건물의 경우 부여 가능
	공유 토지	공유토지분할 및 권리 관계 정리 선행 시	해당 구역의 최고높이에 따름	공유인수 5인 초과 필지에 한함
H2 고산자로구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2 도입 시	$\text{기준높이} \times$ (권장용도면적/연면적) $\times 0.6$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30% 이상 설치
	건축물 배치	공개공지 (침상형) 설치 시	$\text{기준높이}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0.4$	지하철 역사 출입구 연계 조성시에 한함 지하연결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 등 연계 시에 부여 통행이 가능한 상시 개방형으로 설치
		지하공공보행통로 (연결통로) 설치 시	$\text{기준높이} \times 0.07$	

- ※ 건축물 개방에 따른 건축물 내 공익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시설 등 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 높이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8항에 따라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한
 기구·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적용 가능

라.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고산자로변 구역 0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	중심지미관지구 폐지로 인한 건축선 변경사항에 따름(성동구 고시 제2019-19호)
	고산자로변 구역 0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	보차혼용 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확보
	서마장구역 01 02		
	동마장구역		
	시장 아케이드변 구역 이면부		
	철로변		
	시장정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후퇴	-
건축 지정선	시장 아케이드변 구역	대지경계선 기준 (건축물의 외벽면, 담장, 대문 등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해야 함)	보행자우선 가로환경 형성을 위한 진열장 대지 내 설치 원칙 준용 등 보행 연속성 및 원활한 물류·유통 흐름 확보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 대지 여건상 건축한계선의 준수가 불합리한 경우 성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

2) 건축물의 형태·외관 등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형태계획 결정조서

① 규제사항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시장 아케이드변 구역	이면부 주차장 설치 시 탑차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높이 확보	-
	전면부 1층부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 노출 금지 가로에 면한 개구부에 셔터 설치 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50% 이상 개방	-
청계천변	청계천변 건축 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	-

② 권장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개방형 입면	1층부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는 것을 지양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지 않도록 조성 - 가로에 면한 1층부 벽면적 50% 이상을 쇼윈도 등의 투시형 벽면(내부가 안 보이는 컬러 유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으로 설치	-
개구부 및 진출입구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과 조화롭게 조성 - 가로에 접하는 건물 및 상업용도 건물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 및 공지로부터 15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지만, 당해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 예외 인정 - 건축물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출입구 조성	-
건축물 입면의 분절 및 분할	건축물의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재료 구분 및 창호 디자인, 상하부 구분 등의 입면의 분절 요소를 활용하여 풍부한 입면 디자인 권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인존(Sign Zone), 출입문 및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윈도우 존(Window Zone), 어닝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차양존(Awning Zone)으로 1층부 수평분할요소적용 권장	
차량 출입구	• 주차장 설치 시 탐차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높이 확보	-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 시설	•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연결통로, 분전반 등의 지중화 관련 시설을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 •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등은 일반인들이 상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고산자로변
파라펫 차폐 디자인	• 건축물 옥상부에 FRP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차폐시설 설치	-
지붕 및 부속설비 등의 처리	• 물탱크, 실외기,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설비시설 설치 시 시각적인 차폐시설 설치 • 외부 계단 가스설비, 옥상 설비 등 부속설비는 가급적 가로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부득이 노출되는 경우 외벽의 재료 및 색채와 조화로운 디자인의 차폐시설 설치 • 건축물을 평지붕으로 계획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측면의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으로 조성	-

□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 결정조서

적용구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재료의 통일성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 유지	-
	반사성 재료 금지	금속, 반짝이는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 사용	-
	조화로운 색채계획	건축물의 주요 색채로 원색(고채도) 계열 사용을 지양 재료의 고유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지역색 적용	-
	조화로운 천연재료 사용	외벽은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 사용을 권장 건물 저층부의 경우 보행자의 시선을 배려하여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 있는 소재(벽돌, 루버, 송판 노출 콘크리트, 스투고 등 질감 및 패턴이 있는 소재) 사용 권장	-

□ 가로경관계획

적용구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식재형/투시형 담장 설치	• 담장을 설치할 경우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	•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상 및 재료를 사용하여 입면과 일체감을 주도록 계획하고, 작고 간결하며 여백의 미(美)를 살리는 디자인으로 계획 • 단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방식, 크기, 위치 등을 통일하거나 유사하게 하여 통일감 있도록 설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도 부속형	고산자로변 구역 01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교통부 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할 경우 대지안의 조정면적으로 산입	-
	차도 부속형	서마장구역 01 02 동마장구역 시장아게이드변 구역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교통부 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할 경우 대지안의 조정면적으로 산입	-
공개공지		고산자로변 구역 01	• 지하철 역사 출입구 등의 지하철역 진출입구와 인접하여 대지 내 설치하고,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 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쌈지형공원 또는 필로티 형태로 설치 • 지하철역사 출입구 등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 공지로 설치를 권장	동북선 경전철 역사 신설 사업에 따른 지하철 역사 출입구 설치에 따라 변경 가능
공공보행통로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		고산자로변 구역 01	• 고산자로의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지하철 역사 설치 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지하에 지하 역사 및 지하보도와 연결되도록 설치 • 대지 내 건축물 및 공개공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 •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상시개방형으로 설치	-
		서마장 구역 01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으로 폭 2~3m 조성 • 지형차가 있는 곳은 계단으로 조성 • 일반인 통행이 가능한 상시개방형으로 설치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필지를 포함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에 한함
대지안의 조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대지 안의 조정의 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하여 조성 권장 • 보도부속형인 경우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후퇴 부분에 인접하여 풍성한 조정 식재와 인접 담장면의 녹화 권장	-

☐ 대지 내 공지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보도상에 설치되어 보행환경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	지하철 역사 설치 시에 한함

나.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 보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 보존 권장	-
옥상녹화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조성 가이드라인(2017)」, 「조경기준(2021)」 따라 조성	-
벽면녹화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및 「조경기준(2021)」에 따라 조성	-
녹색주차장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 서울시 기준에 따라 조성 주차장은 잔디 등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의 설치 권장	-
물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홍수방지와 물 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시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신·재생 에너지시설		신축(증축, 개보수 포함) 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권장	-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생태면적률 적용	-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고산자로변 구역 01	간선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 단, 이면도로로 주차출입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 형태 지침 중 간선도로변 주차장 출입구 조성방식 준수 시 설치 가능	도면표기
	시장 아케이드변 구역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 원칙적으로 금지, 이면도로에 주차출입구 설치 시장 아케이드 구역의 경우, 주차장설치 완화구역과 연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도면표기
공동주차 출입구	고산자로변 구역 01	이면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경우, 주차 출입구를 지정하여 고산자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이면부 차량진출입 유도를 위해 간선부와 이면부간 공동개발 시(공동개발 권장 준수 시) 간선부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계획 미적용 단, 추후 동북선 경전철 역사 신설 위치를 고려하여 차량출입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도면표기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 변경 및 공동주차 출입구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당 절차에 따름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구역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 대상	시장 아케이드변 구역 내 차량출입불허공간이 지정된 차량출입불가 대지	권장용도1 도입 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설치 면제구역에 한해 주차장설치를 비용납부로 대신 할 수 있음 단, 주차장 설치 면제구역을 포함한 공동개발 시, 이면부 도로에 접할 경우 주차장 설치 결정조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함	-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에 따른 비용 납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라. 경관에 관한 결정 조서

☐ 기본경관계획 등의 적용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본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을 적용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따름	-

☐ 옥외광고물 결정조서

① 규제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준용	-

②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옥외 광고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광고물 유형	- 한 건물에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경우 주요 출입구에 공동의 연립형 간판설치 권장 - 연립형 간판은 지주이용간판, 벽면을 활용한 공동연립간판, 연립돌출간판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도입	-
		형태	간판의 글자와 간판의 베이스를 분리하는 형태인 채널(문자형)간판 및 연립형 권장	-
		크기	입체문자형일 경우 위층 창문 밑단과 아래층 창문 윗단 사이 세로길이의 40% 이내, 최대 40cm	-
		색상	가급적 원색과 같은 고채도의 색은 피하고 무채색계열과 브라운계열 색상의 사용을 권장	-
		재료	- 간판의 베이스 재료를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 돌, 회반죽 등을 권장 - 벽체에 부착하는 문자형 간판을 고려할 경우 한국전통문양을 형상화한 베이스를 권장	-
		조명	부분조명이나 간접조명을 권장하고, 간판전체 직접조명방식은 지양하며, 직접조명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문자나 도형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 인공조명 결정조서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공동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준수	-
조명용도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2015)에 따른 조명용도별 빛공해 방지계획 준수	-
조망환경관리구역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2015)에 따른 조망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 방지계획 준수	-
야간경관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른 야간경관 조망유형별 빛공해 방지계획 준수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2015) 준수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별표1] 기준 준수 - 좋은 빛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가능	-

마.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
☐ 시장환경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상생협약	「마장축산물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재생사업의 실행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준수사항을 협약내용으로 정하여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자율적인 지역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	필요시
마장 상생협의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자주적인 상인·주민조직으로써 「마장 도시재생 상생협의체 운영규정」(‘19.06.05.제정)과 상생협약을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협의체는 상생협약 사항에 대한 운영, 홍보, 실천, 관리 지도의 기능을 담당	필요시

상생협약의 주요 협약사항 및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정하되, 마장 상생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시장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기부채납)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시설종류	배치	규모	비고
시장정비구역 (성동구 마장동 480-5번지 외 1필지)	공공임대 산업시설	지하1층	기부채납 면적 : 118.8㎡ ① 토지지분 : 35.5㎡ ② 건축물 환산부지 : 83.3㎡	건축물 기부채납 (전용면적 119.5㎡)

시장정비구역의 경우 성동구고시 제2022-141호에 의거, 기결정된 사항을 반영함

④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 조서

가. 시장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

- ☐ 지정목적 : 노후한 시장 건축물의 자력 갱신, 시장 용도의 집적화를 위하여 별도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하여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2022.05.)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가능구역 가능구역에 대한 효력은 잃으며 이 경우 일반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함. • 단, 주민요청(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자문(자치구 포함)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시장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	마장동 503-1 일대	-	증) 5,231.8	5,231.8	-	도면표시 ①
		마장동 501	-	증) 1,817.5	1,817.5		도면표시 ②

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시장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 공공기여 방안을 충족하여 세부개발계획 결정 시 변경			-
획 지	● 특별계획가능구역을 대지로 하는 획지선 지정			-
분할가능선	● 분할가능선 단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가능			-
공동개발	지정	● 인접한 필지 중 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
용 도	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물 제외)		-
	지정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공장 ● 판매시설	-
		※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30%이상 설치		
	완화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공장 ● 판매시설	-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용도 완화 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제조업소, 공장, 판매시설 도입에 한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밀도	건폐율	60% 이하(현행 용도지역 유지 시)			50% 이하(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허용	상한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높이	40m 이하							-	
기준높이 완화계획	건축물 개방	• 건축물 개방 시 : 기준높이 x (도입면적/연면적) x 0.5 - 주민커뮤니티 용도 및 보육지원 용도의 건축물 개방 시에 한함						-	
배치	건축 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마장로33길 변, 마장동 525번지 인접 도로에 한함)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유도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70% 이하							-
		항목	세분		완화기준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유도	기준용적률 × 0.05 이하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도입	유도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연면적) × 0.05 이하				
	친환경	주차계획	공동주차장	유도	기준용적률 × 0.1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30% 이상							
		항목	세분		완화기준				
		획지계획	획지단위 개발	유도	기준용적률 × 0.025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도입	유도	기준용적률 × (지정용도면적 / 연면적) × 0.025				
		주차계획	공동주차장	유도	기준용적률 × 0.075				
			녹색건축 인증	의무	기준용적률 X 0.04~0.12(등급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	기준용적률 X 0.04~0.08(등급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의무	기준용적률 X 0.04~0.12(공급률별)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중수도 시설설치	의무	기준용적률 X 0.04				
			빗물관리 시설설치	의무	기준용적률 X 0.04				
			옥상녹화	의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1				
			자연지반 보존	의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녹색 주차장	의무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 기준 : 용도지역 상향 면적의 10% 이상 • 공공기여 제공 : 공공기여 우선순위 참고							-	
	1순위	• 도로확폭(계획지침도 참조)							
	2순위	• 지역필요시설(건축물) 기부채납 : 장기 안심상가 등 • 건축물 기부채납 시 최소면적 18㎡ 이상(전용면적 기준) • 시설 활용 및 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집중 배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혁신방안 검토

- 노후한 시장 건축물의 복합개발, 관련기능 집적화를 통해 '마장 미트마켓'의 전략거점으로 조성 → 주변 정비 및 개발 유도
- 쾌적한 축산물 판매·식음공간, 미래형 O2O 판매·업무공간 및 야간 공동화 해소차원의 1~2인 주거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만남이 있는 명소 조성
- 청계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건축적 랜드마크이자 관광객의 방문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

□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지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지정 필지	• 인접한 필지 중 소유자가 동일한 필지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구역 전체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급적 대지가 정형화되도록 계획하며, 아래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이 불가하나 성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 공동개발되는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단·장변의 비율이 1:3 이상의 되는 경우 불허		-		
용도	불허용도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총포판매소		-		
			• 장의사				
			•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안마시술소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		
			•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고압가스 전소·판매소·저장소				
		도로류 판매소	• 도로류 판매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작물재배사		-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그 외 비슷한 것					
		교정 및 군사시설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		
			• 갱생보호소				
			•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용도완화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 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제조업소 도입에 한함		-		
밀도	건폐율	• 60%			-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		
		200% 이하	20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높이	• 16m(28m) 이하				-		
기준높이 완화계획	가구 및 획지	공동개발 준수 시	기준높이×a 2필지 : a=0.2 3필지 : a=0.4 4필지 : a=0.6 5필지 이상 : a=0.8	• 건축물 배치계획과 연계한 공동개발 검토 시 시장 이면부의 적정개발 규모 유도를 위해 공동개발 권장에 대한 높이 완화	-		
배치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마장로33길 변, 마장동 525번지 인접 도로에 한함)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차도 부속형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공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교통부 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할 경우 대지안의 조정면적으로 산입	-
	대지안의 조정		- 대지 안의 조정의 위치는 전면도로에 인접하여 조성 권장 - 보도부속형인 경우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후퇴 부분에 인접하여 풍성한 조정 식재와 인접 담장면의 녹화 권장	-
상생 협약	상생협약		「마장축산물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재생사업의 실행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준수사항을 협약내용으로 정하여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자율적인 지역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	-
	마장 상생협의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자주적인 상인·주민조직으로써 「마장 도시재생 상생협의체 운영규정(’19.06.05.제정)」과 상생협약을 연계를 제안 - 협의체는 상생협약 사항에 대한 운영, 홍보, 실천, 관리 지도의 기능을 담당	-
	협약 체결 대상자		협약 체결 대상자는 상생협약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허가권자 및 협약 운영 주체인 ‘마장 상생협의체’의 처분·권고에 따름	-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가.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경미한 사항

항목	조건		적용 구역	비고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	전구역	○	○	
획지의 규모 및 조성	가구면적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전구역	○	○	
	획지면적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전구역	○	○	
	최대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전구역			○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변경 또는 신설, 폐지(최대개발규모 내)	전구역			○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권장) 변경 또는 신설, 폐지(최대개발규모 내)	전구역			○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	
	건축물 높이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전구역	○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전구역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개방형 입면, 개구부 및 진출입구, 건축물 입면의 분절 및 분할, 차량출입구, 지하철 및 지중화관련 시설, 파라펫 차폐 디자인, 지붕 및 부속성비 등의 처리에 대한 계획내용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재료의 통일성, 반사성 재료금지, 조화로운 색채계획, 조화로운 천연재료 사용에 대한 계획내용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	
	가로경관	식재형/투시형 담장설치,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디자인에 대한 계획내용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	
공개공지, 보행전용도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 내 공지 위치	전면공지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전구역		○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전구역		○	
	공공보행도로 및 지하공공보행도로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전구역		○	
	대지안의 조경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전구역		○	
교통처리 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 차량출입구 · 보행자출입구 위치	주차출입구 · 차량출입구 위치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전구역		○	

항목	조건		적용 구역	비고		
				*	**	***
지하·공동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규모	지하층 용도	지정(또는 권장)용도 준수 조건에서 지하층 포함 변경	전구역		○	
	지하공간 설치여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하부에 지하공간 설치	전구역		○	
대문·담·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색채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간판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간판형태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건물 주출입구 등	주출입구 설치방식 변경으로 장애인 등 이용 불가 시	전구역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주차장, 물재생 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신·재생 에너지시설, 생태면적을 지대한 계획내용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범위의 변경인 경우	전구역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	특별 계획 (가능) 구역		○	
	필지분할 가능성	필지분할 가능성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특별 계획 (가능) 구역			○

* : 법상 경미한 사항

** : 구청장 권한위임 사항

*** :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구역면적,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시행령, 조례)
관련 규정의 변경 시에는 변경된 관련 규정을 따름.

III. 2022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2.5.11.) 결과 : 수정가결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완화 및 완화 조건은 축산 관련 업종으로 제한	• 현재 축산관련업종이 집적된 시장 현황을 고려한 제한적 완화조치이나, 기타 제조업소의 도입이 가능하여 추후 관리에 한계가 우려됨. • 따라서, 별도의 단서 규정을 통해 완화 대상을 제한하고자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제조업소 도입에 한함	반영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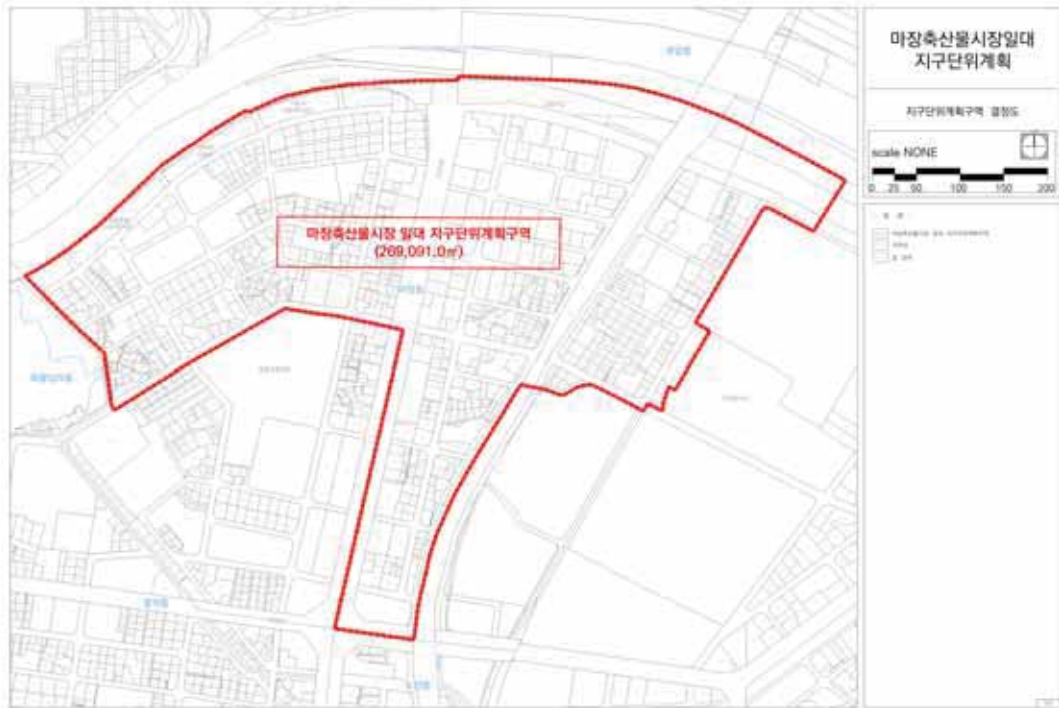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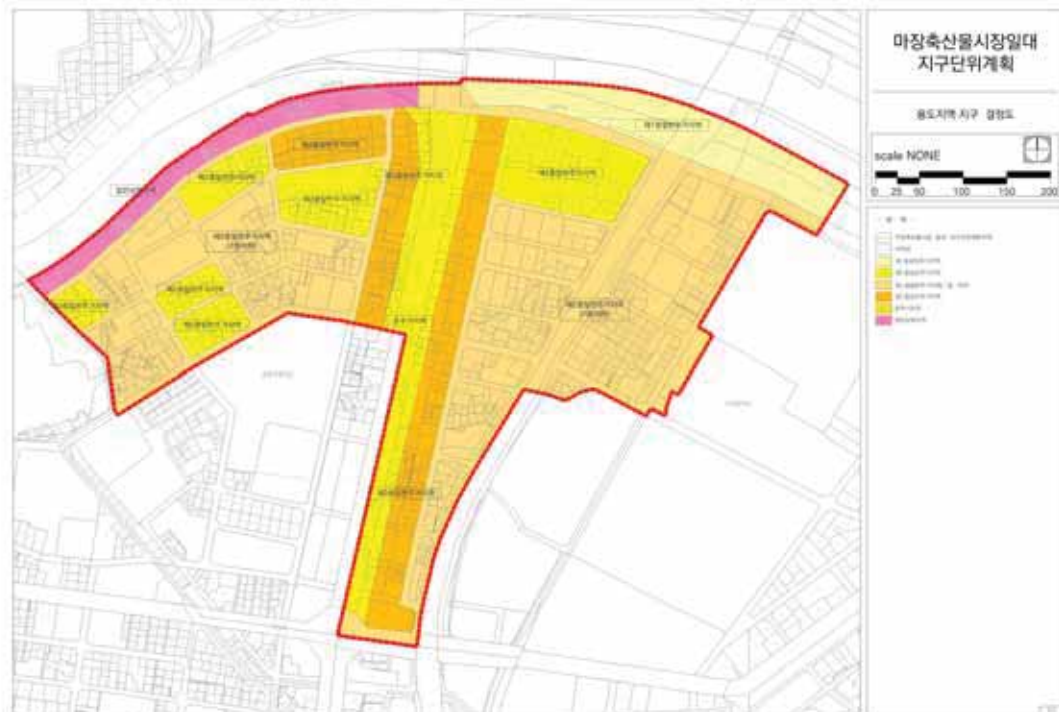
V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02-2133-8293) 및 성동구 도시재생과(☎02-2286-6601)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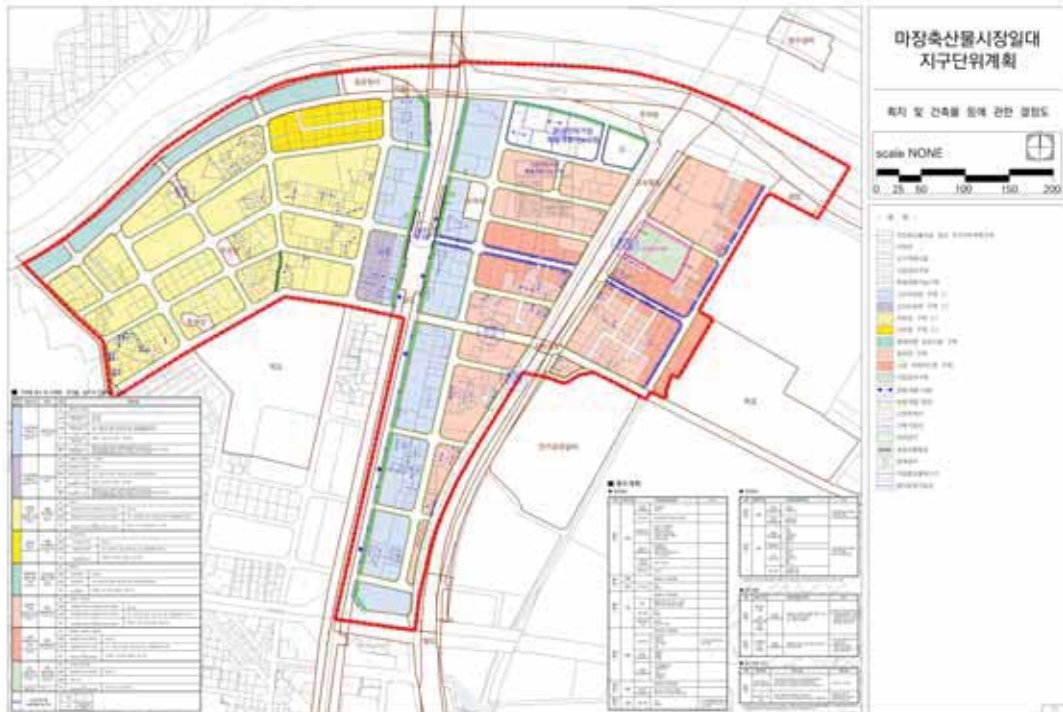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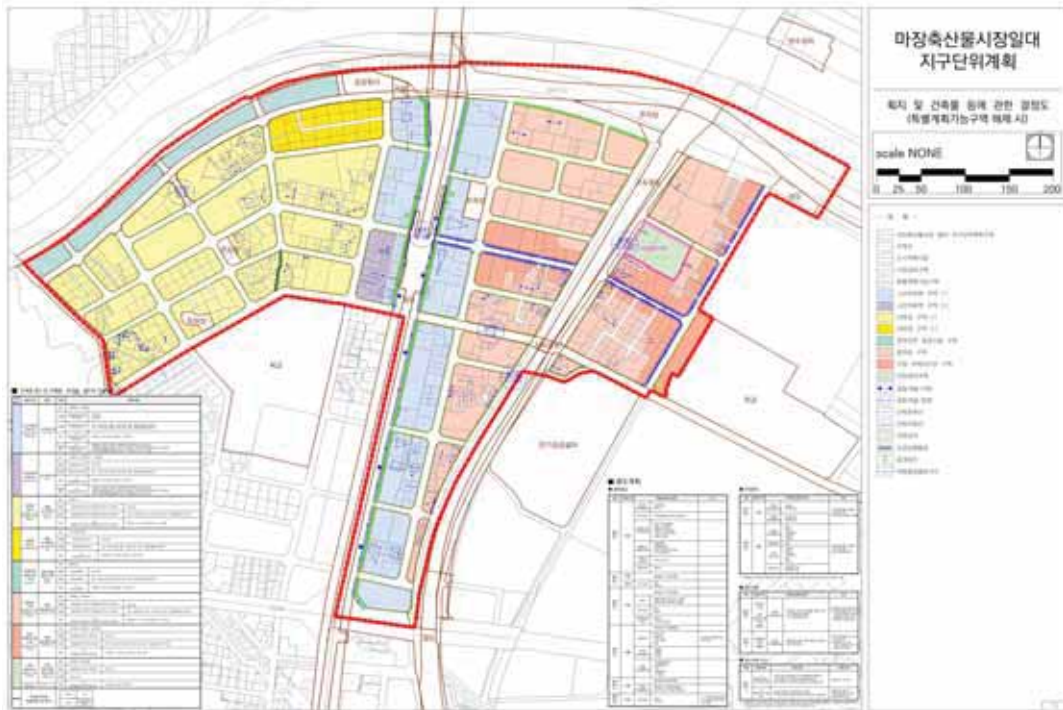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5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성내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 11.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 4.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 5.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 10.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 8.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4호(2017. 8.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9호(2020. 12.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2호(2021. 8.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11.4.)로 변경결정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지정 목적
			기정	증감	변경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407.5	-	275,407.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6년
- 목표연도 : 2027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407.5	-	275,407.5	100.0	
업무	소 계	45,532.8	-	45,532.8	16.5	
	일반업무	17,335.1	-	17,335.1	6.3	
	업무복합	28,197.7	-	28,197.7	10.2	
상업	소 계	130,362.5	-	130,362.5	47.4	
	판 매	15,451.1	-	15,451.1	5.6	
	일반상업	50,636.9	-	50,636.9	18.4	
	근린상업	24,136.1	-	24,136.1	8.8	
	주상복합	40,138.4	-	40,138.4	14.6	
주 거		36,923.1	-	36,923.1	13.4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62,589.1	-	62,589.1	22.7	
	공 원	2,302.0	-	2,302.0	0.8	
	공공공지	416.4	-	416.4	0.2	
	도 로	59,390.4	-	59,390.4	21.5	
	경 로 당	171.3	-	171.3	0.1	
	사회복지시설	309.0	-	309.0	0.1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 계		기정	2,851	3,976	1,349	408	2,219	9,940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4	기정	360	670	499	171	-	1,675
	성내3	기정	76	160	160	-	-	400
	성내5	기정	-	407	327	80	-	1,020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천호8	기정	196	520	363	157	-	1,300
	소 계	기정	632	1,757	1,349	408	-	4,392
존치관리구역		기정	2,219	2,219	-	-	2,219	5,548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5,842.0	-	65,842.0	-
도로		59,390.4	-	59,390.4	-
공원·광장·공공공지·녹지		2,718.4	-	2,718.4	-
공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582.4	-	1,582.4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청사	1,268.7	-	1,268.7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882.1	-	882.1	대지지분: 기부채납 / 건물: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합 계	개소수(개)	10	-	10	-
	면 적(㎡)	2,718.4	-	2,718.4	-
공 원	개소수(개)	5	-	5	-
	면 적(㎡)	2,302.0	-	2,302.0	중복결정 (지하보행로② 8.7㎡)
공공공지	개소수(개)	5	-	5	-
	면 적(㎡)	416.4	-	416.4	-

나)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용도지구 결정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나)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다) 천호8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라) 성내3재정비촉진구역(변경)
 -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재정비촉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	-	6,718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718	-	6,718	100.0	-
택 지 (획 지)	소 계	5,056	-	5,056	75.3	-
	획 지	5,056	-	5,056	75.3	-
정 비 기 반 시설등	소 계	1,662	-	1,662	24.7	-
	도 로	629	-	629	9.4	-
	공 원	1,033	-	1,033	15.3	중복결정 (지하보행로) 8.7㎡

3)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718	-	6,718	100.0	-
일반상업지역	6,715	-	6,715	99.9	-
준주거지역	3	-	3	0.1	-

○ 용도지구(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 (m)	연장 (m)	해수면 기준높이 (m)	면적 (㎡)	
신설	②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지하보도~ 문화공원 지하1층	7.5	4.05	12.88~16.88 (지하구조물 깊이 4.0m) ※ 해수면기준높이 19.5m	30.375	문화공원 중복결정 8.7㎡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폭, 연장, 높이,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된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보행로)은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일괄 공사 시행하고 관리청(강동구)에 무상귀속

－ 신설사유서

시설명	도면번호	신 설 내 용	신 설 사 유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②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신설	천호지하보도와 성내3구역 내 문화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보행로 신설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②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	-	261	-
기정	③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	-	772	-
변경	③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	-	772	중복결정 (지하보행로② 8.7㎡)

- 변경사유서

시설명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공원	③	문화공원과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 일부 구간 중복결정 - 면적: 8.7㎡	천호지하보도와 성내3구역 내 문화공원 지하1층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보행로 신설에 따른 일부 구간 중복결정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8)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1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2) 생태 면적률(관련규정에 따름)

마) 성내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방재계획(변경없음)
20. 정보화계획(변경없음)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없음)
22.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 (m)	연장 (m)	해수면 기준높이 (m)	면적 (㎡)	
기정	①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역 공영주차장 ~ 성내동 15번지 지하2층	11.3	2.2	11.2~ 16.3 (지하구조물 깊이 5.1m)	24.8	해수면 기준높이 21.5m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비 고
				폭 (m)	연장 (m)	해수면 기준높이 (m)	면적 (㎡)	
신설	②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천호지하보도~ 문화공원 지하1층	7.5	4.05	12.88~16.88 (지하구조물 깊이 4.0m) ※ 해수면기준높이 19.5m	30.375	문화공원 중복결정 8.7㎡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폭, 연장, 높이, 면적은 구역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공공보도시설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일괄 공사 시행하고 점용료(20년)일괄 납부(사업시행시) 및 유지관리

※ 지하공공보도시설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은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일괄 공사 시행하고 관리청(강동구)에 무상귀속

— 신설사유서

시설명	도면번호	신 설 내 용	신 설 사 유
지하공공 보도시설 (지하보행로)	②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보행로) 신설	천호지하보도와 성내3구역 내 문화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보행로 신설

■ 공원 결정 조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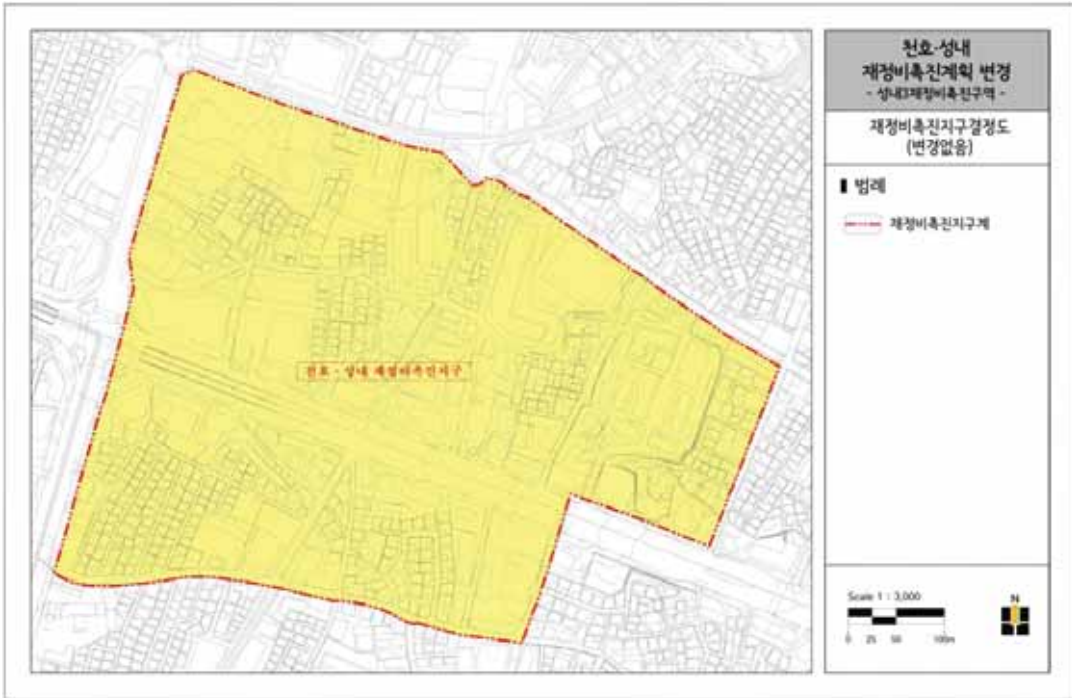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②	-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	-	261	-
기정	③	-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	-	772	
변경	③	-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	-	772	중복결정 (지하보행로② 8.7㎡)
기정	④	-	소공원	천호동 410-100 일대	1,134	-	1,134	-
기정	⑥	-	소공원	천호동 566-9 일대	67.9	-	67.9	-
기정	⑦	-	소공원	천호동 566-10 일대	67.1	-	67.1	-

— 변경사유서

시설명	도면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공원	③	문화공원과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보행로) 일부 구간 중복결정 - 면적: 8.7㎡	천호지하보도와 성내3구역 내 문화공원 지하1층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보행로 신설에 따른 일부 구간 중복결정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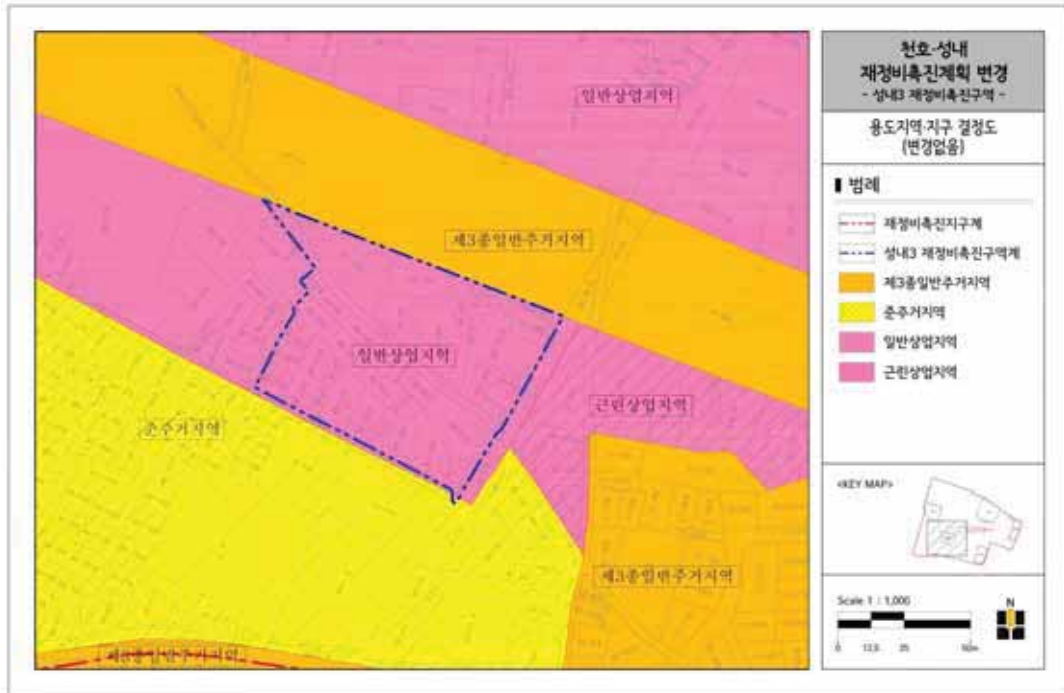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성내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성내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성내3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 성내3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 성내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성내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성내3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성내3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6호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3호(2018.11.0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46-43번지 일원	20,789.0	-	20,789.0	

2. 정비계획의 변경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89.0	-	20,789.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14.0	-	19,514.0	93.9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5.0	-	1,275.0	6.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89.0	-	20,789.0	100.0	
택 지	소 계	20,789.0	-	20,789.0	100.0	
	택 지 1	20,789.0	-	20,789.0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민공동시설	합계	2,120.0	증) 305.0	2,425.0	
	경로당	240.0	증) 10.0	250.0	
	작은도서관	160.0	증) 5.0	165.0	
	어린이집	330.0	증) 100.0	430.0	
	주민공동시설	-	증) 300.0	300.0	
	지역문화센터	100.0	-	100.0	
	지역공동체지원센터	100.0	-	100.0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1,190.0	감) 190.0	1,000.0	
	다함께돌봄센터	-	증) 80.0	80.0	
관리사무소		42.0	증) 8.0	50.0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 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 경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20,789.0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6	-	-	10	-	-

바. 건축시설계획(변경)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택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건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0,789.0	획지1	20,789.0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공동주택	50.0이하	207.37이하	249.98이하	해발 90m이하/ 18층이하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6.22이하	249.88이하	해발 105m이하/ 2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건 립 규 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600		100.0		-			
			전용면적 45㎡이하(공동주택)		71		11.8		-			
			전용면적 40 ~ 50㎡이하		114		19.0		-			
			전용면적 50 ~ 60㎡이하		333		55.5		-			
			전용면적 60 ~ 85㎡이하		82		13.7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100.0%										
		변경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 립 규 모		세대수		비율(%)			비고		
					공동주택	분양						
			합 계		601		100.0			-		
			전용60㎡ 미만	46㎡	10	217	37.8	68.2	100.0	-		
				59㎡	20	163	30.4					
			전용60㎡ 이상 전용85㎡ 미만	74㎡	-	95	15.8	31.8				
				84㎡	20	76	16.0					
- 기정) 85㎡이하 규모의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 변경) 85㎡이하 규모의 주택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본 고시문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이하 같음) · 공공주택(법정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동학로 확보 등) - 문성로변 : 5m - 문성로16길변 : 3m									

구 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택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 공개공지 : 3m × 5m (문성로변) · 공공보행통로 : 3m							
		변경	· 건축한계선 (통학로 확보 등) - 문성로변 : 5m - 문성로16길변 : 3m - 독산교교변 : 3m · 공개공지 : 3m × 5m (문성로변) · 공공보행통로 : 3m							

2)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시설 기부채납 면적 (문화시설)	대상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20,789.0㎡	20,789.0㎡	-	1,000.0㎡	6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문화시설 환산 부지면적 = 표준건축비 × 연면적 / 공시지가 = 3,019,000원 × 1,000㎡ / 7,174,000 = 420.82㎡ - 문화시설 대지 지분면적 = 총 연면적 중 문화시설 연면적에 대한 대지지분 = 1,000.00㎡(문화시설) × 20,789.0㎡(대지면적) / 80,233.35㎡(총 연면적) = 259.11㎡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420.82㎡(토지환산면적) + 259.11㎡(대지지분)] - 60.0㎡(국·공유지) = 619.93㎡ - 순부담면적 : 619.93㎡, 순부담율 : 2.98%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190% + 10% =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β) = 10%(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8%,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200% + 190.0% × 0.0298 = 207.37%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619.93㎡ ÷ 20,789㎡ = 0.0298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49.98% 이하				

3)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소계	토지(지분)	환산부지면적		
				문화시설	문화시설		
	20,789.0㎡	20,789.0㎡	780.46	283.07	497.39	-	60.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등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83.07\text{㎡} + 497.39\text{㎡}) - 0.0\text{㎡} - 60.0\text{㎡} = 720.46\text{㎡}$(구역면적 대비 3.46%)						
토지기부채납	• 토지 기부채납 : 283.07㎡ $= \text{총 연면적 중 문화시설 연면적에 대한 대지지분}$ $= 1,300.0\text{㎡}(\text{문화시설}) \times 20,789.0\text{㎡}(\text{대지면적}) / 95,471.17\text{㎡}(\text{총연면적}) = 283.07\text{㎡}$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 문화시설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5,581,726,800원 ÷ 11,222,000원 = 497.39㎡(환산부지면적) - 건축비 : 4,293,636원/㎡ - 설치비용 : 5,581,726,800원(건축비 4,293,636원 × 건축연면적 1,300.0㎡) - 부지가액 : 11,222,000원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정비예정구역 계획용적률 190% 적용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190% + 10% =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β) = 10% (지능형 건축물 3등급 9%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6% = 15%중 10% 적용)						
정비계획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 α [토지] + 0.7 α [건축물])] $= 200\% + [200\% \times (1.3 \times 0.010878316 + 0.7 \times 0.024255910)] = 206.22\%$ $\alpha [\text{토지}] = \text{공공시설제공면적(토지)} \div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후 대지면적}$ $= (283.07\text{㎡} - 60.00\text{㎡}) \div (20,789.0\text{㎡} - 283.07\text{㎡}) = 0.010878316$ $\alpha [\text{건축물}] = \text{환산부지면적(건축물)} \div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후 대지면적}$ $= 497.39\text{㎡} \div (20,789.0\text{㎡} - 283.07\text{㎡}) = 0.024255910$ • 정비계획용적률 = 206.22%						
예정법정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 용적률 완화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정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4)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기정)

법적상한용적률		• 249.98%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 207.37%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249.98\% - 207.37\% = 42.61\%$				
	증가된 용적률의 50%	• $42.61\% \times 50\% = 21.31\%$				
	의무 연면적	• $20,789.0\text{m}^2 \times 21.31\% = 4,430.15\text{m}^2$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44.90	62.90	71	4,465.90㎡	
		합계		71	4,465.90㎡	

5)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계획기준		• 공공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 206.22%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 $249.88\% - 206.22\% = 43.66\%$				
	증가된 용적률의 50%	• $43.66\% \times 50\% = 21.83\%$				
	의무 연면적	• $20,789.0\text{m}^2 \times 21.83\% = 4,538.23\text{m}^2$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46.60	67.52	10	675.2㎡	
		59.95	82.21	20	1,644.2㎡	
		84.95	112.35	20	2,247.0㎡	
		합계		50	4,566.4㎡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경관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및 조망을 고려한 건축배치 계획 수립 -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유도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건축계획 수립시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학교를 고려
	대기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기물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공간 최대 확보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예방 및 청소, 조경수로 활용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30%	계획구역 내 공간유형별 확보	계획대상지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30.08% 계획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녹지 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름 및 동식물상	4등급	비오름유형평가 대상지는 4등급과 남측 독산자연공원 주변 1등급, 개별비오름평가 평가제외와 남측 독산자연공원 주변 1등급에 해당	비오름1등급지는 보존하며, 조정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강화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총일조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 이상 확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건축법 및 관련조례 검토하여 적정수준으로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경관	Skyline 보전	신축건물에 의해 인공스카이라인 상승할 것으로 예상	주변 환경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층수계획 수립
		가로녹지율 30% 이상	사업지구 주변 크고 작은 규모의 녹지시설이 다수 분포함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지를 최대 21%이상 확보되도록 계획
	여가 및 휴식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조정면적 대지면적의 15%이상 확보 - 사업지구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여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추가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계획구역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물순환	-	운영 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폐기물 성장별 분리처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 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녹지공간조성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기준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511세대 계획 : 600세대 (증) 89세대	
변경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511세대 계획 : 601세대 (증) 90세대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구역 주변 교육시설은 미성초교, 미성중학교, 난곡중학교, 독산고교, 영남중학교가 반경 250m 이내에 있으며 난우초교, 문성중학교, 신림고교가 500m 이내에 위치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20,789.0	-	20,789.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0,789.0	-	20,789.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14.0	-	19,514.0	93.9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5.0	-	1,275.0	6.1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1	20,789.0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비 고
기정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결정도 참조

2)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축물의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 폐 율	비 고
획지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결정도 참조

■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190%	200%	207.37%	249.98%	-
변경	190%	200%	206.22%	249.88%	-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

■ 건축물의 높이 계획(변경)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정	• 해발 90m(지상 18층)	
변경	• 해발 105m(지상 23층)	

■ 건축물의 밀도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용적률 변경 - 기정 : 249.98% → 변경 : 249.88 (감 : 0.1%) • 높이 변경 - 기정 : 해발 90m(지상 18층) → 변경 : 해발 105m(지상 23층) (증 15m, 5층)	•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용적률 및 높이 변경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지	• 대상지 북서측 등산로 초입부분 3m × 5m(문성로변)	결정도 참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기정 • 대상지 북동측 문성로변에 차량진출입구 계획	결정도 참조
	변경 • 대상지 북서측 문성로변에 차량진출입구 계획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 - 기정 : 문성로변 대상지 북동측 - 변경 : 문성로변 대상지 북서측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차량진출입구 위치 변경

3)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30%	계획구역 내 공간유형별 확보	계획대상지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30.08% 계획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녹지 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름 및 동식물상	4등급	비오름유형평가 대상지는 4등급과 남측 독산자연공원 주변 1등급, 개별비오름평가 평가제외와 남측 독산자연공원 주변 1등급에 해당	비오름1등급지는 보존하며, 조정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강화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 환경	일조	총일조4시간 또는 연속일조 2시간 이상 확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건축법 및 관련조례 검토하여 적정수준으로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경관	Skyline 보전	신축건물에 의해 인공스카이라인 상승할 것으로 예상	주변 환경과 연계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층수계획 수립
		가로녹지율 30% 이상	사업지구 주변 크고 작은 규모의 녹지시설이 다수 분포함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지를 최대 21%이상 확보되도록 계획
	여가 및 휴식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15%이상 확보 - 사업지구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여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추가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계획구역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물순환	-	운영 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 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녹지공간조성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2022년 제8차(2022.06.29.)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구분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제8차 도시계획 위원회	○ 대상지는 다수의 학교 및 공원에 연접한 단지로서 금회 자문(안)의 건축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이 기정 정비계획 대비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의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주변지역에 대한 일조 부영향 및 위압감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건축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을 적극 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주변 일조 부영향 및 위압감 최소화가 되도록 건축배치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을 조정하였으며,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으로 열린배치하였음.	반영
	- 학교 일조영향 관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사전자문 또는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확인결과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사전자문(또는 협의) 절차가 없음에 따라 추후 학교일조기준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 검토를 면밀히 수행토록 하겠음.	추후반영
	○ 문화시설의 위치는 연접한 다수 학교의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문화시설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문화시설은 직업훈련시설 등을 위한 것으로 현 배치 유지토록 계획함.	반영
	○ 주관부서에서 밀도계획, 건축계획 조정 등 상기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자치구, 조합과 협의를 거칠 것	○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배치계획을 작성하였음	반영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변경)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7),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2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구역(계획) 결정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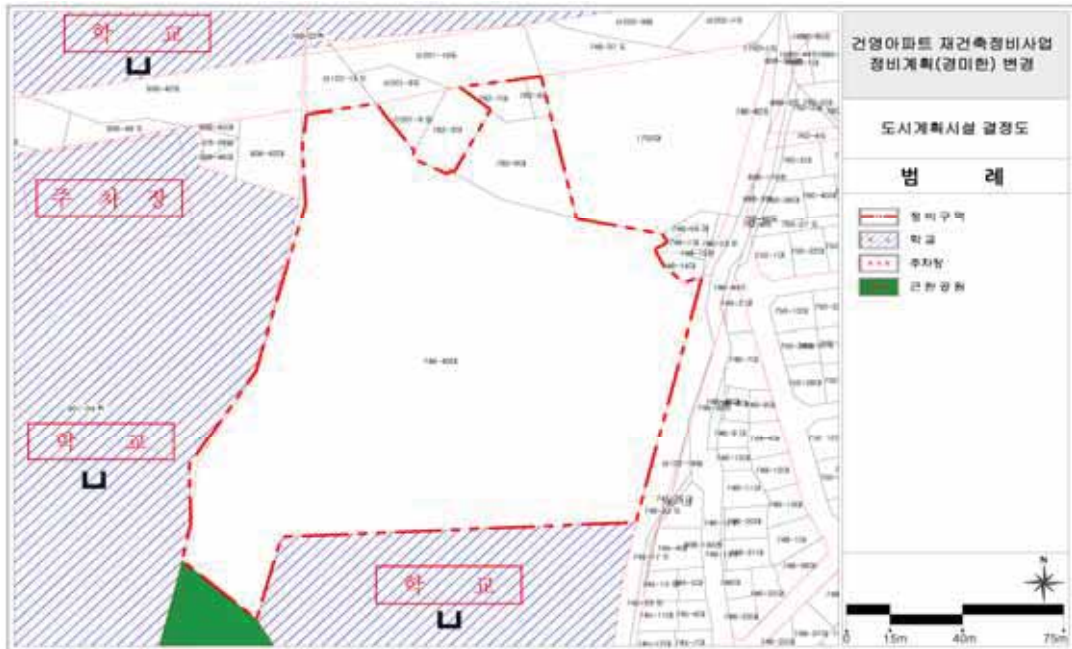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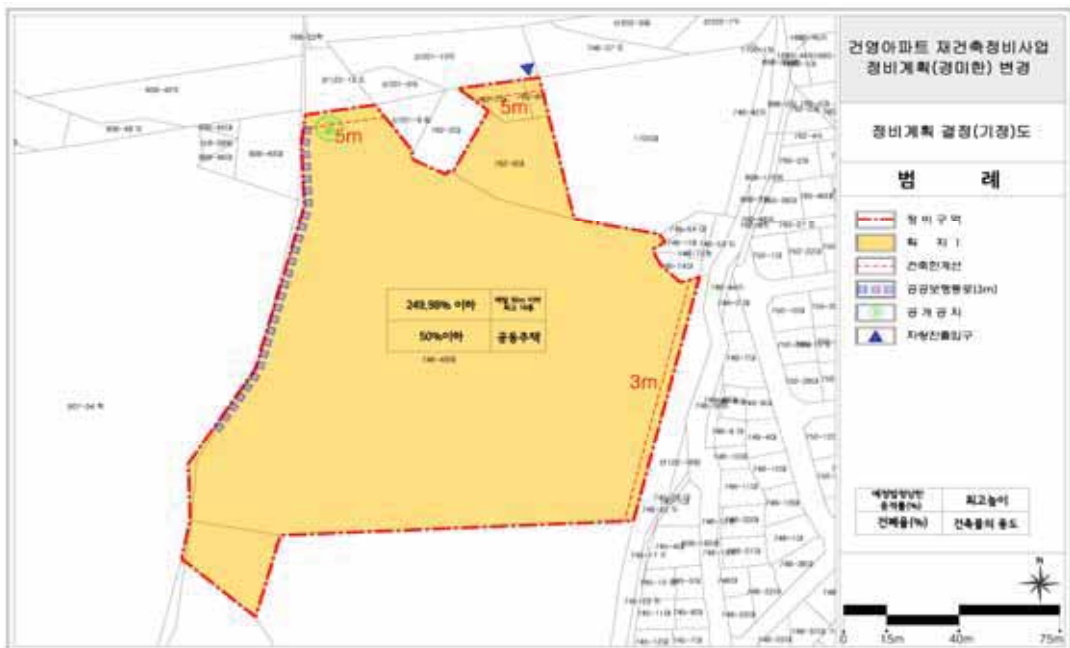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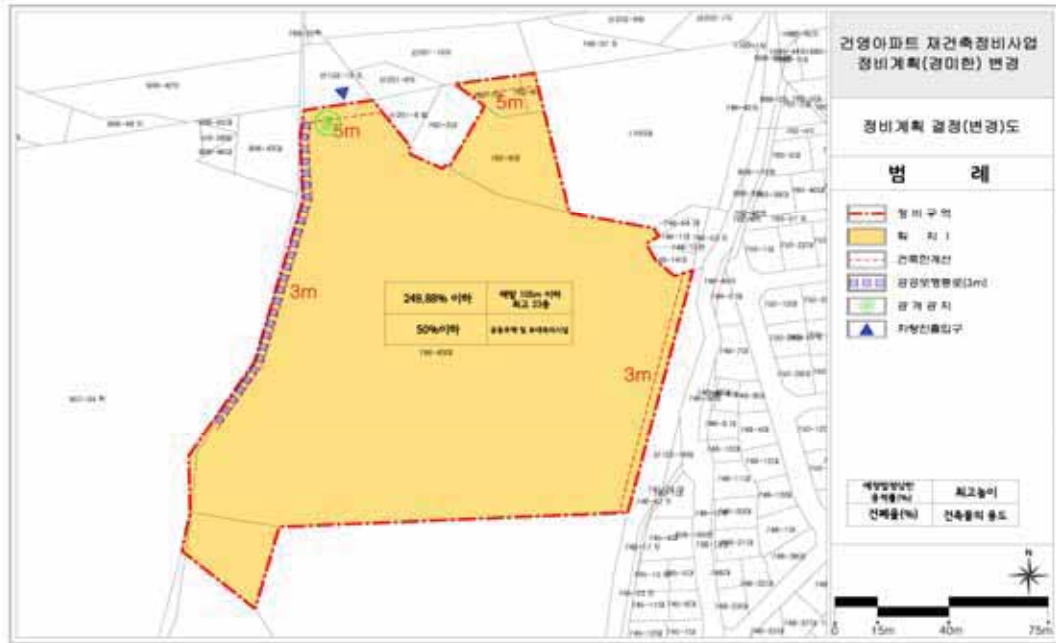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0호

제1차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2022~2026) 고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1차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2022~2026)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I. 추진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유지관리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제1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 및 추진과제 등 장래 관리 방향 등 설정

II. 기본계획(안)

- (비전)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한 서울시 도시철도환경 구현
- (목표) 종합성능지수 향상, 사고 ZERO화, 장애 30% 저감
-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분야 29개 세부과제 추진

III. 기타 참고사항

「제1차 서울특별시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2022~2026)」 전문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를 통해 조회(서울소식/고시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 2133-4359)로 문의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75호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8호(2021.11.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청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64),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0)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특별계획구역 ①	4,682.6	송파구 가락동 162	4,682.6	업무시설용지
기정	특별계획구역 ②	5,966.5	송파구 가락동 162	5,966.5	신혼희망타운용지1
기정	특별계획구역 ③	14,989.8	송파구 가락동 162	14,989.8	신혼희망타운용지2
기정	특별계획구역 ④	26,483.9	송파구 가락동 162	26,483.9	공동주택용지
기정	특별계획구역 ⑤	4,250.8	송파구 가락동 162	4,250.8	주민소통거점용지
변경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용지
기정	특별계획구역 ⑥	9,506.9	송파구 가락동 162	9,506.9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기정	특별계획구역 ⑦	5,070.0	송파구 가락동 162	5,070.0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용지
변경					주민소통거점용지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 용도계획

- 불허용도(변경없음)

- 허용용도

구분	도면 표시	허용용도	비 고
기정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교육연구시설 /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적용구역 - ⑤,⑥,⑦
변경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교육연구시설 /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적용구역 - ⑤,⑥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교육연구시설 / - 운동시설 - 노유자시설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가목(공공업무시설)에 한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규모까지 완화)	●적용구역 - ⑦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가로활성화 용도)	비 고
기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적용구역 - ①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적용구역 - ②,⑤,⑥,⑦
변경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적용구역 - ①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적용구역 - ②,⑤,⑥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적용구역 - ⑦

주) 1층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30%이상 계획해야 함

- 지정용도(변경없음)
- (2) 건축물 밀도계획(변경없음)
- (3) 건축물 높이계획(변경없음)
-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1) 특별계획구역 ①~④,⑥(변경없음)
 - (2) 특별계획구역 ⑤(기정:주민소통거점용지→변경: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⑤
면 적		4,250.8㎡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 도	불 허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허 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3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물 높이		•48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중대로2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북측 저층주거지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폭 5m 이상 확보

구 분			계 획 내 용
역 사 보 전	역사흔적 남기기	기정	●보전건물(수감동, 감시탑, 담 일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 해소 권장
		변경	●삭제
친환경인센티브			●계획유도 인센티브계획에 따라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모두 준수
교통처리계획			●오금로38길 및 중대로20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3) 특별계획구역 ⑦(기정: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용지→변경:주민소통거점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번호		⑦	
면 적		5,070.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배치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허용	기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 파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가목(공공업무시설)에 한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규모 완화)
	1층 권장	기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3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건축물 높이		●48m 이하	
배치	건축한계선	●중대로20길변 및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획지④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폭 5m 이상 확보
	보차혼용 통 로		●획지⑥과 보차혼용통로(폭 8m) 공동설치(위치지정)
역사 보 전	역사흔적 남기기	신설	●건축물내 일부 공간에 기록물 전시 등 흔적 기록화 권장
친환경인센티브			●계획유도 인센티브계획에 따라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모두 준수
교통처리계획			●중대로 20길변, 오금로40길변 및 각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보차혼용통로 구간 제외)
기타사항			●공공시설 건축시 개방형 주차장 50대 이상 확보 권장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64) 및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8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727	22.11.14.	주식회사 인터스웰 이문숙 110111-38369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4, 3층(삼성동, 제이에스빌딩)
2	203728	22.11.14.	스마트네트웍스 주식회사 박정옥 110111-5474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6층 603호(양평동3가, 양평동우림이비지센터)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83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6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2년 12월 30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2년 12월 30일(금)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13머3923	오*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06 03:17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75가9570	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08 20:44	강일IC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53루2518	LI J*NXI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11 14:01	경기도 안산시 안산IC(안산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01고9740	최*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10-15 17:24	사당IC주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5	04우8777	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15 09:35	경기도 수원시 수인산업도로(수원방면) 2차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6	서울53루1169	박*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16 10:19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	01버6257	박*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18 14:47	북부간선도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8	서울45구1090	이*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23 18:54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9	54무5209	임*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24 03:30	올림픽대로(공항방향)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0	89오8639	천*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4 14:17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1	69수1433	김*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26 17:38	경인고속도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2	89가1736	주식회사 *광전력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28 16:06	서부간선도로(인양방향)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3	28러4455	김*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29 12:52	신내IC(용마산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4	01누7787	김*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10-30 12:24	북악터널(평창문화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5	01러7107	음*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30 21:21	북부간선도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16	70라5001	박*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31 19:09	사가정역(사가정로) 3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2월 30일(금)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84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46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01누7074	강*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01 01:30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3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89로8402	정*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01 06:37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	"
3	95고3426	장*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01 11:31	월드컵경기장(월드컵로) 1차로	"	"
4	서울55로6560	김*곤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01 09:38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C 덕소방면 2차로	"	"
5	92보1901	김*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02 16:38	올림픽대로(공항방향) 4차로	"	"
6	서울54구2742	최*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02 13:40	북부간선도로 2차로	"	"
7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10-03 12:01	잠실대교 복단(자양로)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8	80무4565	김*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10-03 09:44	경인고속도로 2차로	"	"
9	서울54구1645	황*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03 11:28	경기도 성남시 복정교 3차로	"	"
10	80라4269	주-이*하이테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04 10:02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78-8 화성방면 1차로	"	"
11	서울41러3864	양*범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04 04:19	강변북로(일산방향) 2차로	"	"
12	02모4319	김*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05 17:51	산골고개 (통일로) 2차로	"	"
13	09모4838	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10-05 14:47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1차로	"	"
14	10누9142	김*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05 16:31	도봉로시계 2차로	"	"
15	02버8284	쥬와*제이플레닝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06 18:06	녹천초(마들로) 1차로	"	"
16	80두2701	김*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10-06 15:11	강변북로(일산방향) 1차로	"	"
17	서울70루7747	한*복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06 19:55	화랑대역 (화랑로) 4차로	"	"
18	05러3192	이*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07 16:06	녹천초(마들로) 1차로	"	"
19	05버1279	LI S*NGNAN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10-07 18:07	경기도 시흥시 수자원공사앞4R(수원방면) 4차선	"	"
20	37구6064	김*섭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10-07 16:03	경기도 안산시 안산IC(안산방향) 2차로	"	"
21	97보5631	김*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07 13:13	강변북로(구리방향) 4차로	"	"
22	01우4265	명*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08 23:34	개봉교후방 1차로	"	"
23	03저2452	이*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08 15:37	송파대로 1차로	"	"
24	19모5549	CHEN H*NGYANG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10-09 13:19	올림픽대로(공향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25	39버2824	정*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09 23:53	양재IC 1차로	"	"
26	48노8392	송*승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10-09 13:04	군자교 (천호대로) 2차로	"	"
27	70가2612	안*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09 10:01	동일로 2차로	"	"
28	서울38더5457	주-유*신용카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09 08:21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29	06라4705	쥬엔*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10-10 09: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25-312 용인방면 3차로	"	"
30	21거1956	김*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10-10 17:53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	"
31	37저7680	이*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10-10 14:4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	"
32	73오8166	W*NG LE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10 16:34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2차로	"	"
33	43수6019	박*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11 11:03	솔샘역(솔샘로) 1차로	"	"
34	46너7813	김*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11 15:03	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	"
35	52고9622	쎄*(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10-11 12:27	올림픽대로(공향방향) 2차로	"	"
36	86주5135	이*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12 10:34	인천광역시 전제울사거리 3차로	"	"
37	01여6641	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2-10-13 15:32	덕은교 1차로	"	"
38	05오7994	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10-14 04:52	안양천로 2차로	"	"
39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14 18:34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	"
40	94라3784	최*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10-14 16:59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	"
41	04수9498	조*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15 08:02	양재IC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42	06조1848	노*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15 16:03	신내IC(용마산로) 1차로	"	"
43	33버3954	최*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15 14:16	신사동고개(가좌로) 1차로	"	"
44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10-15 12:11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화도방면 1차로	"	"
45	60고1148	안*필외1인(안*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15 15:53	경기도 고양시 가시골입구사거리 1차로	"	"
46	21무2217	이*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16 16:34	개화역 2차로	"	"
47	73부7210	문*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16 17:42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1차로	"	"
48	서울53두3585	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16 10:51	삼성역 1차로	"	"
49	46다5428	주식회사 새*프레스티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17 16:53	북악터널(평창문화로) 2차로	"	"
50	70저3556	PARK*RNWIWAT PANJACHOK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10-17 02:31	강변북로(서울방향) 1차로	"	"
51	서울82루8868	(주)*길전력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17 11:42	도봉로시계 4차로	"	"
52	75보8234	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18 15:00	길음역(동소문로) 1차로	"	"
53	01서7996	권*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19 19:53	서하남IC 4차로	"	"
54	49버4555	주식회사 엔*에스커버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19 22:56	올림픽대로(공향방향) 4차로	"	"
55	02여5841	박*베르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20 11:20	강변북로(서울방향) 1차로	"	"
56	04우2837	황*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10-20 17:48	망우리고개 2차로	"	"
57	06려4798	(주)엔*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10-20 12:40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230-3 화성방면 1차로	"	"
58	230가6510	최*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10-20 05:02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9	46소1036	주식회사 선*건축디자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20 09:10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새C) 1차로	"	"
60	02로2473	윤*덕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10-21 10:06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9-29 포천방면 3차로	"	"
61	09조5517	박*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21 16:39	밤고개로 2차로	"	"
62	31라1727	(사)한*고령친화산업 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21 13:47	구기터널(진흥로) 2차로	"	"
63	40도8541	(주)렌트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21 11:26	수서IC 4차로	"	"
64	70너3207	김*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21 11:47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	"
65	86우7240	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2-10-21 16:31	동일로 4차로	"	"
66	서울53루7984	조*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21 22:31	삼성역 3차로	"	"
67	04우6820	김*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10-22 20:08	경인고속도로 1차로	"	"
68	26조7138	박*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22 16:21	화랑대역 (화랑로) 2차로	"	"
69	76수1227	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10-22 20:10	동일로 4차로	"	"
70	01로2682	보*나종합건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23 11:30	낙성대역 (남부순환로) 3차로	"	"
71	02버5035	이*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3 17:50	서하남IC 4차로	"	"
72	19수7333	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23 17:10	암사IC(양재대로) 2차로	"	"
73	20보2548	신*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23 04:25	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	"
74	46라2003	정*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23 17:14	고덕역(고덕로) 1차로	"	"
75	49구5468	안*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2-10-23 13:20	양재IC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76	서울55도2624	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3 13:53	경기도 성남시 탄천IC 1차로	"	"
77	02루6867	㈜*프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4 22:14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	"
78	92너4270	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10-24 14:56	동일로 4차로	"	"
79	07주7359	김*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10-25 22:47	연희C (모래내로) 1차로	"	"
80	19루2279	㈜*기아이엔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25 17:03	인천광역시 향동저수지 앞 2차로	"	"
81	65주5572	임*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10-25 11:45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C) 1차로	"	"
82	75모7234	㈜*이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5 15:38	경기도 의왕시 골사그내보도육교 6차로	"	"
83	97노9422	㈜서*우유오금동대리 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25 15:09	상원IC진출로 2차로	"	"
84	서울82바6633	*특수주채라 (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10-25 04:04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4차로)	"	"
85	92소2799	김*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26 18:22	인천광역시 용종교 3차로	"	"
86	01보8079	강*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27 16:34	서울교 (경인로) 1차로	"	"
87	03보6592	주*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10-27 18:08	기아대교 (한내로) 1차로	"	"
88	16도2132	㈜*이비물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27 20:59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1차로	"	"
89	80버8400	㈜*북가로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27 15:25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C) 2차로	"	"
90	89오7388	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10-27 09:37	천호역(천호대로) 3차로	"	"
91	89우1967	김*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27 07:49	동일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92	91나5758	고*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2-10-27 17:19	올림픽대로(잠실방향) 3차로	"	"
93	94거3190	더*지봉(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2-10-27 09:48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	"
94	01보1677	박*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10-28 12:18	서울교 (경인로) 2차로	"	"
95	19마1364	이*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28 15:42	상도터널(양녕로) 1차로	"	"
96	35조7550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28 22:38	연희IC(연희로) 2차로	"	"
97	36더5981	박*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28 15:50	노량진역(노량진로) 2차로	"	"
98	55여5879	고*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28 14:45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덕소방면 2차로	"	"
99	83너6130	한*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2-10-28 14:43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	"
100	01너7564	(주)*준이엔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10-29 14:09	분당수서고속화도로 2차로	"	"
101	02나5238	(주)*일뱅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29 17:51	동일로 1차로	"	"
102	03오5225	엘*비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9 12:26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	"
103	07라5844	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10-29 01:51	경인고속도로 3차로	"	"
104	10도3506	주식회사 *수목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29 10:35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	"
105	37조7007	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10-29 17:34	천호역(천호대로) 2차로	"	"
106	42더2320	허*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10-29 03:17	난곡터널(문성로) 1차로	"	"
107	56소8712	새*리텍스타일(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10-29 16:59	입곡삼거리 (북한산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08	60누7158	박*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29 09:51	경인고속도로 4차로	"	"
109	70조3068	주-더*컴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29 08:36	밤고개로 3차로	"	"
110	73구6962	최*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29 15:51	강일57단지 (아리수로) 1차로	"	"
111	80두8203	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29 05:31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	"
112	96다8716	이*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29 13:05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67 안성방면 2차로	"	"
113	01모9930	심*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30 15:14	DMC역 (증산로) 2차로	"	"
114	01여4391	경*엔지니어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10-30 08:04	수서IC 1차로	"	"
115	02수4469	정*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30 17:25	도봉로시계 1차로	"	"
116	02저6145	박*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30 09:42	여의2교(제물포길) 4차로	"	"
117	07도6176	이*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10-30 17:24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2차로)	"	"
118	09더5675	선*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10-30 20:23	항동지구(서해안로) 1차로	"	"
119	22로4697	노*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30 09:38	강일IC 1차로	"	"
120	25우8223	조*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10-30 10:46	상도터널(양녕로) 2차로	"	"
121	43라2283	유*석외1인(이*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10-30 18:55	구기터널(진흥로) 2차로	"	"
122	47구8342	씨*라스해운(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30 13:46	올림픽대로(공향방향) 3차로	"	"
123	50누4208	이*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30 17:25	상월곡역 (화랑로) 2차로	"	"
124	54라2060	방*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10-30 19:26	연희IC (성산로) 1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25	80누7939	㈜*동한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30 07:14	잠실대교 복단(자양로) 3차로	"	"
126	서울57나5958	㈜*프트 제너시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10-30 11:56	천왕역(오리로) 2차로	"	"
127	01나3396	권*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2-10-31 12:40	화곡터널(강서로) 1차로	"	"
128	01저9790	㈜*티즌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2-10-31 10:29	서오름로 1차로	"	"
129	05소6840	이*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10-31 15:2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교고 2차로	"	"
130	07조3044	이*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31 15:07	기아대교 (한내로) 3차로	"	"
131	08노4000	송*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31 16:57	노량진역(노량진로) 3차로	"	"
132	10누3350	이*영 외1(우*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31 18:18	DMC역 (증산로) 2차로	"	"
133	10두2144	문*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2-10-31 17:09	산골고개 (통일로) 1차로	"	"
134	14두6708	이*만	서울특별시 중구	2022-10-31 15:02	용비교 (뚝섬로) 1차로	"	"
135	42녀2949	김*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31 13:2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98-67 안성방면 5차로	"	"
136	49여6832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10-31 19:33	천호역(천호대로) 3차로	"	"
137	50노5089	양*엽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0-31 09:18	북악터널(평창문화로) 1차로	"	"
138	52두1029	㈜*코미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2-10-31 14:31	철산대교 2차로	"	"
139	52두6130	곽*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31 15:30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	"
140	53누7557	NGU*EN THI HUONG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2-10-31 08:34	강일IC 2차로	"	"
141	72여9661	CUI G*ANXI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2-10-31 05:04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42	80루3033	김*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10-31 06:52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녹양LPG충전소) 2차로	"	"
143	80버8510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2-10-31 22:14	화곡로입구 1차로	"	"
144	86소7260	한*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2-10-31 07:02	경기도 안산시 서안산C(안산방향) 1차로	"	"
145	91다5172	임*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2-10-31 17:34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2차로	"	"
146	서울45도1137	최*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10-31 07:26	수주삼거리 1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2월 30일(금)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 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9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박종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4, *동 **2호(신북면)	일시 : 2022-07-03 22:00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이성복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신촌*길 *-*4(함라면)	일시 : 2022-07-10 23:26 장소 : 서울시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홍영수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 *2-**(창전동)	일시 : 2022-07-15 10:10 장소 : 서울시 가락동 동남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이찬우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2번길 *6-*, **9호(신북면)	일시 : 2022-09-08 23:30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정재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0-*, **3호(일동)	일시 : 2022-09-15 04:30 장소 : 서울시 논현동 도산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한영희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8길 *0, *동**7호(동산동)	일시 : 2022-09-20 21:05 장소 : 서울시 성내동 강동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김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 *번길 *5, **5호(부평동)	일시 : 2022-09-21 06:18 장소 : 서울시 대치동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48미터 초과	과태료 : 50만원
어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9, **8동 ***4호(가좌동)	일시 : 2022-09-25 04:50 장소 : 서울시 삼성동 올림픽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김상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천석로*8번길 *, **5호(봉명동)	일시 : 2022-09-27 13:50 장소 : 서울시 개포동 연주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5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이환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2번길 *-*, **1호(금광동)	일시 : 2022-09-28 10:24 장소 : 서울시 개포동 연주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7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어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9, **8동 ***4호(가좌동)	일시 : 2022-09-01 05:35 장소 : 서울시 개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박종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4, *동 **2호(신북면)	일시 : 2022-09-03 22:30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2.12.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06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11.24.~2022.12.8. (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내용

업체6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제자	
쥬디에스아키텍트 설 (김양열)	건축공사업 01-4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4길 11, 2층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미달)	영업정지	2022.12.9.(금) 14: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이정은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07호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증품의 기관양여 고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에서 보관 및 전시 중인 올림픽 유물 중 메달리스트 기증품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양여하게 되어 양여 사유, 향후 기증품 보관 및 전시 일정 등에 대한 이해설득 및 동의를 구하고자 기증자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증품의 기관양여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주요 내용

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증품을 타 기관으로 양여 함.

- 양여물품 :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증품
- 기증품 관리기관 변경내역

구분	기존	변경
기관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부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국민체육진흥공단
보관/전시	서울올림픽전시관	서울올림픽기념관
위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데크 밑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기념관
기증품 수량	58점	58점
양여 일정	- '22년 12월 ~ ' 23년 1월 중 양여 추진 ※ 양여 일정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함.	

- 양여사유

- 서울시 올림픽전시관과 공단 올림픽기념관으로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올림픽 유물 관리의 전문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단으로 통합관리 추진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및 서울올림픽전시관 철거로 올림픽 유물(기증품 포함) 보관장소 필요

4. 공시송달 대상(기증자)

대상자		올림픽 입상 내역	올림픽 유물 기증품 내역
성 명	연락처 및 주소		
양정모	미상	-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얼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 경기복 1점 - 레슬링 소식지 9점
김원기	미상	- 1984년 제23회 미국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 경기복 등 시합용품 10점 - 훈련일지 등 서식류 3점
유인탁	미상	- 1984년 제23회 미국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 경기복 6점
박시현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복싱 금메달	- 경기복 등 시합용품 2점 - 프레스카드 등 기타 2점
김명순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	- 추리닝 1점 - 기념메달 등 2점
전인수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양궁 금메달	- 경기복 1점
박성수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양궁 금메달	- 경기용 화살 1점
김수영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양궁 금메달	- 경기복 1점
김춘례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	- 시합구 1점
이기순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	
김영숙	미상	-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핸드볼 금메달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특기사항

- 가. 공시송달 기간 중이라도 기증 대상자와 지속 접촉 시도하여 올림픽 유물 기관 양여 및 향후 기증품의 관리 및 전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올림픽 유물 기관 이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올림픽유물 기관 이관 담당부서 (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올림픽로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전화번호: 02-2240-8970, 팩스번호: 02-2240-8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16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7.(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tel@seoul.go.kr
 - 팩스: 02-2133-1076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2. 12. 8. ~ 2022. 12. 21. (14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감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2022년 9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1660633	수취인불명	2022-11-07	650131-*****	김*덕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열차	2022-09-07 17:0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17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7.(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tel@seoul.go.kr
 - 팩스: 02-2133-1076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2. 12. 8. ~ 2022. 12. 21. (14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2년 9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1657686	이사불명	2022-11-10	530415-*****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열차	2022-09-01 11:08
2	1078831657687	이사불명	2022-11-10	530415-*****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열차	2022-09-06 15:13
3	1078831657688	이사불명	2022-11-10	530415-*****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열차	2022-09-30 10:45
4	1078831657689	이사불명	2022-11-10	530415-*****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열차	2022-09-01 11:02
5	1078831657870	이사불명	2022-11-10	530415-*****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열차	2022-09-07 14:23
6	1078831657871	이사불명	2022-11-10	530415-*****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열차	2022-09-14 16:15
7	1078831657872	수취인불명	2022-11-08	540117-*****	김*스더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열차	2022-09-26 14:08
8	1078831657876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13 07:17
9	1078831657877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14 13:01
10	1078831657878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01 13:58
11	1078831657879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06 12:39
12	1078831657880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27 07:16
13	1078831657881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27 07:46
14	1078831657882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21 10:20
15	1078831657883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24 11:51
16	1078831657884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02 10:58
17	1078831657885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03 14:34
18	1078831657886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06 10:11
19	1078831657887	기타	2022-11-11	420413-*****	김*영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열차	2022-09-08 14:36
20	1078831657888	기타	2022-11-14	440615-*****	김*욱	서울시 종로구 양마산로	열차	2022-09-02 13:4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21	1078831657889	기타	2022-11-14	440615-*****	김*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12 13:52
22	1078831657890	기타	2022-11-14	440615-*****	김*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14 14:05
23	1078831657891	기타	2022-11-14	440615-*****	김*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19 10:46
24	1078831657892	기타	2022-11-14	440615-*****	김*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19 13:58
25	1078831657893	기타	2022-11-14	440615-*****	김*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20 11:02
26	1078831657894	기타	2022-11-14	440615-*****	김*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30 13:58
27	1078831657899	기타	2022-11-14	66103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증암로	열차	2022-09-19 12:40
28	1078831657900	기타	2022-11-14	66103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증암로	열차	2022-09-14 13:47
29	1078831657901	기타	2022-11-14	66103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증암로	열차	2022-09-16 11:28
30	1078831657916	주소불명	2022-11-08	651009-*****	김*진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열차	2022-09-13 11:32
31	1078831657917	주소불명	2022-11-08	651009-*****	김*진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열차	2022-09-19 11:04
32	1078831657920	기타	2022-11-14	351203-*****	박*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열차	2022-09-07 15:29
33	1078831657923	기타	2022-11-14	52071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01 10:12
34	1078831657924	기타	2022-11-14	52071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30 10:56
35	1078831657925	기타	2022-11-14	52071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06 13:06
36	1078831657926	기타	2022-11-14	52071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22 10:24
37	1078831657927	기타	2022-11-14	52071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29 10:48
38	1078831657928	기타	2022-11-14	52071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07 13:18
39	1078831657929	폐문부재	2022-11-11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열차	2022-09-27 09:16
40	1078831657930	폐문부재	2022-11-11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열차	2022-09-13 11:59
41	1078831657931	폐문부재	2022-11-11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교산로	열차	2022-09-14 11:3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42	1078831657932	폐문부재	2022-11-11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열차	2022-09-14 11:50
43	1078831657933	폐문부재	2022-11-11	690510-*****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열차	2022-09-30 11:06
44	1078831657934	이사불명	2022-11-07	751113-*****	연*성	서울시 성동구 매봉로	고속터미널③	2022-09-07 16:05
45	1078831657935	기타	2022-11-14	611013-*****	이*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열차	2022-09-10 08:53
46	1078831657939	기타	2022-11-14	630704-*****	이*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열차	2022-09-27 14:41
47	1078831657940	폐문부재	2022-11-11	511206-*****	이*환	경기도 구리시 팔기원로	열차	2022-09-06 10:45
48	1078831657941	폐문부재	2022-11-1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열차	2022-09-02 13:25
49	1078831657942	폐문부재	2022-11-14	540923-*****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열차	2022-09-26 12:36
50	1078831657945	수취인불명	2022-11-07	751018-*****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길	열차	2022-09-03 19:50
51	1078831657946	수취인불명	2022-11-07	751018-*****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길	열차	2022-09-24 19:38
52	1078831657949	수취인불명	2022-11-08	590627-*****	정*옥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열차	2022-09-07 17:16
53	1078831657951	폐문부재	2022-11-14	660209-*****	조*도	서울시 관악구 청룡길	열차	2022-09-12 18:12
54	1078831657952	기타	2022-11-11	541003-*****	홍*목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열차	2022-09-28 10:5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18호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동대문공영주차장 지상상가 DDP패션몰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1. 공 고 명 :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 공시송달 내역)
4. 유의사항
 -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한 내 체납금액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7조에 따른 체납처분 등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3405-4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내역 1부.

공시송달내역

(기준일자 : 2022. 11. 16.)

연번	대상		공시송달사유	반송일자	체납내역		
	채납자	주소			주차장명	호수명	체납금액(원)
1	천*석	서울 성동구 무학로 33, 103동 1804호 (하왕십리동, 텐즈힐)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1-018	62,467,940
2	이*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135번길 19-1	수취인불명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1-026	32,754,280
3	박*숙	서울 동대문구 장안북로 107, 115동 2104호 (경인동, 장안현대출타운)	수취인불명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1-091	83,315,130
4	전*오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20, 404호 (성수동1가)	폐문부재	2022-09-28	동대문지상상가	F02-083	35,076,480
5	최*근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51, 에이피엘렉스 1-1 리 부티크	이사불명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2-094	28,210,220
6	배*진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8, 1320호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2-112	113,177,780
7	한*숙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844, 102동 1903호 (돈암동)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2-127	4,389,720
8	이*관	서울 중구 신당동 52-224 삼호빌딩 2층	수취인불명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2-137	21,415,430
9	김*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랑로 76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102동 1303호	이사불명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3-002	42,117,580
10	윤*영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70, 107동 1005호 (덕풍동, 휴먼시아 꽃피마을 1단지)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033	16,071,360
11	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기정로 65, 106동 1203호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036	10,610,360
12	아*지	경기 남양주시 식송로 6-6, 301호	수취인불명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3-037	38,176,910
13	이*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115번안길 12, 202호 (망월동)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047	13,619,170
14	김*정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87길 8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049	53,922,000
15	박*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3길 34, 101동 309호 (공릉동, 대아파트)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062	7,661,900
16	산*호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5길 23, 221동 302호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064	13,701,160
17	이*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 105동 703호 (답십리동, 청계현대힐플러스)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097	22,750,090
18	박*진	서울시 중구 영삼리로 407, 102동 606호(신당동, 파인힐하남유보리)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109	10,603,090
19	김*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1번길 13, 609호 (전포동, 한일우애아이)	폐문부재	2022-10-05	동대문지상상가	F03-114	42,895,960
20	차*나	경기 일산 서구 일원로 97-11 두산위브더제니스 107동 4001호	수취인불명	2022-10-04	동대문지상상가	F03-115	24,603,450

연번	대상		공시승달사유	반송일자	채납내역		
	채납자	주소			주차장명	호수명	채납금액(원)
21	박*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8길 23, 1405동 601호 (상계동, 주공아파트)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116	4,290,880
22	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81 KCC스위첸아파트 3108동 204호	폐문부재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3-121	13,556,670
23	박*원	서울 강북구 삼양로 27길 95	폐문부재	2022-10-07	동대문지상상가	F03-124	7,615,700
24	다**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레미안스트필리스, 1302동 1603호	폐문부재	2022-10-07	동대문지상상가	F03-125	6,745,670
25	최*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나길 37 (정릉동)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129	27,570,040
26	이*관	*서울 중구 다산로 46길 17 오피스텔동 1910동 (청계천두산위브더제니스)*	이사불명	2022-09-29	동대문지상상가	F02-053	62,397,450
27	장*재	서울 중구 퇴계로 75길 7, 와이즈캐슬 503호	폐문부재	2022-09-30	동대문지상상가	F02-082	82,812,460
28	강*구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60-1 건덕빌라 3-101호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001	14,193,230
29	박*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78-6, 101호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014	68,359,840
30	강*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18동 801호 (하영삼리동, 센트라스)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052	40,275,010
31	김*환	서울 강북구 삼양로 117길 20, 나동 401호(수유동, 희원빌라)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053	11,168,270
32	장*광	서울 중구 흥인동 119번지 813호	폐문부재	2022-10-06	동대문지상상가	F03-127	37,019,440
33	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42, 1005동 1601호(상현동, 성북역아파트)	폐문부재	2022-11-04	동대문지상상가	F01-051	123,420
34	한*욱	서울 종로구 지봉로127길 35-8 1층	수취인불명	2022-11-03	동대문지상상가	F02-079	53,451,430
35	이*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7-15, 201호(동소문동4가)	폐문부재	2022-11-04	동대문지상상가	F03-063	12,697,520
36	정*	서울시 중구 다산로46길 17, 오피스텔 2403호(흥인동,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폐문부재	2022-11-04	동대문지상상가	F01-매점	27,371,950
37	권*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106	우편승달 불능	2022-09-27	동대문지상상가	F03-093	24,299,310
38	김*영	서울 성북구 장위로15길 79	우편승달 불능	2022-09-28	동대문지상상가	F02-047	17,432,870
39	주*원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77	우편승달 불능	2022-09-27	동대문지상상가	F03-091	6,535,770
40	노*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우편승달 불능	2022-09-28	동대문지상상가	F03-062	4,361,740
41	박*영	서울 중구 난계로17길 58-8	우편승달 불능	2022-09-28	동대문지상상가	F03-109	3,107,890
42	차*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서티4로 45	우편승달 불능	2022-11-14	동대문지상상가	F01-006	74,076,700

연번	대상		공시승달사유	반송일자	체납내역		
	채납자	주소			주차장명	호수명	체납금액(원)
43	이*광	서울 중구 다산로33길 12	우편송달 불응	2022-11-14	동대문지상상가	F02-065	2,954,110
44	홍*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로 145	우편송달 불응	2022-11-11	동대문지상상가	F03-108	8,870,550
45	이*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92길 15	우편송달 불응	2022-11-14	동대문지상상가	F02-090	17,028,56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1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07.

2. 공시송달 대상 : 재산(부동산) 압류 통지서

○ 압류 관련 내용

(단위 : 원)

연번	압류물건(부동산) - 급수설비 소재지	수도요금 체납 및 압류 현황			물건소유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납기	금액	압류일	성명	우편송달		
1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74가길 13, 가동 102호 (망우동, 비룡연립)	2019.05. ~2022.07	192,790	2022. 09.04	김○이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52-40 비룡 가동 102호 (망우동, 비룡연립)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642-0548
2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72가길 22, (지하) B동 101호 (망우동, 신성)	2020.09. ~2022.07	25,690	2022. 09.04	최○혁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72가길 22, (지하) B동 101호 (망우동, 신성)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642-0549
3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84나길 17-8 (면목동)	2021.06 ~2022.08	175,170	2022. 10.26	최○숙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84나길 17-8 (면목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478-4623
4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8길 50, 101호 (면목동, 성진아파트)	2021.06. ~2022.08	427,410	2022. 10.26	고○말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8길 50, 101호 (면목동, 성진아파트)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478-4626
5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79길 8-29, B동 401호 (면목동, 청백빌라)	2021.10. ~2022.08	495,410	2022. 10.26	김○란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79길 8-29 B동 401호(면목동 청백빌라)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478-4627
6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64길 60, 501호 (면목동)	2021.06. ~2022.08	169,140	2022. 10.26	정○철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26길 115 202호 (신림동 대림아트빌)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478-4631
7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79길 12-3 (면목동)	2020.08. ~2022.08	415,840	2022. 10.26	정○예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79길 12-3 (면목동)	폐문부재 등 (보관기간경과)	11026- 0478-4632

3.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담당 정은경, ☎02-3146-269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21호

2022년도 제13차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심의일시: 2022. 11. 17.(목), 14:30~16:50
2. 심의장소: 본관 3층 대회의실
3. 심의대상: 일반안전 18건(26작품)
4. 심의결과: 승인 12작품, 부결 13작품, 보류 1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진
				승인	부결	
1-1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조각	The Canivalia 25(축제)		○	
1-2			The flow		○	
1-3			Triple garden 7S		○	
2-1	송파구 장지동 842-1	회화	Apples		○	
2-2		조각	공간 확장된 구		○	
3	강서구 공항동 11-10번지 일대	조각	라르기시모		○	
4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대	조각	A line of projection	○		

2022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진
				승인	부결	
5	서초구 반포대로 16길 30	조각	외비우스-순환	○		
6-1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조각	The Open Dice	○		
6-2			Sweet Dream		○	
7	강서구 화곡동 980-19번지	조각	COMPOSITION	○		
8	구로구 가리봉동 113-1번지 일대	조각	Hope Space Drawing	○		
9	양천구 신월2동 489-3번지 일대	조각	Rafting(래프팅) 흔적	○		
10-1	강동구 길동 415-9번지	조각	행복한 하루	○		

2022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진
				승인	부결	
10-2			Breathing 4159	○		
11	강동구 성내동 87-1번지 일대	조각	나무_읽고 기억하다 N° 1	○		
12	송파구 방이동 42번지 일대	조각	Arboretum		○	
13	광진구 자양동 658-14번지 일대	조각	숨결		○	
14	서초구 서초동 1303-34	회화	Untitled -0180621		○	
15-1	광진구 자양4동 236번지 일대	조각	생동하는 생명체... 에너지 JL22-01		○	
15-2			대칭행렬 (Symmetric Matrix)	보	류	

2022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전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진
				승인	부결	
16-1	강남구 역삼동 831-7번지 일대	회화	Simultaneity 21-316		○	
16-2			Simultaneity 20-368		○	
17-1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조각	영원한 빛 Black Diamond	○		
17-2			IN OUT	○		
18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대	조각	한글놀이터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23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권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1-12-06 14:08:48	14허9867	10,300	서*진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5길
2	남산1호터널	2022-02-10 20:00:02	153허4687	10,300	주*** *한	서울 노원구 동일로
3	남산1호터널	2022-02-24 12:29:23	49호2351	10,300	신*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	남산1호터널	2022-02-24 14:33:18	49호2351	10,300	신*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	남산3호터널	2022-03-04 19:14:02	23호9144	10,300	박*옥	경기도 성남시 서현로210번길
6	남산1호터널	2022-03-15 07:00:46	01허9100	10,300	울* **** *사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7	남산3호터널	2022-03-15 17:25:27	153허9695	10,300	주*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3길
8	남산1호터널	2022-03-15 18:02:42	153허9695	10,300	주*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3길
9	남산1호터널	2022-03-16 08:49:15	57호6890	10,300	정*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0	남산1호터널	2022-03-16 18:58:07	57호6890	10,300	정*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1	남산1호터널	2022-03-17 08:45:19	57호6890	10,300	정*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2	남산1호터널	2022-03-18 13:35:06	153허9695	10,300	주*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3길
13	남산3호터널	2022-03-18 19:23:58	153허9695	10,300	주*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3길
14	남산1호터널	2022-03-22 19:46:00	153허9695	10,300	주*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3길
15	남산1호터널	2022-03-25 19:12:36	11호2344	10,300	삼*근	경기 화성시 효행로
16	남산1호터널	2022-03-28 11:28:39	153허9695	10,300	주*진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3길
17	남산1호터널	2022-04-07 20:45:03	154호4219	10,300	윤*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8	남산3호터널	2022-04-08 17:18:36	66허0466	10,300	김*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9	남산1호터널	2022-04-13 11:17:17	128허5667	10,300	이*성	서울 관악구 호암로26가길
20	남산1호터널	2022-04-14 14:01:45	29호8843	10,300	박*석	서울 은평구 갈현로
21	남산3호터널	2022-04-18 09:37:20	167호7945	10,300	정*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우2길
22	남산3호터널	2022-04-18 11:52:12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23	남산3호터널	2022-04-18 11:54:23	69두6960	10,300	테***던(정*화)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4	남산1호터널	2022-04-18 12:09:16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25	남산1호터널	2022-04-18 12:25:47	167허3126	10,300	송*익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6	남산3호터널	2022-04-18 17:13:56	122허9419	10,300	(주)*****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27	남산1호터널	2022-04-18 17:40:18	140허1594	10,300	아***텔(E *****C)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8	남산1호터널	2022-04-18 19:59:30	167호8303	10,300	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9	남산3호터널	2022-04-19 07:08:45	173호7560	10,300	주***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0	남산1호터널	2022-04-19 09:20:36	33호9613	10,300	김*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8길
31	남산1호터널	2022-04-19 11:31:59	104하5752	10,300	까**냥(이*수)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32	남산3호터널	2022-04-19 13:16:50	57하5427	10,300	김*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3	남산1호터널	2022-04-19 14:08:35	21수9639	10,300	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4	남산1호터널	2022-04-19 14:12:46	44하1900	10,300	주***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35	남산1호터널	2022-04-19 14:38:21	126호2967	10,300	이*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41번길
36	남산3호터널	2022-04-19 14:40:17	191하6101	10,300	에**** *숙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응지로110번길
37	남산1호터널	2022-04-19 15:34:57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38	남산3호터널	2022-04-19 16:43:33	104하5752	10,300	까**냥(이*수)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39	남산3호터널	2022-04-19 16:52:58	126호2967	10,300	이*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41번길
40	남산1호터널	2022-04-19 17:05:51	62하6048	5,150	제*(이*영)	경기 파주시 회동길
41	남산1호터널	2022-04-19 17:35:01	140하4138	10,300	주*** **랜	서울 중구 을지로5길
42	남산1호터널	2022-04-19 20:42:20	104가9806	10,300	김*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43	남산3호터널	2022-04-19 20:55:18	42호4553	10,300	(주)****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44	남산3호터널	2022-04-20 07:02:40	19하5612	10,300	김*환	서울 관악구 관악로14길
45	남산1호터널	2022-04-20 08:14:29	45하6957	10,300	박*선	경기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46	남산1호터널	2022-04-20 10:37:54	122하9419	10,300	(주)****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47	남산1호터널	2022-04-20 10:42:46	45하6957	10,300	박*선	경기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48	남산1호터널	2022-04-20 12:26:20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49	남산1호터널	2022-04-20 12:32:42	180가5188	10,300	더*****오(유*이)	서울 성동구 매봉길
50	남산3호터널	2022-04-20 17:12:02	152라3079	10,300	방*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51	남산3호터널	2022-04-20 18:17:01	34호8987	10,300	김*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성로
52	남산3호터널	2022-04-20 18:26:10	170하7640	10,300	수**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2길
53	남산1호터널	2022-04-20 19:25:52	49오5509	10,300	주*** **스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54	남산1호터널	2022-04-20 19:35:06	37호6845	10,300	(주)***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55	남산3호터널	2022-04-20 20:33:33	190하2284	10,300	오*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56	남산1호터널	2022-04-21 12:41:21	106호2034	10,300	윤*이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57	남산3호터널	2022-04-21 13:33:09	141하1202	10,300	주*** **티	서울 종로구 종로3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58	남산1호터널	2022-04-21 15:39:24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59	남산3호터널	2022-04-21 16:57:17	49하3899	10,300	스*** ** **사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60	남산3호터널	2022-04-21 17:17:39	42호9304	10,300	(주)***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1	남산1호터널	2022-04-21 17:18:31	260러9219	10,300	주*** ** **칠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62	남산3호터널	2022-04-21 18:49:10	49하3899	10,300	스*** ** **사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63	남산3호터널	2022-04-22 07:04:00	167호8997	10,300	김*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64	남산1호터널	2022-04-22 07:14:13	259조1098	10,300	알** ***(이*혁)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65	남산3호터널	2022-04-22 08:38:14	336로7575	10,300	이*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66	남산1호터널	2022-04-22 13:24:55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67	남산3호터널	2022-04-22 16:50:06	170허6005	10,300	대***** **사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68	남산3호터널	2022-04-22 17:30:27	104호7696	10,300	주*** ** **흙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
69	남산1호터널	2022-04-22 19:26:20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70	남산3호터널	2022-04-22 20:45:00	160허5278	10,300	지*송	서울 서초구 효령로20마길
71	남산1호터널	2022-04-25 10:41:13	178수8913	10,300	전***상(송*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2	남산1호터널	2022-04-25 12:59:54	166하7421	5,150	(주)**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73	남산1호터널	2022-04-25 13:26:54	156호2526	10,300	주*** **편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368번길
74	남산3호터널	2022-04-25 15:58:50	39하8900	10,300	서*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75	남산1호터널	2022-04-25 16:34:31	166하7421	5,150	(주)**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76	남산1호터널	2022-04-25 16:40:04	104허7483	10,300	최*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77	남산3호터널	2022-04-25 17:14:06	104허7483	10,300	최*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78	남산3호터널	2022-04-25 20:38:13	128허7805	10,300	지*송	서울 서초구 효령로20마길
79	남산1호터널	2022-04-25 20:38:37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80	남산1호터널	2022-04-26 08:18:23	148호5007	10,300	박*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1	남산1호터널	2022-04-26 08:46:29	162허9184	10,300	주*** **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2	남산1호터널	2022-04-26 13:06:26	31저9003	10,300	(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83	남산1호터널	2022-04-27 11:42:36	18소6884	10,300	이*엽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검안1로
84	남산1호터널	2022-04-27 13:00:38	31저9003	10,300	(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85	남산1호터널	2022-04-27 15:45:14	27하7445	10,300	파****즈	서울 서초구 매현로8길
86	남산3호터널	2022-04-27 16:47:52	42호5814	10,300	(주)*****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87	남산3호터널	2022-04-27 18:23:37	53하5730	10,300	사*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7길
88	남산1호터널	2022-04-28 08:33:32	31저9003	10,300	(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89	남산1호터널	2022-04-28 09:20:13	122하7573	10,300	주***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0	남산1호터널	2022-04-28 10:36:10	351무1344	10,300	어*****원 (김*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91	남산1호터널	2022-04-28 18:50:02	155하7917	10,300	이*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7길
92	남산3호터널	2022-04-29 11:23:53	167호6328	10,300	(주)***** 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93	남산1호터널	2022-04-29 11:51:21	28호7423	10,300	김*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94	남산1호터널	2022-04-29 12:00:50	177서9144	10,300	정*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95	남산3호터널	2022-04-29 13:28:10	147나4739	10,300	고*훈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20길
96	남산3호터널	2022-04-29 14:04:27	33호8639	10,300	(주)***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97	남산3호터널	2022-04-29 18:47:38	67호6375	10,300	박*빈	경기 양주시 고덕로
98	남산1호터널	2022-04-29 19:22:19	352도2288	10,300	8*****트(마*열)	대구 중구 동성로2길
99	남산1호터널	2022-04-29 19:52:01	21하5732	10,300	강*연(계***S)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51번길
100	남산3호터널	2022-05-02 10:01:48	160하5705	10,300	(주)*****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레스로
101	남산1호터널	2022-05-06 11:48:50	161하8771	10,300	전*찬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103번길
102	남산1호터널	2022-05-09 10:06:46	53하4308	10,300	유*진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103	남산1호터널	2022-05-09 20:13:46	145호3876	10,300	원**스(이*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104	남산1호터널	2022-05-10 09:17:53	171하1126	10,300	주*** ****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05	남산3호터널	2022-05-10 19:58:38	101하7482	10,300	윤*훈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7길
106	남산1호터널	2022-05-11 10:00:25	101하7920	10,300	김*태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9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2-05-16 07:06:14	33머7891	10,300	(주)스**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40번길
2	남산1호터널	2022-05-16 08:49:11	32버0240	10,300	황*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43길
3	남산3호터널	2022-05-16 08:53:59	226로7598	10,300	한*****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	남산1호터널	2022-05-16 10:27:44	53마4646	10,300	이*옥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5	남산3호터널	2022-05-16 11:11:55	24가1525	10,300	(주)엔***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6	남산1호터널	2022-05-16 11:32:34	56라4356	10,300	(주)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7	남산1호터널	2022-05-16 11:54:37	259보6805	10,300	도*숙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8	남산3호터널	2022-05-16 12:43:58	24로4130	10,300	T***E T*****B S*****U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5길
9	남산1호터널	2022-05-16 12:56:08	25수5358	10,300	박*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133번길
10	남산1호터널	2022-05-16 13:25:41	32다2923	10,300	성*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	남산3호터널	2022-05-16 13:45:59	58라5560	10,300	허*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2	남산1호터널	2022-05-16 13:50:37	150루4206	10,300	백*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13	남산1호터널	2022-05-16 14:00:48	33무4837	10,300	주식회사 바****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5길
14	남산3호터널	2022-05-16 15:51:05	51모4913	10,300	(주)미****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항도로31길
15	남산3호터널	2022-05-16 15:55:22	366조7500	10,300	장*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16	남산1호터널	2022-05-16 17:55:22	33머7891	10,300	(주)스**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40번길
17	남산3호터널	2022-05-16 18:06:30	101호3980	10,300	합자회사 경***카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18	남산3호터널	2022-05-16 18:53:58	01조1553	10,300	김*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9	남산3호터널	2022-05-16 19:26:05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20	남산3호터널	2022-05-16 19:28:39	08오6626	10,300	김*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2가길
21	남산3호터널	2022-05-16 20:31:14	58라5560	10,300	허*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22	남산1호터널	2022-05-17 09:44:36	36마6424	10,300	김*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34번길
23	남산3호터널	2022-05-17 09:59:04	173거3367	10,300	이*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2길
24	남산3호터널	2022-05-17 10:36:08	30오1574	10,300	송*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32나길
25	남산1호터널	2022-05-17 10:52:33	238버2850	10,300	장*영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0번길
26	남산3호터널	2022-05-17 11:22:22	14우1686	10,300	중*****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27	남산1호터널	2022-05-17 11:27:26	205나9516	10,300	조*제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28	남산1호터널	2022-05-17 11:29:58	31주5258	10,300	주식회사 우***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9	남산1호터널	2022-05-17 11:34:58	02거0528	10,300	(주)케**엘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30	남산1호터널	2022-05-17 11:39:18	39거3602	10,300	유*호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31	남산1호터널	2022-05-17 12:41:17	259무3731	10,300	이*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32	남산3호터널	2022-05-17 13:16:51	38너0428	10,300	유*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8길
33	남산1호터널	2022-05-17 13:28:56	51더1844	10,300	김*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길
34	남산1호터널	2022-05-17 13:31:38	15너7612	10,300	주식회사 세*****즈	전라남도 순천시 신산길
35	남산3호터널	2022-05-17 13:57:05	22주3271	10,300	엄*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1길
36	남산1호터널	2022-05-17 14:43:25	46모1882	10,300	홍*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37	남산3호터널	2022-05-17 14:50:36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8	남산1호터널	2022-05-17 15:07:39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39	남산3호터널	2022-05-17 15:13:17	243모7952	10,300	이*령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43번길
40	남산1호터널	2022-05-17 15:46:13	334부1738	10,300	정*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41	남산1호터널	2022-05-17 17:23:38	173거3367	10,300	이*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12길
42	남산1호터널	2022-05-17 17:29:35	202가9917	10,300	유*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1길
43	남산1호터널	2022-05-17 17:39:47	141모1537	10,300	C*이 L****이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76번길
44	남산1호터널	2022-05-17 17:40:23	145너6955	10,300	이*경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45	남산1호터널	2022-05-17 18:35:55	334부1738	10,300	정*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46	남산3호터널	2022-05-17 18:57:46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47	남산1호터널	2022-05-17 20:08:45	46누5680	10,300	이*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9길
48	남산3호터널	2022-05-18 07:11:11	36호8217	10,300	알****가 주식회사	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49	남산3호터널	2022-05-18 10:05:16	46누5680	10,300	이*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9길
50	남산3호터널	2022-05-18 10:43:29	40버5020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51	남산1호터널	2022-05-18 11:01:05	58리0466	10,300	백*욱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7길
52	남산3호터널	2022-05-18 11:24:26	62가9273	5,150	명***지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53	남산1호터널	2022-05-18 12:00:41	69마2693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송3길
54	남산3호터널	2022-05-18 13:44:04	57구6064	10,300	최*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5길
55	남산1호터널	2022-05-18 15:24:13	114너8584	10,300	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1길
56	남산1호터널	2022-05-18 15:24:52	60도4281	10,300	Z*****A M*****A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울마로384번길
57	남산3호터널	2022-05-18 15:50:06	35리4667	10,300	L*U Z****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4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58	남산1호터널	2022-05-18 16:38:47	23거0789	10,300	임*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59	남산1호터널	2022-05-18 16:58:23	114너8584	10,300	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1길
60	남산1호터널	2022-05-18 18:29:58	101호3144	10,300	주식회사 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61	남산1호터널	2022-05-18 18:37:15	17우0133	10,300	김*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2안길
62	남산1호터널	2022-05-18 18:41:26	50머6770	10,300	(주)청***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3	남산1호터널	2022-05-18 19:12:07	101허3298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64	남산1호터널	2022-05-18 19:22:50	36도4559	10,300	이*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407번길
65	남산1호터널	2022-05-18 19:23:19	32루6925	10,300	장*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66	남산3호터널	2022-05-19 08:50:26	55가0633	10,300	전*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나길
67	남산3호터널	2022-05-19 09:20:58	105조6839	10,300	홍*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39번길
68	남산3호터널	2022-05-19 09:37:49	164루1996	10,300	박*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3가길
69	남산1호터널	2022-05-19 10:31:26	65가5348	10,300	최*현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70	남산1호터널	2022-05-19 10:39:08	14라0452	10,300	김*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71	남산1호터널	2022-05-19 12:00:08	302너6075	10,300	박*순	경기도 평택시 특구로23번길
72	남산1호터널	2022-05-19 12:43:16	57오9599	10,300	김*빈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73	남산1호터널	2022-05-19 12:51:05	380더3176	10,300	윤*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창로
74	남산3호터널	2022-05-19 13:17:31	228수6441	10,300	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75	남산1호터널	2022-05-19 13:49:38	63너0487	10,300	신*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76	남산1호터널	2022-05-19 14:04:44	14가0260	10,300	양*준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77	남산3호터널	2022-05-19 14:05:38	60도4281	10,300	Z*****A M****A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울마로384번길
78	남산1호터널	2022-05-19 14:35:06	67버1630	10,300	주식회사 월*****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79	남산3호터널	2022-05-19 14:46:01	17두0922	10,300	주식회사 이***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80	남산1호터널	2022-05-19 15:10:48	40머4499	10,300	(주)에***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81	남산3호터널	2022-05-19 15:21:51	113고1675	10,300	주*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82	남산3호터널	2022-05-19 15:25:25	101하7933	10,300	(주)에****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83	남산1호터널	2022-05-19 15:25:33	28다2508	10,300	안*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14길
84	남산1호터널	2022-05-19 15:27:20	40머4499	10,300	(주)에***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85	남산1호터널	2022-05-19 16:10:34	14가0260	10,300	양*준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86	남산3호터널	2022-05-19 16:51:39	28소7804	10,300	김*수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87	남산1호터널	2022-05-19 18:38:48	05로2702	10,300	(주)에*****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8	남산1호터널	2022-05-19 18:58:26	53구0303	10,300	하*욱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89	남산1호터널	2022-05-19 19:40:19	57보9280	10,300	주식회사 신**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90	남산1호터널	2022-05-19 19:43:37	182보4016	10,300	K*M J***N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91	남산3호터널	2022-05-20 08:37:37	210너4655	10,300	공*성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92	남산3호터널	2022-05-20 10:02:28	52구7301	10,300	주식회사 중***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93	남산3호터널	2022-05-20 11:29:54	14구8785	5,150	주식회사 양***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94	남산1호터널	2022-05-20 12:00:17	34두0300	10,300	(주)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95	남산1호터널	2022-05-20 12:02:01	31노1331	10,300	강*욱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39번길
96	남산1호터널	2022-05-20 12:03:12	06부0324	10,300	함*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97	남산1호터널	2022-05-20 12:05:31	63너0487	10,300	신*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98	남산1호터널	2022-05-20 12:35:26	12수4970	10,300	박*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99	남산1호터널	2022-05-20 13:22:33	398무6265	10,300	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마길
100	남산1호터널	2022-05-20 14:01:56	06부0324	10,300	함*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01	남산1호터널	2022-05-20 14:14:50	11로7901	10,300	임*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02	남산1호터널	2022-05-20 14:17:17	67로8993	10,300	최*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4길
103	남산3호터널	2022-05-20 15:09:24	144조2002	10,300	지*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72번길
104	남산1호터널	2022-05-20 15:11:02	101허3745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05	남산3호터널	2022-05-20 15:49:07	18우1559	10,300	박*선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106	남산1호터널	2022-05-20 15:50:35	20하8413	10,300	에*****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07	남산1호터널	2022-05-20 15:56:08	04라0721	10,300	이*주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108	남산1호터널	2022-05-20 17:33:27	63너0487	10,300	신*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09	남산3호터널	2022-05-20 17:58:02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10	남산1호터널	2022-05-20 18:13:26	64구4695	10,300	임*범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111	남산1호터널	2022-05-20 18:36:43	38도9078	10,300	최*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16번길
112	남산3호터널	2022-05-20 18:49:53	18두0494	10,300	지*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113	남산1호터널	2022-05-20 19:03:47	335노1029	10,300	주식회사 더*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14	남산3호터널	2022-05-20 19:38:31	267우2042	10,300	유*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93번길
115	남산3호터널	2022-05-20 20:48:03	12라5079	10,300	무*****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16	남산3호터널	2022-05-20 20:51:20	62저3991	5,150	김*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8안길)
117	남산1호터널	2022-05-20 20:56:55	18두0494	10,300	지*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118	남산3호터널	2022-05-23 07:38:32	24보2405	5,150	엠*크(주)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19	남산1호터널	2022-05-23 07:39:59	166마3446	10,300	정*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2길
120	남산1호터널	2022-05-23 09:45:29	166마3446	10,300	정*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영산홍2길
121	남산3호터널	2022-05-23 11:37:43	57노4669	10,300	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0길
122	남산1호터널	2022-05-23 12:08:12	101호8169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3	남산1호터널	2022-05-23 12:55:33	51로1135	10,300	윤*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124	남산1호터널	2022-05-23 13:20:53	20려4730	10,300	H*M B*****D K*****H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8길
125	남산3호터널	2022-05-23 14:45:42	53주7618	10,300	전*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량2길
126	남산3호터널	2022-05-23 15:41:02	07저6432	10,300	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127	남산1호터널	2022-05-23 15:59:30	16무6290	10,300	주식회사 코**텍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128	남산3호터널	2022-05-23 16:33:20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29	남산1호터널	2022-05-23 16:39:10	59너8142	10,300	이*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3번길
130	남산1호터널	2022-05-23 17:08:10	55모6382	10,300	임*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3로
131	남산1호터널	2022-05-23 17:17:56	11주4294	10,300	임*배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48번길
132	남산1호터널	2022-05-23 17:21:17	43고0613	10,300	주식회사 부**업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133	남산1호터널	2022-05-23 17:51:55	43려1073	10,300	이*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134	남산1호터널	2022-05-23 17:57:10	29머6662	10,300	C**I H**G K*O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35	남산3호터널	2022-05-23 18:36:01	07저6432	10,300	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136	남산1호터널	2022-05-23 18:54:13	07도9495	5,150	이*희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170번길
137	남산3호터널	2022-05-23 19:18:15	60어0294	10,300	안*재	서울특별시 중구 철매로
138	남산1호터널	2022-05-23 20:54:12	315수6431	10,300	우****탈(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139	남산1호터널	2022-05-24 10:44:46	24머5267	10,300	박*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40	남산3호터널	2022-05-24 12:05:15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41	남산3호터널	2022-05-24 12:14:20	113고1675	10,300	주*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42	남산3호터널	2022-05-24 12:19:11	13모2287	5,150	(주)무*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43	남산1호터널	2022-05-24 12:23:32	64두7196	10,300	박*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44	남산3호터널	2022-05-24 13:26:27	20너4626	10,300	김*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45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45	남산3호터널	2022-05-24 13:40:41	113고1675	10,300	주*철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46	남산1호터널	2022-05-24 13:43:46	24머5267	10,300	박*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47	남산3호터널	2022-05-24 14:26:35	52노4243	5,150	H*****E Y****E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1길
148	남산3호터널	2022-05-24 17:42:59	101허3934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9	남산1호터널	2022-05-24 17:57:19	29하3105	10,300	(주)터****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9길
150	남산1호터널	2022-05-24 17:59:13	133머5728	5,150	한*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4로
151	남산1호터널	2022-05-24 18:38:12	11머5056	10,300	E*****T T*****N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6길
152	남산1호터널	2022-05-24 19:32:15	14라0452	10,300	김*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153	남산3호터널	2022-05-24 20:33:01	20나3571	10,300	양*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54	남산1호터널	2022-05-24 20:42:01	64서2241	10,300	유*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가길
155	남산1호터널	2022-05-25 07:09:56	316루5873	10,300	남*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56	남산1호터널	2022-05-25 09:05:25	42고6363	10,300	윤*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57	남산1호터널	2022-05-25 09:15:34	292더3182	10,300	현***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58	남산1호터널	2022-05-25 09:57:43	147누3476	5,150	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59	남산1호터널	2022-05-25 10:06:38	11모6407	10,300	문*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0나길
160	남산1호터널	2022-05-25 10:21:08	25두5317	10,300	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161	남산1호터널	2022-05-25 10:39:32	292머3914	10,300	롯데***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	남산3호터널	2022-05-25 11:18:28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63	남산1호터널	2022-05-25 11:49:54	20어1402	10,300	백*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164	남산1호터널	2022-05-25 13:06:39	272조1892	10,300	주식회사 이***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셋골로17번길
165	남산3호터널	2022-05-25 13:39:13	108머8175	10,300	알**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201번길
166	남산1호터널	2022-05-25 13:56:57	28도4743	10,300	박*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8길
167	남산3호터널	2022-05-25 14:07:10	144조2058	10,300	Y**G B*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168	남산1호터널	2022-05-25 14:49:57	61나3963	10,300	황*현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69	남산1호터널	2022-05-25 14:54:59	01허2358	5,150	주식회사 예*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170	남산3호터널	2022-05-25 14:58:17	359어6311	10,300	주식회사 예**다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71	남산1호터널	2022-05-25 15:07:11	47부9503	10,300	우*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172	남산1호터널	2022-05-25 15:08:28	06부0324	10,300	함*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73	남산1호터널	2022-05-25 15:19:35	11어9816	10,300	B* G*****N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174	남산1호터널	2022-05-25 16:27:03	36소5829	10,300	(주)유****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75	남산1호터널	2022-05-25 16:47:15	39우4691	10,300	김*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하로12번길
176	남산1호터널	2022-05-25 17:06:56	312노6734	10,300	이*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8길
177	남산3호터널	2022-05-25 17:18:18	61나3963	10,300	황*현	경기도 오산시 문시로
178	남산3호터널	2022-05-25 17:37:07	06리3799	10,300	주식회사 한**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179	남산1호터널	2022-05-25 17:49:35	133허1164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80	남산1호터널	2022-05-25 18:14:06	03나4818	10,300	(유)동***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신길
181	남산1호터널	2022-05-25 18:31:59	65버9581	10,300	와****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교잔로
182	남산1호터널	2022-05-25 18:38:50	165호9090	10,300	롯데탈(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183	남산1호터널	2022-05-25 19:00:54	01오2214	10,300	박*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가길
184	남산1호터널	2022-05-25 19:15:25	27저1257	10,300	디**티 협동조합(이*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185	남산1호터널	2022-05-25 19:58:09	20어1402	10,300	백*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전건중길
186	남산1호터널	2022-05-25 20:09:13	383우3694	5,150	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93길
187	남산3호터널	2022-05-26 09:18:56	105조6839	10,300	홍*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39번길
188	남산1호터널	2022-05-26 09:46:26	227구8668	10,300	주식회사 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89	남산1호터널	2022-05-26 09:55:56	1470260	10,300	양*준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190	남산3호터널	2022-05-26 10:10:16	24무0162	10,300	안*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91	남산3호터널	2022-05-26 10:27:24	303나6112	5,150	박*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192	남산3호터널	2022-05-26 10:44:44	35서3173	10,300	(주)로***스(상*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9번길
193	남산1호터널	2022-05-26 11:07:49	227구8668	10,300	주식회사 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94	남산3호터널	2022-05-26 11:56:45	24고7618	10,300	김*수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86번길
195	남산3호터널	2022-05-26 13:19:10	02거0528	10,300	(주)케**엘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96	남산1호터널	2022-05-26 13:31:20	23버5962	10,300	오*배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197	남산1호터널	2022-05-26 13:32:23	11주3072	5,150	김*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98	남산1호터널	2022-05-26 14:27:29	41주9110	10,300	김*용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199	남산3호터널	2022-05-26 14:54:16	53리0320	10,300	(주)탐***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200	남산3호터널	2022-05-26 14:56:48	19부3028	10,300	임*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1	남산1호터널	2022-05-26 15:02:57	157주8330	10,300	정*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02	남산3호터널	2022-05-26 15:30:33	40리5479	10,300	서*원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1546번길
203	남산1호터널	2022-05-26 15:46:19	24우7931	10,300	기*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04	남산1호터널	2022-05-26 17:00:58	20머6472	10,300	김*철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39번길
205	남산3호터널	2022-05-26 17:07:10	46부0204	10,300	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206	남산1호터널	2022-05-26 17:11:08	43리1073	10,300	이*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207	남산1호터널	2022-05-26 17:16:49	18노9396	10,300	이*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5길
208	남산3호터널	2022-05-26 17:20:04	317구6212	10,300	삼**자(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09	남산1호터널	2022-05-26 17:31:30	56라2395	10,300	박*홍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7번길파트)
210	남산1호터널	2022-05-26 18:26:14	150보2827	10,300	(주)사*****설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211	남산1호터널	2022-05-26 19:03:16	21무0804	10,300	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건송길
212	남산1호터널	2022-05-26 19:58:51	11루2601	10,300	주식회사 인*****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능양길
213	남산1호터널	2022-05-26 20:08:46	11모6195	10,300	손*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8길
214	남산1호터널	2022-05-27 07:24:44	57구5710	10,300	(주)송*****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15	남산1호터널	2022-05-27 09:36:11	13머0545	10,300	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216	남산1호터널	2022-05-27 09:55:30	52버2154	10,300	김*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217	남산1호터널	2022-05-27 10:31:24	161보5421	10,300	신*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218	남산1호터널	2022-05-27 11:04:56	42수2765	10,300	신*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219	남산1호터널	2022-05-27 11:39:46	27주8006	10,300	고*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장안길25번길
220	남산3호터널	2022-05-27 11:51:50	133허1070	10,300	㈜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221	남산1호터널	2022-05-27 12:33:15	101하4095	10,300	(주)그*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222	남산1호터널	2022-05-27 12:53:07	27주8006	10,300	고*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장안길25번길
223	남산1호터널	2022-05-27 13:58:41	60머0330	10,300	신*자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224	남산1호터널	2022-05-27 14:42:18	27주8006	10,300	고*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장안길25번길
225	남산1호터널	2022-05-27 15:40:22	09모6265	10,300	김*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226	남산1호터널	2022-05-27 15:50:31	157주8330	10,300	정*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27	남산1호터널	2022-05-27 16:21:41	290무2133	10,300	이*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228	남산1호터널	2022-05-27 17:11:21	42가0122	10,300	김*원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29	남산3호터널	2022-05-27 17:37:34	210머5061	5,150	김*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
230	남산3호터널	2022-05-27 18:01:59	321부9948	10,300	주식회사 예**즈(상*용)	경기도 부천시 봉오대로556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31	남산1호터널	2022-05-27 18:04:57	41구0529	10,300	황*한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145번길
232	남산1호터널	2022-05-27 18:57:13	207부8508	10,300	센****아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3	남산1호터널	2022-05-27 20:26:22	232마8169	10,300	이*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34	남산3호터널	2022-05-27 20:40:53	54로3271	10,300	홍*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
235	남산3호터널	2022-05-30 07:28:58	116거1771	5,150	김*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36	남산1호터널	2022-05-30 07:37:51	43너3402	10,300	김*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237	남산1호터널	2022-05-30 08:44:02	25구2198	10,300	A* J****O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38	남산1호터널	2022-05-30 08:50:54	245우8520	10,300	현***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39	남산3호터널	2022-05-30 09:25:19	333려2661	10,300	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240	남산3호터널	2022-05-30 09:41:06	55가3536	10,300	최*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1길
241	남산3호터널	2022-05-30 13:46:34	56두1986	5,150	한*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3길
242	남산1호터널	2022-05-30 14:56:30	02오9499	10,300	이*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78길
243	남산3호터널	2022-05-30 15:36:22	06무1014	10,300	김*석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244	남산3호터널	2022-05-30 16:04:41	276버8501	10,300	정*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245	남산1호터널	2022-05-30 16:21:36	51두1855	10,300	이*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246	남산1호터널	2022-05-30 16:22:55	18버5566	10,300	이*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247	남산1호터널	2022-05-30 16:43:58	02서1227	10,300	주식회사 두***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2길
248	남산1호터널	2022-05-30 17:24:57	329나9398	10,300	박*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249	남산3호터널	2022-05-30 17:25:11	21려9187	10,300	C***Y K****N S****Y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홍로3나길
250	남산1호터널	2022-05-30 18:38:41	286서9872	10,300	이*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251	남산3호터널	2022-05-30 19:16:20	55두3344	10,300	노*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1길
252	남산1호터널	2022-05-30 19:22:14	50저5902	10,300	C**I J***Y S**G J*N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253	남산1호터널	2022-05-30 20:57:18	02서1227	10,300	주식회사 두***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2길
254	남산1호터널	2022-05-31 08:34:58	26가5867	10,300	최*정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255	남산1호터널	2022-05-31 08:53:33	25구2198	10,300	A* J****O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56	남산1호터널	2022-05-31 09:25:32	26모2902	10,300	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57	남산3호터널	2022-05-31 10:11:49	08거2248	10,300	김*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258	남산3호터널	2022-05-31 10:13:18	65소5626	10,300	R*W, S**G S*O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59	남산1호터널	2022-05-31 10:24:18	53보0164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60	남산1호터널	2022-05-31 10:27:43	162버8669	10,300	황*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23길
261	남산1호터널	2022-05-31 11:36:56	317여7179	10,300	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21길
262	남산1호터널	2022-05-31 12:20:53	02주7270	10,300	박*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263	남산1호터널	2022-05-31 12:49:58	10호8739	10,300	주식회사 제*****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4길
264	남산1호터널	2022-05-31 12:55:31	10호8739	10,300	주식회사 제*****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4길
265	남산3호터널	2022-05-31 12:58:07	41누9257	10,300	성*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길
266	남산1호터널	2022-05-31 14:27:41	36저4452	10,300	주식회사 엘**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267	남산1호터널	2022-05-31 14:29:19	30나0875	5,150	오*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268	남산3호터널	2022-05-31 15:00:18	59수7908	5,150	이*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69	남산3호터널	2022-05-31 15:08:41	69우1352	10,300	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70	남산1호터널	2022-05-31 15:11:10	19라7174	10,300	주식회사 옹***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71	남산3호터널	2022-05-31 15:19:32	02다3671	10,300	김*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272	남산3호터널	2022-05-31 15:31:34	14주3590	10,300	김*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73	남산3호터널	2022-05-31 15:54:55	69우1352	10,300	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74	남산1호터널	2022-05-31 16:04:20	163도3182	10,300	이*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양마로
275	남산1호터널	2022-05-31 16:21:44	48나5456	10,300	배*현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1623번길
276	남산3호터널	2022-05-31 17:02:50	45우6582	10,300	이*철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2길
277	남산1호터널	2022-05-31 17:09:26	05도9182	10,300	(주)에*****스(상*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278	남산1호터널	2022-05-31 17:44:31	17오4816	10,300	주식회사 무***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가길
279	남산1호터널	2022-05-31 17:46:41	05고3646	10,300	최*웅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102번길
280	남산3호터널	2022-05-31 18:01:52	321부9948	10,300	주식회사 예**즈(상*용)	경기도 부천시 봉오대로556번길
281	남산1호터널	2022-05-31 18:42:25	258수3135	10,300	L* Q*****G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45길
282	남산1호터널	2022-05-31 19:43:18	124도2426	5,150	이*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26호
시유재산 매각대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과·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국외이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공고내용 : 시유재산 매각대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매각대금의 분납(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나. 연체료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다.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가. 공시송달내역

연번	대상자	과세 정보	과세연월	본세(원)	이자(원)	연체료(원)	체납금액(원)	비 고
1	고○형	- 대상 : 중구 황학동 2275 (4.59㎡) - 분납 회차 : 14~19회차 - 매매계약일 : 2004.05.10. - 총 매각금액 : 17,946,900원 매각사유 : 황학재개발구역 편입	201704	850,110	178,520	635,130	1,663,760	현지이주자
			201804	850,110	153,010	551,870	1,554,990	
			201904	850,110	127,510	424,350	1,401,970	
			202004	850,110	102,290	296,840	1,249,240	
			202104	850,110	76,500	169,550	1,096,160	
			202204	850,110	51,000	44,480	945,590	
2	김○자	- 대상 : 중구 황학동 2275 (4.66㎡) - 분납 회차 : 17~18회차 - 매매계약일 : 2004.05.10. - 총 매각금액 : 15,168,300원 매각사유 : 황학재개발구역 편입	202004	718,490	86,450	250,880	1,055,820	국적상실자
			202104	718,490	64,660	143,300	926,450	
			202204	718,490	43,100	37,590	799,180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함

나. 공시송달기간 : 2022.11.24.~ 2022.12.08. (공고일로부터 14일)

다. 공시송달자 주소 : 거소 불명 (국외이주자)

○ 상기 고지내역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고기간이 도래된 경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 등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 02-2133-3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128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제223호(2022.5.19.)로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공 원 명 : 능동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3. 면 적 : 560,552.00㎡
4. 조성계획 변경(안)
 - 주요(변경)내용 : 화장실 증축
 - 기반시설(도로) : 51,505.98㎡ → 51,459.39㎡ (감 46.59㎡)
 - 편익시설(화장실) : 22,457.21㎡ → 22,566.51㎡ (증 109.3㎡)
 - 녹지 및 기타 : 339,415.18㎡ → 339,352.47㎡ (감 62.71㎡)
5.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02-2133-2036)
7. 본 조성계획 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광진구 능동1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60,552.00	221,136.82	72	24,209.20	52,550.69	667	560,552.00	221,199.53	72	24,263.76	52,670.65	667	
어린이 대공원지구	536,088.50	211,543.18	60	22,609.53	49,527.06	663	536,088.50	211,605.89	60	22,664.09	49,647.02	663	
어린이 화관지구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시설율 (법정40%)	(221,136.82 / 560,552.00) × 100 = 39.45 %						(221,199.53 / 560,552.00) × 100 = 39.46 %						증 0.01%
건폐율 (법정10%)	(24,209.20 / 560,552.00) × 100 = 4.32 %						(24,263.76 / 560,552.00) × 100 = 4.33 %						증 0.0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560,552.00	221,136.82	72	24,209.20	52,550.69	667	560,552.00	221,199.53	72	24,263.76	52,670.65	667	
기반시설	소계	64,495.84					64,449.25	64,449.25					감 46.59㎡
	도로	51,505.98					51,459.39	51,459.39					감 46.59㎡
	광장	12,989.86					12,989.86	12,989.86					
조경시설	17,331.29	17,331.29				5	17,331.29	17,331.29				5	
휴양시설	1,594.04	1,594.04	4	236.56	236.56		1,594.04	1,594.04	4	236.56	236.56		
유흥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운동시설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교양시설	59,447.65	59,447.65	31	17,220.41	41,556.69	26	59,447.65	59,447.65	31	17,220.41	41,556.69	26	
편익시설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증 109.3㎡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39,415.18						339,352.47						감 62.71㎡
그밖의 시설 (동물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2.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대공원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 음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 음물 (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536,088.50	211,543.18	60	22,609.53	49,527.06	663	536,088.50	211,605.89	60	22,664.09	49,647.02	663	
기본 시설	소 계	62,899.31					62,852.72	62,852.72					감 46.59㎡
	도 로	49,909.45					49,862.86	49,862.86					감 46.59㎡
	광 장	12,989.86					12,989.86	12,989.86					
조경시설	17,267.39	17,267.39				5	17,267.39	17,267.39				5	
휴양시설	1,579.84	1,579.84	4	236.56	236.56		1,579.84	1,579.84	4	236.56	236.56		
유희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운동시설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교양시설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편익시설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증 109.3㎡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24,545.32						324,482.61						감 62.71㎡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대)	747.00	747.00					747.00	747.00					

3. 시설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62,899.31	62,899.31							62,852.72	62,852.72					감 46.59㎡
	도 로	가	능동 18	42,383.26	42,383.26					가	능동 18	42,344.59	42,344.59					감 38.67㎡
	산책로	나	"	7,526.19	7,526.19					나	"	7,518.27	7,518.27					감 7.92㎡
	광 장	다	"	12,989.86	12,989.86					다	"	12,989.86	12,989.86					
	진입광장	다-1	"	(4,427.00)	(4,427.00)					다-1	"	(4,427.00)	(4,427.00)					
	빛의광장	다-2	"	(4,445.38)	(4,445.38)					다-2	"	(4,445.38)	(4,445.38)					
	판타지플라자	다-3	"	(1,465.58)	(1,465.58)					다-3	"	(1,465.58)	(1,465.58)					
	육각정광장	다-4	"	(2,281.90)	(2,281.90)					다-4	"	(2,281.90)	(2,281.90)					
	아외음악당광장	다-5	"	(370.00)	(370.00)					다-5	"	(370.00)	(370.00)					
	계			17,267.39	17,267.39				5			17,267.39	17,267.39				5	
	연 못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 환경연못	①-1	"	(5,061.78)	(5,061.78)				(1)	①-1	"	(5,061.78)	(5,061.78)				(1)	
	- 생태연못	①-2	"	(8,700.00)	(8,700.00)				(1)	①-2	"	(8,700.00)	(8,700.00)				(1)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생태계류	①-3	"	(621.00)	(621.00)					(1)	①-3	"	(621.00)	(621.00)						(1)
	분수대	②	"	959.95	959.95					2	②	"	959.95	959.95						2
	- 디지털분수	②-1	"	(706.50)	(706.50)					(1)	②-1	"	(706.50)	(706.50)						(1)
	- 캐스케이드1	②-2	"								②-2	"								
	- 캐스케이드2	②-3	"	(253.45)	(253.45)					(1)	②-3	"	(253.45)	(253.45)						(1)
	화 단	라	"	1,400.25	1,400.25						라	"	1,400.25	1,400.25						
	정 원	④	"								④	"								
	- 놀이마당	④-1	"								④-1	"								
	- 깃대원	④-2	"								④-2	"								
	- 솟대원	④-3	"								④-3	"								
- 정승원	④-4	"								④-4	"									
	실개천		"	524.41	524.41						"	524.41	524.41							
	계			1,579.84	1,579.84		4	236.56				1,579.84	1,579.84		4	236.56	236.56			
휴양시	육각정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223.3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서울	- 육각정 1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2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3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군자정	2	"	39.00	39.00	R.C 1	13.22	13.22		2	"	39.00	39.00	R.C 1	13.22	13.22		
	월 터		"	135.84	135.84						"	135.84	135.84					
안산시	아영장		"	960.00	960.00						"	960.00	960.00					
	계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소 계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매포소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과학오락관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안산시	- 과학오락관	7-1		(225.66)	(225.66)		(225.66)	(225.66)		7-1		(225.66)	(225.66)		(225.66)	(225.66)		
	- 입체영상관	7-2		(225.66)	(225.66)		(225.66)	(171.01)		7-2		(225.66)	(225.66)		(225.66)	(171.01)		
	- 화장실 3	7-3		(62.23)	(62.23)		(62.23)	(168.49)		7-3		(62.23)	(62.23)		(62.23)	(168.49)		
	사무실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총계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구분	유령의나라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섬터(아외무대)	46	"	584.71	584.71						46	"	584.71	584.71						
	대안작성물	소 계	소계		22,518.22	22,518.22						소계		22,518.22	22,518.22						
		스윙거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회전목마	⑨	"	86.55	86.55	철골					⑨	"	86.55	86.55	철골					
		회전컴	⑩	"	66.44	66.44	철골					⑩	"	66.44	66.44	철골					
		키다리아타 (미니카)	⑪	"	176.00	176.00	철골					⑪	"	176.00	176.00	철골					
		탱크전차	⑫	"	757.19	757.19	철골					⑫	"	757.19	757.19	철골					
		범 파 카	⑬	"	254.34	254.34	철골					⑬	"	254.34	254.34	철골					
		디노기차	⑭	"	392.24	392.24	철골					⑭	"	392.24	392.24	철골					
유형시설	카니발 코 너	⑮	"	69.75	69.75	철골					⑮	"	69.75	69.75	철골						
	모노레일	⑯	"	762.54	762.54	레일					⑯	"	762.54	762.54	레일						
	기차여행	⑰	"	157.50	157.50	레일					⑰	"	157.50	157.50	레일						
	스페이스하이어	⑱	"	86.59	86.59	철골					⑱	"	86.59	86.59	철골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뮤직익스프레 스	㉑	"	346.70	346.70	철골					㉑	"	346.70	346.70	철골					
	트릭스테이션	㉒	"	87.92	87.92	철골					㉒	"	87.92	87.92	철골					
	문도당고 (편하우스)	㉓	"	82.68	82.68	철골					㉓	"	82.68	82.68	철골					
	전자사격장	㉔	"	40.00	40.00	철골					㉔	"	40.00	40.00	철골					
	서스펜디드패 미리코스터	㉕	"	2,377.89	2,377.89	철골					㉕	"	2,377.89	2,377.89	철골					
	드롭타워	㉖	"	178.69	178.69	철골					㉖	"	178.69	178.69	철골					
	웨이브스윙	㉗	"	422.42	422.42	철골					㉗	"	422.42	422.42	철골					
	슈퍼점퍼	㉘	"	285.27	285.27	철골					㉘	"	285.27	285.27	철골					
	후름라이드	㉙	"	1,658.65	1,658.65	철골					㉙	"	1,658.65	1,658.65	철골					
	슈퍼버이킹	㉚	능동 18	264.87	264.87	철골					㉚	능동 18	264.87	264.87	철골					
	개구리점프	㉛	"	61.83	61.83	철골					㉛	"	61.83	61.83	철골					
	컨터키	㉜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㉜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스윙베어	㉝	"	106.80	106.80	철골					㉝	"	106.80	106.80	철골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크레이지마우스	㉔	"	343	343	철골					㉔	"	343	343	철골					
	크레이지댄스	㉔	"	255	255	철골					㉔	"	255	255	철골					
	아쿠아보트	㉔	"	358	358	콘크리트					㉔	"	358	358	콘크리트					
	미니버이킹	㉔	"	12.34	12.34	철골					㉔	"	12.34	12.34	철골					
	기 타			12,425.36	12,425.36									12,425.36	12,425.36					
본 이 문 수 들 이 마 당	소 계	능동 18	소계	5,962.29	5,962.29						소계	능동 18	5,962.29	5,962.29						
	분수놀이마당 11	"		1,660.76	1,660.76						11	"	1,660.76	1,660.76						
	감성놀이마당 12	"		4,301.53	4,301.53						12	"	4,301.53	4,301.53						
	계	능동 18	계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계	능동 18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안 내 시 정	축구장	13-1	"	(8,212.00)	(8,212.00)						13-1	"	(8,212.00)	(8,212.00)						
	헬스파크	14	"	4,317.54	4,317.54						14	"	4,317.54	4,317.54						
	- 헬스파크1	14-1	"	(3,545.54)	(3,545.54)						14-1	"	(3,545.54)	(3,545.54)						
	- 헬스파크2	14-2	"	(227.00)	(227.00)						14-2	"	(227.00)	(227.0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 헬스파크3	14-3	"	(320.00)	(320.00)					14-3	"	(320.00)	(320.00)							
	- 헬스파크4	14-4	"	(225.00)	(225.00)					14-4	"	(225.00)	(225.00)							
	미니축구장	15	"	750.00	750.00					15	"	750.00	750.00							
	실외테니스장	44	"	1,588.44	1,588.44					44	"	1,588.44	1,588.44							
	실내테니스장-1	44-1	"	(794.22)	(794.22)					44-1	"	(794.22)	(794.22)							
	실내테니스장-2	44-2	"	(794.22)	(794.22)					44-2	"	(794.22)	(794.22)							
편 의 시 설	계		능동 18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계	능동 18	22,566.51		15	3,128.70	4,846.07	26	증 109.3㎡	
	소계			22,384.41	22,384.41		15	3,074.14	4,726.11	20	소계		22,493.71		15	3,128.70	4,846.07	20	증 109.3㎡	
	판매시설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 카페테리아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출내카페테리아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안내센터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화 장 실	27	"	1,579.04	1,579.04		10	853.31	845.45		27	"	1,688.34	1,688.34		10	907.87	965.41		증 109.3㎡

관내 시설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일반 시설	- 화장실 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 화장실 3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 화장실 6	27-3	"	(94.02)	(94.02)	R.C (1)		(94.02)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 화장실 7	27-4	"	(69.30)	(69.30)	R.C (1)		(69.30)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 화장실 9	27-5	"	(70.71)	(70.71)	R.C (1)		(70.71)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 화장실 11	27-6	"	(65.86)	(65.86)	R.C (1)		(65.86)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 화장실 13	27-7	"	(36.20)	(36.20)	조적 (1)		(36.20)		27-7	"	(145.50)	(145.50)	R.C (1)		(90.76)	(156.16)	± 109.3㎡ 2층 근로자유계설
	- 화장실 17	27-8	"	(49.59)	(49.59)	조적 (1)		(49.59)		27-8	"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 복합화장실	27-9	"	(526.63)	(526.63)	R.C (1)		(188.58)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 고가리화장실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141.36)	
	팔 각 당	28	"	644.30	644.30	R.C 1	1	644.30	2,304.13	28	"	644.30	644.30	R.C 1	1	644.30	2,304.13	
특별 시설	주 차 장	29	"	17,488	17,488					29	"	17,488	17,488				4	
	정 문	29-1	능동 18	(5,159.00)	(5,159.00)				(2)	29-1	능동 18	(5,159.00)	(5,159.00)				(2)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후 문	29-2	"	(7,155.00)	(7,155.00)				(1)	29-2	"	(7,155.00)	(7,155.00)				(1)	
	후 문	29-3	"	(5,174.00)	(5,174.00)				(1)	29-3	"	(5,174.00)	(5,174.00)				(1)	
	간이판매시설 (정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간이판매시설 (후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공작물	소계		72.80	72.80				6	소계		72.80	72.80				6	
	음 수 대	㉞	능동 18	72.80	72.80				6	㉞	능동 18	72.80	72.80				6	
	공중전화	㉞	"	(9.70)	(9.70)				(1)	㉞	"	(9.70)	(9.70)				(1)	
	의 자	㉞	"	(1,952.00)	(1,952.00)				(1)	㉞	"	(1,952.00)	(1,952.00)				(1)	
	휴 지 통	㉞	"	(300.00)	(300.00)				(1)	㉞	"	(300.00)	(300.00)				(1)	
	계	계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계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양	소계		702.36	702.36				21	소계		702.36	702.36				21	
	시 설	㉞	능동18	579.36	579.36				12	㉞	능동18	579.36	579.36				12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념 비	㉔	"	123.00	123.00					9	㉔	"	123.00	123.00					9	
		소계		58,240.67	58,240.67		27	16,715.79	41,052.07	4	소계		58,240.67	58,240.67		27	16,715.79	41,052.07	4	
	아외음악당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	4	1,664.99	2,193.28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	4	1,664.99	2,193.28		
	아외음악당	16-1	"	(7,327.60)	(7,327.60)	RC+	(1)	(1,395.05)	(1,926.10)		16-1	"	(7,327.60)	(7,327.60)	RC+	(1)	(1,395.05)	(1,926.10)		
	옥외화장실 1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2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3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식 물 원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동 물 사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3.06	2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3.06	2	
	열대동물사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물 새 장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교 양 시 절	어린이동물원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대동물관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원숭이동산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소맹수사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맹금사	18-7	"	(184.75)	(184.75)	"		-	(1)	18-7	"	(184.75)	(184.75)	"		-	(1)	
	초식수사파리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사슴전시장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수서동물사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초식전시장	18-11	"	(1,500.00)	(1,500.00)					18-11	"	(1,500.00)	(1,500.00)					
	동물공영장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3.01)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3.01)	
기타	동물병원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앵무마을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타(관람통로)	18-1 4	"	(9,407.59)	(9,407.59)				(1)	18-1 4	"	(9,407.59)	(9,407.59)				(1)	
	낙타사육장	18-1 5	"	(96.00)	(96.00)	조적	(1)	(96.00)		18-1 5	"	(96.00)	(96.00)	조적	(1)	(96.00)		
	시민안전체험관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인형전시장	20	능동 18	365.00	365.00	R.C	1	365.00		20	능동 18	365.00	365.00	R.C	1	365.00		
	숲속체험장	21	"	707.08	707.08					21	"	707.08	707.08					
	숲속체험시설	22	"	1,063.69	1,063.69					22	"	1,063.69	1,063.69					
	전시장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전시벽	㉔	"	6.00	6.00					㉔	"	6.00	6.00					
	유강원	24	"	424.56	424.56					24	"	424.56	424.56					
	어린이교통체험관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서울크즈센터	36	"	6,600.00	6,600.00	RC+ 철골	1	3,367.18 19,543.44		36	"	6,600.00	6,600.00	RC+ 철골	1	3,367.18 19,543.44		
	아리수홍보관	37	"	3,350.77	3,350.77	RC+ 철골	1	679.10 887.50		37	"	3,350.77	3,350.77	RC+ 철골	1	679.10 887.5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계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소계		1,704.60	1,704.60		8	1,488.60	1,704.60		소계		1,704.60	1,704.60		8	1,488.60	1,704.60		
	정 문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후 문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구의문	32	"	31.92	31.92		1	31.92	31.92		32	"	31.92	31.92		1	31.92	31.92		
	투고입 변전실	33	"		396.00	R.C	1	396.00	396.00		33	"		396.00	R.C	1	396.00	396.00		
	영선반창고	34	"		420.00	경량 철골	1	420.00	420.00		34	"		420.00	경량 철골	1	420.00	420.00		
	수목관리실	36	"		320.67	조적	1	320.67	320.67		36	"		320.67	조적	1	320.67	320.67		
	수처리시설	37	"		59.13	조적	1	59.13	59.13		37	"		59.13	조적	1	59.13	59.13		
	공원초소(능동문)	49	"		12.96	R.C	1	12.96	12.96		49	"		12.96	R.C	1	12.96	12.96		
	공 작 물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올타리 담장		능동 18						1		능동 18						1	
	안 내 판		"						140		"						140	
	가 로 등		"						460		"						460	
	고임변전실	㉔	"	94.60	94.60				4	㉔	"	94.60	94.60				4	
	음악분수제어실	38	"	80.00	80.00			80.00	1	38	"	80.00	80.00		80.00	80.00	1	
	기차동산																	
부 지 내 기 타	계			324,545.32								324,482.61						감 62.71㎡
	잔 디 밭	마	능동18	50,836.45						마	능동18	50,836.45						
	녹 지 대	바	"	81,405.24						바	"	81,342.53						감 62.71㎡
	수 림 대	사	"	192,303.63						사	"	192,303.63						
그 밖 의 시 원	동물놀이터		능동18	747.00	747.00						능동18	747.00	747.00					

4. 도로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8,807.14	49,909.45				감46.59㎡
변경					8,807.14	49,862.86				
당초	대로	소 계			684.00	14,889.38				
당초		3	1	25~61	562.00	10,746.79	후문진입로	판타지 플라자	후문지구계	
당초		3	2	24~50	122.00	4,142.59	정문진입로	정 문	빛의광장	
당초	소로	소 계			4,803.69	27,493.88				감38.67㎡
변경					4,803.69	27,455.21				
당초		2	1	8	443.20	3,545.60	중앙로	빛의광장	팔각당	
당초		3	1	6	684.80	4,458.00	놀이마당, 외곽순환	빛의광장	판타지플라자	
당초		3	2	6	871.00	5,226.00	생태연못, 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당초		3	3	4	633.00	2,532.00	숲속체험장 순환	축구장	동물원	
당초		3	4	6	74.00	444.00	대동물관	팔각당	대동물관 동쪽	
당초		3	5	5	138.02	690.10	동물원, 카페테리아	어린이 동물원	동물공연장	
당초		3	6	6	474.00	2,844.0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당초		3	7	6	75.00	450.00	능동문 진입로	주차장	놀이마당	
당초		3	8	5	240.00	1,200.00	구의문 진입로	구의문	사슴전시장	
당초		3	9	5	232.00	1,160.00	동물공연장	광나루길	동물공연장	
당초		2	3	10	125.00	1,250.00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당초		3	10	5	93.00	465.00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당초		3	11	5	232.00	1,160.00	관리동선	후문주차장	후문진입로	
당초		3	12	4	123.02	492.08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감38.67㎡
변경		3	12	4	123.02	453.41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당초		3	13	4	57.00	228.00	카페테리아	식물원	카페테리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14	4	143.00	572.00	놀이마당	중앙로	생태숲	
당초		3	15	4	45.00	180.00	영선반창고	중앙로	영선반창고	
당초		3	16	6	57.25	343.50	야외음악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7	4	26.60	106.40	야외음악당	김동인동상	김동인동상	
당초		4	18	4	36.80	147.20	야외음악당	분수놀이마당	김동인동상	
당초		소 계			3,126.45	7,526.19				감7.92㎡
변경					3,126.45	7,518.27				
당초	산책로	4	1	3	150.00	450.00	산책로	중앙로	숫대원	
당초		4	2	2.3	140.70	323.61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3	1.5~3	350.01	983.53	산책로	전시장	팔각당	
당초		4	4	3	214.00	642.00	산책로	숫대원	어린이동물원	
당초		4	5	3	150.00	450.00	산책로	화장실	조만식동상	
당초		4	6	3	120.00	360.00	산책로	흙내음 카페테리아	조만식동상	
당초		4	7	3	124.02	372.06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8	3	75.03	225.09	산책로	놀이마당	중앙로	
당초		4	9	3	87.00	261.00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10	3	54.00	162.00	산책로	분수놀이 마당	생태계류	
당초		4	11	2.3	68.20	156.86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2	2	70.91	141.82	산책로	전시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3	2	52.00	104.00	산책로	육각정	녹지	감7.92㎡
변경		4	13	2	52.00	96.08	산책로	육각정	녹지	
당초		4	14	2	42.00	84.00	산책로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당초		4	15	2	28.20	56.40	산책로	부지외곽	외곽순환로	
당초		4	16	2	22.30	44.60	산책로	부지외곽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7	1.8	168.07	302.53	산책로		외곽순환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	18	1.8	44.99	80.98	산책로	생태숲산책로	생태숲산책로	
당초		4	19	1.8	24.24	43.63	산책로	부지외곽	생태숲산책로	
당초		4	20	1.5	95.30	142.9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0	1.5	28.83	43.25	산책로	산책로	아리수홍보관	
당초		4	21	1~2	392	427.48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당초		4	22	1	50.80	50.8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3	4	96.40	385.60	산책로	김등인동상	야외공연장	
당초		4	24	4	71.30	285.20	산책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25	2	49.15	98.30	산책로	환경연못	육각정	
당초		4	26	1.5~3	357	848.5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5.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회관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기반시설	1,596.53	1,596.53					1,596.53	1,596.53					
조경시설	63.90	63.90					63.90	63.90					
휴양시설	14.20	14.20					14.20	14.20					
운동시설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교양시설	504.62	504.62	4	504.62	504.62	1	504.62	504.62	4	504.62	504.62	1	
녹지,기타	14,869.86						14,869.86						

6. 시설조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1,596.53	1,596.53								1,596.53	1,596.53						
	도 로	가	능동18	1,450.74	1,450.74						가	능동18	1,450.74	1,450.74						
	산책로	나	"	145.79	145.79						나	"	145.79	145.79						
조 경 시 설	계	계		63.90	63.90						계		63.90	63.90						
	벽 천	소계	능동18	63.90	63.90						소계	능동18	63.90	63.90						
휴 양 시 설	계	계		14.20	14.20						계		14.20	14.20						
	기로휴게공간	소계	능동18	14.20	14.20						소계	능동18	14.20	14.20						
운동 시설	계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건 축 물)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탈 의 실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관 리 실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매 점 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매 점 2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매 점 3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식 당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화 장 실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창 고	8	"	9.92	9.92	목조	1	9.92	9.92		8	"	9.92	9.92	목조	1	9.92	9.92		
	(공 작 물)	소계		6,319.34	6,319.34					3	소계		6,319.34	6,319.34					3	
	수 영 장 1	①	"	3,421.04	3,421.04	-	-	-	-		①	"	3,421.04	3,421.04	-	-	-	-		
	수 영 장 2	②	"	798.3	798.3	-	-	-	-		②	"	798.3	798.3	-	-	-	-		
	슬라이딩	③	"	-	-	FRP	-	-	-	1	③	"	-	-	FRP	-	-	-	1	
	휴 게 소	④	"	100.0	100.0	조립	-	-	-	1	④	"	100.0	100.0	조립	-	-	-	1	
	후 문	⑤	"	-	-	철제	-	-	-	1	⑤	"	-	-	철제	-	-	-	1	
	셀매보드장	⑦	"	2,000.0	2,000.0	-	-	-	-		⑦	"	2,000.0	2,000.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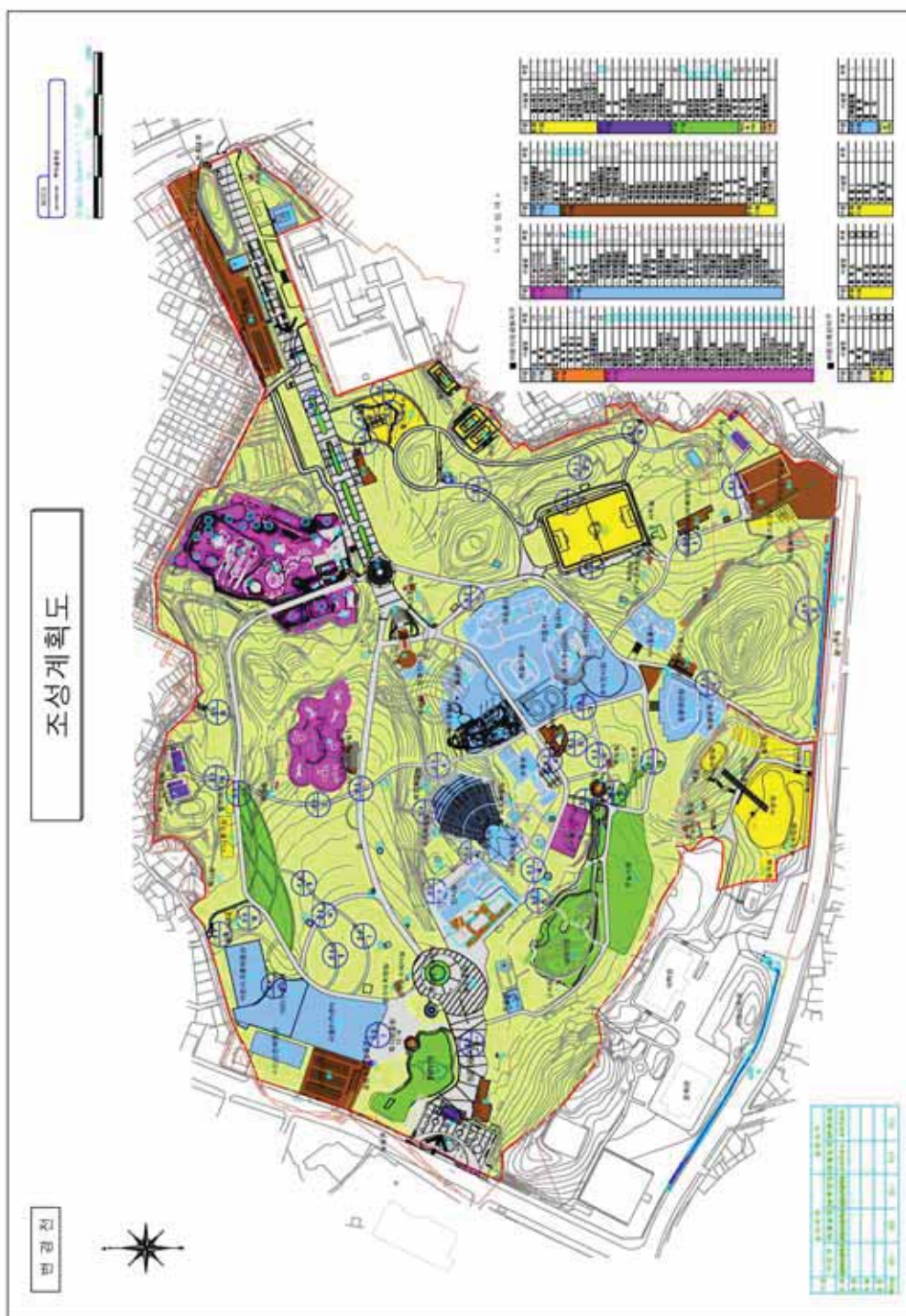
안보도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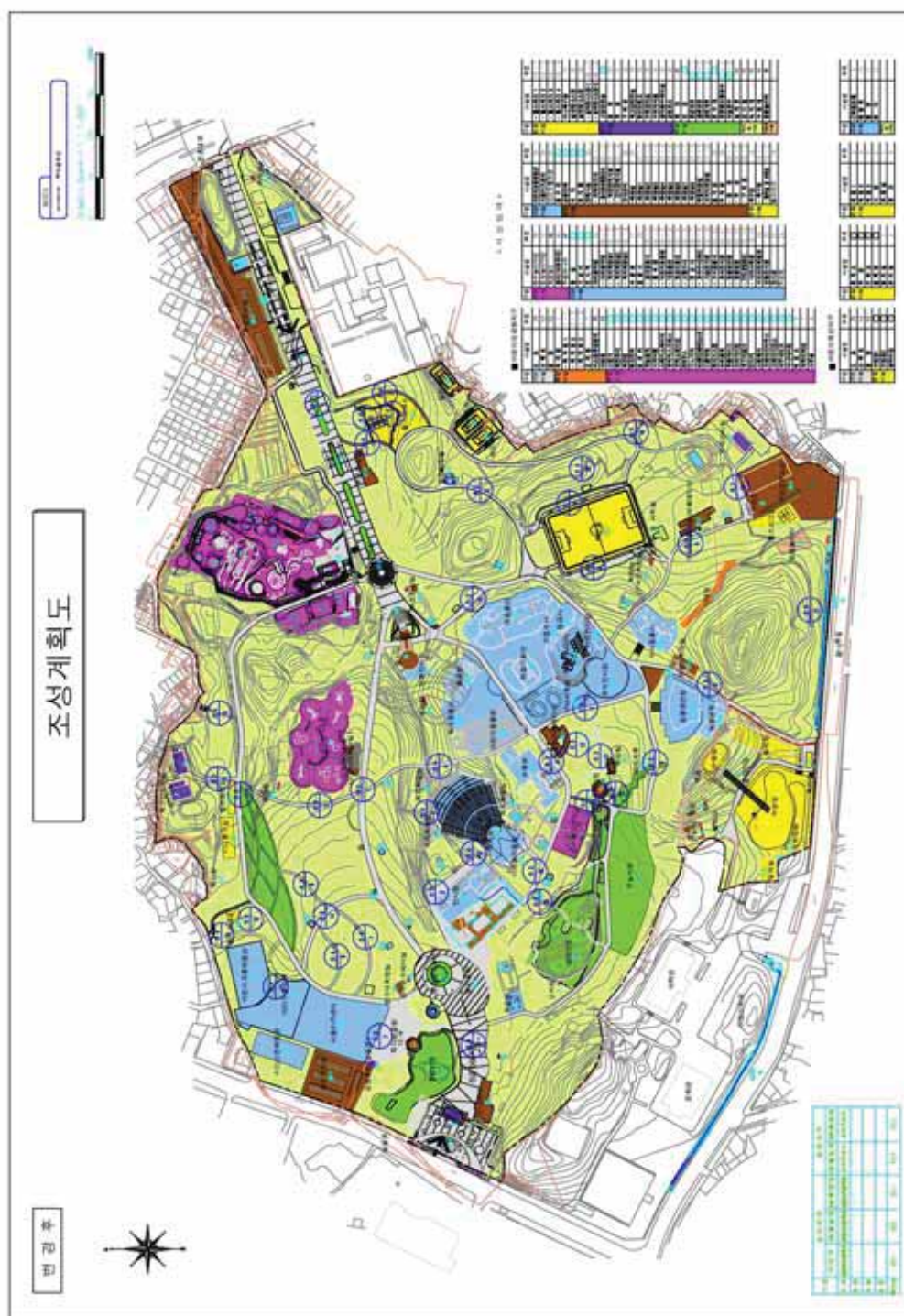
안민배 서울시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계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건 축 물)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근화원본채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행랑 채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별 당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정 자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공 작 물)	소계								1	소계								1		
	근화교	⑥	"	-	-	R.C	-	-	-	1	⑥	"	-	-	R.C	-	-	-	1		
	복지 및 기타		능동18	14,869.86								능동18	14,869.86								

7. 도로조서(어린이회관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79.41	1,596.53				
변경					279.41	1,596.53				
당초	소로	소 계			242.96	1,450.74				
변경					242.96	1,450.74				
당초		3	가	6	242.96	1,450.74	어린이회관, 수영장,내부도로	어린이회관	수영장 후문	
당초	산책로	소 계			36.45	145.79				
변경					36.45	145.79				
당초		3	나	4	36.45	145.79	수영장내부 도로	수영장 1	수영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32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감경·조정 기준 마련

- 등록말소(폐지) 및 정지 처분의 경우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조정이 가능함에도 각 교육지원청은 구체적이지 않은 감경·조정 규정으로 인해 해당 규칙 적용에 소극적인 바,
-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경·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의 등록말소(폐지) 및 정지 처분 시, 감경·조정 검토 및 적용에 대한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제시

나.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별점표 정비

- 학원 등 처분 기준에 대한 별점표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패소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 받음
- 위반사항 별점표(제16조 및 제21조 관련) 정비
 - 별점 조정(강화, 완화)
 - 위반사항 신설
 - 근거 부족 위반사항 삭제
 - 위반사항 문구 수정, 통합, 분리 등 정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감경·조정 기준 마련

- 등록말소(폐지) 및 정지 처분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경·조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반내용을 고려하여”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하고, 1, 2호를 신설 “1.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개정 이유)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등록말소(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정지 90일 이상으로, 정지(중지)처분의 경우에는 정지(중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조정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좌동 ② ----- ----- ----- -----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 ----- ----- ----- ----- ----- ----- ----- ----- 1.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o 교육지원청의 감경·조정 기준 적용에 대한 부담 해소 및 미적용으로 인한 행정소송 패소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행정처분 감경·조정 기준 마련

나.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사항 별점표 정비

- 근거가 부족한 위반사항 벌점표 삭제
-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 정비 및 의미 명확화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위반사항 벌점표 개정
- 일부 “위반사항” 및 “위반 내용 및 정도” 세분화
- 신·구조문 대조표(학원)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발점표						위반사항 발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3호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35	등록 말소		제3호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25	50	등록 말소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및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변경 미등록	10	15	20	시설은 안전 문제와 직결 될 수 있어 분리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제6호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35	50	등록 말소	제6호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5	50	등록 말소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제6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20	40	60	제6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삭제			법령상 근거 없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별점표							위반사항 별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7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 · 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등록 말소	제7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 · 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좌등			타 시·도 대비 벌점이 높으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수준 유지하고, '30% 미만' 초과징수에 대한 위반행위 추가해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 부분 완화	
			50% 이상 100% 미만	40	50				등록 말소	50% 이상 100% 미만	좌등			
			50% 미만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제8호 의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제8호 의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을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좌등		문구수정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고유명칭 무단사용		삭제			법령상 근거 없음
제9호	거짓·과대 광고	입시설명회	거짓	등록 말소			제9호	거짓·과대 광고	거짓	35	등록 말소	'입시설명회' 와 그 외 광고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통합하고, 지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경우' 삭제		
			과대	35	50	등록 말소								
			경미한 경우	15	20	25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삽지광고 등	거짓	35	등록 말소	과대		20	40	등록 말소				
			과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한 경우	10	15						20			
제10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등록 말소	제10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등록 말소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2차 적발 시 벌점 추가	
제10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제10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타 시·도와 형평성 및 과태료 병과 고려
제10호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제10호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50	등록 말소	학원·학부모 모두 강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적발 시부터 벌점 강화
제10호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40	60	제10호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50	등록 말소	학원·학부모 모두 강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적발 시부터 벌점 강화
제10호	원칙 세부내용 위반	교습과정 내 과목		10	20	30	제10호	원칙 세부내용 위반	교습과정 내 과목		삭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과 중복	
		기타		5	10	15			기타		좌등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별점표						위반사항 별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10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학습장소 제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학습장소 제공)	20	40	60	제10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좌동			학교교과교습학원 과 평생직업교육학원 구분 없이 학생,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하므로 학습장소 제공 삭제
제10호	독서실 남·여 혼석	독서실 남·여 혼석	10	20	30	제10호	독서실 남·여 혼석	독서실 남·여 혼석	삭제			조례 개정으로 삭제
제10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10	20	30	제10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장부 부실 기재를 미비치와 함께 처리
		부실 기재	5	10	15							
제10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제10호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35	50	등록 말소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볼 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교습 및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또는 미제출'로 통합하고 담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삭제
		미보고(제출)	15	30	45			미제출	15	30	45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삭제			
제10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10	20	30	제10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삭제			
제10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등록 말소	제10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좌동			다른 물체로 처분장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강화
		기타	10	20	30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제10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10	15	20	제10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삭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10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제10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삭제			'고의·중과실' 의 괄호 안 예시 중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항응제공'을 삭제, '시험지유출' 추가하고, '사회문제화'를 '고의·중과실' 로 통합
		고의·중과실(항응제공,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 교습 등)	35		등록 말소			고의·중과실·사회문제 화(시험지 유출,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10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제10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좌동			문구수정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 신·구조문 대조표(교습소)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2호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자 무단 변경	30	60	폐지	제2호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 변경 미신고	좌동			학원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제2호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5	10	15	제2호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10	15	20	시설 변경은 학생 안전과 밀접하여 중요성 강조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35	50	폐지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폐지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20	40	60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삭제			법령상 근거 없음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폐지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좌동			타 시·도 대비 벌점이 높으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수준 유지하고, "30% 미만" 초과징수에 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해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 부분 완화	
			50% 이상 100% 미만	40	50				폐지	50% 이상 100% 미만	좌동			
			50% 미만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제4호의 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제4호의 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소를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좌동			문구수정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고유명칭 무단사용	삭제			법령상 근거 없음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폐지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폐지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2차 적발 시 벌점 추가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타 시·도와 형평성 및 과태료 병과 고려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5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20	40	60	제5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삭제			교육부 법령 해석으로 삭제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10	20	30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장부 부실 기재를 미비치와 같게 처리
		부실 기재	5	10	15							
제5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폐지	제5호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좌동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볼 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교습 및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또는 미제출'로 통합하고 담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삭제
		미보고(제출)	15	30	45			미제출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삭제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10	20	30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삭제			
제5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폐지	제5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폐지	다른 물체로 처분장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강화
		기타	10	20	30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제5호	교습자 연수 불참	교습자 연수 불참	10	15	20	제5호	교습자 연수 불참	교습자 연수 불참	삭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5호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제5호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30	60	폐지	보조요원의 교습행위도 강사 채용이라 볼 수 있으므로 통합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제5호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제5호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제5호	신설					제5호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
제5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폐지			제5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삭제			「교의·중과실」의 괄호 안 예시 중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항응제공'을 삭제, '시험지유출' 추가하고, '사회문제화'를 「교의·중과실」로 통합
		교의·중과실(항응제공, 교습소 시설이용 불법과외, 교습소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35	폐지				교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교습소 시설이용 불법과외, 교습소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등)	교의·중대·중과실	30	60	폐지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교의·중대·중과실	좌동			문구수정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 신 · 구조문 대조표(개인과의교습자)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별점표						위반사항 별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35	50	중지 1년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중지 1년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20	40	60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삭제			법령상 근거 없음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중지 1년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좌동			타 시·도 대비 벌점이 높으나,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수준 유지하고, '30% 미만' 초과징수에 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해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 부분 완화		
			50% 이상 100% 미만	40	50				중지 1년	50% 이상 100% 미만	좌동				
			50% 미만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중지 1년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중지 1년	타 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2차 적발 시 벌점 추가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타 시·도와 형평성 및 과태료 병과 고려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10	20	30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장부 부실 기재를 미비치와 함께 처리		
제5호		부실 기재		5	10	15	제5호								
제5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중지 1년	제5호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좌동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볼 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교습 및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또는 미제출'로 통합하고 담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삭제	
제5호		미보고(제출)		15	30	45	제5호		미제출		좌동				
제5호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5호		경미한 사항		삭제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10	20	30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삭제				
제5호제 5호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35	중지 1년	중지 1년	제5호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30	60	중지 1년	타 시·도와 형평성 및 과태료 병과 고려	
제5호	신설					제5호	개인과의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개인과의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30	60	중지 1년	11개 시·도에서 해당 위반사항 규정, 학원법에 근거하여 위반 시 벌점 가능		

현행						개정안						개정사항 요약 (개정 이유)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5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중지 1년			제5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삭제			'고의·중과실' 의 괄호 안 예시 중 법령상 근거가 미흡한 '항응제공' 을 삭제, '시험지유출' 추가하고, '사회문제화' 를 '고의·중과실' 로 통합
		고의·중과실(항응제공 등)	35	중지 1년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중지 1년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좌동			문구수정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5호		경미한 사항	좌동			

3. 의견 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513, FAX 02-399-9753

○ 이메일 : silver510@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입법안(다음 페이지)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호**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반내용을 고려하여”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하고 같은 항에 1,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u>위반내용을 고려하여</u> 등록말소(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정지 90일 이상으로, 정지(중지)처분의 경우에는 정지(중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 ----- ----- 1. 자격(임용)시험, 학교 시험의 임박 등으로 행정처분 시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기간 중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별지 1]

[별표 4]

위반사항 벌점표(제16조 및 제21조 관련)

1. 법 제17조제1항 관련 (학원)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3호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35	등록 말소		제3호	시설 및 설비(교구포함) 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25	50	등록 말소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및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시설 변경 미등록	10	15	20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제6호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35	50	등록 말소	제6호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5	50	등록 말소		
제6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20	40	60	제6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삭제				
제7호	교습비 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 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등록 말소	제7호	교습비 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한 교습비 등 초과징수	100% 이상	좌동			
			50% 이상 100% 미만	40	50				등록 말소	50% 이상 100% 미만	좌동		
			50% 미만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제8호의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제8호의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을 붙이지 않고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좌동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고유명칭 무단사용	삭제				
제9호	거짓·과대 광고	입시설명회	거짓	등록 말소		제9호	거짓·과대 광고	거짓	35	등록 말소			
		과대	35	50	등록 말소								
		경미한 경우	15	20	25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별점표						위반사항 별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삽지광고 등	거짓	35	등록 말소			과대			20	40	등록 말소	
			과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한 경우	10	15	20								
제10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등록 말소		제10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등록 말소	
제10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제10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제10호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제10호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50	등록 말소	
제10호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40	60	제10호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50	등록 말소	
제10호	원칙 세부내용 위반	교습과정 내 과목		10	20	30	제10호	원칙 세부내용 위반	교습과정 내 과목		삭제			
		기타		5	10	15			기타		좌동			
제10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학습장소 제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학습장소 제공)		20	40	60	제10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좌동			
제10호	독서실 남·여 혼석	독서실 남·여 혼석		10	20	30	제10호	독서실 남·여 혼석	독서실 남·여 혼석		삭제			
제10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10	20	30	제10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부실 기재		5	10	15								
제10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제10호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미제출		15	30	45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삭제			
제10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10	20	30	제10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삭제			
제10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등록 말소	제10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좌동			
		기타		10	20	30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10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10	15	20	제10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삭제		
제10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제10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삭제		
		고의·중과실(항응제공,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 교습 등)	35	등록 말소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제10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제10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2호	교습자 무단 변경	교습자 무단 변경	30	60	폐지	제2호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 변경 미신고	좌동		
제2호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5	10	15	제2호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10	15	20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35	50	폐지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폐지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20	40	60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삭제		
제3호	교습비등수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수 초과징수	100% 이상	50	폐지	제3호	교습비등수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수 초과징수	100% 이상	좌동	
			50% 이상 100% 미만	40	50				50% 이상 100% 미만	좌동	
			50% 미만	20	40				30% 이상 50% 미만	20	40
									30% 미만	10	30
제4호의 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20	40	60	제4호의 2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소를 붙이지 않고)	좌동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별점표						위반사항 별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고유명칭 무단사용	15	30	45			고유명칭 무단사용	삭제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폐지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폐지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제5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20	40	60	제5호	교습대상 위반	교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	삭제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10	20	30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부실 기재	5	10	15						
제5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폐지	제5호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좌동		
		미보고(제출)	15	30	45			미제출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삭제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10	20	30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삭제		
제5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폐지	제5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폐지
		기타	10	20	30			기타 (다른 물체로 은폐 등)	20	40	60
제5호	교습자 연수 불참	교습자 연수 불참	10	15	20	제5호	교습자 연수 불참	교습자 연수 불참	삭제		
제5호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제5호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30	60	폐지
제5호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제5호					
제5호	신설					제5호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5	10	15
제5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폐지			제5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삭제		
		교의·중과실(항응제공, 교습소 시설이용 불법과외, 교습소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35	폐지				교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교습소 시설이용 불법과외, 교습소의 교습과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교과목 교습 등)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등)	교의·중대·중과실	30	60	폐지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교의·중대·중과실	좌동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동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벌점표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35	50	중지 1년	제2호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25	50	중지 1년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20	40	60	제2호	온라인 거짓 신고	온라인 거짓 신고		삭제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50	중지 1년		제3호	교습비등 초과징수	표시·게시·고지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100% 이상	좌동		
			50% 이상 100% 미만	40	50	중지 1년				50% 이상 100% 미만	좌동		
			50% 미만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20	40	60
										30% 미만	10	30	50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중지 1년		제5호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50	중지 1년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제5호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10	20	30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제5호		부실 기재		5	10	15	제5호						
제5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중지 1년	제5호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좌동		
제5호		미보고(제출)		15	30	45	제5호		미제출		좌동		
제5호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5호		경미한 사항		삭제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10	20	30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삭제		
제5호제 5호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35	중지 1년	중지 1년	제5호제 5호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시 미부착		30	60	중지 1년
제5호	신설						제5호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 채용		30	60	중지 1년
제5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중지 1년			제5호	불법운영과 관련된 사항	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삭제		

현행						개정안					
위반사항 별점표						위반사항 별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고의·중과실(형응제공 등)	35	중지 1년				고의·중과실·사회문제화(시험지 유출 등)	좌등		
		경미한 사항	10	20	30			경미한 사항	좌등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 풍기문란 등)	고의·중대·중과실	30	60	중지 1년	제5호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등)	고의·중대·중과실	좌등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5호		경미한 사항	좌등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2. 구분 (O 표시)																	
		신설	O	강화	O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O	행정적 규제		O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학원정책담당사무관 정관용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기준: 2022. 9. 1., 단위: 개소, 명) <table><tr><th>구분</th><th>학원</th><th>교습소</th><th>개인과외교습자</th><th>총계</th></tr><tr><td>기관수</td><td>15,386</td><td>10,550</td><td>26,678</td><td>52,614</td></tr></table>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총계	기관수	15,386	10,550	26,678	52,614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총계															
기관수	15,386	10,550	26,678	52,614															
6. 규제영향분석	가. 연간비용 : 해당없음 나.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다.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o 근거법령 및 현실적 여건에 맞는 벌점표 정비를 통해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 내용	가. 현행 규제 내용 : 지도·감독에 따른 벌점 부과 및 행정처분 나. 신설(강화) 규제 내용 o 규제 신설 - (교습소)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o 규제 강화 - (학원) 시설변경 미등록 - (학원) 거짓·과대 광고 경미한 부분(입시설명회 및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삼지광고 등) - (학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 (학원) 외국인강사 미검증 - (학원) 제장부 부실기재																		

	- (학원)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경미한 부분 - (학원)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 (학원) 계시된 행정처분장 훼손(기타) - (교습소) 시설변경 미신고 - (교습소) 제장부 부실기재 - (교습소)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경미한 부분 - (교습소)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 (교습소) 계시된 행정처분장 훼손(기타) - (교습소)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 (개인과외교습자) 제장부 부실기재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경미한 부분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에 관한 사항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다. 그 밖의 규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8. 규제 존속기한	존속기한 설정 없음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학생 안전 관련) 학원 시설 및 학원강사, 외국인 강사 관련은 학습자의 안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제 발생 시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 (행정처분 은폐)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교습소에서 행정처분장을 다른 물체 등을 이용하여 은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 (지도 담당자의 주관 개입 우려) 거짓·과대 광고 및 교습비 등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한 “경미한 경우”의 경우 “경미한”의 기준이 없어 지도 담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 (학생 안전 강화) 학원 시설 및 학원강사, 외국인 강사 관련은 학생의 안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엄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팽배
- ☐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 행정처분장 훼손 관련 행정처분 등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화 필요
- ☐ (벌점 적용 명확화)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는 위반사항을 통합하고 지도 담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경우”를 삭제하여 벌점 적용을 명확하게 정리

< 신설 규제 >

○ 교습소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5호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미신고 또는 해임 미통보	〈신설〉			5	10	15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9. 1.)에 따라 신설

○ 개인과외교습자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5호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임의채용	〈신설〉			30	60	중지 1년	- 11개 시·도에서 서울 위반사항 별첨표에 없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학원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1항에서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인과외 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법」을 위반하게 됨

< 강화 규제 >

○ 학원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분석 및 개정/미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6호	〈시설 및 설비 변경〉 수정: 시설 변경 미등록			5	10	15	10	15	20	시설 관련 사항은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시설 변경 미등록 부분 강화 - 타 시도와 동일수준
	〈시설 및 설비 변경〉 수정: 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제9호	〈거짓·과대 광고〉	입시설명회 수정: 거짓	거짓	등록 말소			35	등록 말소		'입시설명회'와 그 외 광고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통합하고, 지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경우' 삭제
			과대	35	50	등록 말소				
			경미한 경우	15	20	25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삼지광고 등 수정: 과대	거짓	35	등록 말소		20	40	등록 말소	
			과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한 경우	10	15	20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분석 및 개정/미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10 호	〈무자격 강사 등 채용〉 일반강사 등	20	40	60	20	50	등록 말소	설문 결과(학원-학부모 모두 강화)를 반영하여 2회 이상 위 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벌점 강화 - 타 시도와 동일수준 - 학원과 학부모 모두 강화 의견
	〈외국인강사 미검증〉 범죄경력 미조회, 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등록증 미검증	20	40	60	20	50	등록 말소	설문 결과(학원-학부모 모두 강화)를 반영하여 2회 이상 위 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벌점 강화 - 타 시도 대비 높음 - 학원과 학부모 모두 강화 의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수정: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10	20	30	장부 부실 기재를 미비치와 함께 처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부실기재 수정: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5	10	15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수정: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거짓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35	50	등록 말소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볼 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교습 및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또는 미제출’로 통합하고 담 당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삭제
		미보고(제출)	15	30				
		경미한 사항	10	20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수정: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미제출〉	10	20	30	15	30	45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거	40	50	등록 말소	좌동			다른 물체로 처분장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기타”에 “(다 른 물체로 은폐 등)” 문구를 추가하고 지도점검 실효성 확 보를 위해 벌점 강화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기타(다른 물체로 은폐 등)	10	20	30	20	40	60	

○ 교습소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2호	〈시설 변경〉 시설 변경 미신고	5	10	15	10	15	20	교습소 의견 반영 - 타 시·도와 동일수준 - 교습소 강화 의견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수정: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10	20	30	장부 부실 기재를 미비치와 함께 처리
제5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부실기재 수정: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5	10	15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5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수정: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거짓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폐지	35	50	폐지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볼 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교습 및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또는 미제출’로 통합하고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삭제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한 사항	10	20	30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수정: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미제출〉		10	20	30	15	30	45	
제5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제 거		40	50	폐지	최동			
제5호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기 타(다른 물체로 은폐 등)		10	20	30	20	40	60	다른 물체로 처분장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기타”에 “(다른 물체로 은폐 등)” 문구를 추가하고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점 강화
제5호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		20	40	60	30	60	폐지	보조요원의 교습행위도 강사 채용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보조요원의 교습행위 포함)”으로 통합하고 타 시·도 현황을 반영하여 벌점 강화 - 타 시·도 대비 낮음 - 교습소 원화 의견(일부 교습소 강화 의견도 있음)
제5호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 개인과외교습자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2호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미비치 수정: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10	20	30	10	20	30	장부 부실 기재를 미비치와 같게 처리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부실기재 수정: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5	10	15				
제5호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수정: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거짓제출〉	거짓보고(제출)	35	50	35	50	중지 1년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볼 때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교습 및 교습비 등 관련 사항 거짓제출 또는 미제출’로 통합하고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삭제
		미보고(제출)	15	30				
		경미한 사항	10	20				
제5호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 자료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수정: 교습 및 교습비등 관련 사항 〈미제출〉	10	20	30	15	30	45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 본 규제의 신설 및 강화는 학습자의 안전과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최적안임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 본 규제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사교육 행위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 입법예고 : 2022. 11. 24.(목) ~ 12. 14.(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 근거법령 및 현실적 여건에 맞는 별점표 신설 및 강화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의 효용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원의 건전 운영에 기여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2-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종로구청장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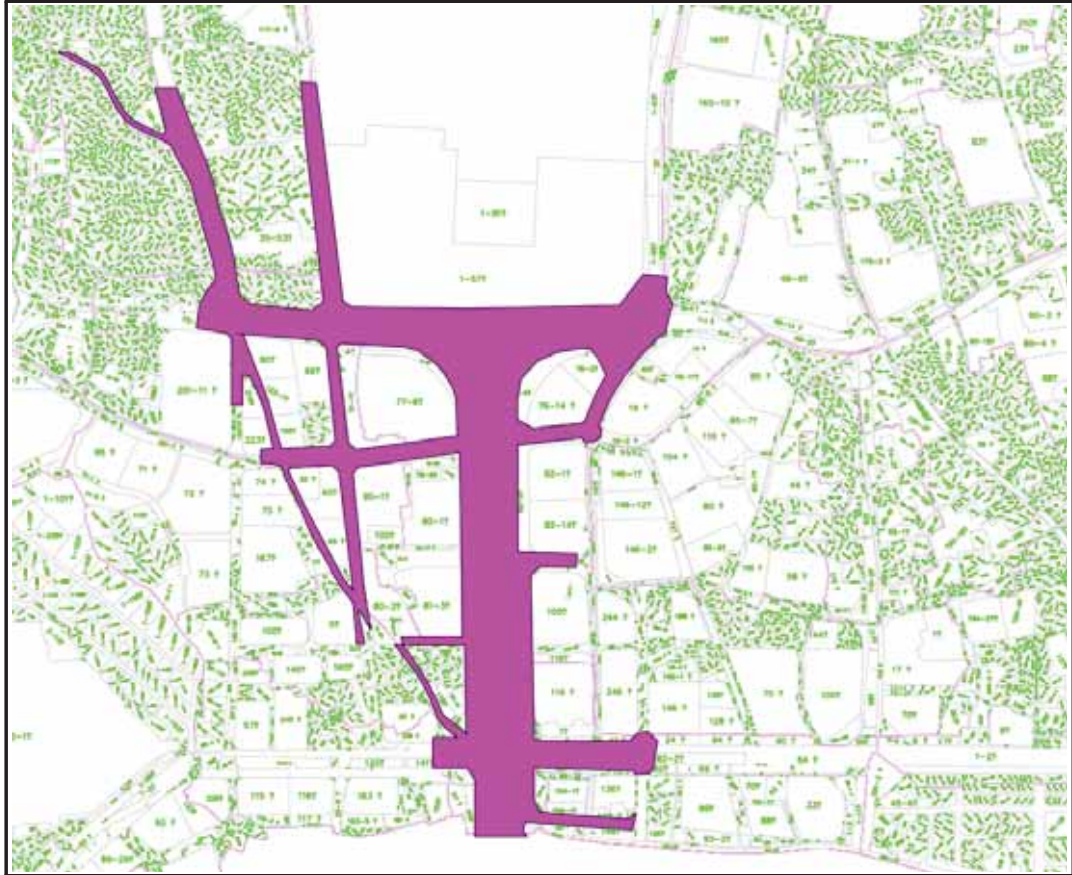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 형	등급	면적(㎡)		
광화문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적선동 51-2번지 일원	침수위험	나	166,858	내수배제 불량	도로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따로 붙임)

붙임

지구지정 지형도면(광화문 지구)

□ 지형도면



◆ 광진구고시 제2022-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7.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광진구 고시 제2020-9호(2020.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변경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397-2~420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도로 폭 6m, 연장 13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0.02.06. ~ 2022.12.31.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 업 명 :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원래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1	능동 396-5 (능동 396-3)	대	81	81	71.4297/ 83	김○숙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0, 101동 1001호 (광장동, 위례힐푸르지오)				
					11.5703/ 83	손○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8길 23-3 (능동)				
2	능동 399-10	대	102	102	1	이○옥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4길 51, 2층				
3	능동 394-1 (능동 394)	대	21	21	1/2	김○태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8길 23, 한울하우스 401호				
					1/2	신○정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8길 23				

◆ 노원구고시 제2022-14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94-7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폐지)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노 원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노원구 상계동 1094-7	639	감)639	0	2002.4.25. (노원구고시 제2002-22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폐지 A = 639㎡ → 0 (감 639㎡)	주변현황 및 토지형상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비 투자에 비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해제하고자 함.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 붙임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노원구 도시관리과(☎ 2116-3783), 푸른도시과(☎ 3958)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정도



□ 변경도



◆ 은평구고시 제2022-1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 7. 2.)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6호(2018. 12. 7.)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1675호(2022. 10. 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된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15 일원

나. 사업명 및 사업종류

- 1) 사업명 : 증산동 삼표부지 주거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공사
- 2)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내용

- 1) [구간 A] 수색로(대로 1-14) 확폭(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
- 2) [구간 B] 중로 3-1 : 기존 화단 철거 후 보도 조성(수색로 이면부 원활한 진입 유도)

구분		폭		연장	비고
		당초	변경		
구간 A	도로	10.6m ~ 13.9m	14.1m ~ 15.0m	145.0m	수색역 → DMC역 (3차로 → 4차로 확폭)
	보도	2.0m ~ 5.9m	3.8m ~ 4.5m	145.0m	보도 확폭 및 선형 변경 (기부채납 부지 포함)
구간 B	보도	-	2.0m	50.0m	보도 조성(화단 철거 후 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에스피에스테이트 대표 전병일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 6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합계				5,899.1	495.4						
1	증산동	223-14	대	538.3	173.9	에스피에스테이트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181	우리 자산 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1, 13층	수탁자	
2	증산동	223-15	대	4,987.9	264.2	에스피에스테이트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181				
3	증산동	223-17	대	330.6	48.4	에스피에스테이트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181	우리 자산 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1, 13층	수탁자	
4	증산동	223-19	대	42.3	8.9	에스피에스테이트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181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용승인 완료 시 관리청(서울시, 은평구)에 기부채납(무상양도) 예정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35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22-1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9-64호(1969.03.2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호(2009.01.29.)로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된 갈현초등학교(갈현동 451-15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2년 제6차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18.) 결과, 원안 가결되어 이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1967년 개교한 지 55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로 안전등급 C등급인 건축물에 대한 멸실 및 증축이 필요한 사항이며,
- 교육부 기준으로 초등학교 60학급 설치 시 현재 건축물 연면적으로는 부족하여 연면적 확보를 통하여 기 결정된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이 건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변경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초교 (갈현초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51-15번지 일대	11,667.4	-	11,667.4	서울특별시 고시제1969-64호 (1969.03.21.)	

-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45	120	190	5층	6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 건축범위 · 건폐율 : 30%→45% · 용적율 : 120%→190% · 높 이 : 5층→6층	· 초등학교 60학급 설치 시 현재 건축물 연면적 부족(교육부 기준 적용) · 갈현초등학교(개교 55년이 경과)는 노후학교로 건축물(안전등급 C등급) 멸실 및 증축으로 안전성 확보 필요 · 건축 범위 변경으로 증축에 따른 연면적을 확보하여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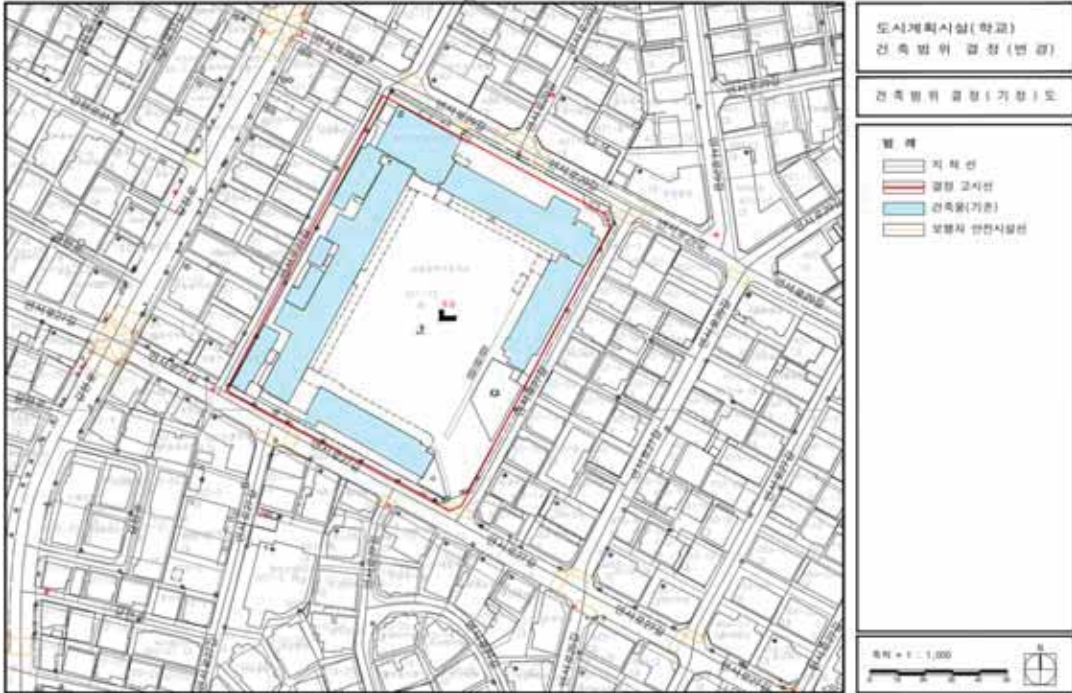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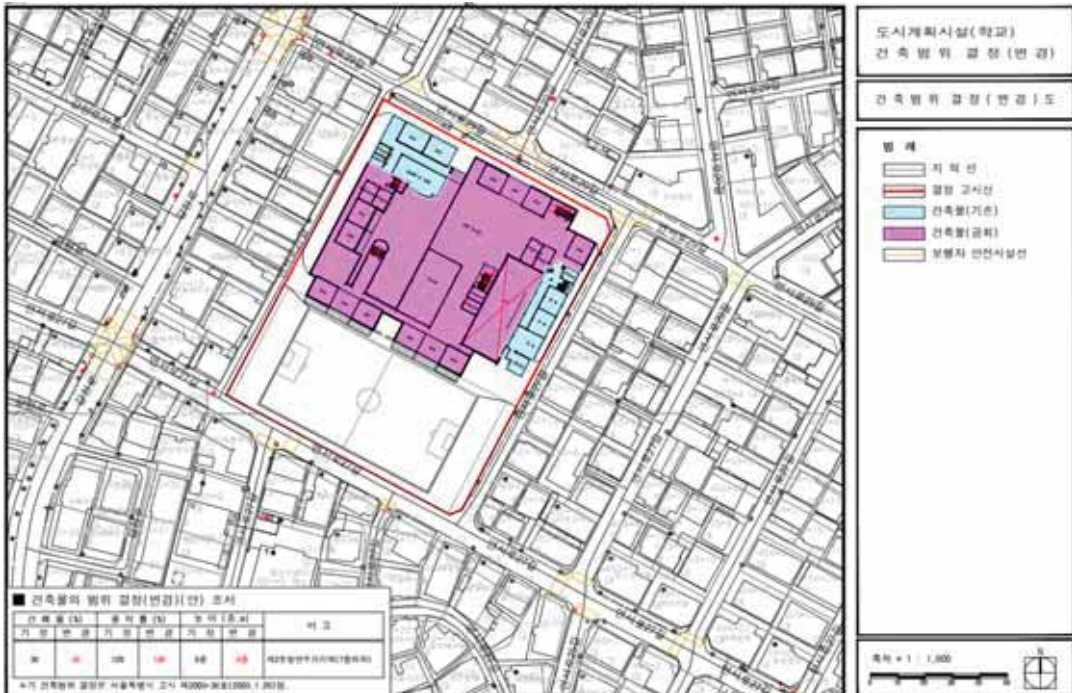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변경)도



◆ 강서구고시 제2022-1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공항동 687-1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강 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공항동 687-15번지 일대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토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청사	-	강서구 공항동 676 일대	976	감) 976	-	서울시고시 제216호 (85.03.29.)	

나)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체육시설	-	강서구 공항동 687-15 일대	-	증) 1,768.6	1,768.6	-	공항동 687-14 공항동 687-15 공항동 687-16

※ 공항동 687-16번지 완충녹지(편입면적:627.3㎡)는 수직적 중복결정 [완충녹지(지상) + 체육시설(지하)]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폐지(976㎡)	•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의 조성하는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
-	체육시설	• 신설(1,768.6㎡)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 공간시설

가) 녹지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강서구 공항동 676 일대	7,995	-	7,995 (627.3)	서울시고시 제216호 (85.03.29.)	체육시설 중복결정 (627.3㎡)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 지하부분 체육시설 수직적 중복결정 · 위치 : 공항동 687-15번지 일대 · 면적 : 627.3㎡ (편입면적)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완충녹지 지하부에 체육시설을 수직적 중복결정하고자 함.

3. 지형도면 : 붙임문서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세부 내용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387) 및 도시재생과(☎2600-651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구로구고시 제2022-1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1982.02.03.)로 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020-177호(2020.09.10.)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오류동 214-4번지 일대 오남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구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오류동 214-4번지 일대 오남중학교의 옹벽 일부가 점유하고 있는 오류동 214-39 외 3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바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 편입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중학교	오류동 214-4번지 일대	9,274	증) 121	9,395	서고시 제50호 (1982. 2. 3.)	

2)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학교	- 면적변경 : 9,274㎡→9,395㎡ (증 121㎡) (부지면적5%미만 경미한변경임)	오류동 214-4번지 일대 오남중학교의 옹벽 일부가 점유하고 있는 오류동 214-39 외 3필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 편입하고자 함

3. 지형도면의 작성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2-1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32호(1977.12.1.)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49호(1979.9.24.)로 변경 결정된 구로구 구로동 1204번지 일대 도시철도 2호선 대림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구로구청장

1. 결정취지

구로동 1204번지 일대 도시철도 2호선 대림역 4번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2대)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 결정함.

2.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2호선 대림역)	구로동 1204 일대	4,009	(증) 115	4,124	건고시 제232호 (1977.12.01.)	지하철 2호선 대림역과 연결되는 계단구간에 E/S설치를 위해, 기존 도로·하천 구역 내 철도 중복결정(115㎡)

나. 변경 사유서

시설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시철도 (지하철2호선 대림역)	면적변경 (부지면적5%미만 경미한변경임 4,009㎡ > 4,124㎡, 115㎡증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도로 사용 중인 곳으로, 금번 해당 구역 일부에 도시철도 2호선 대림역 4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E/S 2대)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 중복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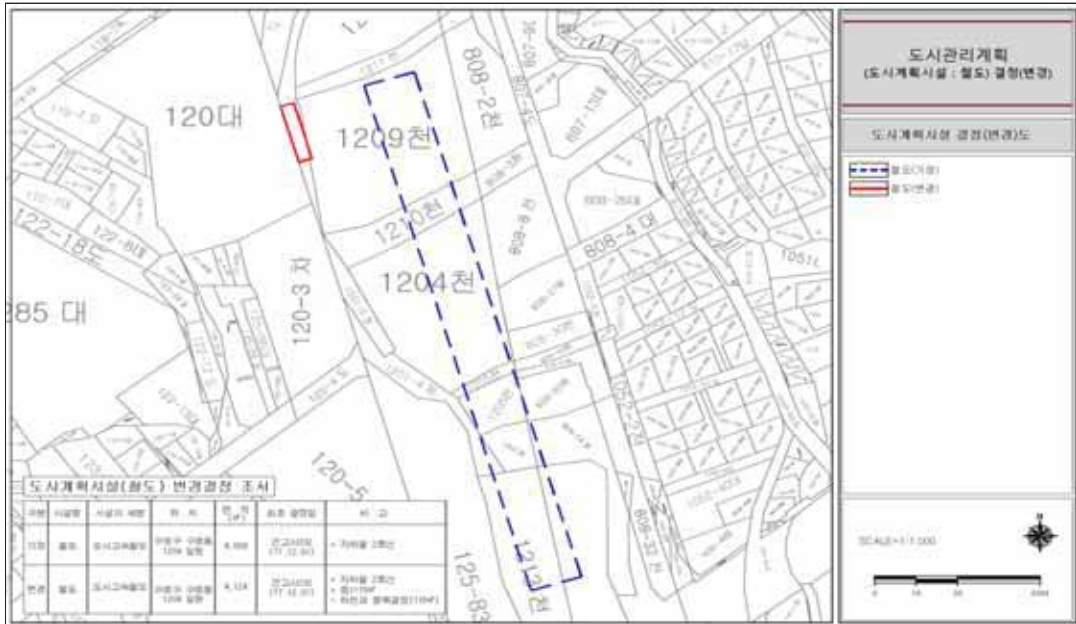
3. 지형도면의 작성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 서울교통공사 토목 사업소(☎6110-5187)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고시 제2022-210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70호(2022.3.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9-3, 19-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호남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대수선 및 용도변경)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 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			-
대지면적	59,149.40 ㎡			-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2층			-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
	기존	변경인가 (금회)	증 감 (금회-기존)	-
건축면적	25,738.34 ㎡	25,738.34 ㎡	변경없음	-
연 면 적	288,322.22 ㎡	288,048.33 ㎡	- 273.89 ㎡	금회 변경사항
용 적 률 산정연면적	162,658.92 ㎡	162,410.40 ㎡	- 248.52 ㎡	금회 변경사항
건 폐 율	43.51 %	43.51 %	변경없음	-
용 적 율	275.00 %	274.58 %	- 0.42 %	금회 변경사항

- 시설별 면적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인가 (금회)	증감(㎡) (금회-기존)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금회	
운수 시 설	주 시 설	대합실		9,796.35	9,812.76	+ 16.41	77.05	77.09
		승강장 ¹⁾ (승차대기장)	실내	1,436.73	1,436.73	0.00		
			실외	536.30	536.30	0.00		
		정류장소 ²⁾ (승하차장)	실내	117.23	117.23	0.00		
			실외	2,224.42	2,224.42	0.00		
		사무실		1,428.32	1,428.32	0.00		
		세차장 ³⁾	실내	265.74	265.74	0.00		
			실외	301.23	301.23	0.00		
		박차장 ⁴⁾		13,995.69	13,995.69	0.00		
		전체공유		3,621.56	3,621.56	0.00		
	부대 시설	정비고		927.07	927.07	0.00	10.43	10.43
		주유소		210.69	210.69	0.00		
		부속시설(매표소 등)		3,385.59	3,385.59	0.00		
		가스정압실		42.00	42.00	0.00		
	편의 시설	소화물취급소		164.38	164.38	0.00	12.52	12.48
		식당, 소매 등		5,314.75	5,299.75	- 15.00		
		운수시설 소계		43,768.05	43,769.46	+ 1.41	100.00	100.00
	비운 수 시 설	숙박시설		43,588.74	43,576.32	- 12.42	16.66	16.67
		판매시설		143,458.56	143,470.75	+ 12.19	54.84	54.90
문화 및 집회		3,023.71	3,023.71	0.00	1.16	1.16		
업무시설		3,583.76	3,583.76	0.00	1.37	1.37		
운동시설		9,954.44	9,954.44	0.00	3.81	3.81		
자동차관련시설		123.93	123.93	0.00	0.05	0.05		
근린생활시설		654.72	654.72	0.00	0.25	0.25		
주차장		57,223.95	56,948.88	- 275.07	21.86	21.79		
소 계		261,611.81	261,336.51	- 275.30	100.00	100.00		
합 계 (운수+비운수)			305,379.86	305,105.97	- 273.89			
합계-1 (옥외시설제외)			288,322.22	288,048.33	- 273.89			

※ 승강장, 정류장소, 박차장, 세차장 실외면적은 시설면적에 산입 되나, 건물면적 산정시 제외. (주 1,2,3,4)

※ 운수시설 면적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7' 에 따른 별표의 시설기준이상 확보 함.

- 대수선 (금회변경사항)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대수선	지하1층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25.37	비시설 변경사항
	지상1층	판매시설	(신설) 37.46	
		판매시설	(철거) -116.58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25.37	
	지상중1층	판매시설	(신설) 37.46	
		판매시설	(철거) -118.27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25.37	
	지상2층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외) -12.42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12.95	
기재사항변경	지상1층	판매시설	-12.48	비시설 변경사항

- 용도변경사항 상세 (금회변경사항)

층별	구분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인 가(금회)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3층	용도변경	주차장	100.61	판매시설(창고)	100.61	비시설 용도변경 (주차장→판매시설:창고)
	지하2층	용도변경	주차장	131.70	판매시설	131.70	비시설 용도변경 (주차장→판매시설)
지하1층	시설 내 변경	운수시설(편익시설)	15.00	운수시설(대합실)	15.00	운수시설 내 세부 용도변경	
	용도변경	운수시설(대합실)	207.82	판매시설	207.82	운수시설↔판매시설 용도변경	
		판매시설	209.23	운수시설(대합실)	209.23		
		주차장	43.21	판매시설	43.21		주차장→판매시설 용도변경
운수↔판매시설 용도변경				417.05			
운수시설 내 세부용도 변경				15.00			
비 운수시설 용도변경				275.5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마.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 인가 완료일 ~ 2025. 6.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3	대	58,483.00	58,483.00	주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반포동	19-12	대	717.40	717.40	주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계				59,149.40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2-1355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1982.04.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호(2022.01.2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인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종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인왕산근린공원(육인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6 일대
3. 면 적: 238,168.00㎡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의 종류	근린공원	근린공원	
부지면적	238,168.00㎡	238,168.00㎡	-
시설면적	33,046.36㎡	33,932.69㎡	증)886.33㎡

5.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종로구 도시녹지과(☎02-2148-2834)
8.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인왕산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종로구 청운동 7-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시설지구	계	238,168.00	33,046.36	10	811.30	1,234.61	238,168.00	33,932.69	11	1,120.82	1,779.66	190		
	소 계	238,168.00	33,046.36	10	811.30	1,234.61	238,168.00	33,932.69	11	1,120.82	1,779.66	190		
	청운지구	39,692.10	8,093.59	5	427.32	789.49	39,692.10	8,093.59	5	427.32	789.49	46		
	옥인지구	92,881.80	13,836.99	1	292.26	353.40	92,881.80	14,723.32	2	601.78	898.45	43	시설부지면적 증가 886.33㎡ (증1동 (증16기))	
	누상지구	24,396.90	2,713.54	1	21.00	21.00	24,396.90	2,713.54	1	21.00	21.00	36		
시설지구	무악지구	47,494.80	4,201.20	1	16.00	16.00	47,494.80	4,201.20	1	16.00	16.00	27		
	홍제지구	8,795.00	1,718.91	1	31.62	31.62	8,795.00	1,718.91	1	31.62	31.62	20		
	샘자미당지구	24,907.40	2,482.13	1	23.10	23.10	24,907.40	2,482.13	1	23.10	23.10	18		
시설률 (변정 40%)		(33,046.36㎡ / 238,168㎡) × 100% = 13.88%						(33,932.69㎡ / 238,168㎡) × 100% = 14.25%						증) 0.37%
건폐율 (변정 10%)		(811.3㎡ / 238168㎡) × 100% = 0.34%						(1,120.82㎡ / 238,168㎡) × 100% = 0.47%						증) 0.13%

나. 시설별 총괄표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본 시 설	계	33,046.36	10	811.30	1,234.61	174	33,932.69	11	1,120.82	1,779.66	190	중) 886.33㎡							
	소 계	24,265.78	-	-	-	-	24,591.69	-	-	-	-	중) 325.91㎡							
	도 로	21,264.52	-	-	-	-	21,449.43	-	-	-	-	중) 184.91㎡							
	광 장	3,001.26	-	-	-	-	3,142.26	-	-	-	-	중) 141.00㎡							
	조경시설	124.75	-	-	-	1	124.75	-	-	-	1								
	휴양시설	1,716.54	-	-	-	96	1,934.44	-	-	-	112	중) 217.90㎡ 중) 16기							
	유흥시설	1,160.10	-	-	-	6	1,160.10	-	-	-	6								
	운동시설	3,342.89	-	-	-	71	3,342.89	-	-	-	71								
	교양시설	762.04	3	302.37	664.54	-	1,071.56	4	611.89	1,209.59	-	중) 309.52㎡ 중) 1동							
	편익시설	1,674.26	7	508.93	570.07	-	1,707.26	7	508.93	570.07	-	중) 33.00㎡							
	관리시설	-	-	-	-	-	-	-	-	-	-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1.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총괄표

구	부	변경				전				변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계	92,881.80	13,836.99	1	292.26	353.40	27	92,881.80	14,723.32	2	601.78	898.45	43	증) 886.33㎡
	소	11,280.07	11,280.07	-	-	-	-	11,605.98	11,605.98	-	-	-	-	증) 325.91㎡
	도	10,961.07	10,961.07	-	-	-	-	11,145.98	11,145.98	-	-	-	-	증) 184.91㎡
	광	319.00	319.00	-	-	-	-	460.00	460.00	-	-	-	-	증) 141.00㎡
조경시설		-	-	-	-	-	-	-	-	-	-	-	-	-
휴양시설		466.50	466.50	-	-	-	15	684.40	684.40	-	-	-	31	증) 217.90㎡
유흥시설		354.50	354.50	-	-	-	-	354.50	354.50	-	-	-	-	-
운동시설		576.33	576.33	-	-	-	12	576.33	576.33	-	-	-	12	-
교양시설		-	-	-	-	-	-	309.52	309.52	1	309.52	545.05	-	신설) 309.52㎡
편익시설		1,159.59	1,159.59	1	292.26	353.40	-	1,192.59	1,192.59	1	292.26	353.40	-	증) 33.00㎡
관리시설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79,044.81	-	-	-	-	-	78,158.48	-	-	-	-	-	감) 886.33㎡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92,881.80	13,836.99	철근콘	1	292.26	353.40	27			92,881.80	14,723.32	철근콘	2	601.78	898.45	43	
	소 계		11,280.07	11,280.07								11,605.98	11,605.98						증 325.91㎡
	도 로		전지역	10,961.07	10,961.07							11,145.98	11,145.98						증 184.91㎡
	가		319.00	319.00						가		460.00	460.00						증 141.00㎡
	가-1	옥인동 179-1	(76.00)	(76.00)						가-1	옥인동 179-1	(76.00)	(76.00)						
광 장	가-2	옥인동 179-1	(192.00)	(192.00)						가-2	옥인동 179-1	(192.00)	(192.00)						
	가-3	옥인동 179-1	(51.00)	(51.00)						가-3	옥인동 179-1	(51.00)	(51.00)						
										가-4	옥인동 47-324	(141.00)	(141.00)						
	소 계		466.50	466.50					15			684.40	684.40					31	
휴 게 소	나		466.50	466.50					15	나		684.40	684.40					31	증 217.90㎡
	나-1	옥인동 산3-1	(367.00)	(76.56)						나-1	옥인동 산3-1	(367.00)	(367.00)						
	나-2	옥인동 179-1	(99.50)	(159.70)						나-2	옥인동 179-1	(99.50)	(99.50)						
										나-3	옥인동 47-507	(85.40)	(85.40)						
										나-4	옥인동 47-630	(7.20)	(7.20)						

구분	변경			경			전			변경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치시설											나-5	옥인동 산1-12	(18.30)	(18.30)						
											나-6	신교동 2-120	(107.00)	(107.00)						
	정자	①	어린이놀이터						1	①	어린이놀이터								1	
	파고대	②	شط						2	②	شط								3	
	팽의자	③	شط						6	③	شط								14	
	등의자	④							6	④									13	
	소계			354.50	354.50								354.50	354.50						
	어린이 놀이터	다	옥인동 179-1	354.50	354.50						다	옥인동 179-1	354.50	354.50						
	소계			576.33	576.33				12				576.33	576.33					12	
	체력단련장	라	옥인동 179-1	175.00	175.00						라	옥인동 179-1	175.00	175.00						
안보시설	다목적운동 장	마	옥인동 179-1	401.33	401.33						마	옥인동 179-1	401.33	401.33						
	체력단련기 구	⑤	전지역						12	⑤	전지역									
교양시설	소계												309.52	309.52	1	309.52	545.05			
	힐링센터										아	옥인동 47-324	309.52	309.52	1	309.52	545.05		신설)309.52㎡	
편	소계		1,159.59	1,159.59	3대	1	292.26	353.40					1,192.59	1,192.59	3대	1	292.26	353.40		

구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인시설	약수터	사	옥인동 179-1	94.00	94.00					사	옥인동 179-1	94.00	94.00							
	책상터	바	옥인동 산3-1	1,065.59	1,065.59		1	292.26	353.40		바	옥인동 산3-1	1,065.59	1,065.59		1	292.26	353.40		
	주차장										자	신교동 2-120	33.00	33.00						증) 33.00㎡
독지 및 기타				79,044.81									77,158.48							감) 886.33㎡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987.50	10,961.07				
변경					3,091.84	11,145.98				
당초	소 로	소 계			959.28	7,334.28				
변경					959.28	7,334.28				
당초		2	1	8.0	164.50	1,374.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초		2	2	8.0	395.93	3,821.7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0	32.00	224.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초		3	2	4.0	72.34	702.86	연결로	소로3-3	광장 가-2	
당초		3	3	4.0	138.78	668.4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4	4.0	18.12	16.11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	5	4.0	10.21	34.13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	6	4.0	41.40	170.00	연결로	광장 가-2	소로2-1	
당초		3	7	4.0	72.00	288.00	산책로	소로2-1	산책로 22	
당초		3	8	2.5	14.00	35.00	진입로	소로3-1	공원경계	
당초	산 책 로	소 계			2,028.22	3,626.79				
변경					2,132.56	3,811.70				
당초			1	1.5	16.00	24.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2	1.5	62.00	93.0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당초			3	1.5	2.50	3.7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4	1.5	42.00	63.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5	1.5	58.00	87.0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당초		6	1.5		143.46	214.39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6	
변경					109.60	164.5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3	
당초		7	1.5		107.67	162.08	연결로	산책로 6	쉼터 나-1	
당초		8	1.5		128.31	194.62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14	
당초		9	1.5		125.90	189.35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6	
당초		10	1.5		15.50	23.25	연결로	산책로 9	광장 가-1	
당초		11	1.2		7.50	9.00	연결로	광장 가-1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2	1.5		149.00	223.50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13	
당초			13	1.5	59.64	40.56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4	1.5	179.50	269.25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당초			15	1.5	10.00	15.00	연결로	산책로 15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6	1.5	19.00	28.50	산책로	소로 2-1	산책로 13	
당초			17	2.5	7.00	17.50	연결로	소로 2-1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8	1.5	53.48	80.74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당초			19	1.5	13.00	19.50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당초			20	1.5	60.17	89.09	산책로	산책로 14	소로 2-2	
당초			21	1.5	48.50	72.75	연결로	산책로 13	체력단련장 라	
당초			22	1.5	58.80	88.80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2-2	
당초			23	1.5	19.50	29.25	산책로	소로 3-3	소로 2-1	
당초			24	1.5	8.00	12.0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3	
당초			25	1.5	69.50	104.2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4	
당초			26	1.5	123.02	268.06	연결로	산책로 28	다목적운동장 마	
당초			27	1.5	17.00	25.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8	1.5	84.01	428.9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9	3.0~2.0	118.76	294.69	산책로	산책로 28	소 2-2	
당초			30	2.5	4.00	10.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1	2.5	63.00	157.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2	2.0	73.00	146.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3	1.5	72.50	133.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4	1.0	9.00	9.00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신규			35	1.5	18.00	27.00	산책로	산책로 6	쉼터 나-3	
신규			36	1.5	17.50	26.50	산책로	소로 3-3	광장 가-4	
신규			37	1.5	52.80	79.20	산책로	가-4	산책로 36	
신규			38	1.5~2.5	19.60	41.1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37	
신규			39	3.2	5.80	21.40	산책로	산책로 38	숲힐링센터 아	
신규			40	1.1	17.70	26.50	산책로	산책로 37	쉼터 나-3	
신규			41	1.5	3.30	6.4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규			42	1.3~2.4	3.50	7.0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조성계획도 [변경전]

인왕산 근린공원 육인지구



■ 시설표시

구분	종목	부속면적 (㎡)	시설면적 (㎡)	구조·규모	건축물(㎡)	주차장 면적(㎡)	비고
기타	합계	10,891.86	11,836.89	1	252.26	352.40	27
	소계	11,265.07	11,360.27				
	도로	10,365.07	11,360.27				
	합계	273.00	313.00				
도로	가-1	176.00	176.00				
	가-2	152.00	152.00				
	가-3	55.00	55.00				
공원	소계	446.00	446.00				15
	합계	1	252.26	176.96			
	나-1	252.26	176.96				
합계	합계	1	252.26	176.96			
	비고	1	252.26	176.96			
	합계	1	252.26	176.96			
도로	소계	254.50	254.50				
	합계	254.50	254.50				
	비고	254.50	254.50				
도로	소계	576.33	576.33				
	합계	576.33	576.33				
	비고	576.33	576.33				
도로	소계	427.33	427.33				
	합계	427.33	427.33				
	비고	427.33	427.33				
도로	소계	1,155.59	1,155.59				
	합계	1,155.59	1,155.59				
	비고	1,155.59	1,155.59				
도로	소계	84.00	84.00				
	합계	84.00	84.00				
	비고	84.00	84.00				
도로	소계	70,044.81	70,044.81				
	합계	70,044.81	70,044.81				
	비고	70,044.81	70,044.81				

조성계획도 [변경후]

이왕산 그리폰의 육이지구

[illegible]

Time (h)	Plasma concentration (mg/ml) (○)	Plasma concentration (mg/ml) (□)
0	0.0	0.0
1	0.45	0.35
2	0.85	0.65
3	0.75	0.55
4	0.65	0.45
5	0.55	0.35
6	0.45	0.25
7	0.35	0.15
8	0.25	0.1
9	0.15	0.05
10	0.1	0.02
11	0.05	0.01
12	0.02	0.0

◆ 성동구공고 제2022-17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18-8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변경사항(사업기간)이 있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응봉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약4,000㎡(※ 보상 외 주변대상지 포함)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성동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당 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공고방법: 성동구보 및 서울시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아.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성동구청 10층 공원녹지과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응봉근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측량 면 적		주소	성명			
1	금호동2가 선9-1	건 물	세멘블럭조	66.116	80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권**	박**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2	화장실					
		수수꽃다리	H5.0*P30	1주							
		담장	H2.5*L2.5m	1개소							
		대문	H1.8*W1.7m	1개소							
2	금호동2가 선9-1	화단	-	6㎡			금호산 **길 **-* (금호동*가)	박**	박**	김**	이**
		건 물	세멘블럭조	82.645	89	주거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10	창고					
			세멘블럭조		8	화장실					
		꽃사과나무	H2.0*P4	1주							
		담장	H2.5*L1.5m	1개소							
		대문	H1.9*W1.7m	1개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적	총량 면적	4㎡		주소	성명			
3	금호동2가 신9-1	화단	-			4㎡						
		건물	세멘블럭조	66.116	5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이**	이**	이**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2		창고					
			세멘블럭조		5		창고					
			세멘블럭조		2		화장실			이**	이**	
		대문	H1.8*W1.4m	1개소						김**	이**	
4	금호동2가 신9-1	계단	W1.1*1.6m	1개소				금호산 **길 **-* (금호동*가)	김**	장**		
		건물	세멘블럭조	59.5044	46		주거					
					24		주거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5		창고			이**	김**	
		대문	H1.9*W1.3m	1개소						이**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총 량 면 적		주 소	성 명			
		계단	W1.1*L1.1m	1개소					이**		
5	금호동2가 선9-1	건 물	세멘블럭조	82.645	84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민**	민**	정**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4	창고					
		대문	H1.9*W1.5m	1개소							
		화단	-	42㎡							
		계단1	W1.0*L3.0m	1개소							
		계단2	W1.0*L1.0m	1개소							
		계단3	W1.5*L0.7m	1개소							
		연탄광	-	2㎡							
		장독대		2㎡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공부상 면 적	총 량 면 적		주소	성명			
6	금호동2가 선9-1	담장(석축)	H2.0*15.0m	1개소							
		담장	H1.5*12.0m	1개소							
		건 물	세멘블럭조	36.3638	49	주거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안**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4	창고					
		대문	H2.0*W1.3m	1개소							
		계단	W1.4*1.6m	1개소					오**	임**	
		옥상도판	-	4㎡							
		경도대	-	7㎡					오**	오**	
		담장(석축)	H1.5*18.0m	1개소							
		건 물	세멘블럭조	42.9754	53	주거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9	창고			민**		
7	금호동2가 선9-1						금호산 **길 **-*** (금호동*가)	이**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및 수량		실제이용 상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비고
				면적(㎡)	수량		주소	성명			
		대문	H2.0*W1.0m	1개소	1개소				박**		
		계단	W2.0*L3.0m	1개소	1개소				이**	김**	
		담장(석축)	H1.5*L8.0m	1개소	1개소						

◆ 광진구공고 제2022-1294호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

1.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광진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2.11.24. ~ 2022.12.08.)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자양로 117)

다. 열람의견 제출 장소 : 위 열람장소 (☎02-450-7682)

라. 열람(안) 주요내용

1)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50번지 일대	-	증)89,597.4㎡	89,597.4㎡	-	-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4-11번지 일대	-	증)1,389.7㎡	1,389.7㎡	-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신설	10-1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4-11번지 일대	1,389.7	개발여건이 성숙된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도시 전체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당해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바. 기타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결정(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광진구공고 제2022-1296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광진구 능동·중곡동 일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광진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까지
2. 열람·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74)
3. 열람(안)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군자역지구	중곡동 157-1호 일대	114,030	증) 51,215	165,245	1996. 6. 7. (서고제1996-154)	

○ 지구단위계획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광진구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73) 및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4010100000?pubSiteCode=11215>)

◆ 성북구공고 제2022-1574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열람공고

1.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70호(2021.6.1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개운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산2-89 일대

다. 면 적 : 210,502㎡

라. 주요 변경내용

- 1) 기반시설 : 22,320㎡ → 24,166.5㎡ (증 1,846.5㎡)
- 2) 조경시설 : 35㎡ → 135㎡ (증 100㎡)
- 3) 휴양시설 : 1,479㎡ → 3,840㎡ (증 2,361㎡)
- 4) 유희시설 : 1,362㎡ → 1,508㎡ (증 146㎡)
- 5) 운동시설 : 25,349㎡ → 6,605㎡ (감 18,744㎡)
- 6) 교양시설 : 827㎡ → 7,227㎡ (증 6,400㎡)
- 7) 편익시설 : 987㎡ → 1,047㎡ (증 60㎡)
- 8) 녹지 및 기타 : 156,073㎡ → 165,787.5㎡ (증 9,714.5㎡)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서류)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사. 열람장소 : 성북구청 9층 공원녹지과 ☎ 02-2241-3663)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산2-89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08,618.0	40,893	6	2,255.72	7,993.56	32	210,502.0	33,062.5	6	2,255.72	7,993.56	34	감) 7,830.5㎡
기 간 사 설	소 계	22,320	10,668					24,166.5	12,514.5					증) 1,846.5㎡
	도 로	18,450	6,798 (11,652)					22,104.5	10,452.5 (11,652)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3,870	3,870					2,062	2,062					감) 1,808.0㎡
조 경 시 설		35	35	1	34.35	34.35	23	135	135	1	34.35	34.35	15	증) 100㎡
휴 양 시 설		1,479	1,479				1	3,840	3,840				1	증) 2,361㎡
유 회 시 설		1,362	1,362				3	1,508	1,508				3	증) 146㎡
은 동 시 설		25,349	25,349	1	1,975.43	7,713.26		6,605	6,605	1	1,975.43	7,713.26	10	감) 18,744.0㎡
교 양 시 설		827	827					7,227	7,227					증) 6,400㎡
편 익 시 설		987	987	3	174.74	174.74	5	1,047	1,047	3	174.74	174.74	5	증) 60㎡
관 리 시 설		186	186	1	71.2	71.2		186	186	1	71.2	71.2		-
녹지, 기타		156,073						165,787.5						증) 9,714.5㎡
공원시설율(법정40%)		(40,893 / 208,618.0) x 100% = 19.60%						(31,062.5 / 210,502.0) x 100% = 15.71%						
공원면적율(법정10%)		(2,255.72 / 208,618.0) x 100% = 1.08%						(2,255.72 / 210,502.0) x 100% = 1.07%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08,618.0	40,893		6동	2,255.72	7,993.55	32			210,502.0	33,082.5		6동	2,255.72	7,993.55	34	감) 7,830.5㎡	
기반 시설	소계		22,320	10,668								24,166.5	12,514.5						증) 1,846.5㎡	
	도로		18,450	6,798 (11,652)								22,104.5 (11,652)	10,452.5 (11,652)						증) 3,654.5㎡	
	가	2개소	1,701	1,701						가		1,728.0	1,728.0						증) 27㎡	
	가-1	돈암동 74-28 공	1,117	1,117						가-1		1,117.0	1,117.0							
	가-2	돈암동 82-211 공	584	584						가-2		584.0	584.0							
	가-3									가-3		27.0	27.0						신설	
휴게광장	나	3개소	2,169	2,169						나		334.0	334.0						감) 1,835.0㎡	
	나-1	조암동 54-207 임	1,419	1,419						나-1									폐지	
	나-2	중암동 산 2-62 임	334	334						나-2		334.0	334.0							
	나-3	인암동5가 산 1-95 임	416	416						나-3									폐지	
소계			35	35		1	34.35	34.35	23			135.0	135.0		1	34.35	34.35	15	증) 100㎡	
조경 시설	①	12개소							23	①	11개소								15	
	①-1	돈암동 82-206 공							2	①-1	돈암동 산3-15 임								3	
	①-2	돈암동 산 6-1 공							1	①-2	돈암동 82-206 공								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가)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①-3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3	인암동5가 산 16-1							2	
	①-4	인암동5가 산 1-95 임							6	①-4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5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5	인암동5가 산 1-95 임							2	
	①-6	인암동5가 산 1-95 임							2	①-6	돈암동 산 6-22							1	
	①-7	중암동 산 2-18 임							2	①-7	돈암동 산 6-22							1	
	①-8	중암동 54-262 임							1	①-8	돈암동 산 6-21 임							1	
	①-9	돈암동 74-28 공							2	①-9	돈암동 산 2-119 임							1	
	①-10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10	돈암동 산 2-119 임							1	
	①-11	돈암동 산 3-3 임							3	①-11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12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12									
	정자 1	중암동 산 2-65 임	35	35		1	34.35	34.35	1	중암동 산 2-65 임	35	35		1	34.35	34.35			
	점막데크									더		100	100						신설
후	소계		1,479	1,479				1			3,840.0	3,840.0					1	증) 2,361.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양 시 설	다	2개소	1,479	1,479						다	3개소	3,840.0	3,840.0						증) 2,361.0㎡
	다-1	중앙동 산 2-65 임	551	551						다-1	중앙동 산 2-65 임	551.0	551.0						
	다-2	돈암동 산 3-3 임 외	928	928						다-2	돈암동 산 3-3 임 외	928.0	928.0						
										다-3	중앙동 산 2-141 외	2,361.0	2,361.0						신설
유 회 시 설	소계		1,362	1,362					3			1,508.2	1,508.2					3	증) 146.0㎡
	라	1개소	1,362	1,362					3	라	2개소	1,508.2	1,508.2					3	
	라-1	돈암동 82-211 공	1,362	1,362					3	라-1	돈암동 82-211 공	1,362.0	1,362.0					3	
										라-2	돈암동 626-26	146.2	146.2						
인 문 용 시 설	SPACE NET	③-1	돈암동 82-211 공						1	③-1	③-1	돈암동 82-211 공						1	
	넉글 넘기	③-2	돈암동 82-211 공						1	③-2	③-2	돈암동 82-211 공						1	
	조함 놀이데	③-3	돈암동 82-211 공						1	③-3	③-3	돈암동 82-211 공						1	
	소계		25,349	25,349		1	1,975.43	7,713.26				6,605.0	6,605.0		1	1,975.43	7,713.26	10	감) 18,744.0㎡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마	돈암동 산 6-1 공	1,134	1,134					마		1,114.0	1,114.0						감) 20.0㎡
		바	16개소	8,661	8,661					바	1개소	1,426.0	1,426.0						감) 7,235.0㎡
		바-1	돈암동 산 6-1	1,008	1,008					바-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															
	바-2	중앙동 산 2-62 임	936	936					바-2								
	바-3	도암동 산 6-1 공	510	510					바-3								
	바-4	중앙동 산 2-42 공	397	397					바-4								
	바-5	도암동 74-28 공	383	383					바-5								
	바-6	도암동 74-28 공	299	299					바-6								
	바-7	도암동 74-28 공	329	329					바-7								
	바-8	도암동 74-28 공	266	266					바-8								
	바-10	인암동5가 산 1-95 임	499	499					바-10								
	바-11	인암동5가 산 1-95 임	642	642					바-11								
	바-12	인암동5가 산 1-95 임	589	589					바-12								
	바-13	인암동5가 산 1-95 임	643	643					바-13								
	바-14	도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4								
	바-15	도암동 산 6-1	540	540					바-1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공용																	
	바-16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6									
	바-17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7									
	사	돈암동 산 3-3 입	57	757															감) 757.0㎡
	아	인암동5가 산 1-95 입	2,099	2,099					아	인암동5가 산 1-95 입	1,370.0	1,370.0	1,370.0						감) 729.0㎡
	자	3개소	794	794					자										감) 794.0㎡
	자-1	돈암동 74-28 공	454	454					자-1										
	자-2	돈암동 산 6-1 공	106	106					자-2										
	자-3	돈암동 산 6-1 공	234	234					자-3										
	다목적운동 장	차	중암동 산 2-119 입 외	3,995	3,995		1	1,975.43 7,713.26		차	중암동 산 2-119 입 외	2,695	2,695		1	1,975.43 7,713.26			감) 1,300.0㎡
교양 시설	스포츠센터 및 골프아카데미	3	인암동5가 산 1-93 입	7,99	7,909					3									폐지
	소계		827	827							7,227.0	7,227.0	7,227.0						증) 6,400㎡
	야외무대	카	돈암동 74-28 공	827	827				카	돈암동 74-28 공	827.0	827.0	827.0						
	유아숲 체험장								너	돈암동 산 6-1 공	6,400.0	6,400.0	6,400.0						신설

안 배 오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계			987	987		3	174.74	174.74	5			1,047.0	1,047.0		3	174.74	174.74	5	증) 60㎡	
	주차장	인암동5가 산 1-95 입	652	652						타-1	인암동5가 산 1-95 입	712	712						증) 60㎡	
	4	2개소	299	299		2	139.4	139.4		4		299	299		2	139.4	139.4			
	4-1	돈암동 산 6-1 공	144	144		1	69.7	69.7		4-1	돈암동 산 6-1 공	144	144		1	69.7	69.7			
	4-2	돈암동 산 6-1 공	155	155		1	69.7	69.7		4-2	돈암동 산 6-1 공	155	155		1	69.7	69.7			
편의 시설	②	5개소							5	②	5개소							5		
	②-1	중암동 산 2-20 입							1	②-1	중암동 산 2-20 입							1		
	②-2	돈암동 74-28 공							1	②-2	돈암동 74-28 공							1		
	②-3	돈암동 74-28 공							1	②-3	돈암동 74-28 공							1		
	②-4	돈암동 82-211 공							1	②-4	돈암동 82-211 공							1		
음수장	②-5	돈암동 산 3-3 입							1	②-5	돈암동 산 3-3 입							1		
		돈암동 산 3-3 입	36	36		1	35.34	35.34		2	돈암동 산 3-3 입	36	36		1	35.34	35.34			
전망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린시설	소계		186	186		1	71.2	71.2			186	186		1	71.2	71.2		
	복지관리 조소	5		186	186		1	71.2	71.2	5		186	186		1	71.2	71.2	
	복지 및 기타		156.073									165,787.5						증) 9,714.5㎡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당초	합 계				2,017	6,798				
변경					3,886	10,452.5				증) 3,654.5㎡
당초	중심	소 계			971	11,652				
당초		3	1	12	971	11,652	도시계획도로	83-131 도	산 1-28 임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당초	소로	소 계			1,123	5,202.5				증) 1,027.5㎡
변경					1,101	6,230.0				
당초		2	1	8	306	2,448	진입로	중로 3-1	산 2-18 임	감)376.5㎡
변경		2	1	8	213	1795	진입로	산 2-18 임	산 1-94 임	
당초		3	1	4	37	148	부진입로	산 1-3 임	산 1-3 임	증) 954㎡
변경		3	1	8	124	1,102	부진입로	산 1-77 도	산 1-94 임	
당초		3	2	4	307	1,228	부진입로	산 82-255임	산 2-18 임	감) 788㎡
변경		3	2	5	117	440	부진입로	산 6-1 공	산 2-18 임	
당초		3	3	4	387	1,548	부진입로	산 2-18 임	산 6-3 임	
변경		3	3	4	399	1,548	부진입로	산 2-5 임	54-198 도	
당초		3	4	4	215	860	연결로	산 2-62 임	산 6-3 임	
변경		3	4	4	215	860	연결로	산 3-15 임	산 2-5 임	
신규		3	5	6	33	235	연결로	산 1-93 임	산 1-93 임	
신규		3	6	6	39	250	연결로	산 1-55 임	산 1-55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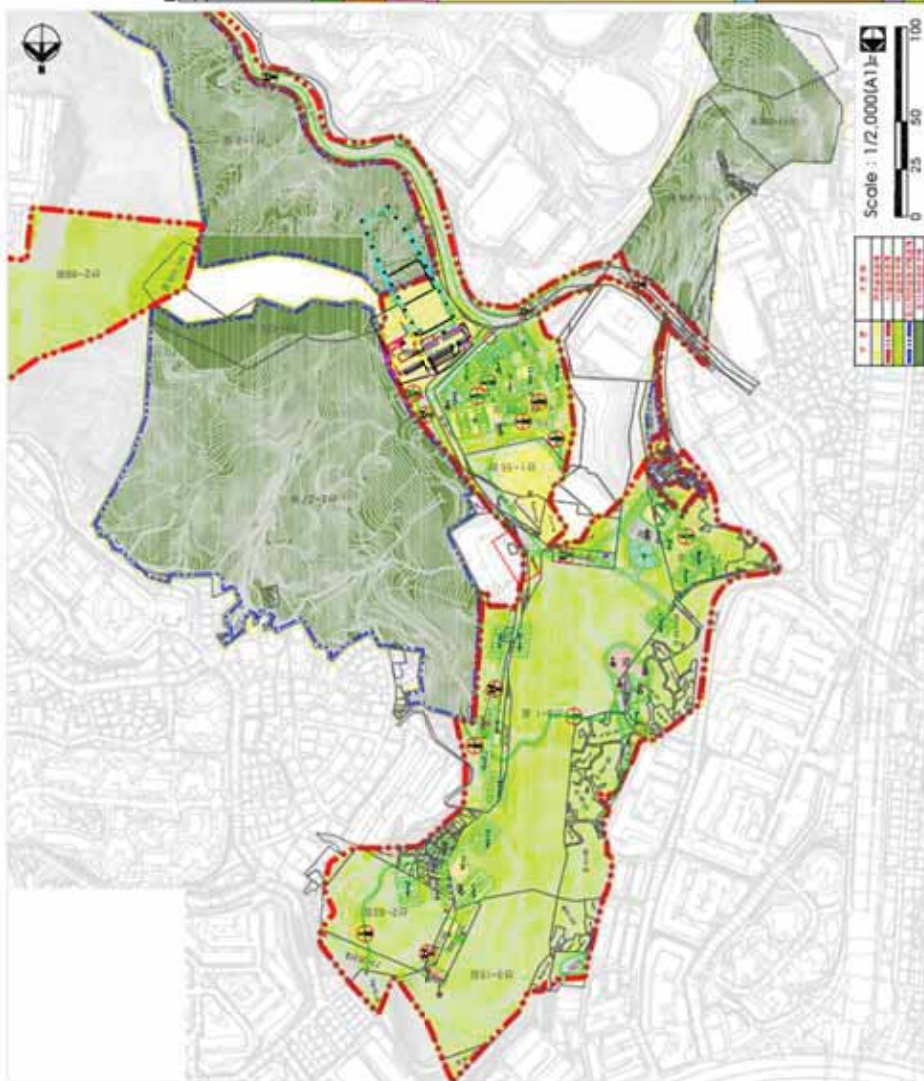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당초	산책로	소 계			894	1,595.5				
변경					2,785	4,222.5				증) 2,627㎡
당초			1	1.5	176	264	산책로	77-102 대	125-172 대	
당초			2	1.5	47	70.5	산책로	소로 3-3	산 2-42 임	
당초			3	1.5	162	243	산책로	산 6-1 임	82-326 대	
변경			3	1.5	232	368.0	산책로	82-125 공	산 2-42 공	
당초			4	2.0	274	548	산책로	산 6-1 임	산 6-21 임	
변경			4	2.0	223	636	산책로	81-2 대	산 6-22 임	
당초			5	2.0	94	188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5	2.0	94	195	산책로	산 1-55 임	산 1-94 임	
당초			6	2.0	40	80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6	2.0	40	57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당초			7	2.0	40	80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7	2.0	40	14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당초			8	2.0	36	72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8	2.0	36	117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당초			9	2.0	25	50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9	2.0	25	449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신규	산책로		20	1.5	76	339	산책로	산 6-1 공	626-2 공	
신규			21	1.5	247	249	산책로	산 3-16 임	산 3-15 임	
신규			22	1.5	212	37	산책로	산 3-15 임	산 3-15 임	
신규			23	1.5	49	159	산책로	산 1-18 임	산 3-15 임	
신규			24	2.0	121	242	산책로	산 2-42 공	산 2-42 공	
신규			25	1.5	137	258	산책로	15-4 공	산 6-1 공	
신규			26	2.0	148	302	산책로	82-206 공	81-2 대	
신규			27	1.5	65	141	산책로	산 6-1 공	산 6-1 공	
신규			28	1.0	21	236	산책로	82-354 대	82-143 공	
신규			29	1.5	27	89	산책로	산 6-21 임	산 6-1 공	

조성계획도[변경전]

개운산근린공원

SCALE=1/2,000



구분	구분명	면적(㎡)	비율(%)	비고
1	녹지	1,000,000	100.00	
2	녹지	1,000,000	100.00	
3	녹지	1,000,000	100.00	
4	녹지	1,000,000	100.00	
5	녹지	1,000,000	100.00	
6	녹지	1,000,000	100.00	
7	녹지	1,000,000	100.00	
8	녹지	1,000,000	100.00	
9	녹지	1,000,000	100.00	
10	녹지	1,000,000	100.00	
11	녹지	1,000,000	100.00	
12	녹지	1,000,000	100.00	
13	녹지	1,000,000	100.00	
14	녹지	1,000,000	100.00	
15	녹지	1,000,000	100.00	
16	녹지	1,000,000	100.00	
17	녹지	1,000,000	100.00	
18	녹지	1,000,000	100.00	
19	녹지	1,000,000	100.00	
20	녹지	1,000,000	100.00	
21	녹지	1,000,000	100.00	
22	녹지	1,000,000	100.00	
23	녹지	1,000,000	100.00	
24	녹지	1,000,000	100.00	
25	녹지	1,000,000	100.00	
26	녹지	1,000,000	100.00	
27	녹지	1,000,000	100.00	
28	녹지	1,000,000	100.00	
29	녹지	1,000,000	100.00	
30	녹지	1,000,000	100.00	
31	녹지	1,000,000	100.00	
32	녹지	1,000,000	100.00	
33	녹지	1,000,000	100.00	
34	녹지	1,000,000	100.00	
35	녹지	1,000,000	100.00	
36	녹지	1,000,000	100.00	
37	녹지	1,000,000	100.00	
38	녹지	1,000,000	100.00	
39	녹지	1,000,000	100.00	
40	녹지	1,000,000	100.00	
41	녹지	1,000,000	100.00	
42	녹지	1,000,000	100.00	
43	녹지	1,000,000	100.00	
44	녹지	1,000,000	100.00	
45	녹지	1,000,000	100.00	
46	녹지	1,000,000	100.00	
47	녹지	1,000,000	100.00	
48	녹지	1,000,000	100.00	
49	녹지	1,000,000	100.00	
50	녹지	1,000,000	100.00	
51	녹지	1,000,000	100.00	
52	녹지	1,000,000	100.00	
53	녹지	1,000,000	100.00	
54	녹지	1,000,000	100.00	
55	녹지	1,000,000	100.00	
56	녹지	1,000,000	100.00	
57	녹지	1,000,000	100.00	
58	녹지	1,000,000	100.00	
59	녹지	1,000,000	100.00	
60	녹지	1,000,000	100.00	
61	녹지	1,000,000	100.00	
62	녹지	1,000,000	100.00	
63	녹지	1,000,000	100.00	
64	녹지	1,000,000	100.00	
65	녹지	1,000,000	100.00	
66	녹지	1,000,000	100.00	
67	녹지	1,000,000	100.00	
68	녹지	1,000,000	100.00	
69	녹지	1,000,000	100.00	
70	녹지	1,000,000	100.00	
71	녹지	1,000,000	100.00	
72	녹지	1,000,000	100.00	
73	녹지	1,000,000	100.00	
74	녹지	1,000,000	100.00	
75	녹지	1,000,000	100.00	
76	녹지	1,000,000	100.00	
77	녹지	1,000,000	100.00	
78	녹지	1,000,000	100.00	
79	녹지	1,000,000	100.00	
80	녹지	1,000,000	100.00	
81	녹지	1,000,000	100.00	
82	녹지	1,000,000	100.00	
83	녹지	1,000,000	100.00	
84	녹지	1,000,000	100.00	
85	녹지	1,000,000	100.00	
86	녹지	1,000,000	100.00	
87	녹지	1,000,000	100.00	
88	녹지	1,000,000	100.00	
89	녹지	1,000,000	100.00	
90	녹지	1,000,000	100.00	
91	녹지	1,000,000	100.00	
92	녹지	1,000,000	100.00	
93	녹지	1,000,000	100.00	
94	녹지	1,000,000	100.00	
95	녹지	1,000,000	100.00	
96	녹지	1,000,000	100.00	
97	녹지	1,000,000	100.00	
98	녹지	1,000,000	100.00	
99	녹지	1,000,000	100.00	
100	녹지	1,000,000	100.00	

◆ 도봉구공고 제2022-166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57-12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도 봉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도봉구 창동 657-125	-	증)175.2	175.2	-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사 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면적 : 175.2㎡	- 뽕문역 뽕리단길 주변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거주자 및 상가 이용객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2091-355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은평구공고 제2022-18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3호(1982.08.12.)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된 은평구 응암동 334-1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이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은 평 구 청 장

가. 열 랐 기 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 랐 장 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4)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각종 학교	은평구 응암동 334-12 외 2필지	5,463	-	5,463	서울특별시고시 제313호(1982.08.12.)	

2)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0이하	45이하	120이하	155이하	5층이하	5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0이하		10이하		1층이하

3)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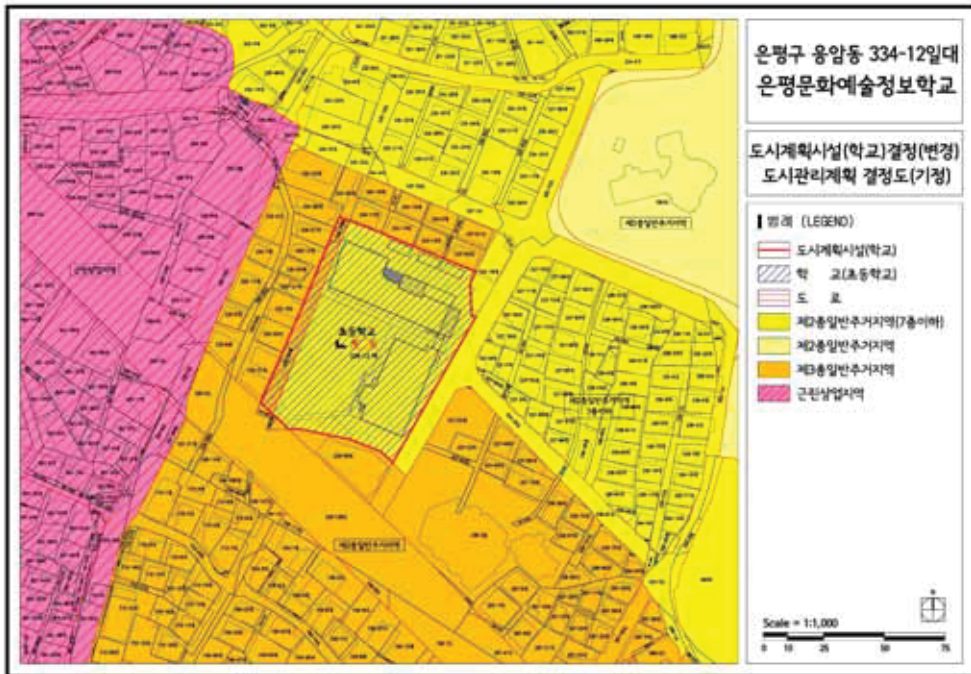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 시설의 종류 변경 - 기정 : 초등학교 - 변경 : 각종학교		• 서울연은초등학교가 2013년도에 응암동 242-424로 이전 후 초등학교 부지를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가 사용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시설의 종류를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건축범위 변경		• 학생들의 급식 환경개선 및 부족한 실습실 (컴퓨터실습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실습실 등)을 증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건폐율 : 30%→45%이하 용적률 : 120%→155%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 10%이하 용적률 : 10%이하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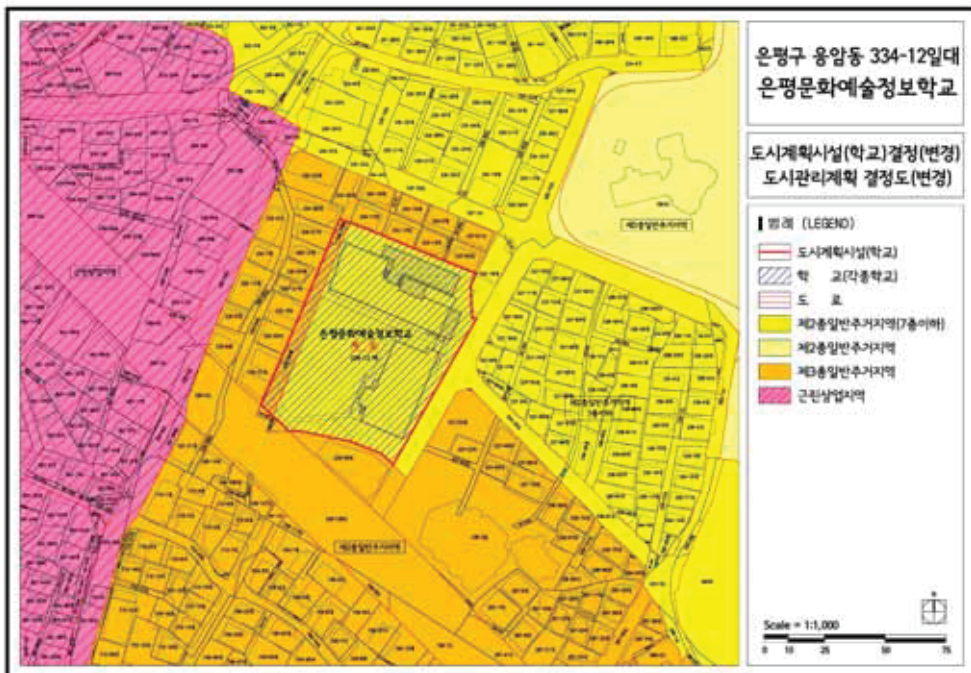
마.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 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 경)



◆ 서대문구공고 제2022-1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1992-26호(1992.1.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홍제동 40-248~40-274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합니다.
3.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0-248~40-27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홍제동 40-248~40-274 간 도로개설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8m, 연장 70m)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02-330-1762)

위치도 및 현황

○ 연홍제동 40-248~40-274 간 도로개설



토 지 조 서

○사업명 : 홍제동 40-248 ~ 40-274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홍제동	40-248	대지	23	23*43/142	김*근	서대문구 홍제동 40-**					
2	홍제동	40-165	대지	243	23*99/142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3	홍제동	40-254	대지	42	24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4	홍제동	40-265	도로	11	42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5	홍제동	40-244	대지	13	1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6	홍제동	40-256	대지	4	13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7	홍제동	40-264	대지	1	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8	홍제동	40-228	대지	464	1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9	홍제동	40-243	대지	7	46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0	홍제동	40-242	대지	34	7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1	홍제동	40-240	도로	7	34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2	홍제동	40-274	대지	14	7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13	홍제동	40-263	대지	30	14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별첨 조서

○사업명 : 홍제동 40-248 ~ 40-274 간 도로개설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및 수량	성명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주소	소유권(외)의 관리사항	
1	홍제동	40-51	석축	축대	10	김*섭	관악구 청림*길 10,101동 ***호(봉천동,서희스타힐스)					
2	홍제동	40-50	석축	담장	3	김*순	서대문구 용인로20길 **					
3	홍제동	40-39	석축	담장	3	이*수	서대문구 홍제동 40-**					
4	홍제동	40-37	건물	조적조 단층주택	7	구*국	서대문구 용인로20길 **		박*률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2/7
						구*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35, 3동 ***호(박달동,극동아파트)		박*률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1/7
						구*정	서대문구 용인로20길 **		국민건강보험 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2(서대문지사)	입류	1/7
									박*률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6	홍제동	40-38	건물	조적조 단층주택	10	구*왕	중랑구 면목로35길 63,404동 ***호(면목동,면목두산아파트)		박*률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1/7
						제일사랑교회 대표자 구*선	서대문구 용인로20길 **		박*률	서대문구 홍제동 40-**	전세권자	2/7
6	홍제동	40-38	건물	조적조 단층주택	10	최*실	서대문구 홍제동 40-**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입류	

◆ 강서구공고 제2022-2125호
한다리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2012.10.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49호(2020.12.17.)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5호(2020.12.2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0호(2021.6.24.)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강서구 마곡동 772번지 한다리문화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공원현황

- 가. 도시계획시설명 : 한다리문화공원
- 나.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72번지
- 다. 면 적 : 8,296.8㎡

2. 조성계획 결정(변경)

- 가. 주요 변경내용: 한다리문화공원 내 공공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나. 변경내역
 - 기반시설 : 2,990.4㎡ → 2,988.4㎡ (감 2.0㎡)
 - 조경시설 : 379.7㎡ → 378.7㎡ (감 1.0㎡)
 - 교양시설 : 1,437.4㎡ → 1,453.4㎡ (증 16.0㎡)
 - 녹지및기타: 2,946.1㎡ → 2,933.1㎡ (감 13.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 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 02-2600-4112)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다리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강서구 마곡동 772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8,296.8	5,350.7	1동	1,556.0	2,065.4	33	8,296.8	5,363.7	1동	1,556.0	2,065.4	40						
	소 계	2,990.4	2,990.4					2,988.4	2,988.4										
	도로	881.3	881.3					881.3	881.3										
	광장	2,109.1	2,109.1					2,107.1	2,107.1							감2.0㎡			
조경 시설		379.7	379.7				3	378.7	378.7				3			감1.0㎡			
휴양 시설		35.7	35.7				28	35.7	35.7				28						
교양 시설		1,437.4	1,437.4	1동	1,437.4	1,946.8		1,453.4	1,453.4	1동	1,437.4	1,946.8	3			증16㎡			
관리 시설		507.5	507.5		118.6	118.6	2	507.5	507.5		118.6	118.6	6						
녹지 및 기타	녹지	2,946.1						2,933.1								감13.0㎡			
시설률 (제한없음)		$(5,350.7 / 8,296.8) \times 100 = 64.49\%$ $(5,363.7 / 8,296.8) \times 100 = 64.65\%$																	
건 폐 율 (법정 20%)		$(1,556.0 / 8,296.8) \times 100 = 18.75\%$ $(1,556.0 / 8,296.8) \times 100 = 18.75\%$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경 전										경 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8,296.8	5,350.7			1,556.0	2,065.4	33					8,296.8	5,363.7			1,556.0	2,065.4	40		
	소 계			2,990.4	2,990.4					-					2,988.4	2,988.4					-		
	도 로				881.3										881.3	881.3							
	진입광장-1	가-1	부지 내	390.8	390.8							가-1	부지 내	390.8	390.8								
	진입광장-2	가-2	부지 내	767.6	767.6							가-2	부지 내	765.6	765.6								감2.0㎡
조 경 시 설	휴게광장	가-3	부지 내	950.7	950.7							가-3	부지 내	950.7	950.7								
	소 계			379.7	379.7					3				378.7	378.7							3	
	조형마운딩	나-1	부지 내	379.7	379.7							나-1	부지 내	378.7	378.7								감1.0㎡
	게이트웨이	①	부지 내	-						1	①	부지 내	-									1	
	파고라	②	부지 내	-						2	②	부지 내	-									2	
후 양 시 설	소 계			35.7	35.7					28				35.7	35.7							28	
	휴게마당	다-1	부지 내	35.7	35.7							다-1	부지 내	35.7	35.7								

구분	시설명	변경						경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구분	평의자	③	부지 내							22	③	부지 내								22			
	등의자	④	부지 내							6	④	부지 내								6			
	소계			1,437.4	1,437.4			1,437.4	1,946.8				1,453.4	1,453.4			1,437.4	1,946.8	3				
	미술관	라-1	부지 내	1,437.4	1,437.4	RC	2F/B1F	1,437.4	1,946.8		라-1	부지 내	1,437.4	1,437.4	RC	2F/B1F	1,437.4	1,946.8				1등	
	미디어파사드	⑦	부지 내	-	-						⑦	부지 내	1	1						1		중1.0㎡ (신설)	
관양시설	보도블럭 미디어아트	⑧	부지 내	-	-						⑧	부지 내	2	2						1		중2.0㎡ (신설)	
	공공조형물	⑨	부지 내	-	-						⑨	부지 내	13	13						1		중13.0㎡ (신설)	
	소 계			507.5	507.5			118.6	118.6	2			507.5	507.5			118.6	118.6	6				
	관리사무소	마-1	부지 내	118.6	118.6	RC	1F	118.6	118.6		마-1	부지 내	118.6	118.6	RC	1F	118.6	118.6				화장실 포함	
	주차장	마-2	부지 내	379.5	379.5						마-2	부지 내	379.5	379.5								옥외주차장 (18면)	
관리시설	도시가스 정압시설	마-3	부지 내	9.4	9.4						마-3	부지 내	9.4	9.4									
	안내판	⑤	부지 내	-	-					1	⑤	부지 내	-	-						5			
	자전거 보관대	⑥	부지 내	-	-					1	⑥	부지 내	-	-						1		10대	

구 분	전								후							비 고
	면				경				면				경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 지 면 적 기 타	소계			2,946.1							2,933.1					
	누지		부지 내	2,946.1						부지 내	2,933.1					검13.0㎡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197.0	881.3				
	소계	기정				197.0	881.3				
	소로	기정	3	1	3.0	77.0	231.0	연결로	가-1	가-2	
	소로	기정	3	2	4.2	77.0	323.4	연결로	가-1	가-2	
	소로	기정	3	3	7.6	43.0	326.9	연결로	가-2	휴게공간	

조성계획도

하다리 문화공원

당초

■ 범례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공작물	비고
하다리문화공원 대지면적					
한다리문화공원 대지면적			8,296.8㎡		
시설면적			5,350.7㎡	33개소	64.5%
도로 및 광장	계		2,990.4㎡		
	가-1	도로(소계)	881.3㎡		
	가-2	진입광장-1	390.8㎡		
	가-3	진입광장-2	767.6㎡		
조정시설	계		950.7㎡		
	나-1	휴게광장	379.7㎡	3개소	
	나-2	조형마운틴	379.7㎡		
	나-3	게이트웨이		1개소	
휴양시설	계		35.7㎡		
	다-1	피고라	35.7㎡	2개소	
	다-2	휴게마당		28개소	
	다-3	평의자			
교양시설	계		1,437.4㎡		
	라-1	동양자		22개소	파고라하부포함
	라-2	미술관	1,437.4㎡	6개소	
	라-3	미술관		1동	화장실포함
관리시설	계		507.5㎡		
	마-1	관리사무소	118.6㎡	2개소	
	마-2	주차장	379.5㎡	13면	미술관 내 육외주차장
	마-3	도시가스정압시설	9.4㎡		
녹지/기타면적	계		2,946.1㎡		
	나-1	안내판		1개소	
	나-2	자전거보관대		1개소	10대
	나-3	지점거보관대			
녹지/기타			2,946.1㎡		35.5%

조성계획도

하다리 문화공원

변경

■ 범례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공작물	비고
하다리문화공원 대지면적					
시설면적			8,296.8㎡	40개소	64.7%
도로 및 광장	계		2,988.4㎡		
	도로(소계)		881.3㎡		
	가-1	진입광장-1	390.8㎡		
	가-2	진입광장-2	765.6㎡		
조경시설	가-3	휴게광장	950.7㎡	3개소	
	계		378.7㎡		
	나-1	조형마운딩	378.7㎡		
	①	케이트홀		1개소	
휴양시설	②	피크라		2개소	
	계		35.7㎡	28개소	
	다-1	휴게마당	35.7㎡		
	③	평일자		22개소	파고라하부포함
교양시설	④	등일자		6개소	
	계		1,453.4㎡	3개소	
	라-1	미술관	1,437.4㎡	1동	화장실포함
	⑦	미디어파사드	1㎡	1개소	(현황반영)
관리시설	⑧	보도블록 미디어아트	2㎡	1개소	(현황반영)
	⑨	공공조형물	13㎡	1개소	수직정원
	계		507.5㎡	6개소	
	마-1	관리사무소	118.6㎡		미술관 내
녹지/기타면적	마-2	주차장	379.5㎡	13면	육외주차장
	마-3	도시가스정압시설	9.4㎡		
	⑤	안내판		5개소	(현황반영)
	⑥	자전거보관대		1개소	10대
계			2,933.1㎡		
녹지/기타			2,933.1㎡		35.4%
계			2,933.1㎡		

◆ 강서구공고 제2022-21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1976.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강서구 방화동 567-4~249-3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20-87호(2020.06.25.) 및 제2021-34호(2021.03.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토지(소유주 정정) 및 물건조서(건축물 제외)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3.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및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서구 방화동 567-4~249-36간

나. 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 강서구 방화동 567-4~249-3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라. 사업규모: 도로개설 B=10m, L=480m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 성 명: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있음): 불입

아.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강서구청 도로과 ☎2600-6805)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변경)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567-4 ~ 249-3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구분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1	기정	방화동 563	추녀	시멘트벽돌슬 라브	3㎡	유*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공항동)	1/1	-	-	-	
	삭제	-	-	-	-	-	-	-	-	-	-	
2	기정	방화동 580-149	건물	1층	2㎡	민*환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1*길 ***(방화동)	1/1	-	-	-	
	기정	방화동 580-169, 580-4	건물	1층	68㎡	한*선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3*길 *, ***동 ***호(방화동, 방*원*아파트)	1/1	-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567-4~249-3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기정	방화동 597-30	대	595	595	시도유지	-	1/1	-	-	-	
2	기정	방화동 563	도로	93	93	국토교통부	-	1/1	-	-	-	
3	기정	방화동 563-59	도로	122	122	시도유지	-	1/1	-	-	-	
4	기정	방화동 563-60	도로	371	371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5	기정	방화동 249-4	도로	103	103	국토교통부	-	1/1	-	-	-	
6	기정	방화동 249-78	도로	1190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7	기정	방화동 580	전	23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	17/23	-	-	-	
8	기정	방화동 580-2	도로	479	479	임*수	강서구 공항대로5*디길 *** (영천동)	6/23	농협은행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9	기정	병화동 580-146	대	30	30	정*권	강서구 공항동 ***	1/1	-	-	-	
10	기정	병화동 580-55	도로	66	66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1	기정	병화동 580-149	도로	28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2	기정	병화동 580-169	대	42	42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3	기정	병화동 580-58	도로	83	83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4	기정	병화동 580-5	도로	275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5	기정	병화동 580-4	도로	426	341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6	기정	병화동 580-170	대	9	4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7	기정	병화동 249-206	도로	105	105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8	기정	병화동 249-297	도로	5	5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19	기정	병화동 607-186	도로	701	33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20	기정	방화동 산63-2	도로	694	95	서울특별시	-	1/1	-	-	-	
21	기정	방화동 773	도로	3491	1000	국토교통부	-	1/1	-	-	-	
22	기정	방화동 249-281	대	38	38	김*오	서울 강서구 목동 *** 목*신*가*아파트 ***동 ***호	1/1	-	-	-	
23	기정	방화동 249-44	도로	16	16	서*갑	서울 강서구 방화동 ***-***	1/1	-	-	-	
23	변경	방화동 249-44	도로	16	16	김*자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번길 ** 동 ***호(여곡동, ****아파트)	1/1	-	-	-	
24	기정	방화동 249-284	도로	28	28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25	기정	방화동 산35-10	임야	595	595	서울특별시	-	1/1	-	-	-	
26	기정	방화동 580-134	도로	63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27	기정	방화동 580-171	대	13	13	권*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	1/1	-	-	-	
28	기정	방화동 249-45	도로	572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29	기정	방화동 249-260	대	28	28	김*수	서울 강서구 방화동 ***-***	1/1	삼성세무서	-	임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임류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서울보증보험주 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입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입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	입류	
30	기정	병화동 249-180	도로	47	47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31	기정	병화동 580-145	대	20	20	관*인	서울 강서구 병화동 ***	1/1	-	-	-	
32	기정	병화동 249-181	도로	21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33	기정	병화동 249-263	대	28	28	김*분	서울 강서구 병화동 ***-***	1/2	-	-	-	
						김*현	서울시 강서구 병화동 ***-***	1/2	-	-	-	
34	기정	병화동 신33-2	임야	496	496	서울특별시	-	1/1	-	-	-	
35	기정	병화동 597-26	도로	208	143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36	기정	병화동 249-264	대	12	12	김*분	서울 강서구 병화동 ***-***	1/2	-	-	-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내용	
						김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1/2	-	-	-	
37	기정	방화동 598-6	도로	311	311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38	기정	방화동 249-339	임야	1168	1168	국토교통부	-	1/1	-	-	-	
39	기정	방화동 598-130	도로	175	106	서울특별시 강서구	-	1/1	-	-	-	

◆ 구로구공고 제2022-2046호
**도시관리계획(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특별계획구역①,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정정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호(2014.1.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21호(2022. 5.19.)로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공고 제2022-2006호(2022.11.17.)로 열람 공고한 내용 중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구로구청장

I. 공고개요(변경)

가. 공람사유(변경없음) : 준공 전 확정측량된 면적 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필지 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침범에 따른 구역 제척, 복합청사(IN1) 내 서울시 정책사항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입주를 위한 허용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나. 열람기간(변경) : 2022.11.17. ~ 2022.12. 5.(14일 이상)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변경없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02-860-2958, Fax 02-860-2643)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대	105,087	감) 645.7	104,441.3	서고 제2014-17호(`14.1.16.)	-

※ 임대산업시설 부지에서 제척되는 64㎡에 대해서는 결정고시 이후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공지 결정 후 기부채납토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대	105,087 → 104,441.3	• 지적분할에 따른 대상지 위치 변경 • 측량성과 반영 및 임대산업시설부지(기부채납) 내 인접 구역의 건축물 입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2)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 용도 : 변경

- 기정

구 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표시
공동주택부지 (RD)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R1
복합개발부지 (MD)	•공동주택 •주거와 복합된 기타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욕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단, 전략유치시설로서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을 다음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공연장 - 판매시설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기타 지역에서 필요한 전략용도	M1
임대산업시설부지 (ID)	•산업 및 준산업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공장 •산업지원시설 (전체 산업시설 연면적(주차장 면적제외)의 20%이내)	I1

구 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표시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욕외에 철타입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운동시설 중 가목 (욕외에 철타입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기반시설부지 (IN1, IN2)	IN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IN1
	IN2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IN2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변경

구 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표시
공동주택부지 (RD)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R1
복합개발부지 (MD)	●공동주택 ●주거와 복합된 기타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욕외에 철타입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욕외에 철타입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단, 전락유치시설로서 전체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을 다음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공연장 - 판매시설 중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기타 지역에서 필요한 전락용도		M1
임대산업시설부지 (ID)	●산업 및 준산업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공장 ●산업지원시설 (전체 산업시설 연면적(주차장 면적제외)의 20%이내)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욕외에 철타입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도서관		I1

구 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표시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 운동시설 중 가목 (목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기반시설부지 (IN1, IN2)	IN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IN1
	IN2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IN2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 IN1 허용용도 변경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	• 복합청사 내 청년취업사관학교 입주를 위한 허용용도 변경	-

■ 건축물 개발밀도 : 변경없음

■ 건축물 배치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마.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①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①에 대한 결정(변경) : 변경

- 특별계획구역①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①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대	45,887	감) 291.3	45,595.7	-

■ 특별계획구역①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①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대	45,887 → 45,595.7	• 지적분할에 따른 대상지 위치 변경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특별계획구역①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특별계획구역①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가구 및 획지계획	●획지 MD	좌 동	-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용도 분류표상의 M1	좌 동
	1층부 권장용도	●교학길변 연도형상가 1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권장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금융업소, 사무소	좌 동
밀도	건폐율	●60%이하	좌 동
	기준/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이하 ●허용용적률 : 360%이하 ※복합개발부지 내 허용용적률 중 130%이하는 임대산업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	좌 동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이내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380% 이하	좌 동
	최고높이	●최고높이 : 150m이하(45층이하)	좌 동
배치	고층부	●6개동 탑상형 배치로 통경축과 경관성 확보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은 매스분절로 다채로운 경관 연출	좌 동
	저층부	●교학길변 연도형 상가 배치	좌 동
	건축한계선	●경인로변 : 건축한계선 10m ●경서로변 : 건축한계선 6m ●그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공원경계부 : 건축한계선 3m	좌 동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 정	변 경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경서로와 교학길 각각부공개공지 설치 - 복합개발부지 공공보행통로의 교학길 접속부 공개공지 설치	좌 등	도면참조
	공공 보행통로	- 문화공원과 교학길 및 소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 6m이상의 보행공간 조성 - 지형단차를 활용하는 데크설치시, 데크부는 단지내 보행통로로 연결가능	좌 등	도면참조
	단지내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단지내 보행통로 개설	좌 등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경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경인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교차로 각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등	도면참조
생태면적률		30%이상	좌 등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중점관리 기준을 적용	좌 등	시행지침 참조
공공기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임대산업시설부지 : 10,111㎡ - 임대산업시설부지(3,516㎡) 기부채납 - 임대산업시설 대체 기반시설 : 기반시설부지(4,950㎡), 도로(1,645㎡) 기부채납 - 지역중심형 범위내 임대산업시설부지 대체기반시설을 제외한 공원(3,733㎡), 도로(10,253㎡) 기부채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임대산업시설부지 : 10,047.2㎡ - 임대산업시설부지(3,452㎡) 기부채납 - 임대산업시설 대체 기반시설 : 기반시설부지(4,950.2㎡), 도로(1,645㎡) 기부채납 - 지역중심형 범위내 임대산업시설부지 대체기반시설을 제외한 공원(3,733㎡), 도로(10,393.9㎡) 기부채납	도면참조

※ 향후 건축심의단계에서 층수의 다양화, 건축물의 조형적 개선 등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적극 권장

바.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②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②에 대한 결정(변경) : 변경

－ 특별계획구역②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②	구로구 고척동 102-1번지 일대	4,950	증) 0.2	4,950.2	-

■ 특별계획구역②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특별계획구역②	구로구 고척동 102-1번지 일대	4,950㎡ → 4,950.2㎡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특별계획구역②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 정		변경				
위 치		●고척동 102-1번지 일대			좌동			
면 적	IN1	●1,650㎡			IN1	좌동		
	IN2	●3,300㎡			IN2	●3,300.2㎡		
용도지역 / 용도지구		●준공업지역			좌동			
가구 및 획지계획		●획지 IN1, IN2			좌동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지역중심형			좌동			
용도	허용용도	IN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IN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IN2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IN2	좌동	
밀도	건폐율	IN1	●60%이하			IN1	좌동	계획건폐율 (51.5%)
		IN2	●50%이하			IN2	좌동	계획건폐율 (37.5%)
	용적률	IN1	●400%이하			IN1	좌동	계획용적률 (396.2%)
		IN2	●250%이하			IN2	좌동	계획용적률 (196.6%)
	최고높이	IN1	●40m			IN1	좌동	계획높이 (38.4m)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 정		변경		
		IN2	●35m	IN2	좌동	계획높이 (32.7m)
배치 및 형태	건축한계선	●교학길변 10m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인도부속형 조정, 일 부 조정 가능 ●공동주택부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격		좌동		
	피로티	IN1	●청사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청사 주출입로가 설치 된 전면부에 계획 ●개방감 조성을 위해 1층부 층고 6m 이상 계획	IN1	좌동	
		IN2	●인접한 공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휴게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와 인접하여 층고 6m 이상 계획	IN2	좌동	
	형태 및 색채	●기본 수직배열의 심플한 패턴 디자인 구현 ●입면분절처리 ●외벽면의 재료, 색채는 상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하고 통일감 있고 안정된 시각 환경 조성		좌동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IN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보행편의성 제고 및 가로활 성화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설치	IN1	좌동	인센티브 미적용
		IN2	●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휴게 및 여가공간으 로 조성	IN2	좌동	
교통 처리 계획	주차출입구	●IN1·2 부지 부설주차장 및 공원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를 위한 주차장 출입구 통합설치		좌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연결통로로 통합설계 ●공원①주차장과 연결통로 계획 ●건축심의 전 건축협정 인가		좌동		
기타 계획지침		●IN2부지는 구로세무서가 이전되는 부지로 토지소유권 관련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좌동		

III.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IV. 기타사항 : 본 사항은 관련부서 협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V.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 또는 Fax(02-860-2643)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VI.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 02-860-295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2-18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22-117호(2022.10.20.)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로과(02- 2627-180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금천구 독산동 1160-6 ~ 독산동 1152-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벚꽃로(중로2-114) 도시계획시설 사업

다. 사업의 규모 : 폭 18m, 연장 2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붙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2627-1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벚꽃로 (중로2-114)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계	중로 2-114	철도 1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독산동 465-15	철도	63	16	15	1		공(금천구)					
2	독산동 465-11	철도	143	143	53	90		국(국토교통부)					금회추가
3	독산동 463-2	철도	6,455	138	28	110		국(국토교통부)					금회추가
4	독산동 산168-19	도로	871	871	871			공(서울특별시)					
5	독산동 산168-22	임야	193	193	91	102		국(국토교통부)					금회추가
6	독산동 466	철도	10,581	539	37	502		국(국토교통부)					금회추가
7	독산동 산168-2	철도	60	49	22	27		국(국토교통부)					금회추가
8	독산동 산167-6	도로	408	393	393			공(금천구)					
9	독산동 1160-6	도로	6,626.4	305	305			공(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롯데*****사	대위자	
10	독산동 1152-3	도로	1,988	52	52			국(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계	종로 2-114	청도 1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리인 내 용	
11	독산동 1152-4	도로	5,347.5	160	160			공(금천구)					
12	독산동 1152-1	구거	2,307.7	92	92			공(금천구)					
13	독산동 1152	도로	4,494.3	138	138			공(금천구)					
14	독산동 465-17	도로	122	122	122			국(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5	독산동 465-12	도로	275	275	275			공(서울특별시)					
16	독산동 467-13	도로	108	108	108			국(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7	독산동 466-1	도로	64	64	64			국(국토교통부)					기존 도로
18	독산동 1131-1	도로	184	184	18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독산**조합	86/110				기존 도로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	노협*****조합	24/110				
19	독산동 산167-11	임야	219	28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조*숙	1/5				금회 묘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박*선	1/5				
							경상북도 경산시 웅성면 부일1길 **	장*윤	1/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계	종로 2-114	철도 1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 련 이 내 용			
20	독산동 산167-8	도로	724	724	724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행치영로 ***	오*례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김*만	1/5						
							공(금천구)								
21	독산동 산167-10	임야	1,060	196	19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조*숙	1/5					금 문 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박*선	1/5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부일길 **	장*문	1/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행치영로 ***	오*례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김*만	1/5						
22	독산동 산167-9	도로	3,650	545	545			공(금천구)							
23	독산동 1082-9	도로	569.2	171	171			공(금천구)							

◆ 금천구공고 제2022-1869호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52호(2005. 11. 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서울특별시 제2006-191호(2006. 5. 25.)로 도시관리계획(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되고 금천구 제2006-20호(2006. 5. 30.) 도시관리계획(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로 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금천폭포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금천폭포근린공원
2.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937번지 일대
3. 면 적: 4,835.2㎡
4. 주요시설 변경내용
 - 기반시설(도로): 319.75㎡⇒329.55㎡ (증 9.8㎡)
 - 기반시설(광장): 518.50㎡⇒406.26㎡ (감 112.24㎡)
 - 조경시설: 420.90㎡⇒504.66㎡ (증 83.76㎡)
 - 휴양시설: 243.83㎡⇒110.99㎡ (감 132.84㎡)
 - 교양시설: 375.63㎡⇒375.63㎡
 - 유희시설: 0㎡⇒106.73㎡ (증 106.73㎡)
 - 운동시설: 0㎡⇒28.71㎡ (증 28.71㎡)
 - 녹지 및 기타: 2,956.59㎡⇒2,907.92㎡ (감 48.67㎡)
5. 열람기간: 2022. 11. 24. ~ 2022. 12. 8. (14일간)
6. 열람장소: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2627-1655)
7. 관련도서: 별첨(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8.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포 그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금천구 시흥3동 937-2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경				변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835.20	1,878.61	1	375.63	2,029.73	22	4,835.20	1,929.53	1	375.63	2,029.73	14	
기반 시설	소계	838.25	838.25					735.81	735.81					감 102.44㎡
	도로	319.75	319.75					329.55	329.55					
	광장	518.50	518.50					406.26	406.26					
조경 시설		420.90	420.90				2	504.66	504.66				2	증 83.76㎡
휴양 시설		243.83	243.83				20	110.99	110.99				10	감 132.84㎡
교양 시설		375.63	375.63	1	375.63	2,029.73		375.63	375.63	1	375.63	2,029.73		
유흥 시설		-	-					106.73	106.73				1	106.73
운동 시설		-	-					28.71	28.71				3	28.71
녹지 및 기타		2,956.59						2,907.92	2,907.92					감 48.67㎡
공원시설물 (40%이하)		1,878.61 ÷ 4,835.20 × 100% = 38.85						1,929.53 ÷ 4,835.20 × 100% = 39.91						
공원건물 (20%이하)		375.63 ÷ 4,835.20 × 100% = 7.77						375.63 ÷ 4,835.20 × 100% = 7.77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합계			4,835.20	1,878.61	1동	375.63	2,029.73	22			4,835.20	1,929.53	1동	375.63	2,029.73	14	
	소계		838.25	838.25							735.81	735.81					
	도로		319.75	319.75							329.55	329.55					
	광장	가-1	시흥3동 937-8대	507.10	507.10					가-1		398.30	398.30				
가-2		시흥3동 937-2대	11.40	11.40					가-2		7.96	7.96					
소계			420.90	420.90				2			504.66	504.66					
분수	나	시흥3동937-10대	122.70	122.70													감 122.70㎡
수경시설									나		62.04	62.04					증 62.04㎡
인공 물포	다	시흥3동937-10대	283.20	283.20					다		270.37	270.37					감 12.83㎡
데크	①	시흥3동937-10대	15.00	15.00				1									감 15.00㎡
미구조 파괴라	②	시흥3동 937-8대						1									감 1기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데크로드									라-1		67.66	67.66					증 67.66㎡
									라-2		171.59	171.59					증171.59㎡
소계											106.73	106.73				1	
									마		106.73	106.73				1	증106.73㎡
한양시정	소계			243.83	243.83				20		110.99	110.99				10	
	휴게소	라-1	시흥3동 937-2대	93.90	93.90					바-1	52.54	52.54					감 41.36㎡
		라-2	시흥3동 937-23대	30.23	30.23					바-2	34.98	34.98					증 4.75㎡
		라-3	시흥3동 937-10대	53.00	53.00												감 53.00㎡
		라-4	시흥3동 937-10대	66.70	66.70												감 66.70㎡
	사각의자	③	시흥3동 937-8대						4								감 4기
등의자	④	전지역						5	①							4	감 1기
연식의자	⑤	시흥3동 937-2대						1									감 1기

후 양 시 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통틀의자	⑥	시흥3동 937-10대							10							감 10기
	없음변1								②						4	증 4기
	없음변2								③						2	증 2기
교양 시설	소계		375.63	375.63			375.63	2,029.73					375.63	2,029.73		
	문화 회관	1	시흥3동 937-9대	375.63	375.63	철골조	1층	375.63	2,029.73	1		철골조	1층	375.63	2,029.73	
운동 시설	소계														3	
	체력 단련장									사					3	증 28.71㎡
녹지 및 기타	소계		2,956.59													
	녹지	마	전지역	2,956.59						아						감 48.67㎡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39.0)	(319.75)				
변경					(146.6)	(329.55)				
당초	소로	소 계			(20.5)	(135.00)				
변경					(30.3)	(148.20)				
당초		1류	1	10.0	6.5	65.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변경		3류	2	6.0	9.3	55.8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초		3류	1	5.0	14.0	70.00	진입로	공원경계	지하주차장	
변경		3류	1	4.4	21.0	92.40	진입로	공원경계	지하주차장	
당초	산책로	소 계			(118.5)	(184.75)				
변경					(116.3)	(181.35)				
당초			1	1.5	9.5	14.25	진입로	공원경계	문화회관1	
변경			1	2.0	6.6	13.20	진입로	공원경계	문화회관1	
당초			2	2.5	7.0	17.50	진입로	공원경계	문화회관1	
변경			2	1.5	11.7	17.55	시설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바-1	
당초			3	1.5	16.5	24.75	시설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라-1	
변경			3	1.5	11.5	17.25	시설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바-1	
당초			4	1.5	17.0	25.50	시설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라-1	
변경			4	1.5	40.9	61.35	시설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1	
당초			5	1.5	16.5	24.75	시설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라-2	
변경			5	2.0	26.4	52.80	시설연결로	광장 가-2	휴게소 바-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	1.5	25.0	37.50	시설연결로	광장 가-1	휴게소 라-2	
변경			6	1.0	12.2	12.20	시설연결로	산책로 4	산책로 4	
당초			7	1.5	27.0	40.50	시설연결로	광장 가-2	휴게소 라-1	
변경			7	1.0	7.0	7.00	시설연결로	산책로 4	산책로 6	

◆ 관악구공고 제2022-21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52호('19.05.0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관악구 고시 제2021-19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9)]」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1-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9)]

다. 사업면적 및 내용

- 면적 : 26,872m²
- 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라. 사업시행자(시설관리청)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12.31.

바.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합계	11필지		26,872						
1	신림동 211-2	전	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없음 -		
2	신림동 211-1	전	4						
3	신림동 산32-26	임	6,250						
4	신림동 산32-3	임	1,343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5	신림동 산32-19	임	826						
6	신림동 산32-4	임	6,160						
7	신림동 산32-21	임	2,640						
8	신림동 산32-2	임	6,962						
9	신림동 205-12	임	14						
10	신림동 산30-10	임	102						
11	신림동 산30-3	임	2,554						

사.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비치(☎02-879-6524)

◆ 강남구공고 제2022-27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78호(1997.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43호(2020.3.1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한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강남구 대치동 598-3(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 없음)

2) 명 칭 :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변경 없음)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없음)

1)면 적 : 246.4㎡

2)내 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변경 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2020. 3. 19. ~ 2024. 3. 18.)

마.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변경 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 없음)

사.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3423-69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 또는 사용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1	대치동 598-3	답	246.4	246.4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위치	물건종류	구조규격	수량(면적)	단위	소유자	주소	비고
1	대치동 598-3	컨테이너	3m*5m	15	㎡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2	"	펜스 및 문	(1 ~1.8)m*54m	1	㎡	강*구	강*구(서*특별시) 11*6	

사업시행지 위치 및 보상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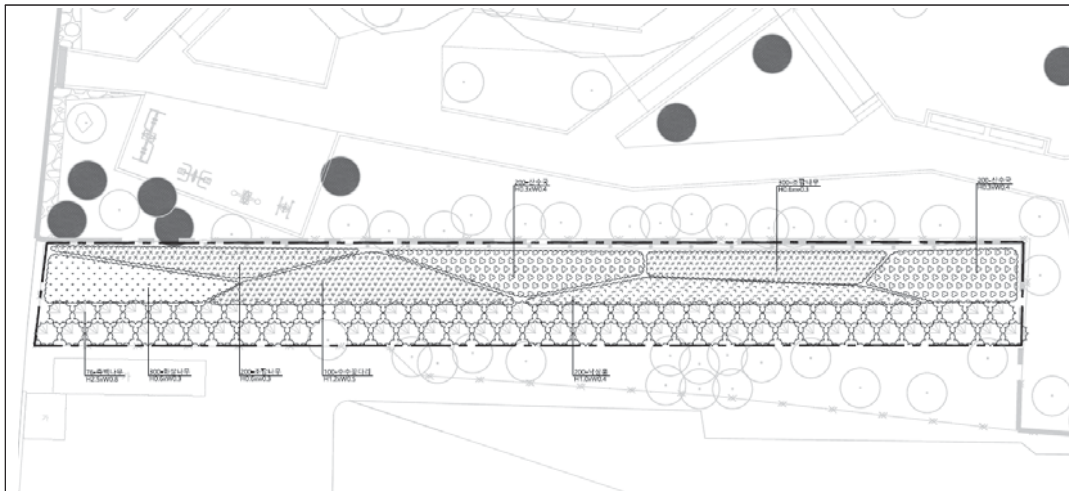
□ 한티근린공원(강남구 대치동 598-3 등 1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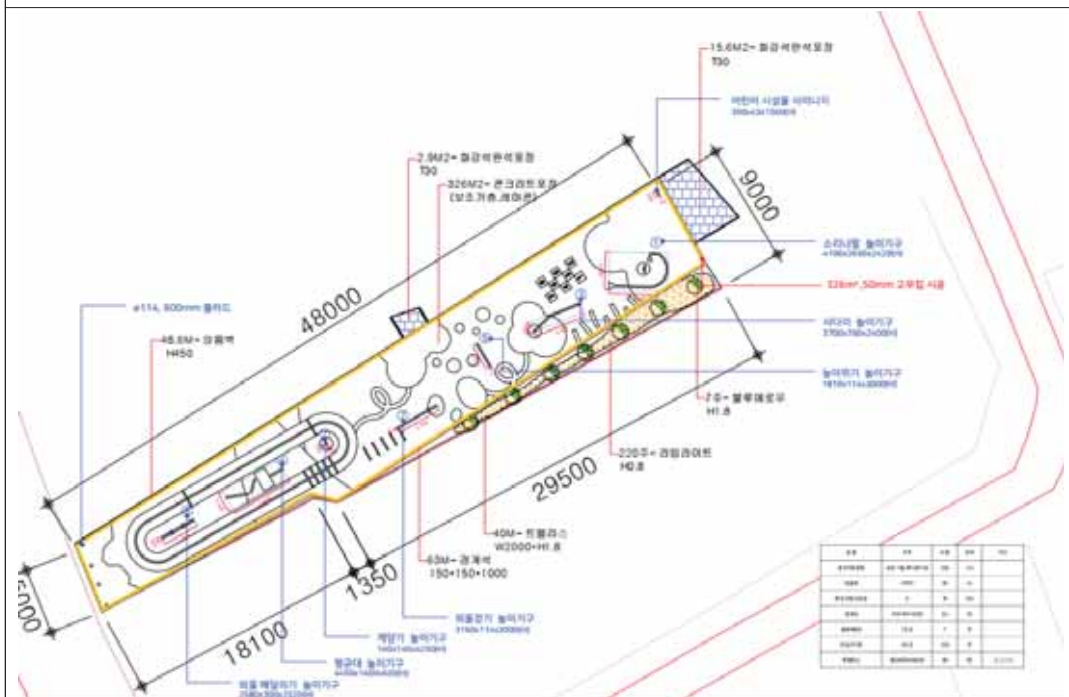
대치동 598-3번지 등 1필지

공사설계도서

☐ 한티근린공원(강남구 대치동 598-3 등 1필지)



당초(녹지공간)



변경(유희시설)

◆ 송파구공고 제2022-1987호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21-1214호(2021. 7. 8.)로 열람 공고된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송 파 구 청 장

I. 열람기간 : 2022.11.24. ~ 2022.12.8.(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

III.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IV.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안)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22,362.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 설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공급 및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2,362.6	-	22,362.6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8.1	-	1,508.1	6.7	기결정 공원 용도지역의 면적 증감 없는 위치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20,854.5	감) 19,138.8	1,715.7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138.8	19,138.8	85.6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19,138.8	250.0%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의 노후된 주택지 정비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2종일 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 지역	1,508.1	150.0%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에 따라 구역 내 기결정 공원 의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 로	203 (150)	거여동 5~11	거여동 4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1	8~10	국지도 로	203 (150)	거여동 5~11	거여동 4	일반 도로	-	-	일부구 간 확폭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 로	232	거여동 135~38	거여동 1	일반 도로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 로	232	거여동 135-38	거여동 1	일반 도로	-	-	도로가 각 일부변 경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 로	69	거여동 136-102	거여동 136-1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 로	69	거여동 136-102	거여동 136-19	일반 도로	-	-	도로가 각 일부변 경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 로	47	거여동 3-9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 로	144	거여동 135-11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5	8~10	국지도 로	389	거여동 665-6	거여동 6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 로	246	거여동 665-6	거여동 127-2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 로	451 (174)	거여동 178-13	거여동 5-10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6	8~13	국지도 로	451 (174)	거여동 178-13	거여동 5-10	일반 도로	-	-	일부구 간 확폭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 로	97	거여동 135-11	거여동 127-43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 로	144	거여동 135-11	거여동 3-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2	4	국지도 로	96	거여동 7	거여동 6-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3	4	국지도 로	61	거여동 8-3	거여동 8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 로	79	거여동 9	거여동 9-6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3	5	4	국지도 로	79	거여동 10-12	거여동 10-3	일반 도로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2)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	소로 2-1	• 도로 폭원 변경 - 기정 : B=8m, L=203m - 변경 : B=8~10m, L=203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소로 2-2	소로 2-2	• 도로 가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내부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가각 일부 변경
소로 2-3	소로 2-3	• 도로 가각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내부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가각 일부 변경
소로 2-4	소로 2-4	• 도로 연장 변경 - 기정 : B=8m, L=47m - 변경 : B=8m, L=144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통합에 따른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2-5	소로 1-1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기정 : B=8~10m, L=389m - 변경 : B=10m, L=246m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내부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2-6	소로 2-6	• 도로 폭원 변경 - 기정 : B=8m, L=451m - 변경 : B=8~13m, L=451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폭
소로 3-1	소로 2-4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기정 : B=6m, L=97m - 변경 : B=8m, L=144m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체계 및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통합에 따른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3-2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 3-3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 3-4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 3-5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2) 주차장(신설)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	증)1,508.1	1,508.1	-	·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 주차장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127-30일원	층수	-	지하1~2층	지하1~2층	-	· 공동주택용지 지하 일부 입체적결정
				면적(㎡)	-	증)4,947.2	4,947.2		

※ 입체적 결정하는 주차장 면적 및 층수는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확정함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지하 중복결정 및 공동주택 지하 일부 입체적결정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큰바위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1,508.1	-	1,508.1	-	어린이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2)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큰바위 어린이공원	· 위치 변경 및 면적 증가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7번지 → 송파구 거여동 6-7일원 · 공원하부 지하주차장(공영)과 중복결정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구역 내 기존공원의 위치 변경 ·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안)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	A-1	19,138.8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19,138.8	공동주택
신설	-	A-2	370.3	송파구 거여동 5-10, 5-11	370.3	근린생활시설

나.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 설	· 획지계획 면적 - A-1 : 19,138.8㎡ - A-2 : 370.3㎡	·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획지 단위개발 지정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안)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허용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용도	I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II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	

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불허용도	a · 허용용도 외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계획

1)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A-2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나. 용적률 계획

1)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1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A-2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00% 이하	-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 α 현금건축물)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및 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계	10%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022.5.) 개발사업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4%	
지능형 건축물 4등급	6%	

다. 높이 계획

1)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공동주택)	· 최고높이 75m 이하 · 최고층수 25층 이하(평균층수 20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A-2 (근린생활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이면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단, 남측 오금로53길변 4m 이격)	결정도 참고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형 태	1층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야간조명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색 채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안)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폭원 : 3~4m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 보행통로	· 기존도로 폐지에 따른 보행자 편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폭원 : 6m (24시간 개방)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주차출입구 외 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비상차량 차량출입구 예외)	결정도 참조

3. 공공시설 부담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	• 순부담률 : 25.1% (5,158.1㎡) - 도로 : 5.2% (1,062.8㎡) - 주차장 : 17.9% (부속토지+환산부지면적 3,677.9㎡) - 공공주택 : 2.0% (부속토지+환산부지면적 417.4㎡)	결정도 참조

※ 측량성고에 따라 면적 및 순부담률이 변경될 수 있음

⑥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씬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조경식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대지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가능선의 변경
8. 대지내외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V.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2-2243호
도시계획사업(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0-172호(2000.06.27.)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0-224호(2000.06.30)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2-82호(2002.10.25)호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3-2호(2003.01.15.), 제2003-22호(2003.03.31.), 제2005-14호(2005.03.18.), 제2006-13호(2006.03.20.), 제2007-11호(2007.03.26.), 제2008-13호(2008.03.26.), 제2009-07호(2009.03.16.), 제2010-18호(2010.03.24.), 제2011-20호(2011.03.30.), 제2012-27호(2012.03.28.), 제2013-24호(2013.03.20.), 제2014-31호(2014.04.03.), 제2015-44호(2015.04.01.), 제2016-11호(2016.02.03.), 제2017-208호(2017.12.06.), 제2019-1682호(2019.10.16.), 제2020-61호(2020.04.08.) 및 제2021-3호(2021.01.06.)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강동구 강일동 667-13 일원 도시계획사업(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를 위해 동법 제33조에 따라 환지계획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4. 관계 도서는 서울시 강동구청(5층 주택재건축과, ☎02-3425-5982)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금회 환지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강일동 667-13 일원 (구 하일동 328-1 외14필지)

나. 사업의 종류·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명칭)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라. 면적 및 규모

- 16,246.6㎡ (주택용지 68개 필지, 도로, 녹지)
- ※ (사업시행 전) 16,396.0㎡ / (사업시행 후) 16,246.6㎡

마. 환지계획 총괄표
－ 정리 전 토지

구 분	지 목	면 적(㎡)	필지수	구성비(%)
총 계		16,396	15	100.00
일반지	소 계	16,377	14	99.88
	대 지	1	1	0.01
	답	3,022	1	18.43
	전	9,676	9	59.01
	임 야	3,678	3	22.43
법53조 해당지	소 계	19	1	0.12
	도 로	19	1	0.12

－ 정리 후 토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6,246.6	100.0	
1. 주 거 용 지	11,216.8	69.0	
단독주택용지	11,216.8	69.0	68개 필지, 필지당 165㎡내외
2. 공 공 용 지	5,029.8	31.0	
도 로	4,098.7	25.3	
완충녹지	650.9	4.0	
경관녹지	280.2	1.7	

※정리 후 면적 변경: 감 149.4㎡ (측량결과 반영 및 강일도시개발사업 구역경계 조정 등)

바. 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사. 위치도 및 환지계획도: 붙임

아. 공람기간: 2022.11.24. ~ 2022.12.08. (14일간)

자. 공람장소: 강동구청(강동구 성내로 25, 주택재건축과 ☎ 02-3425-5982)

차. 의견제출 방법: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

별첨-1 (위치도)



별첨-2 (환지계획도: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67-13 일원)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번길 2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6-1	54m ²	한강 취수구 오탁방지막 철거 및 재설치	2022.11.09. ~ 2022.11.30.	2022. 10.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115(영등포동)	용산구 이촌동 308-4/ 용산구 이촌동 392-1	18㎡/ 18㎡	경부선 용산 ~노량진간 한강철교 CD선 외5개소 교량개량공사	2022.11.3. ~ 2022.12.31.	2022.1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12 (논현동)	강동구 교덕동 384-1외 7필지	243㎡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2022.11.3. ~ 2023.3.31. (기간중 15일)	2022.1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케이앤피 지반기술㈜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공로 272	마포구 상암동 496-171	20㎡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2022.11.3. ~ 2022.11.30.	2022. 1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명	주소	허가 구역	점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	성동구 청계천로 540	광진구 자양동 97-5	20㎡	청담대교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2022.11.3. ~ 2023.12.31.	2022.1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서울특별시성동구 강변북로 257	강서구 개화동 174-1	1,200㎡	한강수상갤러리 조성에 따른 월드컵분수 및 컨테이너 1동 거치	2023.1.1. ~ 2023.12.31.	2022.11.1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삼천리 이앤지	경기도 군포시 봉성로 67번길 3층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수상레포츠포럼센터 조성공사 (10,330㎡)	수상레포츠포럼센터 조성공사	' 22.11.18. ~ ' 22.12.30.	' 22.11.1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췌신후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신당동)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4척) 499㎡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2.11.01. ~ ' 22.12.31.	' 22.11.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4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정계천로 8	서울시계 내 한강 (월드컵대교)	선박 7척 (2,662㎡)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022.3.1. ~ 2022.12.31.	2022.11.17.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2-414호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 부상형 전환 신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 예정인 「이동형 매점(3개소) 부상형 전환 신축공사」에 반영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공법선정 개요

- 가. 사 업 명 : 한강 이동형 매점[3개소] 부상형 전환 신축공사
-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다. 공법선정 대상 : 공사설명서 참조
- 라. 공법 심사 기준
 - 1) 배점기준 : 정량점수 20점, 정성평가 80점

구 분	평가항목(100점)		비 고
	1차 평가(정량평가)	2차 평가(정성평가)	
배 점	20점	80점	
평가내용	공사비(10점), 경영상태(10점)	시공성(20점), 안전성(20점), 유지관리(20점), 품질관리(20점)	
평가결과	2차 평가대상 선정 (5개 업체)	1, 2차 평가 점수 합산하여 최종평가	

2) 평가절차

- 가) 1차 평가 : 제안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결과 고점 순 상위 5개 공법을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
 - (1) 제안참여자가 5개 이하인 경우 전체를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2) 제안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재공고

※ 재공고 실시 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

나) 2차 평가 :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공법의 기술제안서를 접수 받고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성평가 실시

(1)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기초자료인 “기술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

(2) 2차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선정

※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다) 종합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1차 평가(정량평가) 점수와 2차 평가(정성평가)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공법으로 최종 선정

(1)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견적가격)가 낮은 업체로 선정

(2) 종합평가 결과 1순위 업체가 포기할 경우 또는 선정 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

3) 평가점수

가) 1차 평가(20점) : 공사비(10점)+경영상태(10점)

(1) 공사비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견적서를 기준으로 1)균형가를 산정한 후, 균형가에 근접한 가격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1점) 적용

※ 균형가와 차이의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2) 경영상태 평가는 불임 참조

나) 2차 평가(80점) : 시공성(20점)+안전성(20점)+유지관리(20점)+품질관리(20점)

(1)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 우, 미, 양, 가” 로 상대평가하며 차등률 10%(2점) 적용

(2)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2. 참가기준

가. 참가 자격

1) 물에 뜨는 부상형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보유자) 중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특허기술 공법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1) 균형가 :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 단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

나) 통상실시권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나. 참가조건

- 1) 1개 업체가 여러개의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견적은 1개만 제출 가능하며, 1개 공법에 다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1개 권리자만 선택하여 참여

다. 참가제한

- 1)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2)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1차 평가(정량평가) 서류 제출 안내

가. 1차 평가 서류 제출 목록

- 1) 견적관련 서류 : 가격견적서(회사 직인 필), 설계내역서 등
- 2) 공법관련 서류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신기술인증서, 특허사용동의서
※ 가격견적서 제출일 기준 특허소유 또는 전용실시권 현황
- 3) 기타 서류 :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나. 제출기한 : 2022. 12. 01.(목)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라.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이준범 주무관)

※ 서류 제출용 봉투에 해당 공사명 필히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마. 가격견적 작성방법

- 1) 견적금액(설계가)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공사금액으로 작성
- 2) 견적조건

가) 노무비는 2022년도 하반기 노임 적용

나) 기타 환율 1\$당 1,348원, 무연휘발유 1,738.0원/ℓ (부가세 별도), 경유 1,838.0원/ℓ (부가세 별도)

다) 규격, 수량, 납품방법(설치도 등)을 견적서에 반드시 명기

라) 내역서 단가 및 금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

3) 가격견적서 작성기준

가) 공사비 산정 방법

- (1) 매점 1개소당 부상식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순공사비 제시

나) 기타 사항

- (1) 공법(제품) 제작 및 설치 기준
- (2) 임시전력, 공사용 조명, 컨테이너 사무실 등 부대공 제외
- (3) 할증은 산출 시 포함
- (4)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기준, 물가자료,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다) 설계내역서 예시(공종별 작성 및 제출)

- (1) 총괄내역서(공통)

공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공사명												
부상형시설물		1	식									
소계(견적가)												

(1-1) 설계내역서

공종	규격 ^{주)}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부상형 시설물												
소 계												

라) 제출된 견적금액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증액 불가

마) 제출된 견적금액은 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종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 등은 가격견적 시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가격에 맞게 설계내역서(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법 선정(낙찰)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건설알림이에 등록하여 1년간 공법 선정 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차 평가(정량평가) 결과 공개는 2022. 12. 08. 건설알림이에 공개
(공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2차 평가(정성평가)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대상 : 1차 평가(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공고예정)

나. 제출기한 : 2022. 12. 15.(목) 18:00까지

※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사본(전자파일 e-mail, USB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추천표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마.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이준범 주무관)

※ 서류 제출용 봉투에 해당 공사명 필히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 “2차 평가(정성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참조

5.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2. 12. 20.(화) (예정)

나. 회의방법 : 대면심의

다. 평가위원 : 7명(비공개)

라. 평가방법 : 공종별 기술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일정 및 평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특기사항 및 주의사항

가. 1차 평가서 제출회사가 5개 이하일 경우 전체가 2차 평가 대상으로 함.

나. 2차 평가서 작성안내서는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반드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람.

다. 2차 평가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라. 우리 본부(운영총괄과)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여 2차 평가 대상공법 5개를 선정하고, 2차 평가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하며, 공법 선정은 1차 및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함.

마.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1·2차 평가 결과는 건설알림이에 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될 수 있음.

아.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2)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 10점 감점

자. 최종 선정된 업체는 특허(신기술) 사 협약을 우리 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 후 차순위 업체로 선정하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함.

차.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카. 공고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타. 사업 참여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파.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09, 이준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사개요 및 위치도, 선정대상 공사현황 1부.
 2.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추천표 서식 1부.
 3. 가격제안서 산출기준 물량 기준표 1부.
 4. 1차 정량평가(견적가격) 제출 서식 1부.
 5. 2차 정성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부.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끝.

2) 접촉 :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공사비	▪균형가 산정 -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 ※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 ▪균형가에 근접한 공법 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균형가에서 떨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 적용 ※ 균형가와외의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10	사업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10	
정성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20	평가위원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20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20	
	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빈도 등	2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정량평가	설계견적서(회사지인필), 설계내역서, 해당 공법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신기술인증서(권적 재확인 기준 특허소유 또는 전용실사권 현황),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류 등
정성평가	공법설명서,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실적 등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자 노출금지)
제안서 규 격	①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② 제 질 : 백상지 (80g/m ²) ③ 인쇄방법 : 공면표지 컴퓨터조판 인쇄 ④ 계본방법 : 무선라벨거나 철선물 사용하지 않고 표면에 칠함 ⑤ 글씨크기 : 제목 16포인트, 소제목 13포인트, 본문 11포인트, 글씨체는 신명태명조 ⑥ 쪽 번 호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빈드시 묵차 작성)

○ 2차 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대평가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6	1	1	2	1	1
3	1	1	1			7	1	1	3	1	1
4	1	1	1	1		8	1	2	3	1	1
5	1	1	2	1		9	1	2	3	2	1

※ 상대평가 시 차등률10% 적용(정성적 평가분야별 격차 2점)

예) 수 20, 우 18, 미 16, 양 14, 가 12

○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CCC- 미만은 실태대상 제외	6.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등급유효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강 이동형 매점(3개소) 부상형 전환 신축공사

□ 공사개요

○ 위 치

- 이촌1호: 이촌동 362-1 동작대교 북단 하류
- 잠원1호: 압구정동 386 잠원1주차장
- 잠원3호: 잠원동 121-9 잠원6주차장

○ 내 용: 수상 부유식 구조물 설치

○ 규 모: 지상2층(매점 3개소)

○ 추 정 가 격: 금1,200백만원(매점1개소당 400백만원)

연번	공종 (분야)	공 사 위 치 및 내용	비고
1	수상부유식 구조물	한강공원 매점(난지1,2호) 부상형 매점 설치에 필요한 부유식 구조물	

□ 위 치 도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추천표

○ 회 사 명: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인)

○ 五五五

- 신기술 또는 특허번호:

○ 평가위원 추천번호

位置1	位置2	位置3	位置4	位置5	位置6	位置7

※ 1~21번 중 7개 번호 선택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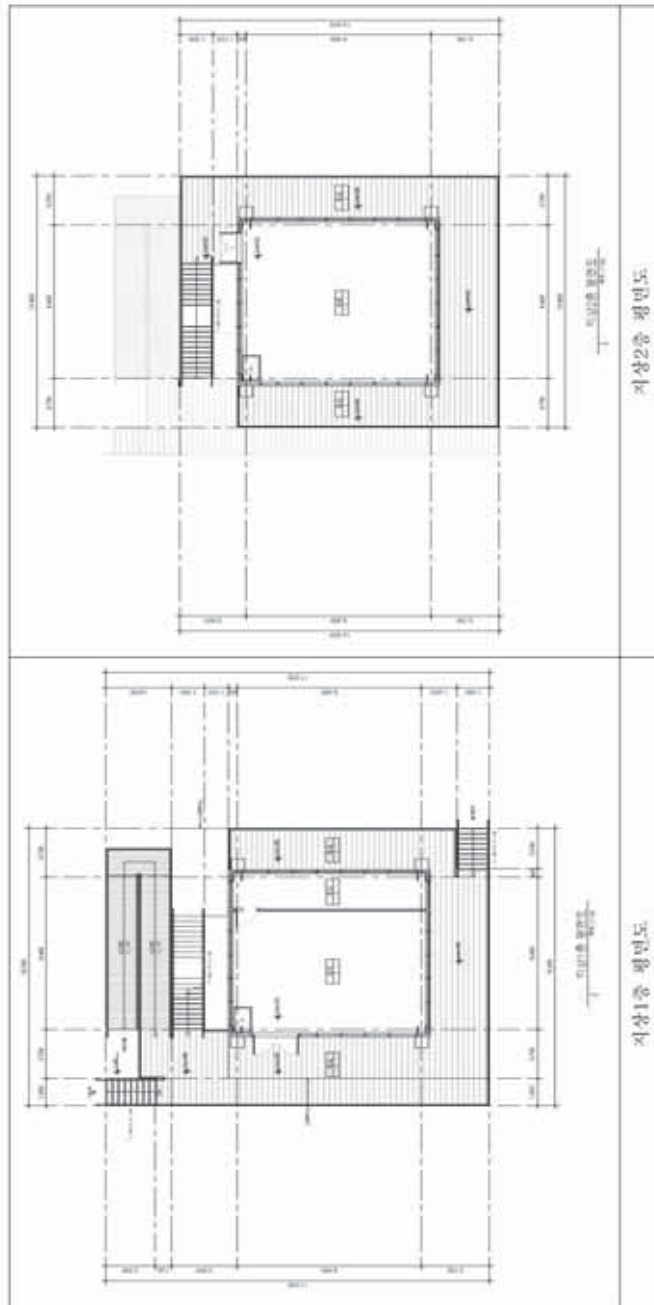
2022년 12월 일

회 사 명 (인감날인)

가격제안서 산출 참고도면

(가리지제안서 산출시 참고)

- ☐
-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청 평면도**



가계제안서 산출 시 기준 수량임(실제 시공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견 적 서

- 회사명: _____ 전화번호(☎ _____)
- 주 소: _____
- 대표자: _____
- 공법(신기술)명: _____

구분	등록번호	취득일	보호기간 만료일	취소여부	비 고
신기술 특허					

- 서울시 건설알림이 등록내용

번 호	분 야	제품(공법)명	업체명	등록자	최종수정일

상기 공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가격을 제출합니다.

【견 적 가 격】

- 공 종 : 한강공원 매점 수상 부유식 구조물 설치
- 견적항목
- 한강공원 매점(1개소)에 소요되는 부유식 구조물 순공사비
- 견적가격: _____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 순공사금액은 원단위까지 작성(소수점 이하 절삭)

- 붙임 1. 특허증 또는 신기술인증서 1부.
2. 특허등록원부, 특허등록공보 각 1부.
3.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1부.
4. 설계내역서 1부.

※ 참가업체는 제출서류를 준수하여 제출해야하며, 미 준수시 당일 가격견적은 무효 처리함(통상실시권자 불가)

※ 양식 변경 불가

2022년 월 일

○ ○ ○ ○ ○(회사명)[법인인감 날인]

세 부 내 역

[단위 : 원]

연번	내역	구성	금액	비고
합 계				
	수상부유식 구조물 설치	1식		내역서(산출서) 별도 제출

※ 개별 내역서 작성 제출시 산출규정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

- 별도 양식 없음(업체 양식 사용, 공고문 내 설계내역서 예시 참조)

※ 세부내역은 업체 선정에 중요 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설계 2차 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한 강 사 업 본 부
(운 영 총 괄 과)

-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설계 -

2차 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건명 : 한강공원 매점 부상형 전환(3개소)신축 부유식 구조물 설치 공법 선정

2. 평가용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 2022. 12. 15.(목) 18:00까지

나. 제출자료 : 2차 정성평가 심사자료

1) 제출사유 : 심사위원 평가자료

2) 제출양식 : 서식 제1~6호 서식 외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 특정공법 자료

3) 제출수량 : 원본 (책자 1부), 사본(e-mail 제출, 전자파일(USB))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이준범

3. 평가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협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공법 선정자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2) 협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부서와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라. 발주부서는 필요시 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갑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낙찰된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건설알림이 등록하여 1년간

공법선정 시 제외토록 붙이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작성 및 편철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글씨크기 : 제목 16포인트, 소제목 13포인트, 본문 11포인트,

글씨체는 신명태명조

바) 쪽 번호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만드시 목차 작성)

4. 2차 정성평가 제출자료

가. 특정공법 소개서 작성 순서

1) 특정공법 설명서

가) 공법명, 공법내용, 특정지정일, 보호기간, 특정공법 특징

나) 특정공법 범위, 특정공법 내용

다) 개발자 또는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

2) 특정공법 소개서

가) 시공성(시공절차 및 방법)

(1) 시공계획 상세도(주요 공정의 복잡도 평가)

(2) 시공편의성(숙련공 필요여부, 전문시공장비 필요성 여부)

(3) 현장적용성(취약부, 협소공간 시공용이성, 습윤면 시공용이성 등)

나) 안전성

- (1) 성능 및 품질 수준 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 (2) 기존 공법과의 비교 우위 자료
- (3) 내구성, 슬래브 중성화 방지 등 기능에 대한 자료
- (4) 구조재 설치 이후 주요 부재의 성능개선 효과 자료

다) 품질관리

- (1) 타 특정공법 대비 품질 우수자료, 취약부 품질관리 자료

라) 유지관리

- (1) 특정공법 우수성(유지관리 비용 및 주기 등) 및 장·단점, 유지관리지침서

나. 제출부수 : 원본 (책자 1부), 사본(e-mail 제출, 전자파일(USB))

- 1) 원본 : 서식 제1~6호 및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 특정공법 자료 일체
- 2) 사본 : 서식 제6호(회사명 기재불가, 특정공법만 기재)

가) 사본에 첨부되는 모든 자료에는 회사명(대표자명)이 기재될 수 없음.

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데이터) 등은 회사명(대표자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품(공법)설명서 작성 유의사항

- 1)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합니다.
- 2) 설명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본 설명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유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5)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 6) 발주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부실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정공법 선정 평가서 - 2차 정성평가

사업 참여신청업체 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 원본에만 제출
2. 서약서(제2호 서식) - 원본에만 제출
3. 보안서약서(제3호 서식) - 원본에만 제출
4. 사용인감계(제4호 서식) - 원본에만 제출
5. 최근 3년간 시설공사 실적(제5호 서식) - 원본에만 제출
6. 공법 설명 요약서(제6호 서식)
7. 공법소개서,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등
(제7호 서식)

주) 원본 : 표지, 별지 서식 제1~7호 제출

사본 : 표지(사업명 및 공법만 기재) 및 별지 서식 6, 7호 제출

[평가자료 표지]

접수번호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설계
특정공법 선정평가서
 (2차 정성평가 심사자료)

공 종 : 부유식 구조물 설치

사 업 명 :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공사

공 법 명 : ○○공법(약칭)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주) 원본에만 대표자~작성자 기재, 사본에는 기재하지 말 것.

주) 구조부분과 지반보강 부분은 별지로 구분 제출 할 것

[제2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공사” 의 특정공법 선정사업의 목적과 사업참여 신청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사업참여 신청서(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 사는 한강사업본부의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공사” 의 특정공법 선정에 따른 제안조건, 과업내용 및 기타 성북구가 제공하는 자료 등에 충족하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과 제품선정 평가에 있어 성북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참여 신청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2. . .

대표자 성명 : (인)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 여 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공사” 의 “특정공법 선정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 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제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 공사”의 특정공법 선정사업의 참여신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2.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제6호 서식]

공법 설명 요약서

- 공종명 : “한강공원 이동형 매점(3개소)부상형 전환 신축공사”-부유식구조물
- 신기술·특허명 : “공법명 기재”(○○○공법, 신기술·특허번호)
- 공법개요 및 설명

구 분		내 용
공법 개요		○
시공 개요도		도면 등 삽입
비교표	시공성	○ · ○ ·
	안전성	○ · ○ ·
	유지관리	○ · ○ ·
	품질관리	○ · ○ ·
비 고		

※ 각 제안사별 공법 비교표에 기재될 내용으로 별지 사용은 불가함

[제7호 서식]

공법소개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등**공법 소개서(표지)**

<----- 210 mm ----->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공법 소개서

(신명견고딕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2. . .

(산명태명조,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2
9
7
m
m

 v

공법소개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등

가. 특정공법 소개서 - “특정공법 소개서 작성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나.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증서) 사본 1부.

다. 특정공법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각 1부

라. 특정공법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등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수록>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43호****하천점용(일시)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일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 121-8번지 일원
 - 면 적: (일시) 150㎡(잠원동 121번지 : 90㎡, 121-8번지 : 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열발생 열수송관 및 열차단 밸브 보수
 - 내 역: 일시 굴착 및 복구 1식
5. 점용기간: 2017.07.21. ~ 2022.12.31.
(일시) 허가일로부터 30일간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6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8
 - 면 적 : 4.7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조형물 설치
 - 내 역 : 싸이클링 휴먼 조형물 1식
5. 점용기간 : (당초) 2017.12. 1. ~ 2022.11.30.
(변경) 2022.11.15. ~ 2027.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6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대륜이엔에스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5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 1180-17번지 일원
 - 면 적: 6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관 매설
 - 내 역: 가스관로(L=540m, B=5m), 관 및 관보호구조물(540m*1.2m)
5. 점용기간: 2022. 02. 14. ~ 2027. 06. 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6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대륜이엔에스
 -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5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52-71번지 등 7필지
 - 면 적: 4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관 매설
 - 내 역: 가스관로 L=384m(D=500mm), 압입구간 L=70m(D=800mm)
관보호공 L=70m(D=600mm), 보호콘크리트 314m*1m*1m
5. 점용기간: 2021. 04. 13. ~ 2026. 06. 30.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